韓國圖書館學叢書 14—1

古書分類目錄法

(上)

千 惠 鳳 著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

1970

Korean Library Science Series, no. 14—1

Classification and Cataloging of Oriental Classics

Part I

by

Hye-bong Chŏn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Seoul, Korea

1970

叢書編刊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에 새로운 圖書館學이 導入된지 十數年이 되었읍니다. 그 동안 相當한 數의 圖書館學徒가 輩出되어 제각기 專攻分野를 擇하여 깊은 研究를 계속하여 왔으며 또한 많은 研究實績을 올리고 있는 터입니다.

이제 우리도 앞선 나라들의 例를 따라서 個人學者들의 研究成果를 集大成하는 圖書館學叢書를 編纂 刊行할 段階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圖書館學의 體系는 實로 尨大하여 어떤 個人이 그 叢書刊行의 大業을 감당할 수 없음은 勿論이려니와, 어떤 團體일지라도 短時日內에 이 일을 成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本 協會는 우리 館界의 總力을 動員하여 1968年부터 1972年까지의 5個年計劃으로 總 20卷에 達하는 「韓國圖書館學叢書」를 編刊하기로 決定한 것입니다.

이 事業이 完遂되는 날 韓國圖書館界는 中進國의 地位에서 벗어나 當當 先進國의 隊伍에 서게 될 것이며, 國內의 圖書館學徒와 圖書館學實務者는 圖書館學에 관한 지금까지의 外書 依存 一邊倒의 傾向을 止揚하게 될 것을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國家 全體의 學問的 威信과 圖書館學界의 名譽를 걸고서 이 事業을 기어이 成功시켜 나갈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바입니다.

1970年 3月 日

會長 姜 周 鎭

自　　序

오늘날 우리는 學問 全分野에 걸쳐, 歐美의 새로운 思想 理論 實際 및 方法論을 받아들여 分析檢討하고, 이를 우리 民族과 社會에 어떻게 適應시켜 궁극으로는 어떠한 獨自的인 發展段階로 지향케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는 黎明期에 處해 있다.

돌이켜 보건대, 새로운 概念의 圖書館學의 理論과 實際가 이 땅에 移植된 것은 10餘年前의 일이며 그것은 全的으로 美式 類型의 것이었다. 그 當時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했으나, 그저 덮어 놓고 익히고 吸收했던 우리는 그 뒤 호된 試鍊을 겪어야만 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經濟·政治·文化·社會·敎育의 制度와 事情이 워낙 다르고 뒤진 우리에게, 異質的이고 次元이 높은 그것이 그대로 適應될 理 없기 때문이었다. 純美式의 管理가 後進性을 띤 우리 現實에 그대로 適用될 理 없었고, 收書政策이 빈약한 豫算으로 運用되는 우리에게 그대로 맞아 들 理 없으며, 整理方法도 책의 內容과 形態가 判異한 東洋固有의 資料를 分類하고 目錄하는데 또한 그대로 採擇될 理 없었음은 두루 經驗한 事實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10年이 지나면 江山도 變한다 했 듯이, 우리는 한때의 試鍊期를 거쳐, 이제는 圖書館學 各分野에 있어서 獨自的인 文化 乃至 社會的 現象에의 適應을 위해 한결같이 줄기찬 硏鑽을 進行시키고 있다. 생각할수록 소담스럽고 기쁘기 그지없다.

이러한 現實에서 그 한모퉁이를 맡도록 筆者에게 委囑된 것이 古書의 分類問題이다. 古書分類에 있어서 그 史的인 考察은 진작 中日兩國人에 의해 編刊된 바 있으나 傳統的인 分類方法과 새로운 分類方法을 比較硏究하여 相互間의 聯關을 맺어주거나 또는 分類規定을 마련해 주는 따위의 課業은, 寡聞의 탓인지 아직껏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分類編에 있어서는 圖書館의 種類와 性格에 따라 傳統的인 分類方法과 새로운 分類方法中 어느 하나를 擇할 수 있도록 整理政策을 수립하고, 그 위에서, 첫째 : 從來 中日兩國에서도 試圖해 본 바가 없는 四分法과 十進法과의 聯關性을 比較硏究하였고, 둘째 : 兩分類法에 걸쳐 分類의 一般 및 特殊準則을 마련하여 敎育과 實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특히 力點을 두었다. 그러나 워낙 微力할뿐더러 또한 荒蕪地에서의 開拓作이고 보니, 무론 모자람과 고쳐야할 점이 적지 않으리라 여겨짐에 미리 머리를 숙인다. 아무쪼록 斯界에 造詣가 있는 분들의 結義겨운 叱正이 있기를 雙手合掌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拙作을 上梓하는 契機를 마련해 주신 圖協의 姜周鎭 會長을 위시하여 崔根滿事務局長 朴大權 金仁遠 兩部長의 摯意를 銘記하며, 아울러 校正을 도와준 金正根先生과 李益善 助敎의 고마움도 아로새겨 두는 바이다.

1970年　3月　　日

著　　者　　識

目　次

第一章 緖 論

第一節 古書의 槪念과 範圍

古書는 古圖書를 뜻하는 것으로, 純粹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옛책이라 말할 수 있다. 그 外에도 同義語로서 古典 典籍 古籍 古本 등이 있고, 또한 類似語로서 漢籍이라는 말도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漢籍은 漢字로 쓰여진 書籍으로 限定되므로, 한글 日本語 蒙古語 滿洲語 및 其他文字로 쓰여진 옛책은 不得已 이에서 除外될 수 밖에 없다.

大抵 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人間의 精神的인 所產(spiritual production)을 담은 物質的인 形體(physical materials)라고 簡單히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人間의 精神的인 所產은 그 책에 收錄되어진 知的인 內容을 말하며, 物質的인 形體는 그 책 自體를 形成하는 外形的인 事象 곧 物理的인 形態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洋의 古書라면 內容的으로는 東洋의 傳統的인 固有의 學術과 思想이 主로 前提되고, 外形的으로는 이 東洋의 옛 著述을 毛筆 木版 鑄字 木活字 石版등의 手段으로 楮紙 藁精紙 麰麥紙 桑紙 柳葉紙 麻紙 綿紙 竹紙 薏苡紙 및 이들 混合紙와 雁皮 三椏의 倭紙 등의 옛종이에 쓰거나 박아서 卷子本[1] 帖裝[2] 또는 旋風葉[3] 蝴蝶裝[4]

---

1) 葉德輝. 書林淸話 卷一. 臺北, 世界書局, 民國50 (1961) p. 13 및
李文裿. 中國書籍裝訂之變遷, **圖書館學季刊**, 第3卷 第4期. p. 544에는「卷軸」이라 있고,
陳國慶. 古籍版本淺說. 上海, 1957. p. 77에는「卷軸裝」이라 있으나, 一般的으로는「卷子本」이라 일컫고 있다.

2) 程大昌. 演繁露(說郛 局13所收)에는「葉子」,
于震寰. 善本圖書編目法, **圖書館學季刊**, 第7卷 第4期. p. 604에는「葉子本」이라 있고,
李耀南. 中國書裝考, **圖書館學季刊**, 第4卷 第2期. pp. 207~216에는「摺本(册)」이라 있으며,
長澤規矩也. 書誌學序說, 東京, 吉川弘文館, 昭和35 (1960) p. 45에는「帖本(册), 折本(册)」의 用語를 쓰고 있다.

3) 馬衡. 中國書籍制度變遷之硏究, **圖書館學季刊**, 第1卷 第2期. pp. 210~212에는 帖裝과 旋風葉을「册葉」이라 하였고,
蘇瑩輝. 從早期文字流傳的工具談到中國圖書的形式, **圖書館學報**, 第7期. p.27에는「摺疊本」一名「梵夾裝」이라 하였으며,
屈萬里·昌彼得. 圖書板本學要略.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民國44 (1955) p. 109에서는 帖裝과 旋風葉을「梵夾本」一名「經摺裝」이라 일컫고 있다.

4) 孫從添. 藏書記要. 上海, 1957. p. 42에는「蝴蝶本」이라 있고,
馬衡. 前揭書. p. 212에는「裏背裝」이라 있으며,

包背裝[5] 線裝[6]등 이른바 典型的인 東裝本으로 裝訂[7]한 것을 뜻하여 왔다.

그中 韓國의 古書는 內容的으로 中國의 學術과 思想을 그대로 받아 들인 것도 적지 않지만, 한편 그것을 背景으로 우리의 獨自的인 學術과 思想을 形成시킨 것도 적지 않으며, 外形的으로는 裝訂 印刷手段 册紙등에 있어서 우리의 獨自性을 加味하여 獨特하게 發展시키면서 生產해 왔기 때문에, 韓國本으로서의 槪念을 뚜렷하게 形成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外形的인 形態面에서 그 槪念 構成의 몇가지 特徵을 列擧하면,

1) 黃紙紅絲와 五針眼訂法[8]에 의한 裝訂法을 들 수 있다. 黃紙는 古書의 裝訂中 마지막으로 發展되어 現在 널리 普及되고 있는 線裝本의 表紙가 黃色으로 물들어져 있음을 말한다. 具體的으로는 黃色表紙에 蓮花 또는 唐草 格子 卍字 龍등의 各種 무늬[9]를 押捺하고 또한 蜂蜜을 먹여 腐蝕과 虫害를 防止하고 있는 바, 말하자면 古典的인 素朴한 美的 裝飾과 堅固性을 아울러 具備한 黃色書衣인 것이다. 紅絲는 책의 書腦部分을 꿰매는 끈이 紅色의 것임을 뜻하며, 五針眼訂法은 그 書腦部分에 반드시 구멍을 다섯개 뚫어 綴하는 裝訂法을 말하는 것이다. 그 中에서도 五針眼訂法이 例外없이 實施되고 있음이 韓國本으로서의 一大特徵인 것이다.

2) 形態의 크기가 一般的으로 長大한 것을 들 수 있다. 韓國의 古書는 한 字 한 字의 크기가 크고 늠름하여 版式이 匡大하고, 또 天地의 餘白을 餘裕있게 도련하여 그 크기가 縱長橫廣하기 때문에 中國과 日本의 古書에 比하면 자못 古典的인 威品을 지니고 있는 것이 또한 特異한 點이다.

3) 鑄字로 印出된 古書가 各種多樣함을 들 수 있다. 鑄字에 의한 印書가 진작 麗末에 비롯하였음은 傳存文獻의 記錄으로서 두루 알려지고 있거니와, 遺憾스럽게도 實物未傳으로 異見이 없지 않음에 이를 且置하고라도, 李氏朝鮮에 접어 들어서 부터는

張邦基. 墨莊漫錄, 卷4(筆記小說大觀 正編 所收)에는 「帖葉」이라고도 쓰여지고 있다.

5) 日本에서는 包背裝을 「つつみ表紙」「くるみ表紙」라고도 부르고 있다.

6) 日本에서는 「唐綴」 또는 「袋綴」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綴裝」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7) 裝訂을 우리나라에서는 從來 「裝釘」으로 使用하여 왔다. 「裝釘」은 釘書라는 用語가 있듯이, 近代의 洋裝本을 下綴할 때 金屬材料를 使用하여 製本하는 것을 뜻하므로 古書의 경우에는 別로 該當되지 않으며, 中國의 여러 書誌學關係文獻을 涉獵하여 보면 모두 「裝訂」의 用語를 使用하고 있다. 「訂」은 正字通에 의하면 「正定書籍 亦曰訂」이라 있듯이, 책을 바르게 定하는 것을 뜻하니 「裝訂」은 책의 여러 種類의 外形的인 形態中 어느 하나로 定하여 製册하는 것을 말한다. 또 우리나라에서 使用되고 있는 用語로서 「裝幀」이 있다. 「幀」은 集韻에 의하면 「張畵繪」라 있고, 正字通에 의하면 「絹畫在竹格也」라 있다. 即 兩者를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絹布등에 그린 그림을 붙이는 것을 뜻하니, 「裝幀」이라면 表紙에 美術的인 裝飾과 意匠을 加하여 製册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것 또한 古書에는 別로 該當되지 않는다.

8) 五針眼訂法은 五針孔의 訂線法을 말하며, 그 用語는 李文裿의 中國書籍裝訂之變遷 pp. 549~550에서 根據하였다. 中國은 大體로 四針眼訂法을 使用하고 있으며 書背가 寬大한 것에 있어서는 六針眼訂法 그리고 間或 八針眼訂法을 使用하고 있다. 日本은 大體로 中國式을 본땄으나, 우리나라만은 獨特하게 五針眼訂法을 使用하고 있다.

9) 우리나라에서는 책 뚜껑에 마름의 모양을 박아 내는 木版을 菱花版이라 하고, 그 마름의 무늬가 있는 종이를 菱花紙라 부르고 있다.

太宗朝의 癸未字 銅鑄의 初業에 잇달아 歷代의 王이 相繼發展시켜 왔기 때문에, 마침내 世界印刷文化史上 空前絕後의 獨創的인 偉業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그 結果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숱한 種類의 鑄字本이 生產되었다. 이것이 또한 韓國本의 概念을 構成하는 特徵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4) 册紙의 거의 大部分이 우리나라에서 生產된 固有의 楮紙를 使用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楮紙는 닥종이라고도 일컫는 것으로서, 그 質이 緻密하고 耐久性이 强하며 좀이 別로 먹지 않고 褪色하지 않는 點에서, 中國과 日本의 册紙에 比해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以上에서 東洋의 古書에 대한 傳統的인 概念을 살펴 보았고, 나아가서 韓國古書의 傳統的인 概念에 대하여도 中國 및 日本의 그것과 區別되는 特徵을 들어 說明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 傳統的인 古書의 概念을 좀 더 파고 들어 具體的으로 檢討해 보면, 過去와 같이 그렇게 單純치 않고 매우 複雜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더우기 古書를 整理하는 立場에서 볼 때 特히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圖書館界뿐만 아니라, 中國[10]과 日本[11]에 있어서도 新・古書를 分離하여 整理하는 圖書館에 있어서 한결같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들이며, 그 內容으로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 東洋의 傳統的인 固有의 學術과 思想을 다룬 옛책만을 古書라고 일컫는다면, 近世에 접어들어서부터 中國 韓國 日本에서 撰述 또는 譯編되어 刊行된 西學關係書는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의 問題가 提起된다. 具體的으로 例를 들어 보면, 李朝 後期에 싹트기 시작한 實學思想으로 말미암아 在來의 傳統的인 學問에 西歐思想을 기조로 한 實證的인 批判이 加해졌고, 한편으로는 西學이 政治 經濟 天文 曆數 醫學 宗教 歷史 地理 등의 各分野에 걸쳐 바로 導入되었다. 이 경우 前者는 在來의 學術과 思想을 土臺로한 實證的인 批判임에 이를 且置하고라도, 後者는 純粹한 西學 이를테면 李睟光의 「天主實義目錄」「歐羅巴國輿地圖」, 李瀷의 「天主實義跋文」「七克評」, 安鼎福의 「天學考」「西學問答」등이 邦人에 의하여 紹介되었고, 또한 西洋人의 撰述 이를테면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의 「天主實義」「交友論」「西國記法」「幾何原本」「同文算指」「測量法義」「萬國輿圖」「西字奇跡」「乾坤體義」「辯學遺牘」이라든가, 아담 샬(Jean Adam Shall von; 湯若望)의 「主制群徵」「渾天儀說」「古今交食考」등 많은 著作이 東洋에서 譯編으로 傳播되었던 것이니, 이것들이 바로 問題의 對象이 된다. 이들 諸書는 그것이 비록 西學이라고는 하지만, 撰述과 譯編이 過去에 이루어졌고 刊行된 곳이 바로 東洋이며, 또한 裝訂이 우리들의 特有한 東裝本에 屬하고 記錄의 手段인 文字가 主로 漢字로 되어 있는 點에서, 역시 古書로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東洋의 固有한 學術과 思想을 다룬 옛책만을 古書라고 일컫는 從來의 概念이 近世에 접어들어서부터는 絕對的인 것이 못되며, 어디까지나 傳統的인 思考方式에

10) 蔣元卿. 中國圖書分類之沿革. 臺灣, 中華書局, 民國 46 (1957) pp. 187~189.
11) 伊木武雄. 和漢目錄法の硏究(2), **圖書館雜誌**. 96號(昭和2年11月號) pp. 305~308.

의한 一般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둘째 : 옛 著者의 著述을 古書라고 일컬을 때, 그 基準을 어떻게 劃定할 것인가의 問題가 提起된다. 이에 대하여는 現在 아직까지도 그 限界가 애매한채 定論이 없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 古活字本의 硏究와 一部 圖書館에서 適用시키고 있는 古書區分의 基準을 參考하면, 大體로 大韓帝國末期, 嚴格히 말하자면 隆熙3年(1909)을 基準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12] 그러나 이것은 絶對的인 基準이 될 수 없으며, 그 限界를 劃然하게 긋는다는 것은 事實上 어려운 問題가 아닐 수 없다. 大韓帝國 以後의 사람이 著述한 것 中에도 그 內容上으로나 形態上으로나 典型的인 古書의 範疇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고, 特히 舊學에 造詣가 깊고 또 崇古의 傳統思想이 짙은 人士들은 最近까지도 漢字를 內容으로 하는 東裝本의 文集과 實記따위를 編刊하고 있는 것이다.

또 古書라면 著述된 即時로 刊行된 것보다는 經費關係로 훨씬 뒤에 後孫 門徒 또는 後學들에 의해 上梓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어서, 大韓帝國末期 以前 사람의 著述을 그 以後에 비로소 刊行한 것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大韓帝國末期以前에 刊行된 著述을 그 以後에 重刊하는 例도 許多하다. 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影印에 의한 重刊이 頻繁하며, 앞으로 더욱 活氣를 띠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大韓帝國末期 以後에 刊行되었다 할지라도 모두 實質的인 古書에 該當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大韓帝國末期 以前에 著述 또는 刊行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中에는 古書의 範疇에 들 수 없는 것이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그것은 基督教古文獻展示目錄[13]에 의해서도 넉넉히 立證된다. 여기에 수록된 1910年 以前 刊行의 文獻을 보면, 거의 大部分이 內容과 形態上으로 現代書의 性格을 띤 洋裝本들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大韓帝國末期를 基準으로 그 以前에 著述 또는 刊行된 것만을 古書라고 일컫는 것은 결국 一般論에 지나지 않으며, 具體的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問題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中國과 日本도 그러하며 特히 中國은 그 限界가 모호하여 더욱 어려운 立場에 處해 있다.

셋째 : 東洋의 傳統的인 옛 著者의 著述이라면, 으레 漢字로 쓰여진 古書를 聯想하게 되는데 그것이 果然 반드시 그러할까? 東洋의 古書의 大部分이 漢字로 쓰여진 것은 事實이며, 그것은 東洋學이 中國에서 漢字로 淵源되어 우리나라와 日本에 까지 至大한 影響을 끼친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古書의 全部가 漢字로 쓰여졌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訓民正音이 創製된 以後 숱한 책이 國譯되어 졌고, 또 純한글을 使用하여 혹은 宮內에서 혹은 民間에서 日記 또는 小說類를 著述해서 發行하였으며, 그 外에도 日本語를 비롯하여 蒙古語 滿洲語 및 其他東洋諸國의 文字로 縱書되어진 옛책도 적지 않다.

---

12)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編. 일사·가람文庫 古書著者目錄. 서울, 1966. 凡例 參照.
13)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 編. 基督教古文獻展示目錄. 서울, 1968.

漢字本에 있어서 또 問題가 提起되는 것은 現代 中國人에 의한 著述을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하는 點이다. 民國으로 접어 들어서부터는 純漢字로 新·舊學問에 관하여 著述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한 主로는 百話文體인 中國語로 新·舊學問에 관한 著述이 本格化되어 洋裝本으로 刊行되고 있는데, 이 경우 兩者의 글자 自體가 漢字라고 해서 이것을 다같이 古書로 處理하는 것도 웃음꺼리가 되거니와, 純漢字로 쓰여진 것만을 古書로 處理한다 하더라도 그 中에는 新學問에 관한 책도 包含되는 경우가 있게 되니 또한 不合理하다. 그 結果 純漢字로 舊學問에 관하여 著述한 것만을 골라 古書로 處理한다면, 同一한 書名 또는 主題의 책이 純漢字와 百話文體別로 兩分되어 利用者에게 不便을 주는 폐단을 招來케 한다.

이렇듯 漢字로 쓰여진 책을 一律的으로 古書라고 일컫는 槪念도 絶對的인 것이 못되며, 어디까지나 一般論에 지나지 않는다.

네째 : 古書라면 옛종이에 毛筆로 쓰거나 또는 옛 印刷手段으로 찍어서 典型的인 東裝으로 裝訂한 것을 으레 연상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果然 반드시 그러할까? 東洋의 典型的인 古書라면 東洋의 獨特한 紙質의 料紙에 毛筆 木版 古活字등으로 手書 또는 印刷하여, 卷子本 帖裝 또는 旋風葉 蝴蝶裝 包背裝 線裝 中 어느 하나의 裝訂으로 成册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從來의 思考方式이 반드시 그대로 適用될 수 없음은 勿論이다. 東洋 在來의 册紙가 洋紙로 바꾸어지고, 初期의 手寫 및 印刷의 方式이 油印 石印 新式活印 影印 甚至於는 마이크로 필름化등의 方式으로 代置되었으며, 또한 從來의 傳統的인 裝訂이 複製될 때마다 洋裝 또는 特殊한 資料의 形態로 改變되고 있다. 이와같이 古書의 外形的인 形態는 時代에 따라 改變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古典으로서의 內容的인 價値는 恒常一定不變한 것이다.

한편, 이와는 對照的으로 現代人의 著作中에는 그것이 古典이 아니면서도 著者의 趣味에 따라 東裝으로 製册한 것도 없지 않으니, 裝訂에 의하여 新·古書를 가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要컨대, 오늘날에 있어서 實質的인 古書는 裝訂의 外形的인 形態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록되어진 內容의 性格에 의해서 가름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위의 諸問題를 考慮한 立場에서 實質的인 古書의 槪念과 그 範圍를 살펴보면, 傳統的인 從來의 槪念과 範圍를 좀 더 넓혀서 우리나라는 大韓帝國末期(1909)以前, 中國은 淸末(1911)以前, 日本은 明治以前(1867)[14] 또는 圖書館에 따라서는 明治末期(1911)以前에 漢字를 비롯한 한글 日本語 蒙古語 滿洲語 및 其他文字로 東洋 在來의 傳統的인 方式에 의해 縱으로 手書 또는 印刷하여 典型的인 東裝으로 裝訂한 古典[15]은 勿論이요, 그 以後에 著述되어 刊行된 것과 再刊 또는 影印複製된 것 中에서도 內容이 古典의 範疇에 屬하는 것은 裝訂에 拘碍됨이 없이 모두 古書의 對象으로

14)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編. 前揭書, 凡例.
15) 古典이 아닌 東裝本은 勿論 除外된다.

삼아야 한다고 主張하고 싶다. 그 까닭은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實質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古書가 되며, 圖書館에 있어서 利用者 爲主로 古書를 組織할 때 바로 그 對象이 되기 때문이다.[16]

第二節 從來의 古書整理에 대한 檢討

우리나라의 歷史가 있는 各種 圖書館은 所藏量에 多寡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거의 古書를 保存하고 있다. 그러나 그 中에는 整理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圖書館이 아직도 있으며, 整理를 하고 있는 圖書館이라 할지라도 臨時的인 略式體制가 아니면 대체로 在來의 整理方法을 그대로 踏襲하고 있다고 概評할 수 있다.

그 在來의 整理方法으로서는 裝訂別에 의한 整理法, 漢字를 基準으로 한 整理法, 또는 이에 時代區分이 加味된 折衷式 整理法의 三種을 들 수 있으며, 그 어느 것이나 東洋資料를 新・古書로 나누어 別個의 體制로 組織하고 있다. 이들 整理法에 대하여 하나 하나 分析的으로 檢討하고 批評을 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Ⅰ. 裝訂別에 의한 整理法

이것은 外形的인 形態가 東裝本으로 되어 있는 것만을 古書로 規定하고, 이를 新書에서 分離시켜 別途의 分類와 目錄體系로 整理하는 方法이다. 이 整理法은 圖書館의 藏書의 性格과 機能에 따라 두가지 面에서 評價할 수 있다.

첫째 : 裝訂別에 의한 整理法은 過去 東洋學이 盛行되었던 때에 普及되었던 代表的인 方法이었으며, 그 當時에는 이미 古書의 傳統的인 概念에서도 言及한 바와같이, 古典이라면 으레 典型的인 東裝本만을 生産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古書를 對象으로 하는 整理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整理法은 過去에 生産되었던 東洋學資料만을 간직하고 있는 이른바 保存爲主의 機能을 지니고 있는 文庫와 圖書館,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澗松文庫[17] 一山文庫[18] 陶山書院文庫 玉山書院文庫 屛山書院文庫[19] 藏書閣 또는 奎章閣[20]등과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대로 適用될 수 있는 方法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은 그 所藏本이 過去에 蒐集된 古典으로 限定되고 現代의 資料가 別로 追加되어 있지 않으며 또 利用爲主라기 보다는 保存이 主目的이므로, 分類에 있어서도 簡便한 四部法을 適用시키고 目錄도 規則에 의거하되 略式法을 擇하는 것이 整理業務의 簡素化를 위하여서는 오히려 妥當한 方法이라 볼 수 있다.

둘째 : 利用爲主의 圖書館 이를테면 大學圖書館 公共圖書館등에 있어서 이 整理法

16) 拙藁.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 諸問題. 서울, 延世大學校大學院, 1962. pp. 2~6.
17) 韓國民族美術硏究所 編. 澗松文庫漢籍目錄. 서울, 1967.
18) 國會圖書館司書局 編. 一山文庫漢籍目錄. 서울, 1968. 現在는 國立中央圖書館으로 藏書가 移管되어 漢醫書를 除外한 略式藏書目錄이 마련되어 있다.
19) 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9.
20)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編.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서울, 東亞文化硏究所, 1966.

은 여러모로 批判의 對象이 되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古書라면 典型的인 東裝本은 그 數가 限定되어 漸次로 稀罕해지고 오히려 그 影印 또는 活印複製에 의한 洋裝本의 普及이 活氣를 띠고 있다. 더우기 앞으로 그 數가 나날이 增加될 것임을 豫想할 때, 이 整理法은 同一書를 古書와 新書로 分離시키는 結果를 招來케 할 뿐이므로 利用者爲主의 現代圖書館에 있어서는 탐탁치 않은 整理方法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分類와 目錄體系가 相異하여 同一書를 全혀 聯關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利用者로서는 同一書의 索出을 위하여 二重的으로 手苦하지 않으면 아니된다.[21] 그 例로서 一然 撰의 「三國遺事」를 들어 보자. 正德本과 그 影印本 및 光文會本은 線裝이니 古書로 規定되므로, 이를테면 分類에 있어서는 그 作業이 簡便한 四部法의 史部 野乘類에, 目錄作成에 있어서는 書名인 「三國遺事」를 基本記入으로 하여 分轄된 古書目錄에 編成하고, 한편 朝鮮史學會刊本 三中堂刊本 및 그 飜譯書는 洋裝이니 新書로 規定되므로, 이를테면 分類에 있어서는 KDC 의 911,003 三國時代史에, 目錄作成에 있어서는 著者 「一然」을 基本記入으로 하여 古書를 除外한 東書目錄에 編成한다면 利用者 立場에서는 어떠한 不便이 있을 것인가? 同一書이면서도 裝訂의 差異로 分類와 基本記入이 二元化되어 各各 別個의 目錄으로 編成되었기 때문에, 利用者가 그 책을 모두 利用할 必要가 있을 경우 二重的으로 檢索하여야 하니 그만큼 時間이 浪費되고 또한 不便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利用者는 「三國遺事」라면 그 裝訂에 關係없이 다같이 分類記號와 基本記入의 形式이 同一하고, 目錄組織에 있어서는 勿論이요, 可能하다면 書架上에 있어서까지도 한곳에서 迅速簡便하게 檢索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願하고 있는 것이다. 利用者 爲主의 現代圖書館이라면, 이와같은 整理方法을 資料組織의 基本原則으로 삼아야 하는 데도 不拘하고, 裝訂別로 新·舊書를 나누어 後者만을 傳統的인 方法으로 整理하려는 것은 결국 整理者가 自己業務의 簡便性만을 爲主로 하려는 바, 말하자면 主客이 顚倒된 整理라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外에도 現代人의 著作中에는, 古典이 아니면서도 著者의 趣味에 따라 東裝本으로 製冊한 것이 있는데, 이 경우 裝訂別에 의한 整理法을 따르자면 不得已 이를 古書로 看做하고 處理하여야 하니, 이 點에 있어서도 또한 矛盾이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要컨대, 이 整理方法은 保存爲主의 文庫와 圖書館에 限하여 適合하며, 利用者爲主의 現代圖書館에 있어서는 不合理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萬一 이러한 整理方法이 利用爲主의 現代圖書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古書를 對象으로한 整理라기 보다는, 차라리 特殊裝訂을 對象으로한 整理라고 일컫는 것이 適合할 것이다.

Ⅱ. 漢字를 基準으로한 整理法

이것은 內容文字를 基準삼아 漢字로 쓰여진 이른바 漢籍만을 古書로 規定하고, 이를 新書에서 分離시켜 別途의 分類와 目錄體系로 整理하는 方法이다. 東洋의 學術과 思想은 漢學이 主軸이며, 그것이 漢字를 媒介로 綿綿히 繼承發展되면서 東洋三國에서

21) 拙藁. 古書의 裝訂·漢字別 整理에 對한 硏究. **國會圖書館報**. 第2卷 第11號 (1965) p. 15.

찬란하게 꽃 피었던 것이니, 古書라면 으례 漢字로 쓰여진 책을 聯想하는 것이 當然한 常識이다. 그러나 嚴格히 따져 본다면 이것도 그렇게 簡單히 處理할 問題가 결코 아니며, 그 基準에 대하여는 마땅히 再檢討가 加해져야 된다.

첫째 : 漢字로 쓰여진 책만을 古書로 規定하고 整理한다면, 한글 日本語 蒙古語 滿洲語 및 其他 東洋諸國의 文字로 본시 縱書되어진 古典들은 不得已 古書의 範疇에서 除外되어야 하니, 그 基準 設定이 매우 不合理함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見解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글을 諺文이라 하여 賤視했던 말하자면 慕華와 事大主義에 짓게 물들었던 李氏朝鮮에 있어서는 可能할런지 모르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原則的으로 成立될 수 없는 基準임을 指摘해 둔다.[22)]

둘째 : 現代 中國人은 主로 白話文體인 中國語로 新·舊學問에 관하여 著述하고 있지만, 한편 漢文體로서도 著述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이것을 果然 어떻게 整理할 것인가가 또한 問題이다. 이 경우 漢字를 基準으로한 整理法에 의하면, 純漢字로 쓰여진 著述은 그것이 舊學問이든 新學問이든 間에 全部 古書로 看做하고 整理하여야 하는 矛盾性이 있게 되고, 또 白話文體인 中國語로 쓰여진 著述도 그 文字가 漢字라고 해서 古書로 處理한다면 큰 웃음꺼리가 되고 말 것이다.

要컨대, 漢字로 쓰여진 책만을 古書로 規定하고 整理하는 경우는 特히 現代 中國人의 著述에 대한 處理가 困難하니, 역시 不合理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셋째 : 漢字를 基準으로한 整理法에 있어서는 書架上에 東裝本과 洋裝本이 混架되어 그 管理가 複雜하다. 勿論 東裝本을 册匣이나 「바인더」등을 利用하여 洋裝本과 같이 세워 配架한다면 別로 問題가 없지만, 費用이 많이 들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東裝本을 눕혀 놓고 洋裝本을 세워 놓는다든가 兩者를 다같이 請求記號順으로 눕혀 놓는다면 그 利用과 貸出業務가 또한 困難하기 짝이 없다.[23)]

넷째 : 分類와 目錄體系가 一般圖書와는 全혀 달라서 不得已 別途의 古書分轄目錄을 組織하여야 하기 때문에, 同一主題에 대하여 現代人이 漢字以外의 言語와 文字로 쓴 飜譯書 註釋書 硏究書 論文 등과 全혀 關聯을 맺을 수 없다. 例컨대 漢字로 쓰여진 「詩經」과 한글 日本語등으로 飜譯 解說 또는 硏究되어진 「詩經」은 目錄組織에 있어서는 勿論 書架上에 있어서도 全혀 聯關을 맺을 수 없으니, 그 主題에 관하여 圖書館이 所藏하고 있는 것을 全部 보고자 願하는 利用者에게는 不便하기 짝이 없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時間을 浪費케 한다.[24)]

大抵 整理의 原則이란, 分類에 있어서는 圖書內容의 文字와 言語에 拘碍됨이 없이 同一한 主題의 것을 한곳에 集中시켜 주고 關聯된 것을 接近된 位置에 오도록 하며,[25)] 目錄에 있어서도 標目選定과 形式의 一貫性을 期하여 궁극적으로는 聯關된 資料를 한

22) 上揭書, p. 16.
23) 拙稿. 古書의 分類問題(下). **도협월보**, Vol. 2. No. 4 (1961) pp. 22~24.
24) 拙稿.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 諸問題. 서울, 1962. p. 6.
25) Margaret Mann.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2nd ed. Chicago, 1943. pp. 32~33.

곳에 集中[26)]시켜 줌으로써, 利用者가 보고자하는 資料를 가장 迅速 正確하게 檢索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漢字를 基準으로한 이 整理法도 利用者에게는 바람직한 整理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Ⅲ. 折衷式 整理法

이 整理法은 裝訂別 整理法을 爲主로 하여 東裝本이면 우선 古書의 對象으로 삼고 洋裝本에 있어서는 內容이 漢字로 쓰여진 것만을 古書의 對象으로 삼되, 그것도 一定한 時代區分을 適用시켜 그 以前의 것은 古書, 그 以後의 것은 新書로 認定하고 各各 別途의 分類와 目錄體系로 整理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裝訂 漢字 및 時代區分의 三者를 折衷한 것으로서 實質的인 古書의 整理라는 點에서 위의 Ⅰ과 Ⅱ를 補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이 方法 역시 다음과 같은 諸問題가 批判의 對象이 되고 있다.

첫째 : 裝訂別 整理法이 爲主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現代人의 著作으로서 古典이 아니면서도 著者의 趣味에 따라 東裝本으로 製冊된 것이 不得已 古書로 整理되는 不合理性이 있다.

둘째 : 洋裝本中 漢字로 쓰여진 책만을 골라 古書의 對象으로 삼고 別途의 分類와 目錄體系로 整理한다면, 위의 漢字를 基準으로한 整理法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東裝本을 冊匣이나 「바인더」에 끼워 같이 세워 配架하지 않는 限, 書架上의 管理가 複雜하고 그 利用이 不便하다.

셋째 : 漢字로 쓰여진 洋裝本에 時代區分을 適用시켜 劃定된 時代區分 以前의 것은 古書, 그 以後의 것은 新書로 看做하고 整理하는 경우, 역시 그 時代區分의 劃定이 困難하다. 그것은 現代人의 著述中에도 漢文으로 쓰여진 洋裝本이 있으며, 特히 中國에서 많이 볼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中國人이 漢文으로 쓴 洋裝本中에는 新·舊學問에 관한 것이 들어 있어 더욱 複雜하다.

出版年代를 基準으로 하는 경우도 또한 그 區分의 劃定이 困難하다. 設定된 時代區分 以前의 著述을 그 以後에 비로소 刊行하는 경우가 있음은 勿論이요, 또한 設定된 時代區分 以前에 刊行된 것을 그 以後에 洋裝本으로 再刊한 것도 매우 많기 때문에 出版年代를 基準으로 하는 경우 그 處理가 困難하다. 따라서 設使 一定한 時代區分이 設定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그때 그때의 人爲的인 便法을 쓸 수 밖에 없는 바, 整理者의 主觀에 따라 無秩序한 狀態를 惹起시킬 憂慮가 多分히 內包되고 있으니, 역시 탐탁치 않은 方法이라 指摘할 수 있다.

以上에서 從來의 古書整理에 대하여 檢討해 본 結果, 그中 裝訂別 整理法이 過去에 生産되었던 東洋學資料만의 保存을 爲主로 하는 文庫와 圖書館에만 適用될뿐, 利用爲主의 現代圖書館에 있어서는 모두 不合理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 主된 原因

26) Margaret M. Herdman. Classification; An introductory manual. 2nd ed. Chicago, 1947. p.3.

은 古書와 新書를 굳이 나누어 別個의 分類와 目錄體系로 組織하려는데서 일어나는 矛盾과 不合理性 때문이다. 따라서 이 矛盾과 不合理性을 解決하려면 古書와 新書를 다같이 單一 分類와 目錄의 體系로 整理하고 다만 配架에 있어서 東裝本의 조처만을 適切히 강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렇게 한다면 古典에 대한 現代人의 註釋書와 批評書라든가 그에 관한 硏究書등이 目錄上으로는 물론, 配架方法의 如何에 따라서는 書架上에 있어서까지도 原典과 함께 集中될 수 있으니, 利用者에게는 藏書의 檢索이 더욱 便利하게 될 것이다.

第三節 古書整理의 當面問題

위에서 古書의 裝訂別에 의한 整理法, 漢字를 基準으로한 整理法 및 折衷式 整理法을 檢討하여 보았거니와, 그 結果 提起되는 古書整理의 當面問題로서는 두가지 點을 생각할 수 있다. 그 中 하나는 保存을 爲主로 하는 文庫와 圖書館 또는 東洋學의 專門圖書館에 있어서의 整理方法이요, 다른 하나는 利用을 爲主로 하는 現代圖書館에 있어서의 整理方法이다.

I. 保存爲主 또는 東洋學專門圖書館의 古書整理問題

主로 過去에 生產된 古書만을 保存하고 있는 個人 또는 團體의 文庫와 東洋學의 專門圖書館에 있어서는,

1) 所藏本이 이미 지난 날에 蒐集된 典型的인 東裝의 古典으로 限定되어 있고,

2) 新刊書가 그다지 所藏되어 있지 않으며,

3) 文庫와 圖書館의 主된 機能이 利用爲主라기 보다는 過去에 生產되었던 文化遺產의 保存에 있거나, 또는

4) 極히 限定된 東洋學專攻者에게 資料를 提供하는 程度로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高度의 知識과 技術을 必要로 하는 現代의 整理法에 지나치게 구애될 必要가 없다고 본다.

그 整理方法으로서는,

1) 古書와 新書를 單一分類와 目錄法으로 處理하여야 한다는 制限이 必要없기 때문에,

2) 分類는 곧 理解할 수 있고 손쉽게 處理할 수 있는 四部分類法 또는 그 改修分類法을 適用시키고,

3) 目錄도 規則에 의하되 簡略式으로 作成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目錄作成에 있어서 最低限으로 要求되는 事項은

4) 著者를 올바르게 찾아서 記入하고,

5) 刊行年과 版種을 올바르게 考證해서 記載하여야 하는 點이다.

古書目錄의 作成에 있어서 特히 重要한 것은 刊行年을 올바르게 推定하여 記載하는 데 있다. 그것은 古書는 初刊 以後 無數히 重刊 또는 覆刻되어 여러 版種이 傳來되고

있으나, 그中 初刊 또는 그에 가까운 古刊本이 善本이 되며 原典으로 引用될 때는 그 善本을 利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뿐더러, 文化遺產으로서의 價値를 評價함에 있어서도 그 刊行年이 核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히 古書는 初刊 以後 無數히 重刊 또는 覆刻되면서도 初刊年만을 轉載할 뿐 그 重刊 또는 覆刻年을 적지 않는 경우가 許多한데, 이 때 그 刊行年의 推定에 있어서 重要한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版種이기 때문에 또한 이를 올바르게 鑑定해서 記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乙酉字版의 刊本인 경우 刊行年의 表示가 책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版種을 鑑識한 結果 刊行年이 바로 世祖成宗年間임을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다. 圖書館의 古書目錄에서 흔히 發見되는 事實이지만, 그 책이 實際 刊行된 해를 推定해서 記載하지 않고, 그 책의 刊記 또는 序·跋文등에서 初刊年 혹은 前版의 刊行年을 그대로 적는 例가 허다하다. 이것은 版種의 鑑定能力이 不足한데서 起因된 過誤이다. 古書目錄을 作成하는 사람은 이 刊行年과 版種 表示에 特히 注意해 주기 바란다.

Ⅱ. 利用爲主의 現代圖書館의 古書整理問題

大學圖書館 公共圖書館과 같은 利用爲主의 現代圖書館에 있어서 古書의 整理는, 위에서 말한 保存 또는 東洋學 爲主의 圖書館의 경우와는 달리, 그 方法을 全的으로 一新하여야할 것이다. 現代圖書館은 모든 圖書館資料를 評價 蒐集 整理 保存하고 各階各層의 利用者가 自己의 趣味와 硏究分野에 따라 보고자하는 資料를 언제라도 손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運用하고 奉仕함을 窮極의 目標로 삼고 있기 때문에, 東洋資料에 있어서도 新刊書뿐만 아니라 實質的인 古書까지를 널리 蒐集 整理하고 그 利用에 이바지 하여야 하는 것이다. 特히 最近에 이르러서는 韓國學 및 東洋學의 硏究熱이 國內外에서 高潮됨에 따라 古書의 價値性을 더욱 重要視하게 되었다. 그 結果 古書의 蒐集이 자못 活氣를 띠어 典型的인 東裝의 原本은 거의 씨가 말라들 程度로 稀罕해지고, 따라서 古書의 影印과 活印複刊 그리고 外國에서는 마이크로 필름化로 需要를 充當하는 方面으로 번져가고 있다. 同時에 國內外의 各種 硏究助成費로 古典의 飜譯 註解 및 硏究事業이 盛況을 이루고 있으며, 이 事業은 앞으로 새로운 古典의 발굴 및 그 複刊의 促進과 더불어 더욱 刮目할 만한 發展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의 整理法도 典型的인 東裝의 古書나 洋裝의 複製本이나 또는 現代語에 의한 飜譯書 註解書 硏究書 및 論文이나, 다시 말하여 資料의 形態, 內容의 言語와 文字 그리고 資料의 時代的인 區分에 關係없이 同一한 主題 關聯된 資料라면, 新·舊書를 莫論하고 目錄編成에 있어서는 勿論, 될 수 있다면 書架上에 있어서까지도 이를 한 곳에 集中시키는 것을 原則으로 하여, 利用者로 하여금 손쉽게 찾아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方向으로 改善되어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利用爲主로 運用하는 現代圖書館에 있어서의 古書整理는 從來와 같이 東洋資料를 古書와 新書로 나누어 裝訂別 漢字別 또는 그 折衷式 方法中 어느 하나에 의해서 二元的으로 組織할 것이 아니라,

1) 分類에 있어서는 新·古書用 單一分類法을 適用시켜 分類目錄의 編成에 있어서는 勿論, 될 수 있는 限 書架上의 配架에 있어서까지도 同一한 主題 關聯된 主題의 資料가 한곳에 集中되도록 함을 原則으로 삼고,

2) 古書를 많이 所藏하고 있는 圖書館으로서 東裝本과 洋裝本의 混架가 經濟的인 事情으로 어렵거나, 또는 그와 같은 配架를 願치 않을 경우는, 東裝本을 特殊裝訂으로 取扱하여 請求記號위에 「동」(D) 또는 권(K) 첩(C)[27]등을 表示해서 洋裝本으로부터 分離配架하며,

3) 豫算의 뒷받침이 許諾되거나 古書의 所藏이 比較的 적은 圖書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册匣이나 「바인더」등을 利用하여 主題에 따라 洋裝本과 함께 單一配架해서 利用과 貸出業務에 便利토록 한다.

4) 東洋에서 主用하고 있는 分類目錄의 編成에 있어서는, 從來 소홀히 하였던 連鎖索引(chain index) 同義語索引등의 主題索引을 作成하여 單一排列해줌으로써, 그 利用의 便利를 最大限으로 圖謀한다.[28]

5) 目錄作成에 있어서는, 從來와 같이 古書만을 一律的으로 書名基本記入한다든가 또는 目錄者의 自由裁量에 따라 區區하게 만든다든가 할 것이 아니라, 東書用 單一目錄規則에 따라 新·古書의 基本記入選定과 그 形式 및 記述을 統一하고,

6) 目錄의 編成에 있어서도 新·古書 全般에 걸쳐 關聯된 資料가 한곳에 集中되도록 單一排列하여 藏書索引[29]으로서의 구실을 圖謀해 주며, 나아가서

7) 그 目錄 自體는 未來에 걸쳐서도 普遍妥當性과 發展性이 있도록 計劃되고 維持되어야 한다.[30]

8) 한편, 單位카아드制(unit card system)를 採擇하고 있는 圖書館으로서 古書의 所藏量이 많은 경우는, 新·古書目錄의 單一組織 以外로 必要한 枚數를 더 準備하여 最少規模의 實質的인 古書目錄을 別途로 編成할 수도 있다. 그러나 古書의 所藏量이 적은 圖書館으로서는 굳이 그렇게 할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다.

利用爲主의 現代圖書館에 있어서 이와같은 整理方法은 新·古書의 二元的인 整理方法보다도 確實히 利用者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圖書의 管理 및 貸出業務가 容易하며, 整理業務에 있어서도 新·古書가 같은 性格의 作業이 되므로 時間的 및 經濟的으로 훨신 能率的인 것이 된다.[31] 그러나 이에 반드시 隨伴되어야 할 問題는, 韓國十進分類法과 韓國目錄規則이 古書를 넉넉히 다룰 수 있도록 內容이 깁고 보태져서 有用한 整理用 道具로서의 條件을 具備하고 있어야 한다.

---

27) 裝訂의 形態가 달라 함께 配架하기 어려운 卷子本은「권(K)」, 帖裝 또는 旋風葉은「첩(C)」또는「선(S)」, 그 外의 線裝 包背裝 蝴蝶裝은 그 裝訂의 總稱인 東裝의 첫字「동(D)」을 表示한다.

28) 拙藁. 古書의 分類問題(下), **도협월보**. Vol. 2 No. 4 (1961) p. 27.

29) Thelma Eato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An introductory manual. Champaign, 1957. Chapter one.

30) 小野則秋. 目錄の作り方. 京都, 蘭書房, 1952. p. 3.

31) 拙藁. 古書의分類問題(下), **도협월보**. Vol. 2 No. 4 (1961) p. 25~27.

第二章 分 類 篇

第一節 古書分類法의 概觀

東洋에 있어서 古書 또는 書目 整理에 利用되어 온 分類法은 참으로 各種多樣하다. 그러나 그것을 간추려 보면 七分法, 四分法, 四分改修法, 獨自的 展開法, 十進法 등으로 大別할 수 있다.

七分法은 일찌기 漢代에서 官藏目錄을 編纂하기 위해 비롯하였으나, 그 뒤 四分法이 官藏目錄의 편찬에 主用된 때부터는, 主로 民間의 一部에 의해서 採用되어 發展하면서 隋代까지 繼續되었다.

四分法은, 現在 確認할 수 있는 限에 있어서는, 晋初에서 비롯하여 隋代에 이르러 그 土台가 確立되었고, 以後 各史藝文志 官藏 또는 官修目錄 私家藏書目錄에서 主用되어 왔다. 그 結果, 清代의 四庫全書總目의 四部分類法에 이르러서는 그 分類法이 자못 發展되었고, 또한 우리나라와 日本에 까지도 普及되어 主用하기에 이르렀던 바, 말하자면 東洋 前代의 王中王格인 分類法이었다.

四分改修法은 學術의 發展과 古書의 出版量 增大에 適應하기 위하여, 四分法인 四部分類法을 土台로 그 全體 또는 一部를 改修한 分類法이며, 明代에서 비롯하여 清代를 거쳐 主로 民國 以後에 盛行되었다.

獨自的 展開法은, 四分法의 테두리를 完全히 벗어나서, 獨自的인 見地에서 必要한 部門을 設定하고 展開시킨 分類法이다. 일찌기 南宋 때 鄭樵의 十二分法에서 비롯하였지만, 明清代를 거쳐 民國初까지 盛行되었다.

十進法은 西學이 輸入된 以後, 듀이十進分類法의 影響을 받고 만든 各種의 十進式 分類法이며, 現在 中國에서 新·舊書를 混合 分類하는데 利用되고 있다. 더우기 오늘날에 있어서는 中外圖書의 統合分類用 十進法까지 考案하여 利用하고 있는 圖書館이 적지 않은 바, 特히 注目을 끌게 하는 分類法이 아닐 수 없다.[1)]

우리나라에 있어서 古書(冊板) 또는 書目整理에 利用되어 온 分類法은, 四分法이 아니면 獨自的인 展開法이었고, 現代에 있어서는 十進法을 採用하는 圖書館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現在 確認할 수 있는 限에 있어서 四分法인 四部分類法을 처음으로 適用시킨 것은, 正祖 5年(1781)에 閣臣 徐浩修가 閱古觀 또는 皆有窩와 西庫에 收藏된

1) 王省吾. 圖書分類法導論.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社, 民國53(1964) pp. 92~105.

古書를 整理한 「奎章總目」 4卷 3冊이다.[2] 이것은 中國의 四庫全書總目보다도 한 해 앞인 1781年에 편찬되었다. 그 後에 四分法이 適用된 것으로서는 正祖 20年(1796)丙辰에 徐有榘가 京外의 册板을 整理한 「鏤板考」[3]를 비롯하여, 韓致奫(1765∼1814)撰의 「海東繹史藝文志」[4], 隆熙 3年(1909)에 奎章閣 春坊 集玉齋 北漢山行宮 등에 所藏된 古書를 整理한 「帝室圖書目錄」[5], 1919年에 奎章閣所藏의 韓國本을 整理한 「朝鮮圖書解題」[6], 1934年에 편찬된 「古圖書目錄補遺」[7]와 1962年 白麟氏가 油印한 「朝鮮圖書解題未收書目」[8], 1965年에 편찬된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9], 1967年에 편찬된 「澗松文庫漢籍目錄」[10]등을 들 수 있다.

獨自的인 展開法을 適用시킨 것으로서는, 仁祖 5年(1627) 司馬에 合格된 바 있는 金烋가 新羅 때로부터 李朝中葉까지 사이의 文獻을 整理한 「海東文獻總錄」[11]을 비롯하여, 李肯翊(1736∼1806)撰의 「燃藜室記述別集 文藝典故」[12], 1894∼1901年 刊인 모리스 쿠랑의 「朝鮮書誌」[13], 前間恭作 手稿本인 「鮮册名題」[14], 光武 7年(1903) 刊의 「增補文獻備考 藝文考」, 1908年 刊인 「韓籍目錄稿本」[15], 1911年 刊인 「朝鮮書籍目錄」[16], 1927年刊인 李定求 編의 「四千年文獻通考 藝文考」등을 들 수 있다.

그 外에는, 地域別 또는 字順으로 整理된 册板 또는 古書目錄이며, 分類法을 適用시킨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論外로 한다.

듀이十進分類法이 導入된 以後에 있어서는, 古書保存爲主의 文庫 또는 東洋學專門圖書館을 除外한 圖書館에 있어서, 十進法을 採用하고 있다. 그 最初의 것으로서는 1945年 刊인 國立圖書館의 「古書部分類目錄」을 들 수 있으며, 그 뒤에 나온 것 中 主要한 것으로서는 成均館大學校圖書館의 「漢籍分類目錄」을 들 수 있다. 最近에 있어서는 新·古書를 統合하여 十進法으로 分類하는 圖書館도 생기게 되었다.

---

2) 그 後 高宗때 편찬된 것으로 推定되는 「奎章閣書目」 3冊(寫本)도 傳存되고 있으며, 그 內容은 第1冊이 摛文院書目, 第2冊이 西序書目, 第3冊이 閱古觀書目으로 되어 있다.

3) 徐有榘. 鏤板考. 서울, 寶蓮閣, 1968.

4) 1911年 古書刊行會 刊 朝鮮群書大系本 및 1912年 光文會 刊 朝鮮叢書本.

5) 宮內府奎章閣圖書課 編. 帝室圖書目錄. 京城, 隆熙3(1909)

6)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 編. 朝鮮圖書解題. 京城, 朝鮮通信社, 昭和7(1932)

7) 朝鮮總督府學務課分室 編. 古圖書目錄補遺. 京城, 昭和9(1934)

8) 白麟. 奎章閣藏書에 對한 研究. 附錄. 서울, 延世大學校大學院, 1962.

9)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編.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서울, 東亞文化研究所, 1967.

10) 韓國民族美術研究所 編. 澗松文庫漢籍目錄. 서울, 1967.

11) 金烋. 海東文獻總錄. 서울, 學文閣, 1969.

12) 1911年 古書刊行會 刊. 朝鮮群書大系本.

13)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tome 1—3. Paris, Ernest Leroux, 1894∼96. Supplément tome 1. Paris, 1901.

14) 手稿本 1部가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에 所藏되어 있음.

15) 東京外國語學校韓國校友會 編. 韓籍目錄稿本. 京城, 1908.

16) 金澤庄三郎. 朝鮮書籍目錄. 1911.

第二節 七 分 法

I. 七 略

오늘날 알려지고 있는 東洋 最古의 分類法은 前漢末 劉歆이 만든 「七略」에서 비롯한다. 前漢末 때 成帝가 秦始皇의 坑儒焚書로 古典의 씨가 말라 들어 가는 것을 慨嘆하고 天下에서 遺書를 求하여 宮廷文庫인 秘府에 所藏케 한 다음, 그 校訂을 光祿大夫 劉向으로 하여금 主裁케 하였고, 分掌으로서는 向이 經傳 諸子 詩賦, 步兵校尉인 任宏이 兵書, 太史令인 尹咸이 數術, 侍醫인 李柱國이 方技를 各各 擔當한 바 있었는데, 이때 向은 每册마다 校訂이 끝나면 그 篇目을 적고 旨意를 撮錄하여 上奏하였다.[17] 이것이 바로 各書의 敍錄이며, 이것을 土台로 다시 一書를 편집한 것이 世上에 알려지고 있는 「別錄」20卷이었다.[18]

向이 죽은 뒤 그의 아들 歆이 父業을 이어 「七略」7卷을 편집하였다. 이 七略은 劉歆傳에,

「復領五經 卒父前業 乃集六藝群書 種別爲七略」[19]

이라 있듯이, 아버지가 겨우 만들어 놓은 各書의 敍錄을 典籍의 種類에 따라 類輯한 것으로서, 現在까지 알려진 東洋最古의 類別目錄이 되며, 分類法의 創始가 되는 것이다.

그 分類內容에 대하여는 原本이 그 뒤 湮沒되어 仔細히 밝힐 수 없으나, 現傳 最古의 漢書藝文志 總敍에 의하면,

---

17) 班固. 漢書藝文志. 香港, 太平書局, 1963. p. 2.

18) 別錄은 진작 未傳되어 그 內容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梁代의 阮孝緖 撰인 七錄序에 의하면,

「昔劉向校書 輒爲一錄 論其指歸 辨其訛謬 隨竟奏上 皆載在本書 時又別集衆錄 謂之別錄 即今之別錄是也 子歆撮其旨要 著爲七略」

이라 있다. 여기서 말하는 「時又別集衆錄」으로 미루어 보면, 그 때 또 各書의 叙錄을 別途로 總集한 것이 바로 이 別錄임을 알 수 있는 바, 東洋 最古의 解題書目에 該當되는 것이다. 한편 淸의 姚振宗 編인 七略別錄에 의하면,

「劉向典校 旣未及竣事 則別錄亦無由成書 相傳二十卷 殆子駿奏七略之時勒成之 其曰七略別錄者 謂七略之外 別有此一錄也」

라 있듯이, 別錄이 그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뒤 劉歆이 成書시킨 것이라고 엇갈린 主張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許世瑛은 中國目錄學史에서 上揭한 七錄序의 「時又別集衆錄」을 근거하여,

「同時又別寫一份 集爲一書 隨時增益 即隨時皆可謂爲已經成書 非必俟劉歆奏進七略之時 始於七略之外 別著此書也」

云云하였듯이, 劉向이 各書의 敍錄을 마련하였던 그 當時 同時에 別寫하여 總集한 것이지, 劉歆이 七略을 奏進하였을 때 別途로 이 別錄를 편찬한 것이 아니라고 反駁하고 있다. 어쨌든 別錄은 敍錄을 土台로 成書한 解題書目인 것만은 틀림 없다.

19) 班固. 漢書 卷36, 劉歆傳.

「會向卒 哀帝復使向子侍中奉車都尉歆卒父業 歆於是總羣書 而奏其七略 故有輯略 有六藝略 有諸子略 有詩賦略 有兵書略 有數術略 有方技略 今刪其要 以備篇籍」[20] 이라 있듯이, 輯略 六藝略 諸子略 詩賦略 兵書略 數術略 方技略의 七分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整理된 目錄의 內容을 보면 六略뿐이며 輯略이 없다. 輯略에 대하여는 七錄序을 보면,

「子歆撮其指要 著爲七略 其一篇即六篇之總最 故以輯略爲名」[21]

이라 있듯이, 六略 全般에 걸친 學術의 源流와 文句를 說明한 總序에 該當되며, 圖書를 分類한 類門이 아닌 것만은 틀림 없는 것 같다. 따라서 七略은 實際는 六分法이 되는 셈이며, 그 分類法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六藝略

易 書 詩 禮 樂 春秋 論語 孝經 小學 (9種)

諸子略

儒家 道家 陰陽家 法家 名家 墨家 從(縱)橫家 雜家 農家 小說家 (10種)

詩賦略

屈賦 陸賦 孫賦 雜賦 歌詩 (5種)

兵書略

兵權謀 兵形勢 兵陰陽 兵技巧 (4種)

數術略

天文 歷譜 五行 蓍龜 雜占 形法 (6種)

方技略

醫經 經方 房中 神僊 (4種)

이 分類法에 있어서 特記할 것은,

1) 六藝라는 名稱은 周禮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서, 禮 樂 射 御 書 數 곧 六種의 學術을 말하며[22], 본시 典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劉向이 六藝라고 쓴 것은 孔子가 刪定한 六經을 말하며, 以後 이것이 主된 學問으로 傳來됨에 따라 六藝와 六經을 같은 말로 混用[23]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後世에 이르기까지 그 用法이 承襲되었다. 그

20) 上揭書, 藝文志, 總敍.

21) 阮孝緖. 七錄序(廣弘明集 卷三 所收)

22) 周禮, 地官에 六藝의 名稱이 보이는바,

「以鄕三物敎民而賓興之 一曰六德 知·仁·聖·義·忠·知 二曰六行 孝·友·睦·婣·任·恤 三曰六藝 禮·樂·射·御·書·數」

云云이 바로 그것이며, 6種의 學術을 말하는 것이다.

23) 司馬談. 論六家要旨에

「夫儒者以六藝爲法 六藝經傳以千萬數 累世不能通其學 當年不能究其禮」

云云하였고, 또

司馬遷. 史記, 孔子世家에도

「孔子 以詩·書·禮·樂 敎弟子 盖三千焉 身通六藝者七十二人」

이라 있듯이, 後世에 經을 말할 때 六藝라는 말을 混用하였다.

一例로서 晋代 荀勗 撰의 新簿에서는 勿論, 宋代 王儉 撰의 七志에 있어서까지도 六經을 六藝라 일컫고 있음을 들 수 있다.

2) 六藝에는 六經 以外에도, 그 當時 經書에 準하는 論語 孝經 및 六書를 가르치기 위한 小學이 附加되어 있다.

3) 歷史는 一略으로 獨立되지 못하고, 六藝略의 春秋에 附入되어 있다. 그 當時 史記類의 著述이 매우 빈약했던 것 같다.

4) 詩賦는 六藝略의 詩에서 獨立시켜 詩賦略의 一門을 設定하고 있다. 史記類에 比해 著述이 많아 一略으로 獨立시켰음을 알 수 있다.

5) 蓍龜 雜占은 본시 易學에서 나온 것으로서, 뒤에 陰陽五行說과 合流된 것이나, 이것이 벌써 易類에서 獨立되어 數術略 아래에 列入되어 있다.

6) 孔子 以外의 儒家만이 六藝略에서 分離되어 諸子略 아래에 列入된 것은 좀 不合理하다. 이것은 孔子만을 尊重하였던 漢代思想이 分類法에도 그대로 適用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7) 兵家의 著作이 諸子略에서 分離되어 獨立的인 一略으로 設定되어 있음이 特徵이다. 戰國時代를 거쳐 秦代에 이르기까지 王官의 武備가 매우 尊重視되었음을 또한 엿볼 수 있다.

8) 道敎는 아직 宗敎로 成立되지 못하고, 그 法術 또는 修錬에 該當하는 房中術 神僊(仙)術만이 方技略 아래에 列入되어 있다.

9) 佛敎는 後漢 때 導入되었으므로, 아직 宗敎로서 成立되지 못하고 있다.

七略 以後는 魏·晋代에 와서 四分法이 嚆矢되어 時代의 潮流를 타고 六朝時代에 盛行되었다. 그러나 한편 七分法이 四分法에 比하여 나은 點이 많았음에, 目錄學者는 그 七分法을 復興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 結果 四分法과 並行하여 七略을 土台로 部次를 바꾸고 名稱을 고친 새로운 七分法이 나왔으니, 宋나라 王儉의 「七志」, 梁나라 阮孝緖의 「七錄」, 隋나라 許善心의 「七林」등이 바로 그것이며, 그 中 七志와 七錄이 著名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Ⅱ. 七　志

隋書經籍志에 의하면 宋나라 後廢帝 元徽元年(473)에 秘書丞 王儉이 目錄을 편찬하였는데 收載된 圖書가 무려 1574卷이라 傳해지고 있다. 이것은 王儉이 秘閣의 圖書를 整理하여 편찬한 四部官修目錄이며, 이에 이어 別撰에 着手해서 同年 8月에 完成시킨 것이 바로 「七志」가 되는 것이다.[24] 이 七志의 卷數는 30卷[25] 혹은 40卷[26]으로 傳해지고 있고, 그後 賀縱이 補注한 것은 70卷[27]이며, 隋書와 舊唐書의 兩經籍志에도 다

24) 長孫無忌 等撰. 隋書, 卷三十二, 經籍志一.
25) 沈約. 宋書, 卷九, 後廢帝本紀.
26) 蕭子顯. 南齊書, 卷二十三, 王儉傳.
27) 歐陽修. 新唐書, 卷五十八, 藝文志 目錄類.

같이 「今書七志 七十卷」[28]으로 되어 있는 바, 그 篇帙이 浩翰한 類別目錄인 것이다.

그 分類法의 內容은 本志가 亡佚된지 오래되어 자세히 밝힐 수 없으나, 隋書經籍志에 傳해지는 바에 의하면,

「一曰 經典志. 紀六藝 小學 史記 雜傳.
二曰 諸子志. 紀今古諸子.
三曰 文翰志. 紀詩賦.
四曰 軍書志. 紀兵書.
五曰 陰陽志. 紀陰陽圖緯.
六曰 術藝志. 紀方技.
七曰 圖譜志. 紀地域及圖書.
其道佛附見合九條 亦不述作者之意 但於書名之下 每立一傳」[29]

이라 있고, 또 「七錄」序에 의하면,

「王儉七志 改六藝爲經典 次諸子 次詩賦爲文翰 次兵書爲軍書 次數術爲陰陽 次方技爲術藝 以向·歆雖云七略 實有六條 故別立圖譜一志 以全七限 其外又條七略及二漢藝文志 中經簿所闕之書 并方外之經佛經·道經各爲一錄」[30]

이라 있듯이, 七略을 모방하여 志次와 名稱을 變更하고 不足한 一志를 圖譜志로 追加해서 名實共히 七分法으로 만들었으며, 附錄으로서 方外의 敎인 釋道의 兩敎를 追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分類法을 漢書藝文志에 紹介된 七略과 對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七 志	七 略
	輯 略(總序에 該當함)
經 典 志	六 藝 略
諸 子 志	諸 子 略
文 翰 志	詩 賦 略
軍 書 志	兵 書 略
陰 陽 志	數 術 略
術 藝 志	方 技 略
圖 譜 志(新設)	
附, 道經錄(新設)	
附, 佛經錄(新設)	

위의 對比表에 따라 相異點을 들어 보면,

1) 七略은 名稱上으로만 七分法이고 實際는 六分法에 지나지 않으나, 七志는 一門을 더 增設하여 七分法으로 만든 最初의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도 實際에 있어서는

28) 劉昫. 舊唐書, 卷四十六 經籍志 雜四部書目.
29)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經籍志一.
30) 阮孝緖. 前揭書, 序.

附錄인 道佛 兩錄을 合하면 九分法이 되는 셈이 되므로, 다만 七略 分類法의 精神만을 繼承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七志는 七略을 根據하여 六藝을 經典, 詩賦를 文翰, 兵書를 軍書, 數術을 陰陽, 方技를 術藝로 各各 改稱하고, 諸子의 名稱만을 그대로 引用하고 있다.

3) 圖譜 一志를 新設하고 여기서 비로소 地域과 圖畫에 관한 것을 分類하도록 마련해주었음은 分類史上 크게 注目을 끌게 하는 事實이거니와, 한편 그보다도 더 重要한 史志를 역시 소홀히 하였음은 그 價値를 反減시키는 一大缺點이 된다.

4) 道敎가 方外의 敎로 成立되어 附錄에 別設되었으며, 後漢 때부터 漢譯됨과 아울러 導入이 시작되었던 佛敎도 方外의 敎로 삼고 附錄하였음이, 七略과 다른 점이다. 後漢 때 班固가 七略을 근거하여 편찬한 漢書藝文志에는 이 兩者가 아직 宗敎로서 認定되어 있지 않다.

Ⅲ. 七　錄

隋書經籍志에 의하면, 梁나라 때에 있어서도 官修目錄의 편찬에는 四分法이 主로 適用되었으나, 한편 阮孝緖가 七分法인 「七錄」을 편찬함으로써, 兩分類法이 並用되었다.[31] 이 七錄에 대한 記錄은 隋書經籍志보다도 廣弘明集 所傳의 阮孝緖의 七錄自序에 比較的 자세히 담겨져 있다. 그 記錄에 의하면, 撰者가 宋으로부터 齊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王公의 搢紳館에 蓄積된 墳籍을 調査하여 目錄과 對照하는 한편, 보는 바 듣는 바 있으면 官修目錄과 또한 一一히 參校하여 본 結果, 遺漏된 것이 참으로 많음을 깨닫고 그 目錄의 完璧을 期하고자, 諸家所藏의 目錄을 널리 調査해서 新撰 完了한 것이 바로 本 七錄이라 傳해지고 있다.[32]

그 分類法의 全般에 걸친 細部에 대하여는 七錄 一書가 宋 以後에 逸書[33]되어 詳考할 수 없고, 前引한 廣弘明集 所傳의 自序一篇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經典錄 內篇一

易部 尙書部 詩部 禮部 樂部 春秋部 論語部 孝經部 小學部

紀傳錄 內篇二

國史部 注曆部 舊事部 職官部 儀典部 法制部 僞史部 雜傳部 鬼神部 土地部 譜狀部 簿錄部

31)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經籍志一에 「普通中 [七錄自序에 의하여 생각하면 普通四年(523)에 該當] 有處士阮孝緖 沉靜寡慾 篤好墳史 博采宋齊已來王公之家 凡有書記 參校官簿 更爲七錄 一曰 經典錄 紀六藝 二曰 記傳錄 紀史傳 三曰 子兵錄 紀子書兵書 四曰文集錄 紀詩賦 五曰 術伎錄 紀數術 六曰 佛錄 七曰 道錄 其分部題目 頗有次序」라 있다.

32) 廣弘明集 卷三 所傳의 阮孝緖. 前揭書, 序에
「凡自宋·齊以來 王公搢紳之館 苟能蓄聚墳籍 必使致其名簿 凡在所遇 若見若聞 校之官目 多所遺漏 遂總集衆家 更爲新錄 其方內經·史至於術伎 合爲五錄 謂之內篇 方外佛道 各爲一錄 謂之外篇 凡爲錄有七 故名七錄……」이라 있다.

33) 宋代의 尤袤 撰인 遂初堂書目에 七錄이 收錄되어 있는 點으로 보아 南宋 때에는 있었으며, 그 以後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子兵錄 內篇三

儒部 道部 陰陽部 法部 名部 墨部 縱橫部 雜部 農部 小說部 兵部

文集錄 內篇四

楚辭部 別集部 總集部 雜文部

術伎錄 內篇五

天文部 緯讖部 曆算部 五行部 卜筮部 雜占部 刑法部 醫經部 經方部 雜藝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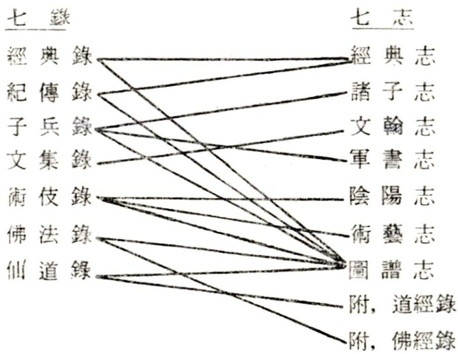
佛法錄 外篇一

戒律部 禪定部 智慧部 疑似部 論記部

仙道錄 外篇二

經戒部 服餌部 房中部 符圖部

이 七錄의 分類法은 그 自序에도 「今撰七錄 斟酌王劉」云云하였듯이, 王儉의 七志와 劉歆의 七略 分類法을 斟酌하여 만든 것이므로 그 兩者에 比하면 크게 發展되었으며, 또한 名實相符하게 七分法으로 되어 있음이 特徵이다. 七錄과 七志의 分類法을 對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對比表에 있어서 두드러진 特徵을 列擧하면,

1) 經典志에서 史記 雜傳을 끄집어 내어 合理的으로 紀傳錄의 一門을 新設한 것.

2) 軍書志를 兵書로 고치고 諸子와 合하여 子兵錄으로 一門을 設定한 것.

3) 文翰志는 各世의 文詞가 主이며, 그것을 一般的으로 「集」이라고 일컫고 있음에, 「翰」을 「集」이라고 고친 것.

4) 王儉이 七志에서 「數術」의 名稱이 繁雜하다 하여 「陰陽」으로, 「方技」의 名稱도 典據가 없다 하여 「術藝」로 各各 고치었으나, 그러나 「陰陽」은 아무래도 그 槪念이 偏派的이어서 「數術」로 通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또 「術藝」는 術數와 六藝의 뜻을 內包하고 있어 方技의 본뜻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劉歆이 붙인 본시의 名稱을 그대로 살리기로 하되, 方技에서 房中과 神僊(仙)을 仙道錄으로 編入시킨 結果 醫經과 經方만으로는 一門이 될 수 없어 數術과 方技를 合쳐서 「術技」로 한 것.

5) 圖譜志에 있어서 圖畫篇은 그린바에 따라 部가 定해짐에 그 題名에 따라 各錄에

分入시키고, 譜는 注記類인바 史體와 더불어 相互參考가 됨에 傳記 끝에 編入시켜 合理的으로 處理한 것.

6) 七志에서 先道後佛로 附錄한 것을 正式으로 外篇의 部門을 增設하고, 敎理의 深淺에 따라 先佛後道로 配定하여 當時의 環境에 잘 適應시킨 것.

7) 王·劉 兩氏의 分類法을 斟酌하였다고 自序하고 있으나, 그 外에도 그 當時까지 官修目錄 편찬에 主用되어 왔던 四分法의 影響을 多分히 받았던듯, 七志의 七分法中 內篇을 5錄으로 統合하되 그 中 1～4錄을 經史子集의 順位로 配定하여 四部分類法과 비슷하게 考案한 것.

以上에서 든 特徵을 綜合하여 보면, 1) 七錄은 七略과 七志를 斟酌하여 七分法의 精神을 充分히 살리면서도 四分法의 特徵을 導入하여 만든 分類法으로서, 2) 그 當時에 있어서 가장 合理的으로 展開된 分類法인 同時에, 3) 社會的인 環境에도 잘 適應되고 있으며, 또한 4) 類目의 細密함이 그 때까지 나왔던 如何한 分類法보다도 斷然코 優秀한 力作이라 好評할 수 있다.[34]

隋代에 와서 許善心이 七分法으로서 「七林」[35]을 편찬하였으나 너무 빨리 逸書되어 그 分類法의 內容을 알 수 없으며, 그 後는 衰退一路로 기울어져서 그 恢復을 期하지 못했음이 매우 哀惜한 일이다. 다만 淸 乾隆年間에 章學誠이 七略을 모방한 「和州藝文志」를 만들어 한때 復古的인 一念을 굳게 한 바도 있었으나, 새로운 時代의 潮流에 符合되지 못한채 水泡로 돌아가고 말았다.[36]

第三節 四 分 法

I. 四分法의 嚆矢

四分法의 最古의 것으로서, 現在 그 內容의 一部가 알려지고 있는 것은 晋初에 荀勗이 편찬한 「中經新簿」라 傳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四分法의 嚆矢는 그 보다도 앞서

「魏晋之世 文籍逾廣 皆藏在秘書中外三閣 魏秘書郎鄭默 删定舊文 時之論者 謂爲朱紫有別 晋領秘書監荀勗 因魏中經 更著新簿 雖分爲十有餘卷 而總以四部別之」[37]

라는 記錄이 七錄序에 실려 있고, 또 隋書經籍志에도,

「魏氏代漢 釆掇遺亡 藏在秘書中外三閣 魏秘書郎鄭默 始制中經 秘書監荀勗 又因中經更著新簿 分爲四部 總括群書」[38]

---

34) 蔣元卿. 中國圖書分類之沿革. 臺北, 臺灣中華書局, 民國46(1957) p. 51.

35) 魏徵 等撰. 隋書卷五八, 列傳第二三, 許善心傳에
「高祖 十七年(597) 除祕書丞 于是秘藏圖籍 尙多淆亂 善心放(倣)阮孝緖七錄 更製七林 各爲總敍冠於篇首 又於部錄之下 明作者之意 區分其類例焉」이라 있다.

36) 章學誠은 晩年에 「校讐通義」을 著述하여 「七略之流而爲四部 如篆隷之流而爲行楷 皆勢之所不容已者也」라고 自認하면서 그 復古의 一念을 포기하였다.

37) 阮孝緖. 前揭書, 序. (廣弘明 卷三 所收)

38)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經籍志 一.

云云이라 있듯이, 魏代에 秘書郞 鄭默이 宮中藏書를 整理하여 中經簿라는 藏書目錄을 편찬하였던 때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 可能性이 짙다. 不幸히도 그 藏書目錄이 일찌기 散逸되고 傳해지고 있는 文獻도 內容이 不充分하여 뚜렷하게 考證할 수 없음이 遺憾이다.

荀勗이 中經簿를 根據하여 다시 편찬하였다는 新簿의 分類法은 다음과 같다.[39]

甲部 紀六藝及小學 等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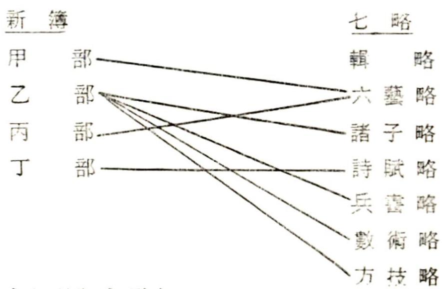
乙部 有古諸子家 近世子家 兵書 兵家 術數

丙部 有史記 舊事 皇覽簿 雜事

丁部 有詩賦 圖贊 汲冢書

四分法인 四部分類法의 各部를 代表하는 最大의 槪念인 經 史 子 集의 名稱을 아직 쓰지 못하고 다만 分類上의 次序 表示인 甲 乙 丙 丁을 使用하고 있으며, 또 經 史 子 集의 次序와 견주어 볼 때 乙과 丙이 逆順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七分法에서 經 史 子 集의 四部分類法으로 옮아가는 過渡的인 性格을 띤 最初의 四分法인 點에서 注目을 끌게 한다.

漢書藝文志에 所傳되어 있는 七略과 對比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위의 對比表에 있어서 特記할 點은,

1) 春秋에 附入되었던 史記類를 分離시켜 類書인 皇覽簿등과 함께 묶어 獨立된 一部門으로서 丙部를 新設한 것과,

2) 兵書 數術등을 合하여 諸子家인 乙部에 編入시킨 것을 우선 들 수 있다. 그러나 方技에 대하여는 具體的인 表示가 없어 確實치 않으나 四部中 어느 하나에 編入된다면 乙部에 該當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佛經이 이 當時는 있었을 것임에도, 그 記錄이 없는 것을 보면 例外로 取扱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萬一 그것이 옳다면 四部以外로 計上되었을 것으로 여겨짐에, 결국 五部의 分類法이 되는 셈이 된다.[40]

그러나 이 分類法에는 몇 가지의 疑問點이 뒤 따른다. 1) 兵書와 兵家는 어떻게 差異

39) 上揭書, 卷三三 經籍志 一.

40) 許世瑛. 中國目錄學史. 臺北, 聯合出版中心, 民國53(1964) p. 33.

가 있는가? 2) 類書인 皇覽簿를 어째서 史記와 함께 丙部에 分類하였는가? 類書는 事物을 分類하여 纂輯한 書로서, 經 史 子 集을 包括하는 知識이 總網羅되어 있는 것이다. 3) 汲冢書를 어째서 詩賦와 함께 丁部에 分類하였는가? 이 汲冢書中에는 「西王母圖詩 一篇」만이 丁部에 該當하고, 「易經 二篇」은 甲部, 「大曆 二篇」등은 乙部, 「紀年 十三篇」등은 丙部에 各各 分類되어야 하는 것이다.[41]

新簿 以後에도, 東晋初에 著作郞 李充이 惠·懷의 亂으로 흩어진 典籍을 鳩集하여 「晋元帝書目」을 만들었는데, 이 때에 適用되었던 四分法은 七錄序에,

> 「惠·懷之亂 其書略盡 江左草創 十不一存 後雖鳩集 淆亂已甚 及著作佐郞李充 始加刪正 因荀勗舊簿四部之法 而換其乙 丙之書 沒略衆篇之名 總以甲 乙爲次」[42]

라 있고, 또 隋書經籍志에도,

> 「惠·懷之亂 京華蕩覆 渠閣文籍 靡有孑遺 東晋之初 漸更鳩聚 著作郞李充 以勗舊簿校之 其見存者 但有三千一十四卷 充遂總沒衆篇之名 但以甲 乙爲次」[43]

라 있듯이, 荀勗이 舊簿 即 위에서 말한 新簿를 整理할 때 適用했던 分類方法을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乙部의 책을 丙部의 그것과 바꾸어서 甲 乙 丙 丁의 順序로 하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甲部를 六藝及小學等書, 乙部를 史記等書, 丙部를 諸子家等書, 丁部를 詩賦等書로 하였다는 것이니, 비록 經 史 子 集의 名稱은 아직 使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四部分類法의 次序만은 여기서 비로소 確定된 셈이 되므로, 그 意義가 참으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44]

李充 以後도 宋 元嘉8年(431)에 秘書監 謝靈運이 四部目錄을 만들었고, 齊 永明年間(483~493)中에는 秘書丞 王亮과 秘書監 謝朏가 四部目錄을 편찬하였으며, 또 梁의 秘書監 任昉·殷鈞도 四部目錄을 作成하였다는 記錄이 傳해지고 있다.[45] 그러나 이 南朝의 四部分類法이 李充의 分類法에 比해 어느 程度 進展되었는지의 與否에 대하여는 記錄의 粗略으로 자세히 알 길이 없다.

Ⅱ. 四分法의 確立

四分法인 四部分類法의 土臺는 現傳文獻에 의하면, 「隋書經籍志」에 이르러 비로소 確立되었다.

隋書經籍志 整理에 採擇되었던 分類法은,

> 「今考見存 分爲四部 合條爲一萬四千四百六十六部 有八萬九千六百六十六卷. 其舊錄所取 文義淺俗 無益教理者 並刪去之. 其舊錄所遺 辭義可采 有所弘益者 咸附入

41) 上揭書, pp. 33~34.

42) 阮孝緖. 前揭書, 序.

43)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經籍志 一.

44) 長澤規矩也. 和漢古書分類法 p. 10에 의하면 隋書經籍志에서 乙部와 丙部의 內容을 오늘날의 四部의 順으로 고치었다고 云云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그 보다도 앞서 東晋初에 李充이 편찬한 晋元帝書目에서 乙部와 丙部의 內容을 오늘날의 四部의 順으로 고치었던 것이다.

45)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經籍志 一.

之. 遠覽馬史班書 近觀王阮志錄 挹其風流體制 削其浮雜鄙俚 離其疏遠 合其近密 約文緒義 凡五十五篇 各列本條之下 以備經籍志」[46]

云云과 같이, 四部分類法을 基本으로 하고 類目의 設定에 있어서는, 舊錄을 비롯하여 司馬遷의 史記, 班固의 漢書, 王儉의 七志, 阮孝緒의 七錄등을 參考하여 精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分類法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經部

易 書 詩 禮 樂 春秋 孝經 論語 緯讖 小學

史部

正史 古史 雜史 覇史 起居注 舊事 職官 儀注 刑法 雜傳 地理 譜系 簿錄

子部

儒 道 法 名 墨 縱橫 雜 農 小說 兵 天文 曆數 五行 醫方

集部

楚辭 別集 總集

附道經

經戒 服餌 房中 符錄

附佛經

大乘經 小乘經 雜經 雜疑經 大乘律 小乘律 雜律 大乘論 小乘論 雜論 記

漢書藝文志에 수록된 七略의 分類法과 比較하여 보면 그 相異點은 다음과 같다.

1) 隋書經籍志는 七略의 六藝를 經部로 고치고, 內容에 있어서 9種을 10種(緯讖 1種이 더 追加되어 있음)으로 하였다.

2) 七略의 六藝略 春秋 뒤에 附入되었던 史記類를 獨立시켜 史部로 하고, 그 아래서 史地를 자세히 展開시켰다.

3) 七略의 諸子略을 子部로 고치고 이에 兵書 數術 方技의 3略을 統合하되, 兵書略의 4類를 1類로 合하여 兵으로 總稱하고, 方技略의 2類 即 醫經과 經方을 1類로 合하여 醫方으로 改稱하고 房中과 神僊의 2類는 附道經에 編入시켰으며, 數術略의 6類를 3類로 줄여 天文 曆數 五行으로 하였고, 陰陽家를 刪去시켰다.

4) 七略의 詩賦略을 集部로 고치고, 內容에 있어서 屈賦 陸賦 孫賦 雜賦를 楚辭로 묶고, 歌詩 대신 編輯形式에 따라 別集 總集으로 바꾸어 놓았다.

5) 七略에 없던 道敎와 佛敎가 方外의 宗敎로 成立되어 附錄으로 마련되어 있다.

王儉의 七志 分類法과 比較할 때 그 두드러진 特徵은, 1) 經典志 아래에 附入되었던 史記를 獨立시켜 史部를 마련하고 소상하게 細分한 點, 2) 諸子志 軍書志 陰陽志 術藝志를 統合하여 子部로 묶은 點, 3) 文翰志를 集部로 고친 點, 4) 圖譜의 一志를 없앤 點, 5) 方外의 敎로서 聖人이 멀리하여야할 道·佛經을 附錄으로 編入시킨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인 點등이다.

---

46) 上揭書, 經籍志 一.

한편, 內容의 細部展開에 있어서 主로 根據하고 많이 採用하였던 阮孝緖의 七錄 分類法과 對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隋書經籍志는 七錄의 經典錄을 經部, 紀傳錄을 史部, 子兵錄을 子部, 文集類를 集部로, 各各 고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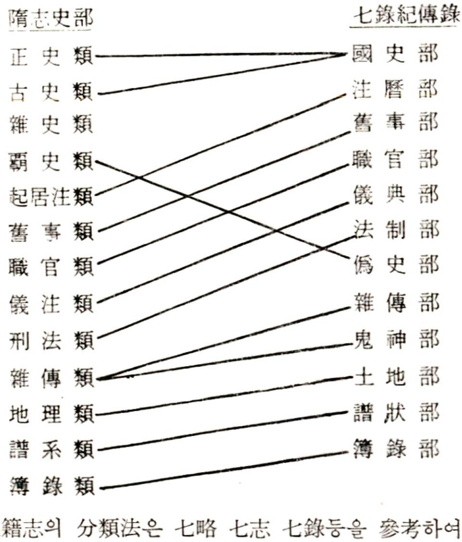
2) 七錄의 術伎錄은 그中 緯讖部를 隋書經籍志의 經部, 刑法部를 隋書經籍志의 史部에 各各 編入시키는 한편, 雜藝部의 删去를 除外하고 모두 子部에 統合시켰다.

3) 그러나, 그 移動에 있어서는 五行 卜筮 雜占의 3部를 統合하여 五行으로 하였고, 醫經 經方의 2部는 醫方으로 單一化하였으며, 曆算部를 曆數로 고치었다.

4) 隋書經籍志의 子部에 있어서는 七錄의 子兵錄에 있는 陰陽部를 削去하였고, 또한

5) 集部에 있어서도 七錄의 文集錄의 雜文部를 없애고 이를 總集에 編入시키었다.

6) 隋書經籍志의 史部에 있어서는 가장 變動이 많으며, 七錄 紀傳錄의 國史部를 正史 古史의 2類로 나누고, 雜傳 鬼神의 2部를 併合하여 雜傳의 1類로 하고, 雜史 1類를 別途로 設定하였으며, 注曆部를 起居注類,[47] 儀典部를 儀注類, 法制部를 刑法類, 土地部를 地理類, 譜狀部를 譜系類, 僞史部를 覇史類로 各各 고치었다. 史部와 記傳錄의 細分內容을 對比表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48]



이렇듯이, 隋書經籍志의 分類法은 七略 七志 七錄등을 參考하여 그 長點을 받아 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弊端도 있다.

1) 分類法을 만듦에 있어서 너무나도 褒貶의 뜻에 사로 잡히고 있다. 即 聖道의 顯揚을 主目的으로 하였기 때문에, 道佛의 2類는 聖人이 멀리하여야 하는 方外의 敎라

47) 許世瑛. 前揭書, p. 49에서는 注歷部를 古史와 起居注의 二類로 나누고 있다.

48) 鄭鶴聲. 中國史部目錄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5(1966) p. 58.

해서 四部의 끝에 附錄으로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2) 分類의 一貫性이 缺如되어 있다. 이를테면 釋書中「釋氏譜 十五卷」「高僧傳 六卷」「衆僧傳 二十卷」「歷代三寶記 三卷」「寶臺四法藏目錄一百卷」등은 子部 雜類에 分類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高僧傳」과「名僧」의 傳記는 史部 雜傳에 分類되어 있으며, 그 中 高僧傳은 同一書가 두곳으로 分離되어 있다. 그리고 經律論은 附佛經에 類入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 위 例의 古書를 編纂 또는 敍述體裁에 의하여 分類한다면「歷代三寶記」「寶臺四法藏目錄」은 史部 簿錄,「釋氏譜」「高僧傳」「衆僧傳」「名僧」등은 史部 雜傳에 各各 類入되어야하며, 全的으로 主題에 의하여 分類한다면 모두 附佛經에 類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分類에 있어서 主題와 體裁가 混沌되어 있음이 그 短點이다.

3) 部 아래의 어떤 類에 있어서는 그 概念이 混雜하고 非合理的이다. 이를테면 雜傳을 보면 人 鬼神 神仙등이 함께 分類되어 있고, 譜系를 보더라도 「姓氏譜」「錢譜」「竹譜」등이 같이 分類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四部分類法은 隋書經籍志에서 그 土臺가 確立되었으며 그 以後는 各史志 即 舊唐書 新唐書 宋史 明史의 經籍 또는 藝文志를 비롯한 各種의 史志補撰[49]과 主要 官修目錄[50]및 歷代의 私家藏書目錄[51]에서 主用되면서 發展하였다.

Ⅲ. 四分法의 發展

四部分類法의 發展은 清代에 와서 四庫全書總目 200卷의 整理에 適用됨으로써 그 絕項에 이르렀다.

四庫全書는 清 高宗의 命으로 乾隆38年(1773)에서 同47年(1782)까지 10年間에 걸쳐, 紀昀 陸錫態 孫士毅등을 비롯한 在職者 360名 抄胥 1500名이 動員되어 全國에서 選定 또는 採進케한 善書를 繕寫 成書하고, 內廷四閣中의 하나인 文淵閣(北京 紫金城內)에 所藏한 中國書籍蒐集史上 實로 空前偉觀의 一大叢書이며, 이어 6部가 더 分寫되어 內廷四閣中의 다른 3閣인 文源閣(北京郊外 圓明園內) 文溯閣(瀋陽) 文津閣(熱河)과, 江浙三閣인 文匯閣(江蘇 楊州의 大觀堂) 文淙閣(鎭江의 金山寺) 文瀾閣(杭州

49) 拙藁. 中國書誌. 서울, 成均館大學校圖書館學科, 1968 油印.

50) 그 代表的인 것으로서 宋代에 昭文·史館·集賢의 3館과 祕閣所藏의 典籍을 整理한 崇文總目과 清代의 四庫全書總目을 들 수 있다.

51) 代表的인 것으로서 다음의 目錄을 들 수 있다.

宋 晁公武 撰. 郡齋讀書志.
宋 尤袤 撰. 遂初堂書目.
宋 陳振孫 撰. 直齋書錄解題.
元 馬端臨 撰. 文獻通考經籍考.
明 朱睦㮮 撰. 萬卷堂書目.
明 祁承㸁 撰. 澹生堂書目.
清 黃虞稷 撰. 千頃堂書目.
清 金檀 撰. 文瑞樓藏書目錄.

聖因寺)에 各各 1部씩 所藏되었다.[52)]

이 四庫全書를 整理한 總目에 適用된 分類法은 다음과 같다.

經　部

易　類

書　類

詩　類

禮　類

周禮 儀禮 禮記 三禮通義 通禮 雜禮書

春秋類

孝經類

五經總義類

四書類

樂　類

小學類

訓詁 字書 韻書

史　部

正史類

編年類

紀事本末類

別史類

雜史類

詔令奏議類

詔令 奏議

傳記類

聖賢 名人 總錄 雜錄 別錄

史鈔類

載記類

時令類

地理類

總志 都會郡縣 河渠 邊防 山川 古蹟 雜記 遊記 外紀

職官類

官制 官箴

政書類

通制 典禮 邦計 軍政 法令 考工

52) 鄭鶴聲 鄭鶴春 共著. 中國文獻學概要.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4(1965) pp. 189～190.

目錄類

經籍 金石

史評類

子 部

儒家類

兵家類

法家類

農家類

醫家類

天文算法類

推步 算書

術數類

數學 占候 相宅相墓 占卜 命書相書 陰陽五行 雜技術

藝術類

書畫 琴譜 篆刻 雜技

譜錄類

器用 食譜 草木鳥獸虫魚

雜家類

雜學 雜考 雜說 雜品 雜纂 雜編

類書類

小說家類

雜事 異聞 瑣語

釋家類

道家類

集 部

楚辭類

別集類

總集類

詩文評類

詞曲類

詞集 詞選 詞話 詞譜詞韻 南北曲

隋書經籍志의 四部分類法과 比較하여 그 異同을 살펴보고, 아울러 關聯된 諸問題點을 敷衍하면 아래와 같다.

가. 經 部

隋書經籍志는 10類로 區分하였다. 四庫全書總目도 10類로 區分되어 있으나, 다른點은 緯書의 一類가 刪除되고 五經總義가 新設되어 있으며, 論語가 四書로 代置되어 있다.

緯書는 經書에 근거하여 未來의 일 또는 福禍吉凶의 豫言에 대한 記錄을 綴拾한 것으로서,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經文外 또는 外傳으로 處理하여 그 末尾에 附入시키고 있다.

五經總義는 經解를 總集한 것으로서, 隋書經籍志에 있어서는 許愼 撰의 「五經異義」以下 諸家의 것을 論語의 末尾에 附入시켰던 것이나, 여기서는 一類로 獨立시키고 있다.

四書中 論語와 孟子는 본시 一帙을 各各 이루고 있었으나, 大學과 中庸은 舊禮記에 屬해 있었다. 그것을 明史藝文志의 例에 따라 四書의 一類로 別立[53]하고, 隋書經籍志의 論語를 그 가운데에 吸收시킨 것이다. 그러나 經部가 儒敎의 經典 및 그 註釋書의 分類를 爲主로 하고, 小學 即 經學讀解와 研究의 入門書인 訓詁書 字書 韻書를 並入시킨 原則은 兩者가 同一하다.

나. 史 部

隋書經籍志는 13類로 나누고 있으나 四庫全書總目은 15類이며, 그 異同은 아래와 같다.

1. 隋書經籍志에 없고 四庫全書總目에 新設된 各類는 紀事本末類 別史類 詔令奏議類 史鈔類 時令類 史評類등이다.

紀事本末은 宋代의 袁樞가 通鑑舊文의 每事를 篇으로 하여 그 順序대로 排比하고 그 事件의 始末 即 原因과 結果를 詳述한데서 이름 붙여진 것이며,[54] 이로써 歷史에 紀傳體(正史體) 編年體(古史體) 및 紀事本末體의 三體가 생겼다. 後世의 史家中 이 紀事本末體를 新體라고 일컫는 이가 많아서, 四庫全書總目에 이르러 마침내 一類가 獨立的으로 設定되었던 것이다.

別史는 直齋書錄解題에서 처음으로 그 一門이 마련된 것으로서, 위로는 正史에 이르지 못하고 아래로는 雜史에 이르지 않는, 말하자면 紀傳體 正史에 分類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雜史에도 分類할 수 없는 그 中間性格의 史書를 말한다.[55] 歷史는 본시 漢書藝文志에도 類門이 設定되지 않고 春秋에 附入되어 있었다. 그 後 史書의 著述이 漸次로 많아 짐에 隋書經籍志에 이르러 正史 古史 雜史 覇史의 諸類가 비로소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限界는 역시 確定되지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直齋書錄解題에 이르러 그 義例가 훌로 잘되었으므로, 이 四庫全書總目에서는 이를 받아 들여 別途로 別史의 一類를 新設하였다.[56] 그리하여 隋書經籍志에서 이를테면 「東觀漢記」를 正史類에, 「逸周書」(舊題 汲冢周書)를 雜史에 各各 分類하였던 것을,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이를 다같이 別史로 規定하여 處理하고 있다.

詔令奏議類中 詔令은 王의 聖訓 諭旨 綸音 制誥등으로 新唐志 史部에 이 項目을 처

53) 張廷王 等修. 明史, 卷九十六. 志第七十二 藝一 經部 四書類.
54)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四十九 史部五 紀事本末類敍.
55)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史部 別史類.
56)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五十 史部六 別史類敍.

음으로 마련하였던 것이나,[57] 千頃堂書目에서는 이를 좇지 않고 그 制誥를 集部의 別集 다음에 分類하였다.[58] 그러나 이것은 政事의 樞機가 되는 點에서 一次的인 意義가 있는 것이며, 文章에 뜻을 둔 것이 아니므로 이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史部에 一類門을 別立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59] 奏議는 諸臣의 上奏 또는 上疏의 類로서, 隋書經籍志에서는 集部아래에 並錄되었던 것이나, 文獻通考에 이르러 비로소 集部 內에 1類門이 獨立的으로 마련되었다.[60] 그러나 漢書藝文志에 「奏事 二十篇」이 春秋끝에 附入되어 있음에,[61] 이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史部에 두는 것이 옳다하여 詔令의 屬과 並列시키고 있다.

史鈔는 一史를 專鈔 또는 衆史를 合鈔한 것을 뜻하는 바, 孔子가 「史書 百篇」을 刪取한 것이 그 시초가 되며, 正式으로는 宋史藝文志에 이르러 비로소 一類門으로 獨立되었다.[62] 隋書經籍志에는 이 類門이 없고, 이를테면 一史 또는 衆史를 鈔錄한 衞颯撰의 「史要」 10卷, 張溫 撰의 「三史略」 20卷, 葛洪 撰의 「漢書鈔」 30卷, 張緬 撰의 晋書鈔」 30卷등이 雜史類에 並錄되어 있다.[63] 그러나 이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그 量이 많아, 宋史 藝文志를 본따서 1類門을 新設한 것이다.

時令은 天文과 農家問題를 結付시킨 것으로, 대개 農家에 必要한 月令 四時氣候와 日用의 閭閻風俗關係書에 該當된다. 이 類門은 隋書經籍志에 없으며, 崇文總目에 이르러 처음으로 歲時類가 생겼다.[64]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이것이 王政의 參考資料가 된다고 하여, 그 名稱을 바꾸어 史部아래에 1類門을 新設한 것이다.

史評은 隋書經籍志에 없다. 唐代의 劉知機 撰인 「史通」 以後 이 系統의 책이 많이 나왔으므로, 四庫全書總目에서 새로이 하나의 類門을 設定한 것이다.

2. 隋書經籍志에 있었던 類門으로서, 四庫全書總目의 史部에서 刪去된 것은 起居注 儀注 刑法 舊事의 各類이다.

起居注는 人君의 言行과 擧動을 記錄한 것으로서, 隋書經籍志 史部에는 그 類門이 마련되어 著錄 44部 1189卷이 所傳되어 있다.[65] 그 後도 舊唐志에 41部(起居注 29部 實錄 12部),[66] 新唐志에 38部[67]가 記載되어 있으나, 淸代에 와서는 「穆天子傳」 6卷, 「溫大雅大唐創業起居注」 3卷 뿐이었다. 그것도 前者는 그 編次가 비록 年月順으로 되

57) 歐陽修. 唐書, 卷五十八 藝文志 第四十八 史部 詔令一家.
58) 黃虞稷. 千頃堂書目, 集部 制誥·表奏類.
59)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五十五 史部十一 詔令奏議類 敍.
60) 馬端臨. 文獻通考, 卷二百四十七 經籍考七十四 集部 章奏類.
61) 班固. 前揭書, 六藝略 春秋二十三家內.
62) 脫脫 等修. 宋史, 卷二百三 藝文志一百五十六 藝文二 史部 史鈔類.
63)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卷三十三 經籍志 二 史部 雜史類.
64) 王堯臣等 編次, 錢東垣 輯釋. 崇文總目.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6(1967) 卷二十 歲時類.
65)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卷三十三 經籍志 二 史部 起居注類.
66) 劉 昫. 舊唐書, 卷四十六 經籍志 第二十六 上 起居注.
67) 歐陽修. 前揭書, 卷五十八 藝文志 第四十八 史部 起居注類.

어 있다 하더라도, 小說傳記에 屬하기 때문에 史實로서는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따라서 後者의 一書만으로서는 1類門을 別立할 수 없으므로, 四庫全書總目에서는 그 體例가 같은 編年類에 合치었다.[68] 이것을 舊唐志가 實錄을 起居注에 分類한 것과 같은 方法이라 볼 수 있다.

儀注 및 刑法의 類는 隋書經籍志에 各各 하나의 獨立된 類門으로 마련되었던 것이나, 淸代에 와서는 國政 朝章 六官의 諸般事가 大幅 增加되어,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不得已 이를 政書類로 代置하지 않을 수 없어 그 類門을 新設하고, 前者는 典禮의 屬, 後者는 法令의 屬에 各各 配當시키고 있다.[69]

舊事는 雜史에 屬하는 故事이며, 대체로 그 記錄內容은 史實로서 믿을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四庫全書總目의 史部에서는 이 類門을 完全히 刪去하고, 그 代身 小說家類아래서 分類하도록 마련되어 있다.[70]

3. 隋書經籍志의 類門을 그대로 살리고, 다만 그 名稱만을 바꾼 것은 다음과 같다.

ㄱ. 隋書經籍志의 古史類는 본시 最古의 史書였던 春秋가 年月式으로 엮어진데서 연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이를 編年類로 改稱하였으므로, 이에는 위에서 말한바의 實錄 起居注는 勿論, 年月式으로 編次된 모든 史書가 分類되어 있다.

ㄴ. 隋書經籍志의 雜傳을,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傳記로 改稱하였다. 그러나 前者에 있어서의 鬼物과 奇怪한 記錄은 除外되고, 聖賢 名人 列女傳 名臣事略등만을 分類하고 있으며, 叛臣諸傳은 그 끝에 別錄으로 附入시키고 있다.

ㄷ. 隋書經籍志의 覇史를,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載記로 改稱하였다. 覇史는 正閏國을 一方的으로 割據하여 國號와 紀年을 僭稱한 나라의 事蹟이다.[71] 七錄에서는 이를 僞史라 하였고, 隋書經籍志에서는 覇史라고 하였으며, 兩者를 兼用하고 있는 書目도 있다.[72]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後者의 名稱을 擇한 것이나, 그 載記類에 「朝鮮史略(一名 東國史略)」 6卷, 「朝鮮國記」 1卷, 「高麗史」 2卷등이 分類되고 있음은 名分論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所致이다.

ㄹ. 隋書經籍志의 簿錄을, 四庫全書總目에서는 目錄으로 改稱하였다. 그 뜻은 全혀 같은 것이며, 다만 名稱이 다를 뿐이다.

4. 隋書經籍志에는 있으나, 四庫全書總目에 없는 類門이 오직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譜系類이며, 隋書經籍志에서는 主로 「姓氏譜」가 分類되어 있고 그 外에 「竹譜」「錢譜」등이 並入되어 있다.[73] 舊唐書經籍志에는 「竹譜」와 「錢譜」가 農家類에 分類되

68)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四十七 史部 三 編年類.
69) 上揭書, 卷八十一 史部 三十七 政書類.
70) 上揭書, 卷一百四十～四十一 子部 五十～五十一 小說家類 一・二.
71) 上揭書, 卷六十六 史部二十二 載記類敍.
72) 馬端臨. 前揭書, 卷二百 經籍考二十七 史部 僞史・覇史.
73)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卷三十三 經籍志 二 史 譜系類.

고,[74] 文獻通考에 있어서도 「香譜」등이 農家類에 들어 있다.[75] 그러나 遂初堂書目에 이르러 비로소 譜錄 一門이 獨立的으로 마련되어 이 系統의 資料를 統攝하게 되었으며,[76]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도 그 例를 따라 史部에서 譜系를 없애고, 그 대신 子部에 마련하여 여기서 分類를 統整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다. 子 部

隋書經籍志와 四庫全書總目이 다같이 類門數가 14種인 點에서는 同一하나, 그 가운데에는 異同이 가장 甚하다.

1. 隋書經籍志에 없고, 四庫全書總目에만 新設된 類門은 藝術 譜錄 類書 釋家類등이다.

藝術은 書畵 琴譜 篆刻 및 雜技를 總稱한 것이며, 近世 藝術의 發達로 말미암아 이 系統의 資料가 많아져서 새로이 類門을 마련한 것이다. 그 中 琴譜는 山人墨客의 妙技에 屬하는 것이며, 본시는 經部의 樂類에 一括分類되었던 것이나, 俗樂이라해서 分離시켜 이곳에 마련하였다.[77] 篆刻은 印譜關係書이며, 그 印刻의 體例는 鑑賞의 對象이 되었다. 雜技에는 「譜博」「弈律」「歌舞」「射法」등이 分類되어 있다. 그 中 「羯鼓錄」「樂府雜錄」은 新唐書藝文志에서는 經部樂類에, 「射法」은 漢書藝文志에서는 兵家, 그리고 文獻通考에서는 雜技藝에, 「象經弈品」은 隋書經籍志에서 兵家에 各各 分類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모두 藝術類 雜技의 屬에 一括集中시키고 있다.[78]

譜錄은 器物 食譜 草木鳥獸虫魚의 系譜를 總稱한 것이다. 그 中 器物에 屬하는 系譜 가운데, 이를테면 陶宏景 撰의 「刀劍錄」은 文獻通考를 보면 類書와 雜技藝에 分類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香譜」는 農家에 分類되고 있는 바, 同屬의 것이 類集되어 있지 않다. 食譜의 屬은 흔히 農家類에 分類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도 農家의 所有보다는 오히려 閭閣의 日用品이라 하여, 여기서는 子部의 譜錄 아래에 分類하였다. 草木鳥獸虫魚의 屬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竹譜」는 위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隋書經籍志에서는 譜系, 舊唐書經籍志에서는 農家에 各各 分類되어 있다. 이렇듯이 같은 類屬의 分類가 區區各各이므로,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遂初堂書目이 一事一物의 系譜的인 것을 統合하기 위해 마련한 譜錄類를 그대로 받아들여 새로이 그 類門을 設定하였다.

類書의 分類는 荀勗의 中京新簿 史書類에 「皇覽簿」가 附入된 데서 비롯하며,[79] 隋書經籍志에 있어서는 子部 雜類에 附入되어 있다. 後者에 대한 例로서 「皇覽簿」 120卷을 또한 들 수 있다.[80] 明의 胡應麟은 「筆叢」에서 類書를 一部로 獨立시켜 四部末尾

74) 劉 昫. 前揭書, 卷四十七 經籍志 第二十七 下 子部 農家類.
75) 馬端臨. 前揭書, 卷二百十八 經籍考四十五 子部 農家類.
76) 尤袤. 遂初堂書目 子部 譜錄類.
77)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二十二 子部 藝術類二 琴譜之屬後敍.
78) 上揭書, 子部 藝術類二 雜技之屬.
79)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卷三十二 經籍志一 總敍.
80) 上揭書, 卷三十四 經籍志三 子部 雜類.

에 둘것을 提議한 바 있었으나, 끝내 學界의 呼應을 얻지 못하였다.[81] 그러나 그 提議만은 充分한 妥當性을 띤 것임을 特記해 둔다. 四庫全書總目에서는 子部에 이 類門을 마련하였으나, 同姓名錄類까지 並入하고 있어 탐탁치 않다.[82] 類書라면 經 史 子 集의 四部를 包括하는 內容의 것만이 分類되는 것이 原則이기 때문이다.

釋家類는 七志의 끝에 附錄된 데서부터 비롯하였고, 七錄은 이를 七分法의 體系內로 끌어 들이는데 成功하였다. 그러나 隋書經籍志는 七志의 例를 遵用하여 겨우 附錄으로 하는데 그쳤으며, 舊唐書經籍志는 道家에 並入시키는 程度가 고작이었다.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七錄의 例에 따라 先佛後道의 次序로 四部分類法의 體系內로 이끌어 들였으니, 잘된 것이라 찬양할 수 있다.

2. 隋書經籍志에서 獨立된 各類門이,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 1類로 統合된 것을 들 수 있다.

ㄱ. 名家 墨家 縱橫家의 獨立된 各類門이,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雜家類의 雜學의 屬에 統合되어 있다. 雜學은 學說이 서 있는 諸家의 著述을 말하며, 所謂 十家書中 名·墨·縱橫의 3家書가 量的으로 微微하여 이곳에 統合되었다.[83]

ㄴ. 天文 曆數의 獨立된 2類가,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天文算法의 1類로 일단 合쳐진 다음 2屬으로 細分되어 있다. 그 2屬은 推步와 算書이며, 隋書經籍志의 天文曆數中 天文曆象이 前者에, 算法이 後者에, 各各 該當된다.

ㄷ. 子部의 道家와 附錄으로 되어 있는 道經이,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子部의 道家에 統合되었다. 道家의 書籙은 漢書藝文志 所傳의 七略에 諸子略 道家와 方技略 房中 및 神僊(仙)으로 分離되어 나타났으나, 七志에 이르러 後者가 처음으로 道教로서 七分法의 體系 以外로 採擇되었고, 隋書經籍志에 있어서도 이를 襲用해서 四分法의 體系 以外로 道教의 類門을 마련하여 老莊古道家와 兩立시켰다. 그러나 이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古道家와 道教를 合쳐서 一類로 묶고, 子部 끝에 列入시켰다.

3. 隋書經籍志의 類門을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도 그대로 살리고, 다만 그 名稱만을 바꾼 것이 있다.

그 하나는 醫方을 醫家로 고친 것과, 다른 하나는 五行을 術數로 바꾼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것들은 그 名稱만이 變更되었을뿐, 內容에 있어서는 大同少異하다.

라. 集　部

隋書經籍志는 3類로 區分되고 있으나, 四庫全書總目은 5類로 區分하였다. 增加된 2

81) 胡應麟. 小室山房筆叢, 卷二十九 丙部 九流緖論下에
「案類書鄭志另錄 通考仍列子家 蓋不欲四部之外 別立門戶也 然類書有數種 如初學 藝文 兼載詩詞 則近於集 御覽 元龜 事實咸備 則鄰於史 通典 通志 聲韻 禮儀之屬 又一二間涉於經 專以屬之子部 恐亦未安 余欲別錄二藏及贗古書及類書爲一部 附四大部之末 尙俟博雅者商焉」이라 있다.

82)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一百三十五 子部 四十五 類書類.

83) 上揭書, 卷一百十七 子部 二十七 雜家類 雜學之屬.

類는 詩文評類와 詞曲類이며, 前者는 詩文에 관한 批評書에 該當되고, 後者는 曲의 原理硏究書로 되어 있다.

Ⅳ. 四分法의 批評

四部分類法의 一大長點으로서는, 1) 分類組織이 簡單하여 記憶하기 쉽고 整理가 매우 簡便하며, 2) 綿綿히 繼承되고 있는 傳統的인 東洋文化를 支離分裂시키지 않고 原形 그대로 集約的으로 組織할 수 있으며, 3) 따라서, 古書의 保存爲主인 各種文庫와 東洋學의 專門圖書館에 適合하며, 4) 東洋學에 관한 知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司書가 아니라도 능히 그 分類業務를 擔當할 수 있는 點 등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許多한 問題가 批判의 對象이 되고 있으며, 그 中 主要한 것만을 들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分類法의 類門排列이 「尊重儒道 褒貶得失」을 本旨로 하였기 때문에, 實際보다도 明分에 치우치고 있음을 우선 指摘할 수 있다.

古代에 六經이 있었음은 이미 위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거니와, 그러나 그 中 樂經은 일찌기 없어지고 漢 以來 일컬어 왔던 五經 十二經 十三經에도 樂經은 으례 除外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圖書分類爲主의 實用的인 分類法이 되려면 實傳되는 傳統的인 經典을 그 對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原則인데, 그렇지 못하고 古來로부터 遺傳되는 衛道觀念으로 名分論에 치우친 나머지, 經部에는 樂類를 包含한 六經을 으례 羅列하고 있다. 四庫全書總目의 經部 樂經類에 分類되어 있는 著作을 보더라도 後代의 雅樂에 관한 것뿐이며, 따라서 原則的으로는 傳統的인 經典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現在는 在來의 因襲에 따라 또 樂緯 때문에 主로 經部 樂類에 分類하고 있다. 勿論 이 方法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實際보다도 名分에 치우친 分類라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難題로서 音樂書의 一部가 子部 藝術類의 琴譜에도 分類되어 同一主題가 兩分된다는 것이다. 實際問題로서 四庫全書總目을 보면 元 態朋來 撰의 「琴譜」 6卷, 清 王坦 撰의 「琴志」 2卷, 明 汪浩然 撰의 「琴瑟譜」 3卷은 經部아래 分類되어 있고,[84] 其他의 琴書는 子部아래에 分類[85]되어 있는 矛盾點을 들어 내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차라리 藝術類의 琴譜를 音樂으로 고치어 그곳으로 統合하고, 樂緯만을 經部 아래에 두는 것이 名보다 實을 위한 分類가 된다고 생각한다.

小學類를 經部에 列入시킨 것도, 崇儒中心과 名分에 치우친 所致이며 實際와는 距離가 멀다. 小學類는 訓詁書 字書 韻書를 말한다. 勿論 그 中 訓詁書는 經典中心으로 엮어지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나, 그렇다고 해서 小學類 그 自體가 傳統的인 經典은 결코 아닌 것이다. 劉歆의 六藝略에 있어서는 前記한 樂과 더불어 小學이 經典에 列入

84) 上揭書, 卷三十八三十九 經部 三十八~三十九 樂類.
85) 上揭書, 卷一百十三 子部 二十三 藝術類 琴譜之屬.

될 수 있었다.[86] 그것은 六藝가 본시 禮 樂 射 御 書 數에서 연유된 것이기 때문에 그 當時는 別로 矛盾이 없었다. 그러나 隋書經籍志 以後의 四部分類法에서 經部에 넣은 것은 오직 經典의 習得과 讀解만을 爲主로한 觀念에서 取해진 便宜上의 列入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儒道崇尚에 置重한 나머지 實際보다도 名分에 사로잡힌 處理라 指摘할 수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小學은 漢字의 習得,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經 史 子 集 全分野에 걸친 漢學의 習得을 위한 字典으로 分類함이 實際的인 處理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四部分類法에서 指摘되는 또 하나의 短點이 되는 例가 된다.

史部에 있어서 載記類는,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七錄에서는 僞史, 隋書經籍志에서는 霸史라 하였다. 이것은 王統의 正閏을 이은 나라를 一方的으로 割據하여 國號를 僭稱하거나, 또는 王統의 正閏을 이은 나라의 紀年을 쓰지 않고 自作의 紀年으로 僭號한 나라의 歷史임을 가려내기 위하여 붙여진 것이다. 이러한 觀念은 大義名分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데서 연유된 것이며, 오늘날에 있어서 그 固陋한 思想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은 勿論이다. 事大의 名分論을 스스로 强要한 나머지, 우리나라의 歷史까지도 載記에 分類[87]하였음은 아예 말도 되지 않는 낡은 觀念의 所致임에, 또 다른 하나의 矛盾點임을 指摘해 둔다.

子部에 있어서 一學派를 形成하는 諸家의 排列次序는 學術爲主가 아니라, 역시 聖道의 顯揚을 主眼으로한 褒貶의 뜻이 크게 作用하고 있어, 儒家의 治世中心으로 適當히 벌려지고 있다. 即

「儒家尚矣 有文事者有武備 故次之以兵家 法 刑類也 唐虞無臯陶 則寇賊姦宄無所禁必不能風動時雍 故次以法家 民 國之本也 穀 民之天也 故次以農家 本草經方 技術之事也 而生死繫焉 神農黃帝以聖人爲天子 尚親治之 故次以醫家 重民事者先授時授時本測候 測候本積數 故次以天文算法 以上六家 皆治世者所有事也 百家方技 或有益 或無益 而其說久行 理難竟廢 故次以術數 游藝亦學問之餘事 一技入神 器或寓道 故次以藝術 以上二家 皆小道之可觀者也」[88]

라 있듯이, 儒 兵 法 農 醫 天文算法 術數 藝術類의 次序는 어떤 學術的인 體系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儒家의 治世中心에서 必要한 順序이며, 術數와 藝術은 儒家의 小道라 하여 끝에 位置케 하였다. 또 계속해서 言及하기를,

「詩取多識 易稱制器 博聞有取 利用攸資 故次以譜錄 群言歧出 不名一類 總爲薈萃皆可採摭菁英 故次以雜家 隸事分類 亦雜言也 舊附於子部 今從其例 故次以類書 稗官所述 其事末矣 用廣見聞 愈於博奕 故次以小說家 以上四家 皆旁資參考者也 二氏外學也 故次以釋家 道家終焉」[89]

이라 하였다. 即 譜錄 雜家 類書 小說家는 儒治者의 參考資料가 되므로 그 다음에 벌

86) 班固. 漢書藝文志, 六藝略 小學十家.
87)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六十六 史部 二十二 載記類에 『朝鮮史略 六卷』『高麗史 二卷』『朝鮮國紀 一卷』등이 실려 있다.
88) 上揭書, 卷九十一 子部總敍.
89) 上揭書, 卷九十一 子部總敍.

려 놓았으며, 釋道家는 外學임에 七志 以來의 諸目錄의 體例에 따라 그 末尾에 位置케 하였다. 東洋에 있어서 主要諸家라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儒佛道의 三家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釋道의 二家를 末尾에 둔 것은, 外學인 까닭에 實보다도 名에 치우친 所致라 指摘할 수 있다. 勿論 이 경우 現行 分類法에서 볼 수 있듯이, 釋家와 道家를 宗教로 認定하고 哲學的인 諸子家에서 分離시켜 그 끝에 두었다면 別로 問題가 되지 않거니와, 여기서는 그러한 觀點이 作用된 것도 아니다. 萬一 宗教로서 末尾에 두었다면 老莊學派인 道家와 宗教인 道教는 마땅히 分離되어, 前者는 儒家 다음에 歸入되고, 釋家 道家의 名稱은 佛(釋)教 道教로 고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集部에 있어서도 純粹한 戲曲과 小說이 응당 類入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君子와 선비로서 볼 바가 못된다는 名分에 사로잡힌 나머지 卑俗의 것으로 蔑視했던 關係로, 分類의 對象에서 除外되었다. 다만 學理的인 詞曲만을 集部 끝에 列入시켰고, 神怪異聞을 모은 小說家類만을 儒治者의 參考資料로서 子部 아래에 마련하였을 뿐이다.

要컨대, 東洋文化의 源泉을 儒道의 學에 두고 分類法을 組織하였기 때문에, 過去에는 衆贊을 絕對的으로 얻었음이 事實이나, 오늘날의 客觀的인 學問의 觀點에서 보면, 實際보다도 明分에 偏重한 所致라고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나. 分類法의 類門이 主題의 理論的인 體系로 展開되어 있지 않고, 體裁爲主의 傳統的인 方法으로 羅列되어 있다.

分類法의 體系는 理論的으로 展開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一大缺點이다. 이를테면 史部의 類門排列에 있어서,

> 「首曰正史 大綱也 次曰編年 曰紀事本末 曰別史 曰雜史 曰詔令奏議 曰傳記 曰史鈔 曰載記 皆參考紀傳者也. 曰時令 曰地理 曰職官 曰政書 曰目錄 皆參考諸志也 曰史評 參考論贊也」[90]

라 하였다. 이것은 正史體인 紀表志傳의 體裁로 엮어진 史書를 根幹으로 삼고, 編年體史書 以下 僞史인 載記類까지를 그 中 帝紀와 傳記에 대한 參考資料로 하여 羅列한 것이며, 歲時記인 時令 以下 目錄類까지는 그 中 志에 대한 參考資料로 삼고 關聯된 主題資料를 羅列한 것이다. 史評은 正史의 論贊으로서 參考가 된다하여 그 末尾에 붙인 것이다. 一見 合理的인 展開인 것같이 보이지만, 이를 檢討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矛盾點이 指摘된다.

1. 紀傳體史書의 體裁를 中心으로 類門을 羅列하였기 때문에, 關聯된 主題의 資料가 分離되어 있다. 正史 以下 雜史類에 이르기까지 關聯된 主題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史鈔 載記 史評類등 純粹한 史書도 正史로부터 雜史類에 이르는 史書의 一群에서 分離되어 또한 不合理하기 짝이 없다.

2. 紀傳體史書의 體裁를 中心으로 類門을 羅列하고 있으면서도, 그 中 官에 의하여 편찬된 것만을 正史로 固定化 시켰기 때문에, 野人이 편찬하였거나 正史로 採擇되지

90) 上揭書, 卷四十五 史部總敍.

못한 紀傳體史書는 不得已 別史類로 떨어지는 不合理性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徹底한 體裁順의 類門排列도 아님을 指摘할 수 있다.

3. 紀傳體史書의 體裁를 中心으로 類門을 羅列하고 있기 때문에, 史部에 不適當한 類門이 不得已 列入되는 폐단이 있다. 職官類 政書類는 嚴格히 말하여, 그 中 史部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다른 主題에 分散시켜야 할 것이 混合되어 있다. 그러나 志의 參考資料로서 過去의 事實에 該當되므로 그런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目錄類와 時令類가 史部에 들어 온 것은 아예 탐탁치 않은 處理이다. 그것도 志의 參考資料가 되는 데서 결과된 폐단임을 우선 指摘해 둔다. 勿論 目錄類에 있어서 그 中 金石關係는 金石學 自體가 歷史補助學으로서 歷史에 들어 있으니 史部에 分類해도 別로 問題가 없지만, 經籍關係는 그것이 비록 志의 經籍志 또는 藝文志에 該當되는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이를 主題의 觀點에서 보면 各分野의 典籍이 網羅되어 있으므로 어느 部에도 屬할 수 없는 性格의 것이 된다. 十進法으로 말한다면 總類에 該當되는 內容의 것인 바, 이것이 바로 四部分類法에서 解決할 수 없는 一大缺點인 것이다. 時令類는 民事가 王政의 資料가 되며 또한 志의 參考資料가 되는 點에서 史部에 類入시켰으나, 그 內容은 天文과 農家問題를 結付시킨 農家日用의 閭閻風俗關係書이니,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農家類에 分類하는 것이 오히려 낳을 것 같다.

4. 紀傳體史書의 體裁를 中心으로 類門을 羅列하고 있기 때문에, 史表에 관한 參考資料를 分類할 類門을 別途로 마련하지 않고, 正史에 列入되지 못한 紀傳體史書와 함께 別史에 分類[91]하도록 하였음은 또한 缺點의 하나가 된다.

다. 子部에는 一家見의 哲理와 主張을 論한 諸子의 著述以外에도 雜多한 群書가 集中되어 있다. 그 群書中에는 總類에 該當되는 巨帙이 分類되어 있고, 甚至於는 西學과 新學까지 列入되고 있어 더욱 그 不合理性을 指摘케 한다.

子部는 一家見의 理論과 主張을 體系있게 表現한 諸子의 著述을 分類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本來의 目的이었다. 그러나 哲理와 主張을 論한 諸子의 著述以外에도, 神奇하고 怪異한 異聞을 모은 小說類가 들어 있는가 하면, 農業 天文 曆數 醫方等의 實用的인 技術學이 들어 있고, 또 衆人의 秘學인 五行術數가 들어 있는가 하면, 事物을 類集한 類書까지 들어 있다. 이것은 隋書經籍志에서 비롯하였으며,[92] 新·舊唐書의 經籍 또는 藝文志에서는 藝術類가 마련되어 書畫 篆刻 및 琴·碁·棋類가 보태졌다.[93] 遂初堂書目에서는 譜錄類가 新設되어 草木 鳥獸 魚虫 飲食 및 器用이 보태졌고,[94] 四庫全書總目에서는 彙編의 集成類가 雜家에 들어 왔다. 雜家는 본시 議官에서

91) 上揭書, 卷五十 史部六 別史類에 「欽定歷代紀事年表 一百卷」「歷代史表 五十三卷」「遼大臣年表 一卷 金大臣年表 一卷」등이 들어 있다.

92)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卷三十四 經籍志二十九 子部 雜家類 所收의 「皇覽一百二十卷, 類苑一百二十卷」 등을 들 수 있다.

93) 劉昫. 前揭書, 卷四十七 經籍志第二十七 子部 雜藝術類,
歐陽修. 前揭書, 卷五十九 藝文志第四十九 子部 雜藝術類.

94) 尤袤. 前揭書, 子部 譜錄類.

나와 儒·墨思想을 兼하고 名·法家의 思想을 合한 學派로 말미암아 그 名稱이 由來된 것이나[95], 後世에 와서 그 雜家의 槪念을 지나치게 類推解釋하여 雜考 雜說 雜品 雜纂 및 雜編등의 雜種 巨帙까지 分類하는 類門으로 看做하게 되었다. 이들 雜種書는 十進分類法에 있어서 總類的인 性格을 띤 것에 該當되며, 그 中에는 經 史 子 集의 全般에 걸친 內容의 것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말한 類書도 四部의 全般에 걸친 知識을 總網羅한 巨帙에 該當되는 것이다.

그것뿐만이랴! 그 後의 四分改修法에 있어서는 西學이 追加되고, 雜誌 社會科學 自然科學등까지 列入[96]되어 더욱 複雜多端하다.

過去에 없었던 것이 現在 새로이 나타난 著作을 便宜上 모두 이곳에 包括시키는 慣例가 承襲되어 子部 本然의 機能을 喪失하고, 마치 四部의 淵叢과 같은 感을 주게 된 것은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痼疾的인 缺點의 하나가 된다.

라. 類屬의 名辭 가운데에는 不適當하거나 그 槪念이 명석치 않아 理解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며, 또한 分類項目이 不足한 것도 있다.

經部에 있어서 五經總義는 五經에 極限되는 經解가 아니라, 經全體를 包括하고 있으니, 차라리 群經總義 또는 總經類라고 함이 좋을 것 같다.

史部에 있어서 別史類는 그 槪念이 명석치 않으며, 政書類의 考工 營造등도 技術分野의 槪念이 곧 떠오르지 않는다. 目錄類의 經籍은 儒敎經典을 代表的인 典籍으로 삼고 일컬었던 經籍志의 名稱에서 딴 것이나, 그것보다는 藝文志의 藝文이 차라리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위에서 言及한 史表와 史料的인 價値가 있는 記錄類의 分類處가 不適當하며, 交隣 即 外交關係書를 分類할 곳도 마땅치 않다. 또한 綜合的인 金石關係書를 處理할 獨立된 分類項目이 없다. 이 四庫全書總目에서 金石關係資料를 調査하여 보면 文字를 訓釋한 것은 小學類, 器形의 圖象을 摹印한 것과 器具中 金屬關係의 一部는 子部의 譜錄類, 法帖中에도 金石關係의 一部가 藝術類 그리고 그 目錄은 史部의 目錄類에 各各 分類되고 있는 바, 同一한 主題가 分散되어 不合理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마땅히 獨立된 類門이 어떤 한 部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 方法으로서는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歷史補助學으로 보는 見地에서 史部에 넣는 方法이요, 다른 하나는 古考美術과 關聯시킨 見地, 特히 이 四庫全書總目에서 金石學이 主로 藝術類와 譜錄類에 各各 該當되고 있는 點에서 子部에 넣는 方法이다. 따라서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兩者中 어느 곳에 넣어도 無妨하나, 오늘날의 一般的인 觀念으로 보면 歷史補助學으로서 더욱 重視하는 傾向이 있으므로, 史部에 넣는 것을 勸告하고 싶다.

子部에 있어서 天文算法類의 推步는 天文이라고 부르는 것이 理解하기 쉽다. 術數類의 數學은 術數의 易書로서 理解하기 어려우며, 또한 經典의 易學과 그 限界를 지우는 일도 매우 어렵다. 譜錄類도 隋書經籍志의 史部 譜系類와 混沌하기 쉬우므로 그

95) 班固. 前揭書, 諸子略 雜二十家後敍.

96) 江蘇省立國學圖書館圖書總目. 民國24~25年(1935~36)刊의 四分改修法을 그 代表的인 것으로 들 수 있다.

名稱이 탐탁치 않다.

集部에 있어서는 戲曲과 小說로서 그 價値가 認定되는 著作을 分類할 곳이 없음이 缺點이다.

마. 四部分類法이 본시 中國의 傳統的인 古典을 對象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中國以外의 東洋諸國 古典과 西學을 收容할 수 없음이 缺點이다.

中國以外의 東洋諸國, 이를테면 우리나라와 日本의 獨特한 古典도 적지 않은데, 이를 分類하기 위해서는 適切히 改修하여야 하며, 또한 明末부터 西洋에서 傳來되었다고 생각되는 基督敎關係書를 비롯한 새로운 科學과 文學등의 古典을 收容하기 위해서도 分類法의 改修가 不可避하다.

바. 四部分類法으로 整理된 目錄은 部類屬의 順序로 책이 적혀 있을뿐, 個個 책의 配架位置를 正確하게 알려주는 分類記號가 매겨져 있지 않은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그 檢索이 不便하다.

從來의 傳統的인 整理方法을 보면 個個 책에 分類記號가 매겨져 있지 않고, 檢索의 手段으로서 四部別로 裝訂의 色彩를 달리하여 配架한 程度가 고작이었으므로, 일일이 題簽을 確認해서 찾아내는 方法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唐代에 있어서는 分類記號 대신 卷子本의 色彩를 經部는 羅鈿의 白牙軸, 史部는 羅鈿의 青牙軸, 子部는 紫檀軸, 集部는 綠牙軸으로 하여 配架하였으며,[97] 清代에 있어서는 經部를 綠色, 史部를 赤色, 子部를 青色, 集部를 灰色으로 하고, 各冊마다 책과 同一色의 套子를 덧하여 그 外部에 套子番號와 收藏된 책의 書名을 적은 箋紙를 붙이었다.[98] 따라서 책을 檢索할 때는 우선 目錄에서 部類屬의 順序로 훑어 보고 利用하고자 하는 책을 確認한 다음, 書架의 配置圖와 裝訂의 色彩에 의해 그 책이 있는 근처로 引導되며, 거기서 箋紙에 적힌 書名을 하나 하나 調査함으로써 願하는 책을 入手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分類記號가 配當되지 않는 略式 整理는 所藏量이 적은 경우에 限하고, 그 所藏量이 많거나 또는 新·舊書를 單一分類法에 의해 組織하는 경우는 利用者 爲主의 整理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은 實用的인 分類法으로서의 具備條件을 갖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四部分類法은 그 組織이 簡單하여 記憶이 쉽고 整理가 簡便하며, 또 東洋學을 集約的으로 組織할 수 있으므로 古書의 保存爲主인 各種文庫와 東洋學의 專門圖書館에서는 아직도 適用될 수 있거니와, 한편 그 分類法이 지니고 있는 缺點이 적지 않음에 中國은 勿論 우리나라와 日本에 있어서까지도 이에 대한 批判의 度가 漸高되고 있다. 特히 中國에 있어서는 四部分類法을 大幅修正하자는 이른바 四分法의 改修派가 守舊를 主張하는 正統派에 맞서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四分法의

97) 劉昫. 前揭書, 卷四十七 經籍志 下 後敍에
「其集賢院御書 經庫皆鈿白牙軸 黃縹帶 紅牙籤 史書庫鈿青牙軸 縹帶 綠牙籤 子庫皆雕紫檀軸 紫帶 碧牙籤 集庫皆綠牙軸 朱帶 白牙籤 以分別之」
라 있다.

98) 譚卓垣. 清代圖書館發達史, 西村捨也 譯. **圖書館研究** 第14卷(1941) p. 323～324.

打破를 主張하는 目錄學者까지도 續出하고 있는 것이다.

第四節 四分改修法

四分法인 四部分類法의 類屬에 대한 改修論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四庫全書總目의 分類法에 대한 批判이 加해진 以後에 漸高되었지만, 그러나 그 움직임은 그보다도 훨씬 앞서 明代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明代에 비롯한 四分改修法으로서는 高儒 撰의 「百川書志」 徐𤊹 撰의 「紅雨樓書目」 焦竑 撰의 「國史經籍志」 祁承㸁 撰의 「澹生堂藏書目」에 適用되었던 分類法을 들 수 있으며, 그 中 國史經籍志와 澹生堂藏書目에 適用되었던 것이 크게 改修되었다.

淸代에 와서 改修되었던 四分法中 代表的인 것으로서는, 錢謙益 撰의 「絳雲樓書目」 黃虞稷 撰의 「千頃堂書目」 金檀 撰의 「文瑞樓藏書目錄」 및 張之洞 撰의 「書目答問」등을 들 수 있다. 그 中 書目答問에 適用되었던 分類法을, 代表的인 것으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Ⅰ. 書目答問의 四分改修法

經 部

正經正注

十三經 五經 四書合刻本 諸經分刻本 附諸經讀本

列朝經注經說經本考證

易 書 詩 周禮 儀禮 禮記 三禮總義 樂 春秋 左傳 公羊傳 穀梁傳 春秋總義 論語 孟子 四書 經考 爾雅 諸經總義 諸經目錄 文字音訓 石經

小 學

說文 古文篆隷眞書各體書 音韻 訓詁

史 部

正 史

二十史 二十一史 十七史 合刻本 正史分刻本 正史注補表 譜考證

編 年

司馬通鑑 別本紀年 綱目

紀事本末

古 史

別 史

雜 史

事實 掌記 瑣記

載 記

傳　記

詔令奏議

地　理

　古地志 今地志 水道 邊防 外紀 雜地志

政　書

　歷代通制 古制 今制

譜　錄

　書目 姓名 年譜 名物

金　石

　金石目錄 金石圖象 金石文字 金石義例

史　評

　論史法 論史事

子　部

周秦諸子

儒　家

　議論經濟 理學 考訂

兵　家

法　家

農　家

醫　家

天文算法

　中法 西法 兼用中西法

術　數

藝　術

雜　家

小說家

釋道家

　釋家 道家

集　部

楚　辭

別　集

　漢魏六朝 唐五代 北宋 南宋 金 元 明 清理學家集 清考訂家集 清古文家集 清駢體文家集 清詩家集 清詞家集

總　集

　文選 文 詩 詞

詩文評

叢 書

古今人著述合刻

國朝一人著述合刻叢書

이 四分改修法은 四庫全書總目이 撰進된 때로부터 93年後인 光緖1年(1875)에 편찬된 것이므로, 四庫全書總目에 適用되었던 四部分類法의 缺點을 기우려고 애썼던 力作의 하나가 된다. 經 史 子 集의 四部를 土台로 하면서 四庫全書總目의 子部에서 叢書를 끄집어 내여 別途로 1部를 末尾에 增設하고, 古今人著述合刻과 國朝一人著述合刻叢書의 2類로 區分한 것이 一大特徵이다.[99] 特히 이에 대하여는 淸의 乾隆嘉慶(1736～1820)以後 叢書의 刊行이 活氣를 띠었으므로, 더욱 그 必要性을 切感케 하였으리라 믿어진다.

이 四分改修法의 內容을 四庫全書總目에 適用되었던 四部分類法과 對比하여, 그 差異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經部에 있어서는 正經正注 列朝經注經說經本考證 및 小學의 3類로 大分되어 있는바, 正經正注와 後儒들의 專著를 區分하고 있음이 特異한 點이다.

나. 史部에 있어서는 1) 古史類를 增設한 點, 2) 史鈔 職官 時令의 3類를 删去한 點, 3) 目錄類를 譜類 金石의 2類로 分散시킨 點, 4) 史評類를 史法과 史事의 兩屬으로 나눈 點, 5) 金石類에 있어서는 四庫全書總目이 分散시켰던 金石目錄 金石圖像 金石文字 및 金石義例를 統合한 點, 6) 譜錄類에 있어서는 姓名 年譜 名物을 아울러 分類할 수 있도록 한 點등이 特異하다. 그 外에는 7) 正史 編年 雜史의 3類가 屬으로 細分되고, 8) 地理類 政書類의 屬에 대한 細分은 四庫全書總目에 適用되었던 分類法보다도 簡略化된 點이 또한 다르다.

다. 子部에 있어서는 1) 周秦諸子類를 增設한 點, 2) 譜錄類를 史部로 옮긴 點, 3) 雜家類와 小說家類를 隣接시킨 點, 4) 釋·道家를 併合하여 1類로 한點, 5) 儒家類를 議論經濟 理學 考訂의 3屬으로 細分한 點, 6) 天文算法類를 中法 西法 兼用中西法의 3屬으로 細分한 點 등이 다르다.

라. 集部에 있어서는 1) 詞曲의 1類를 删去하고, 이를 別集類와 總集類로 分散시킨 點, 2) 別集類는 時代區分하고, 다시 淸代는 淸理學家集 淸考訂家集 淸古家集 淸駢體文家集 淸詩家集 淸詞家集의 諸屬으로 細分한 點, 3) 總集類를 文選 文 詩 詞의 4屬으로 細分한 點등이 特異하다.

Ⅱ. 鏤板考의 四分改修法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正祖20年(1796)에 徐有榘가 京外의 册板을 整理하여 鏤板考를 편찬했었는데, 이에 適用되었던 分類法을 살펴 보면 四部分類法의 테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實情에 맞도록 改修하였음을 알 수 있다. 分類法 自體가 四分法의 代表인 四庫全書總目에 適用되었던 그것과 比較하면, 類門數가 매우 적고 屬의 細

99) 張之洞. 書目答問補正. 范希曾 補正. 臺北, 新興書局, 民國45(1956) 卷五 叢書目.

分도 되어 있지 않아 도리어 四部分類法을 縮少시킨것 같은 感이 드나, 그것은 그 當時 우리나라에서 鏤刻한 册板이 없는데서 起因된 不得已한 事情이다. 그것보다는 四部分類法에 없는 御撰 御定이 四部以外로 另立되어 있고, 雜纂類의 性格이 全혀 다르며, 또한 우리나라의 獨特한 譯語類등이 들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군데 군데 그 組織의 差異가 있는 點으로 보아, 우리의 實情에 맞도록 改修한 四分法임에 틀림이 없다.

그 四分改修法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御　撰

御　定

經　部

總經類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春秋類 四書類 小學類

史　部

通史類 雜史類 傳記類 史評類

子　部上

儒家類 兵家類 醫家類 天文籌法類 術數類 雜纂類 說家類 類書類 譯語類 道家類

子　部下

釋家類

集　部上

楚辭類 總集類 別集類上

集　部下

別集類下

이 分類法은 四庫全書總目에 適用되었던 四部分類法을 直接 參考한 것이 아니라, 焦竑 撰의「國史經籍志」陳振孫 撰의「直齋書錄解題」「歷代藝文志」「鍾音浙江遺書總錄」등에 適用되었던 分類法을 涉臘하고 편찬하였음을 凡例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便宜上 四庫全書總目의 分類體系와 比較하여 顯著한 差異點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四部 앞에 王의 親撰・命撰으로서 御撰 御定의 2門을 另立하고, 前者에는 列聖의 親撰, 後者에는 列聖의 命撰 即 歷代王의 命을 받고 편찬한 奉勅撰書를 分類하고 있다. 이것은 唐 徐堅 撰의「初學記」를 비롯하여, 焦竑 撰의「國史經籍志」朱彝尊 撰의「經義考」가 尊聖의 大義를 살리기 위하여 採擇한 例를 參考[100]한 것으로, 四庫全書總目의 四部分類法과 크게 다른 點이다.

나. 經部에 있어서는 總經類를 經典의 首位에 둔 點이다.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總經類와 같은 뜻으로 쓴 五經總義를 經典의 下位에 두고 있다. 下位보다 上位에 두는 것이 分類法의 制定에 있어서 論理的인 區分排列인 것이다. 그것은 外延(extension)

100) 徐有榘. 鏤板考, 洪命憙 校訂. 서울, 寶蓮閣, 1968 影印. p. 1 凡例.

이 크고 內包(intension)가 적은 上位槪念의 名稱을 一定한 特性에 따라 外延이 적고 內包가 큰 名辭 即 下位槪念의 名稱의 順으로 漸進的인 區分을 하는 것이 原則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總經類를 上位에 둔 것이 現代分類法의 制定原則에 適中되는 處理라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그 外에는 樂類와 孝經의 漏落이 다른 點이나, 이것은 그에 該當되는 册板이 없는데서 연유된 것이며, 分類法 制定上의 見解 差異로 刪去한 것이 아니므로 別로 問題될 것이 없다.

다. 史部에 있어서는 紀表志傳體로 엮은 正史 年月順으로 엮은 編年史 및 別史의 3類를 通史類로 統合하여 首位에 둔 點이 特異하다. 四庫全書總目의 四部分類法이 紀表志傳의 正史體를 根幹으로 徹底한 體裁式 類門排列을 한데 反하여, 이것은 그 體制式 類門排列을 打破하고 關聯된 主題를 함께 集中시키기 위해 通史類인 上位槪念의 名辭를 首位에 두어 正史 編年史 別史를 統合하였으니, 現代分類法의 制定精神과도 一致되는 處理라 또한 높이 評價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를 全代와 一代 即 斷代로 區分하였으면 하고 바라는 點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册板數가 적기 때문에 取했던 不得已한 措處였음을 斟酌할 수 있다. 그리고 紀事本末의 類門은 「一書備諸事之本末」[101]에 該當되는 史書가 없고, 「具一事之始末 非一代之全編 或但述一時之見聞」[102] 云云에 該當되는 「懲毖錄」과 「晋州敍事」의 册板밖에 없으므로, 그 類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雜史類에 分類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萬一 紀事本末體史書가 있다하더라도 여기서는 편찬에 의한 體裁式類門排列을 止揚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斷代에 걸친 「燃藜室記述」 같은 것은 「麗史提綱」의 경우와 같이 通史類에 分類하였을 것이다.

그外에도 史部에는 빠진 類門이 많이 있으나, 이것들 역시 該當되는 册板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라. 子部에 있어서는 譯語類를 新設하여, 淸語 蒙語 倭語등의 諸譯書를 分類하고 있음이 우리의 事情을 反映시킨 特異點이다.[103] 그 外에는 小說家類를 說家類로 略稱하고, 雜纂類에는 雜多한 衆說의 成編이 아닌, 訓蒙用 漢字書를 分類하고 있음이 四庫全書總目의 四部 分類法에 比해 또한 다른 點이다.

마. 集部에 있어서는 別集類와 總集類의 次序를 바꾸어 總集類를 앞에 둔 點이 다르며, 上位槪念의 名稱을 下位의 그것보다 위에 두는 原則이 始終一貫되어 있다.

Ⅲ. 奎章閣韓國本目錄의 四分改修法

1919年에 奎章閣 所藏의 韓國本을 整理한 「朝鮮圖書解題」에 適用되었던 四分改修法은 다음과 같다.

101)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四十九 史部五 紀事本末類敍.
102) 上揭書, 卷五十一 史部 七 雜史類敍.
103) 徐有榘. 前揭書, 卷第四 子部上 譯語類 pp. 109~114.

經 部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春秋類 大學類 中庸類 論語類 孟子類 別經類 總經類 字書類

史 部

正史類 編年類 紀事類 別史類 野乘類 政法類 記錄類 地理類 金石類 傳記類 系譜類 年表類 目錄類

子 部

儒家類 道家類 釋家類 兵家類 農家類 醫家類 天文類 方術類 譯學類 類書類 隨錄類 藝術類 小說類

集 部

別集類 總集類 題評 詞曲類 功令類

四庫全書總目에 適用되었던 四部分類法과 比較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가. 經部에 있어서 四書를 大學 中庸 論語 孟子의 4類로 나누고, 樂과 孝經의 2類를 別經類로 고치어 統合하였으며, 五經總義類를 總經類, 그리고 小學類를 字書類로 各各 고치었다. 五經總義類를 總經類로 고친 것은 매우 妥當하다고 생각되나, 한편 大學 中庸 論語 孟子의 集書인 四書類를 없앤 것은 不合理한 處理라고 指摘할 수 있다. 여기서는 四書類를 不得已 總經類에 分類할 수 밖에 없으니, 關聯된 主題가 別經類를 前後해서 分離되므로 탐탁치 않다.

나. 史部에 있어서는 雜史類 대신 野乘類를 마련하여 野史를 集中시키고, 金石類를 마련하여 四庫全書總目에서 分散시켰던 金石關係資料를 한곳으로 모으고 있다. 한편 記錄類를 새로이 마련하여 諸記錄文書를 統合하고 있고, 또한 系譜類와 年表類를 新設하여 그 系統의 資料를 各各 類聚시키고 있음은, 確實히 四庫全書總目에 適用되었던 分類法의 缺陷을 補充한 長點이라 할 수 있다. 그 中 特히 記錄類의 增設은 매우 適切하다고 생각된다.[104] 그리고 四庫全書總目의 史部에서 分類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外交關係書가 여기서는 政法類에 一括되어 있음도 特記한다.[105]

다. 子部에 있어서는 一學派를 이루고 있는 諸家의 排列次序를 從來의 傳統的인 方法에 따르지 않고, 主要學派인 儒 道 釋의 三家를 우선 앞에 두었으며, 雜家類의 雜說과 같이 隨意錄載한 漫錄 및 日記 그리고 小說家의 一部에 該當되는 異聞雜錄과 비슷한 性格의 것을 一括하여 隨錄類[106]에 分類하는 한편, 小說家類를 小說類로 고치어 純粹한 古代小說만을 對象[107]으로 하였음은, 四庫全書總目의 四部分類法에 比해 長點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小說類를 現代的인 眼目에 立脚하여 子部에서 集部로 옮김으로써, 在來의 因襲的인 分類觀念을 果敢하게 打破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104) 朝鮮圖書解題. 京城, 朝鮮通信社, 1932. 史部 記錄類 pp. 116～204.
105) 上揭書, pp. 84～87.
106) 上揭書, pp. 350～355.
107) 上揭書, pp. 365～367.

그렇지 못한 點이 유감이다. 또한 子部에 譯學類를 새로이 마련하여 華語 淸語 蒙語 倭語등의 諸譯書를 한곳에 集中시켜 준 것은, 鏤板考의 分類法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우리의 獨特한 事情을 反映시킨 分類의 하나가 된다.

라. 集部에 있어서는 詩文評을 題評이라 고치었고, 功令의 1類를 新設하여 主로 科詩文을 收錄하였음이 그 特徵이다.

위에서 살펴 본 四部分類法의 改修는 初期에 該當되며, 本格化된 것은 西學의 導入이 活氣를 띤 以後의 일이다. 西洋의 學術이 輸入됨에 따라 東洋의 學術에 漸進的인 變化를 가져왔을 뿐더러, 西學資料의 種類가 增加되어 이를 整理하는 圖書館의 立場은 참으로 難處했었다. 이러한 混亂期에서 진통을 겪은 나라가 東洋 三國中 特히 中國이었으며, 그 時期는 民國時代로 접어 들어서부터였다.

四部分類法에 大幅的인 改修를 加하여 使用했던 代表的인 것으로서는, 南通圖書館藏書目錄 天津圖書館藏書目錄 陝西圖書館藏書目錄 北平圖書館善本書目 江蘇省立國學圖書館圖書目錄등에 適用되었던 分類法을 들 수 있다.

한편 日本에 있어서도 四部分類法에 改修가 이루어졌었으니, 그 代表的인 것으로서는 內閣文庫圖書第二部漢書目錄 內閣文庫漢籍分類目錄 靜嘉堂文庫漢籍分類目錄 東方文化學院京都硏究所漢籍目錄 大阪府立圖書館漢籍目錄에 適用되었던 分類法등을 들수 있다.

그 中 몇몇의 代表的인 四分政修法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Ⅳ. 南通圖書館[108]의 四分改修法

經 部

- 正經正注
  - 諸經合刻本
  - 諸經分刻本
- 列朝經注經說經本考證
  - 易 類
  - 書 類
  - 詩 類
  - 禮 類
    - 周禮 儀禮 禮記 三禮總義
  - 樂 類
  - 春秋類
  - 四書類
    - 論語 孟子 論孟總義 四書總義

108) 張謇이 民國元年(1912)에 東嶽廟를 改築하여 創設한 圖書館으로서, 藏書 10餘萬卷이 所藏되어 있다.

孝經類

爾雅類

諸經總義類

諸經目錄文字音義類

石　經

小　學

說文類

文字類

音韻類

訓詁類

小學總義類

史　部

正　史

正史合刻本 正史分刻本 正史注補表譜考證

編　年

紀事本末

古　史

別　史

雜　史

載　記

傳　記

聖賢 名人 烈女

詔令奏議

詔令 奏議

歲　時

地　理

古地志 今地志 總論 一統志及通志 郡縣志 別志及雜記雜論 水道 山川 山志 湖志 邊防 外記

職　官

官制 官箴

政　書

歷代通制 古代會要 近代典制 民國新制

譜　錄

書目 年譜 掌故 名物 章程及報告

金　石

目錄 圖象 文字 篆隸

史 評
子 部
諸 子
諸子合刻本
諸子分刻本
儒 家
理學 考訂 議論經濟 敎育 雜誌及彙報
兵 家
法 家
農 家
醫 家
天文算法
天文家
算法家
術 數
占候占卜 命書相書 相宅相墓
藝 術
雜 家
小說家
釋道家
釋家
道家
類書類
集 部
楚 辭
別 集
總 集
文選 古文 騈文 經世文 書牘 課藝 詩賦 詞曲
詩文評
科擧文
叢 書
古今合刻叢書
一人自著叢書

이 四分改修法은 淸 光緖1年(1875)에 張之洞이 편찬한 「書目答問」을 改正增補한 것이며, 特記할 것은 各類門이 比較的 자세하게 展開된 點과 民國時代에 刊行된 圖書와 雜誌 彙報 報告書등 諸新刊資料를 分類할 수 있도록 마련한 點이다. 그러나 한편 道

經을 道家에 合치고, 四庫全書總目의 譜錄類와 同一한 名稱을 擇하고 있으면서 그 아래에 書目 年譜 章程 및 報告등 그 內容이 全혀 다른 것을 統合하였으며, 또한 新刊資料인 雜誌 및 彙報를 儒家類아래에 억지로 附入시킨 것이라든가, 報告書를 譜錄類아래에 無理하게 넣은 것 따위를 살펴 보면, 體系化가 不充分한 分類法임을 알수 있다.

V. 天津圖書館의 四分改修法[109)]

經　部
- 正經正注類
  - 合刻本
  - 分刻本
- 列朝經解類
  - 易
    - 唐以前 宋元明 近世　附, 易緯·河洛緯
  - 書
    - 尙書今古文 尙書一篇一義　附, 緯候及百兩篇
  - 詩
    - 毛詩 詩序詩譜 三家詩　附, 詩緯
  - 禮
    - 周禮 儀禮 禮記 三禮總義 三禮分類專門　附, 禮緯
  - 樂
    - 附, 樂緯
  - 春　秋
    - 春秋左傳 春秋事實分類 春秋公羊 春秋穀梁 春秋總義　附, 春秋緯
  - 論　語
    - 附, 論語讖及隱義
  - 孟　子
  - 四　書
    - 附, 學庸
  - 孝　經
    - 附, 孝經緯
  - 爾　雅
- 群經總義類
  - 群經總義 群經授受源流 群經音義 群經校刻文字 群經總義石經
- 小學類

109) 天津圖書館書目 三十二卷　集部附錄·叢書總目各 一卷, 譚新嘉, 韓梯雲 共編. 民國 2(1913)刊.

說文 各體書

訓　詁

官韻 古音 均韻

史　部

正史類

合刻 分刻 注補表譜攷證

編年類

通鑑綱目 別本編年

紀事本末類

古史類

魏晋以前人所撰 宋以後人所撰

別史類

雜史類

事實 瑣記

載記類

傳記類

聖賢 名臣名儒名士 忠孝義俠 鄕賢 高逸 烈女 雜傳雜記 記音 記事 自序行述

詔令奏議類

詔令 奏議

地理類

總志 輿圖 古州郡縣志 直省府廳州縣志 雜地志 直省紀程 城外紀程及江海道里 古蹟名勝路程總記 水道水利 外記 邊防 祠墓寺觀 土諺習俗

職官類

官制 官箴

時令類

政書類

歷代通制 各代舊制 古今典禮 通禮 雜禮 邦計 軍政 法令 考工 掌故 雜記

譜錄類

書目 家乘年譜 姓名年齒 盛事題名

金石類

金石目錄及攷證 因地著錄 專門詳釋 圖象 儀例

史鈔類

史評類

論史法 論史事

子　部

儒家類

古今各家 性理 攷訂
兵家類
法家類
農家類
總說 農桑 蔬果花木 畜牧水產 土產
醫家類
天文算法類
中法 西法 中西兼用
術數類
術學 占星望氣及陰陽五行 相宅相墓 命書相書 雜技術
藝術類
書畵 音樂 篆刻 賞鑒器物 製造食品 各種韻事 雜技雜戲
雜家類
雜學　附，勸善書 雜說 雜纂
小說類
雜記雜說 異聞　附，通俗章回 麗情 寓言 雅談 諧謔
釋家類
道家類
類書類
彙攷 摘錦
集　部
楚辭類
別集類
漢魏六朝 唐 宋 金元 明 近世詩文 近世文 近世詩
總集類詩文總集
數代合編 各代分編 以地分編 以姓分編
總集類文總集
數代合編 各代分編 以地分編 以姓分編 騈體文
總集類詩總集
數代合編 各代分編 以地分編 以姓分編 倡和 投贈
詩文評類
文評 詩評
詞曲類
詞集 詞選 詞話 詞譜詞韻 南北曲
集部附錄
叢書總目

이 四分改修分類法을 檢討하여 보면 類門設定은 張之洞 撰의 「書目答問」을 土臺로 改訂增補한 南通圖書館의 分類法과 大同小異하며, 다른 點은 大略 다음과 같다.

가. 史部에 있어서 歲時類를 時令類로 고치어 詔令奏議類 다음에서 職官類 다음으로 옮기고, 史鈔類를 增設하여 史評類와 隣接시켰다.

나. 子部에 있어서는 諸子類(諸子合刻本 諸子分刻本)을 削除하였다.

다. 集部에 있어서는 總集類를 詩文總集 文總集 詩總集의 3類로 展開시키고, 科擧文을 없앤 대신 詞曲類를 追加했으며, 끝에 集部附錄을 마련하였다.

라. 各屬의 展開가 比較的 자세한 한편 相互間의 差異도 比較的 크다. 이를테면 譜錄類에 있어서 南通圖書館의 分類法은 書目 年譜 掌故 名物 章程及報告로 屬을 展開한데 대하여, 이 分類法은 書目 家乘年譜 姓名年齒 盛事題名으로 展開하였으며, 또 儒家類에 있어서도 前者는 理學 考訂 議論經濟 敎育 雜誌及彙報와 같이 그 屬을 展開한데 대하여, 後者는 古今各家 性理 攷訂과 같이 展開하였다. 卽 前者가 新刊資料의 一部를 分類하기 위하여 無理하게 展開시킨 屬을, 後者가 刪去하고 다른 內容으로 細分한것 따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後者 역시 譜錄類아래서 異質的인 書目과 家乘年譜 姓名年齒를 함께 細分列入시키고 있다. 그 外에도 위에서 例를 든 前者의 缺點을 그대로 踏襲한 것이 있으니, 이것 역시 아직도 그 整備가 不充分하다고 指摘할 수 있다.

Ⅵ. 江蘇省立國學圖書館[110]의 四分改修法

經 部

易 類

白文讀本 傳說 圖書 筮法 文字音義 古易 讖緯 沿革

書 類

白文讀本 傳說 文字音義 逸書 讖緯 沿革

詩 類

白文讀本 傳說 文字音義 三家逸詩 讖緯 沿革

禮 類

周 禮

白文讀本 傳說 文字音義

儀 禮

白文讀本 傳說 圖說 文字音義 目錄索引

禮 記

110) 淸光緖34年(1908) 龍蟠里의 前惜陰書院에 藏書樓의 增築에 착수하여 宣統2年(1910)에 告成한 것이 이 圖書館의 始創이 된다. 처음에 江南圖書館이라 하였으나, 民國8年(1919)에 江蘇省第一圖書館, 民國16年에 第四中山大學國學圖書館으로 改稱되었으며, 다시 民國18年(1929)에는 江蘇省立國學圖書館으로 改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藏書는 約 10餘萬册에 달하고있다. 그藏書目錄으로서는, 「江蘇省立國學圖書館 圖書總目四十四卷補編十二卷, 王煥編」이있다.

白文讀本 傳說 文字音義 大戴禮

三禮總義

圖　說

通　禮

雜　禮

讖　緯

樂　類

樂理 律呂 樂縣 讖緯

春秋類

左　傳

白文讀本 傳說 文字音義 史評

公羊傳

白文讀本 傳說 文字音義

穀梁傳

白文讀本 傳說 文字音義

總　義

白文讀本 傳說 文字音義

讖　緯

四書類

論　語

白文讀本 傳說 文字音義 齊古逸 讖緯

孟　子

白文讀本 傳說 文字音義 逸文

四　書

白文讀本 傳說 文字音義

孝經類

白文讀本 傳說 文字音義 讖緯

小學類

訓　詁

爾雅 群雅 方言 字詁 釋文

字　書

說文 古契文 字典 字體 雜說 訓蒙

韻　書

集韻 圖說 字母拼音

經總類

石經 傳說 圖說 文字音義　師承沿革　目錄索引　叢書(群經類刻・一家類刻・小學類刻)

史 部

正史類

論年類

紀事本末類

別史類

雜史類

專史類

史鈔類

節鈔 類鈔 摘句 啓蒙

史表類

傳記類

事狀

年譜

志錄

圖讚

日記

家譜

譜牒 表系 雜錄

總錄

通錄 通代 斷代 郡邑 專錄 儒林 文苑 忠義 孝友 循吏 姦逆 隱逸 藝術 釋道 雜品 烈女

人表

雜錄

載記類

地理類

水道

總錄 河 江淮 海 郡邑 通論

山川

山 川

專志

宮殿 古蹟 寺觀 祠廟 陵墓 園亭 書院 雜錄

雜記

游記

總錄 唐至明 清代 近代 游歐美各國 外國人著述

邊防

北徼 江海 東南 西徼

外紀

總錄

外國史類

時令類

政書類

通制

儀制

通禮 祭祀 萬壽 大婚 臨幸 謚諱 紀元 科擧 宮闈 雜儀

職官

官制 官箴

邦計

理財 全國財政 各省財政 關榷 漕賦 海運 鹽法 捐稅 貨幣 荒政 雜錄

邦交

總錄 中俄 中日 各國 租界及領事裁判權 商約 國聯

軍政

律例

詔令

章則

奏議

議案

實業

交通

敎育

黨務

公報

中央 省府 市縣

雜錄

目錄類

解題考訂 史志 方志 族志 類錄 題識賞鑑 家藏書目 公藏書目 『特編 叢錄 版刻 書景樣本 檢目 藏書史 藏書約 義例 圖書館學

金石類

總類

目錄 圖象 文字 通考 題跋 雜著 傳記

金

目錄 圖象 文字 雜著

錢幣

圖象 文字 題跋 雜著

璽印

文字 通考

石

目錄 圖象 文字 石經 通考 題跋 義例 雜著

玉

圖象 通考

甲骨

文字 字書 通考

匋

圖象 文字

竹木

郡邑

目錄 圖象 文字 題跋 雜著

史評類

史法 考訂 論事 詠史

史總類

總錄 專錄 雜錄

子 部

儒家類

宋以前儒家

理學

濂洛關閩 陸王 別派 纂集

教學

專箸 纂集

修治

專箸 纂集

考訂

概論

道家類

玄言 煉養 雜纂 傳記

法家類

議論 刑名 檢驗

名家類

名家

古名家 今名家

墨家類

- 縱橫家類
- 雜家類
  - 雜學
    - 哲理
  - 雜考
    - 清前 近人
  - 雜說
  - 雜述
  - 雜品
  - 雜纂
    - 摘粹 談助 應試 訓蒙
  - 雜編
  - 勸戒
    - 專箸 纂集
  - 善學
  - 雜志
    - 總類 社會 黨議 政法 外交 實業 經濟 交通 軍事 教育 校刊 社教 特教 史地 文藝 藝術 衛生 哲學 宗教 科學
- 農家類
  - 總錄 授時 水利 蠶桑 種植 農具 畜牧漁獵 除虫 雜說
- 工家類
- 商業類
- 交通類
- 小說家類
  - 總錄
  - 筆記
    - 雜事 別傳 雅寄 閒情 異聞 瑣語 諧文 隱語 叢鈔
  - 平話
  - 章回
  - 彈詞
  - 新體
  - 譯述
- 兵書類
  - 權謀 形勢 技巧 防務 陰陽 兵鑑 雜說
- 曆數類
  - 總錄

天文

曆法

算數

總錄 算術 代數 幾何 三角 微積分 算表

術數類

總錄

數理

易占

占候

六壬

雜占

遁甲

形法

總錄 相墓 相宅

命書

相書

陰陽五行

雜術

藝術類

總錄

書畫

總錄 作法 體派 品題 鑒藏 譜帖 史傳

樂舞

雅樂 雜樂 舞

摹印

作法 印譜

雜技

奕碁 遊藝 雕塑繡褫 牌譜 攝影

譜錄類

器物 飲食 草木 鳥獸 虫魚

方伎類

總錄

經脈

體骼

傷寒

雜病

專科

　痘疹 痧疫瘧痢 眼 喉 肺 胃 脚氣 疝 花柳

瘡瘍

婦科

兒科

藥學

方書

雜錄

醫案

鍼灸

祝由按摩

修養

運氣

房中

西醫

醫史

獸醫

釋教類

大乘經

　華嚴 方等 般若 法華 涅槃

小乘經

律

　大乘律 小乘律

論

　印度大乘宗經論 印度大乘釋經論 印度大乘諸論釋 小乘論

印度撰述雜部

秘密部

中國撰述部

　經疏部 論疏部 懺悔部

諸宗部

　三論宗 法相宗 倶舍宗 華嚴宗 天台宗 淨土宗 禪宗

傳記

　別錄 總錄 人表

纂集

　概論 雜說 靈異

護教

目錄

音義

序讚

日本撰述部

天台宗 眞言宗 淨土宗 臨濟宗 曹洞宗 黃檗宗 眞宗 日蓮宗 時宗 融通念佛宗

神道類

科敎 符懺 戒律 儀式 扶鸞

耶敎類

總纂 舊敎 新敎 評論

回敎類

東方各敎類

哲學類

總論 派別 心理學

自然科學類

總論

物理

總論 力學 氣學 聲學 光學 熱學 電學 雜錄

化學

概論 試驗 無機化學 有機化學 雜錄

生物學

總錄 植物學 動物學

礦物學

地學

社會科學類

總論

社會學

經濟學

敎育學

概論 敎育行政 學校管理 特殊敎育 民衆敎育 雜錄

言語學

新聞學

類書類

類編

通錄 專錄

韻編

字編
專編
子叢類
集　部
別集類
周秦漢詩文
魏晋詩文
南北朝隋詩文
唐代
詩文 詞
五代
詩文 詞
宋代
詩文 詞
金代
詩文 詞
元代
詩文 詞曲 散曲 雜劇 傳奇
明代
詩文 詞 曲 散曲 雜劇 傳奇 制藝
清代
詩文 詞 曲 散曲 雜劇 傳奇 制藝 楹聯
現代
詩文 詞 曲 制藝 楹聯 新文藝
外國
總集類
賦編
楚辭 古賦 律賦 清律賦
詩編
斷代 通代 郡邑 氏族 閨秀 雜錄
文編
斷代 通代 郡邑 氏族 雜錄
詞編
斷代 通代 郡邑 雜錄
曲編
文評類

通論
文學史
體制源流
文法
律譜
文 詩 詞 曲
評論
文 詩 詞 曲 制藝 試帖 公文 楹聯 新文藝 外國文學
集叢類
詩文 詞 曲 文評

다음에는 志部를 設定하고 省志類 府州廳縣鄕鎭志類(各省으로 分屬) 志叢類로 區分하고 있으며, 이어 圖部를 設定하고 中國全·省·縣·城市·水道·交通·歷史·交界·軍用·經濟·天象·地質·雜·世界全·東西洋歷史·日本등의 各圖類로 區分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叢部가 있으며, 그 內容은

叢 部
類刻類
經部 史部 子部 集部 志部
彙編類
郡邑類
雜編 詩文
氏族類
雜編 詩文
獨撰類
漢迄明 淸代 現代

로 區分되어 있다.

이 四分改修法은 前揭한 天津圖書館藏書目의 分類法을 많이 參酌하고 改訂增補하여 民國24～25年(1935～36)에 刊行한바 있는「江蘇省立國學圖書館圖書總目」에 適用되었던 것으로서, 此種의 分類法中 가장 詳細하게 展開되어 있다. 四部分類法이 그 以後 活氣를 띠고 들어 오는 새로운 科學과 西學을 받아 들이기에는, 蔣氏가 指摘[111]하고 있듯이, 分類法의 內容이 아직도 1) 簡略하고 未盡하며, 2) 學問全般에 대한 包括性이 없고, 3) 不合理하며, 또 4) 新刊圖書의 將來를 充分히 考慮하지 않았기 때문에, 分類法의 理論的인 體系化가 喪失되었다. 그러나 그 分類法의 體系化가 어떠하든間에, 新學問을 위한 새로운 類屬을 大幅的으로 增加시켜 新·舊書를 함께 分類하도록 시도했던 것만은, 이 分類法의 特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改修의 特異點으로서는 다

111) 蔣元卿. 前揭書. pp. 150～151.

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가. 經部에 있어서 白話文의 讀本 即 新刊書를 아울러 分類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고, 또한 各屬의 展開가 具體的이다.

나. 史部에 있어서는 專史類 史表類 外國史類 및 史總類가 新設되어 있고, 各屬의 展開가 比較的 具體的이며, 그 中 目錄類의 屬에는 圖書館學이 並入되어 있다.

다. 子部에 있어서의 改修가 가장 特徵的이며, 그 中 特記할 것은 1) 農家類 小說家類 曆數類 方技類등을 비롯한 諸類아래서 新刊書를 아울러 分類할 수 있도록 屬을 展開하였고, 2) 雜家類아래서 各種主題分野의 雜誌를 分類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고, 3) 神道類 耶敎類 回敎類 東方各敎類등 方外의 敎를 包括하였고, 4) 工家類 商業類 交通類 哲學類 自然科學類 社會科學類등을 新設하여 새로운 學問의 分類에 對處하였고, 5) 끝에 子叢類를 마련한 點등을 들 수 있다.

라. 集部에 있어서는 楚辭를 總集類 賦編의 屬으로 끌어 들였고, 別集類와 文評類의 屬에는 新文藝와 外國人의 別集까지 分類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며, 끝에 集叢類를 別設하였다.

마. 四部以外로 志部 圖部 叢部를 마련하였으며, 그 中 叢部에는 十進法에 있어서 總類에 該當되는 것만을 分類하고, 各部의 叢書는 該當되는 部의 叢類에 分類하도록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四分改修法의 缺點은 同一主題가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또 學으로서의 分類體系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分類業務에 큰 混亂을 일으키고 있는 點이다. 이를테면 前者에 대한 一例로서, 交通關係書가 子部 交通類 以外에도 그에 관한 雜誌는 子部 雜家類의 屬으로, 그리고 史的으로 다룬 것은 史部 政書類의 屬으로 各各 分散되어 있으며, 다른 類屬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方法으로 組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後者에 대한 例로서 子部 社會科學類를 보면, 그것이 獨立的인 類門으로 新設되고 있으면서도 그 아래에는 總論 社會學 經濟學 敎育學 言語學 新聞學만이 區分되어 있고, 그 以外에는 子部에 商業類 交通類, 史部 政書類에 職官 邦計 邦交 軍政 律令 實業 交通 敎育 黨務 公報등으로 흩어져 있다. 또 別設된 志部와 圖部도 마땅히 史部 地理類에 並入되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이토록 서로 떨어 졌으니, 이는 정녕 分類體系가 不備한 것임을 如實히 立證해 준다.

또 다른 缺點으로서, 雜家類를 너무 지나치게 類推解釋한 나머지 現代雜誌까지 그 아래에 列入시켰음은 역시 無理한 느낌을 주며, 釋家類의 屬에 있어서 韓國撰述部를 除外시킨 것도 마땅치 않은 處理이다.

Ⅶ. 大阪府立圖書館의 四分改修法[112)]

經 部

112) 이 分類法은 大阪府立圖書館이 昭和41年(1966)에 大阪府立圖書館시리즈 第15號로서 刊行한 漢籍目錄四部之部에 適用시켰던 四分改修法이다.

經注疏合刻類
易　類
書　類
詩　類
禮　類
周禮 儀禮 禮記 大戴禮記 三禮總義 樂
春秋類
春秋左傳 春秋公羊 春秋穀梁 春秋總義
四書類
論語 孟子 四書
孝經類
諸經總義
諸經總義 諸經授受源流 諸經音義 諸經校刻文字 石經 目錄叢刻
小學類
訓詁 說文 各體字書 音韻 目錄 叢刻
史　部
正史類
合刻 分刻 注補表譜考證
編年類
通紀 各代 實錄
紀事本末類
古史類
別史類
雜史類
事實 瑣記 史料
載記類
詔令奏議類
詔令 奏議
傳記類
聖賢 別傳 總錄 鄉賢 家乘 雜傳 自序 記言記事 年譜 姓名年齒
時令類
地理類
總志 輿圖 古地志 今地志 雜地志 邊防 外紀 水道水利 考古 名勝 宮殿學校 祠墓寺觀名園 遊記紀程路程總記 土諺習俗 目錄叢刻
職官類
官制 官箴

政書類

歷代通制 各代舊制 古今典禮 通禮 雜禮 邦計 軍政 法令 考工 科擧學校 交涉 掌故雜記 雜錄

書目類

公庫箸錄 家藏知見 因地箸錄 書景 勸學 掌故瑣記 彙鈔 目錄叢刻

金石類

纂錄考證 因地箸錄 專釋 彙考文字 義例 鏡鑑泉幣雜器 玉 甸 甲骨 目錄叢刻

史鈔類

史評類

義例 義論 考訂

子　部

諸子合刻類

儒家類

議論經濟 性理 考訂 家訓勸學鄉約

兵家類

法家類

農家類

總說 農桑 蔬果花木 土產

醫家類

天文算法類

推步 算書 目錄叢刻

術數類

數學 占候 占卜 命書相書

藝術類

書畫論 作品 音樂 篆刻 賞鑒器物 製造食品 雜技雜戲 各種韻事 格致 叢刻

雜家類

雜學 雜說 雜纂

類書類

彙考 摘錦

小說家類

雜記雜說 異聞 叢刻

釋家類

道家類

集　部

楚辭類

別集類

漢魏六朝 唐五代 宋 金元 明 淸初 淸中葉前期 淸中葉後期 淸季

總集類

文選 各代 各地 家集 故舊 詩文 樂府 辭賦駢體回文 尺牘 題詠 倡和 投贈 課藝

詩文評類

各代 各地 詩話文話 辭賦駢體時文 叢刻

詞曲類

詞集 詞選 詞話 詞譜詞韻 南北曲 曲選 曲話 曲譜曲韻 目錄叢刻

小說類

短篇小說 章回小說 目錄叢刻

이 四分改修法은 天津圖書館藏書目을 參考하여 만든 「東方文化學院京都硏究所漢籍目錄」에 適用되었던 分類法을 거의 그대로 받아 들인 것이다. 다만 屬에 있어서 若干의 出入이 있고, 部末의 叢書部가 없을 다름이다.

天津圖書館藏書目에 適用되었던 分類法과 比較하여, 그 差異點을 대충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經部에 있어서는 1) 正經正注類를 經注疏合刻類로 고치고 列朝經解類를 없앤 다음 個個의 經典名을 바로 벌리고 있으며, 2) 樂類를 禮類의 끝에 屬으로 附入시키고, 3) 列朝經解類의 爾雅를 小學類 訓詁의 屬에 統合하였으며, 4) 群經總義類를 諸經總義類로 改稱하였다. 5) 屬의 展開에 있어서는 省略된 것이 많고, 그대로 받아 들인 것中에도 多少의 删去가 發見된다. 그러나 追加된 것도 있으니, 그것은 바로 諸經總義類와 小學類의 目錄·叢刻의 屬에 該當된다.

나. 史部에 있어서는 1) 類門의 位置가 多少 바꾸어졌다. 이를테면 傳記類와 詔令奏議類가 바꾸어지고, 時令類가 地理類 앞으로 移動되었다. 2) 譜錄類가 書目類로 改稱되는 同時에, 그 아래에 展開된 家乘年譜와 姓名年齒등의 屬이 傳記類로 移動되었다. 이것은 天津圖書館藏書目에 適用되었던 分類法의 缺點을 是正한 좋은 例의 하나가 된다. 3) 屬의 展開에 있어서는 多少의 出入이 있으며, 그 代表的인 것으로서는 傳記類 書目類 金石類등을 들 수 있다.

다. 子部에 있어서는 1) 南通圖書館의 分類法과 같이 諸子合刻類를 首位에 新設한 것이 特異하며, 2) 類門의 次序와 名稱을 一部 變更하여, 끝에 있던 類書類를 雜家類의 다음으로 옮기고, 小說類를 小說家類로 고치는 同時에 雜記 雜說 異聞 叢刻의 三屬으로 細分하고 章回등의 小說은 集部로 옮기었다. 3) 屬의 展開에 있어서는 역시 出入이 있으며, 그 代表的인 것으로서는 小說家類 藝術家類 術數類등을 들 수 있다.

라. 集部에 있어서는 1) 總集類詩文總集 總集類文總集 總集類詩總集을 없애고 總集類를 마련하여 그 아래서 文選以下 課藝의 12屬으로 細分하고 있으며, 2) 子部에서 純古代小說을 이곳으로 옮기어 小說類아래 收錄하였고, 3) 集部附錄을 删去하였다. 그 中 章回등의 古代小說을 集部아래에 마련한 것은 從來의 因襲的인 分類方法을 果敢

하게 是正한 점에서 크게 評價된다.

마. 叢書總目을 없애고 그 대신 子部 小說家類아래에 叢刻의 屬을 新設하여 雜叢등을 分類하도록 하였음이 特異하다. 이 分類法이 主로 參考하였다고 보여지는 東方文化學院京都硏究所漢籍目錄[113]의 分類法에 있어서는 이 叢書部를 雜叢書 景仿類 및 一人所著書類의 3類로 區分하고 다시 屬으로 細分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를 採擇하지 않고 四庫全書總目의 分類法과 같이 子部 雜家類에 並入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分類法도 批判의 餘地가 없지 않다. 1) 同一한 主題와 關聯된 主題가 分離되어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이를테면 音樂關係書가 經部 樂의 屬과 子部 藝術類의 音樂의 屬으로 나누어져 있고, 史鈔 史評의 純粹한 史書가 正史以下 載記에 이르는 史書의 一群에서 떨어져 있으며, 時令은 四分法에 있어서 歷史보다는 오히려 農家類와 밀접한 關聯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史部에 넣고 있는 것등을 비롯하여, 그外에도 또 들 수 있다. 2) 類門排列이 역시 不合理하다. 이를테면 體裁가 같은 編年類와 古史類라든가, 正史類와 別史類의 一部가 各各 分離되어 있고, 東洋의 主要 諸子인 道家가 道敎의 典籍과 統合되었기 때문에 다른 諸子에서 떨어져 佛家 다음에 位置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著作의 性格이 비슷한 雜家類와 小說家類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등을 들 수 있다. 3) 總類에 該當되는 巨帙의 叢書가 小說家類 叢刻의 屬에 들어 있음은, 위의 四分法의 批評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탐탁치 않다. 4) 各部의 首位에 叢刻類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것은 現代의 影印과 活印에 의한 叢書를 收容하기 위해서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 좋다. 5) 屬의 展開에 있어서 特性에 의한 一定한 基準이 缺如되어 있다. 이를테면 集部 總集類에 있어서는 編輯形式 時代區分 地理區分 文學形式區分 및 其他의 區分이 混雜되어 있어 分類의 區分排列 基準이 缺如되어 있으니, 客觀的인 分類業務가 至難할 것이다. 設使 整理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整理者의 主觀的인 處理에 不過하며, 엉망진창이라는 評을 모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 까닭은 이를테면 한 文學形式인 漢詩가 詩文의 屬 以外에 各代 各地 家集 故舊 題詠 倡和 投贈 課藝등의 各屬으로 흩어지니, 利用者에게는 細分된 보람없이 오히려 不便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現代의 分類原則에 있어서는 받아 들일수 없는 基準임을 指摘해 둔다.

Ⅷ. 長澤氏의 四分改修法案[114]

經　部

1. 易類

　(1) 周易　(2) 附錄

2. 書類

113) 東方文化學院京都硏究所漢籍目錄은 昭和13年(1938)에 刊行되었으며, 이에 適用되었던 分類法은 天津圖書館書目(民國2年)을 參考하여 만든 것이다.

114) 長澤規矩也. 和漢古書分類法(無刊記) pp. 26～33.

(1) 尚書 (2) 附錄

3. 詩類

(1) 毛詩 (2) 三家詩 (3) 附錄

4. 禮類

(1) 周禮 附錄 (2) 儀禮 附錄 (3) 禮記 附錄 (4) 三禮總義 (5) 通禮 (6) 雜禮 (7) 附錄

5. 春秋類

(1) 左氏傳 (2) 公羊傳 (3) 穀梁傳 (4) 春秋總義 (5) 附錄

6. 孝經類

(1) 孝經 (2) 附錄

7. 群經總義類

(1) 群經 (2) 諸經總義 (3) 石經 (4) 附錄

8. 四書類

(1) 大學 (2) 中庸 (3) 論語 (4) 孟子 (5) 學庸 (6) 論孟 (7) 四書 (8) 附錄

9. 樂類

(1) 樂書 (2) 附錄

附. 小學類

(1) 訓詁 (2) 字書 (3) 韻書 (4) 語學 (5) 附錄

史 部

1. 正史類
2. 編年類
3. 紀傳類
4. 紀事本末類
5. 雜史類
6. 傳記類

(1) 各傳 (2) 家譜 (3) 叢傳 (4) 彙纂 (5) 日記 (6) 雜錄

7. 史鈔類
8. 史表類
9. 史料類
10. 史評類
11. 詔令奏議類

(1) 詔令 (2) 奏議

12. 職官類

(1) 官制 (2) 官箴

13. 政書類

(1) 通制　(2) 典禮　(3) 邦計　(4) 軍政　(5) 法令　(6) 外交　(7) 雜著

14. 地理類

(1) 總志　(2) 方志　(3) 河渠　(4) 名蹟　(5) 遊記　(6) 雜記　(7) 邊防外紀　(8) 地圖

附. 目錄類

(1) 史志　(2) 郡邑志　(3) 官藏　(4) 公藏(圖書館・學校)　(5) 家藏　(6) 勸學　(7) 讀書題跋　(8) 專科目　(9) 著述目　(10) 版刻　(11) 禁燬目　(12) 徵訪徵刻　(13) 叢書目　(14) 引書目　(15) 書誌學　(16) 叢刻　(17) 雜書

子　部

1. 儒家類
2. 道家類
3. 兵家類
4. 法家類
5. 農家類

(1) 農書　(2) 時令

6. 醫家類

(1) 醫經　(2) 經脈　(3) 藏象　(4) 診法　(5) 運氣　(6) 方論　(7) 史傳　(8) 本草

7. 天文算法類

(1) 天文　(2) 算書

8. 術數類

(1) 術學　(2) 占候　(3) 相宅相墓　(4) 占卜　(5) 命書相書　(6) 陰陽五行　(7) 雜技術

9. 藝術類

(1) 金石　(2) 書畫　(3) 法帖　(4) 音樂　(5) 篆刻　(6) 雜技

10. 譜錄類

(1) 器用　(2) 食譜　(3) 草木鳥獸虫魚

11. 雜家類

(1) 雜學　(2) 雜考　(3) 雜說　(4) 雜事　(5) 雜品　(6) 雜纂　(7) 異聞　(8) 瑣語

12. 類書類
13. 佛教類
14. 道教類
15. 回教・祆教・基督教類

附. 西學類

集　部

1. 別集類

(1) 漢魏六朝 (2) 唐·五代 (3) 宋 (4) 金·元 (5) 明 (6) 清 (7) 民國 (8) 共和國

2. 總集類

(1) 楚辭 (2) 文選 (3) 斷代 (4) 通代 (5) 郡邑 (6) 家集 (7) 倡和 (8) 制藝

3. 尺牘類

(1) 個人集 (2) 諸家集 (3) 作法作例

4. 詩文評類

5. 詞曲類

(1) 詞集 (2) 詞選 (3) 詞話 (4) 詞譜·詞韻 (5) 曲譜·曲韻 (6) 散曲 (7) 曲話

附. 戲曲小說類

(1) 戲曲 (2) 小說

附. 叢書部

1. 經類 2. 史類 3. 子類 4. 集類 5. 宋元雜叢 6. 明代雜叢 7. 淸代雜叢 8. 近代雜叢 9. 全集 10. 家集 11. 郡邑 12. 古逸影仿 13. 輯佚

이 四分改修法은 斯界에 權威가 있는 長澤氏가 多年間 硏究하고 檢討하여 만든 것이므로, 다른 四分改修法의 長點을 많이 받아 들인 것中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筆者로서 이에 대하여 私見을 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經部에 있어서 1) 群經總義類를 個個의 經典뒤에 둔 것은 論理的인 區分排列의 逆順이 된다. 이 類門은 鏤板考의 總經類와 같이 首位에 두고, 必要에 따라 거기서 諸經注疏合刻 諸經總義 石經등으로 細分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勿論 書目答問과 이를 參考하여 만든 系列의 分類法이 그러하듯이, 正經 및 그 注疏合刻本을 首位에 두고 諸經總義를 個個經典의 뒤에 두는 것이 名分上의 理致에 適中되는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實用上으로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할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同一한 主題와 關聯된 主題가 名分에 구애된 나머지 分離되어 利用上 不便하기 짝이 없으며, 한편 個個의 經典을 보면 이것들은 正經과 그 注疏 및 傳義 또는 經解書가 함께 分類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前者에 대하여 書目答問補正을 보면, 十三經注疏는 經部 首位에 있는 正經正注에 있고, 淸 阮元 撰의 十三經注疏校勘記는 個個의 經典뒤에 있는 諸經目錄文字音義之屬에 들어 있다.[115] 이것은 同系列의 分類法을 답습한 大阪府立圖書館漢籍目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經部 首位에 있는 經注疏合刻類와 個個의 經典뒤에 있는 諸經總義類의 諸經校刻文字之屬이 分離되어 있다.[116] 十三經注

115) 張之洞. 前揭書, p. 1 & 20.

116) 大阪府立圖書館. 漢籍目錄四部之部. 大阪, 昭和41(1966) p. 1 & 21.

疏와 이를 校勘한 것이 이렇듯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 어찌 利用上 不便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이 兩者는 함께 있거나, 적어도 가까운 位置에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大抵 分類라는 것은 一言而敝之하여 同一한 主題를 함께 모으고, 關聯된 主題를 가까운 位置에 있도록 하는 作業임을 다시 한번 强調하는 바이다. 後者에 대하여는 어느 目錄을 보더라도 「周易」이라면 그 正經을 비롯하여 「易經集注」「周易大傳」「周易經傳」「周易本義辯證」「周易詮疑」「周易義例釋」「周易指」「易經爻辰貫」등이 다 함께 分類되어 있어 그 利用이 매우 便利하다. 따라서 經總類도 個個經典의 경우와 같이, 正經合刻書 諸經注疏合刻書 諸經總義書를 다같이 한 곳에 分類하되, 總括的인 名辭가 一定한 基準에 따라 限定된 各辭의 順으로 漸進區分되어 가는 分類法의 基本原則에 따라 經部의 首位에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原則은 또한 通禮 三禮總義 春秋總義 四書에도 適用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2) 樂類는 樂緯의 位置를 考慮하여 여기에 分類하도록 하였는데, 한편 子部 藝術類 音樂의 屬에 分類하는 것과의 限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땅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經部에 分類하는 경우 그 位置는 樂類가 六經의 하나에 該當되므로, 春秋類 다음에 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漢學의 習得을 위한 辭典類格인 小學은 본시 傳統的인 經典이 아니라, 七略의 六藝略에 附入된데서 그 位置가 固定되었고,[117] 그 中 訓詁書인 爾雅가 經典中心으로 편찬되어 群經과 함께 位置하게 됨으로써, 經典 끝에 附入시키는 分類觀念이 더욱 굳어졌다. 이러한 分類方法은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不得已한 조처임을 是認하나, 原則的으로는 漢學의 習得을 위한 字典으로서 語學의 範疇內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類門은 이 分類體系의 短點이라기 보다는 四部分類法에 대한 短點이 되는 것이다.

나. 史部에 있어서, 순수한 史書를 主題 即 內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편찬의 體裁에 의하여 分類하는 것은, 形式主義를 尊重했던 封建時代의 遺產에 지나지 않으며, 또 事實上 分類原則에 있어서도 別로 重要한 要件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傳統的인 分類方法이 圖書館에 있어서 아직도 適用되고 있으니, 그에 대하여 私見을 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正史類와 紀傳類가 편찬體裁上으로 볼 때 다같이 紀表志傳의 形式으로 되어 있는데, 內容보다도 體裁爲主를 區分排列의 原則으로 삼으면서도 兩者를 分離시켜 並立시킨 것은, 그것이 비록 正閏論을 尊重視한 正史를 爲主로 하려는데서 말미암은 不得已한 조처라고는 하더라도, 分類法의 制定上으로는 탐탁치 않은 處理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正史의 體裁를 中心으로 類門을 羅列하려는 傳統的인 方法을 살리면서, 別史의 類門만을 改稱한데서 惹起된 矛盾이다. 또한 指摘할 것은 別史類가 正史에서 岐出旁分했다 하여 모두가 반드시 紀傳體史書라고 斷定할 수 없다는 點이다. 四庫全書總目에 의하면, 正史의 起草 證明 및 異同을 檢校하는데 利用된 것으로서, 正史를 相輔할 수 있는 資料가 別史類로 되어 있다. 그 中에는 勿論 紀傳體史書가 大部分을 차지

117) 班固. 前揭書, 藝文志 六藝略 小學十家.

하고 있지만, 그 外에도「建康實錄」이라든가,「欽定歷代紀事年表」「歷代史表」「遼大臣年表」라든가,「歷代帝王纂要譜括」「蜀漢本末」「欽定續通志」등이 들어 있는 것이다.[118] 그러나 別史類가 본시 正史의 支派로서 正史에 列入시킬 수 없는 史書의 分類를 위해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大部分이 紀傳體史書인 것만은 事實이니, 氏의 案에 私見을 加해 본다면, 차라리 正史類를 紀傳類로 고치고 그 屬을 正史와 別史의 順으로 區分해서 四分法의 傳統的인 體例를 지키며, 紀傳體 以外의 史書는 편찬體制에 의하여 該當類 또는 雜史類로 類入시킨다. 또한 다음의 編年類도 古史와 通鑑以後編年史의 兩屬으로 區分하여 均衡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까닭은 分類法의 區分排列에 있어서 編纂體裁를 特性으로한 경우, 그에 관한 어떤 共通的인 概念을 지닌 名稱을 兩分시키는 것은 矛盾이며, 마땅히 單一의 名稱을 擇하고 그 아래서 外延을 適用시켜 一貫性있게 細分해 나가는 것이 原則이기 때문이다.

2) 史鈔類는 없애도 무방하다. 史鈔는 史書의 拔鈔書이므로, 原書의 편찬體制에 따라 같은 位置에 오도록 分類하면, 同一한 主題가 接近되어 매우 바람직하다. 2種 以上 3種까지의 史書를 鈔錄한 경우는, 分類原則에 따라 그 中 첫번째의 著作 또는 重要한 著作을 基準으로하여 主分類하며, 目錄은 必要에 따라 分出記入하면 되는 것이다. 3種以上의 史書를 鈔錄한 것은, 그 內容이 史評關係書이면 史評類, 職官關係書이면 職官類, 그리고 雜多한 史書系統의 것이라면 雜史에 類入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例컨대 十八史略을 鈔錄하였다면 그것이 본시 紀傳體 別史에 該當되므로 別史, 또는 紀傳類를 正史 別史 史鈔의 3屬으로 細分한 圖書館에 있어서는 紀傳類 史鈔의 屬에 各各 分類하면 되는 것이다.

3) 史料類는 記錄類로 고치어 政書類 다음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詔令奏議類 職官類 政書類를 史部에 列入시킨 것은, 長澤氏 自身도 言及하고 있듯이, 各各 史料로서 成立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119] 따라서 史料라는 名稱이 內包하고 있는 概念에는 記錄類 以外에도 이들 諸類가 모두 包括되므로, 그 中 어떤 一部의 資料에 대해서만 일컫는 것은 不適當하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史料類를 記錄類로 고치어 政書類 다음에 두고 史料로서 價値있는 各種의 記錄類를 여기에 分類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 目錄類는, 四分法의 批評에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紀傳體史書中 志의 經籍志 또는 藝文志에 該當되므로 史部에 列入시킨 것이나, 그러나 主題의 觀點에서 보면 四部各分野의 典籍이 網羅되어 있기 때문에, 原則的으로 이곳에 分類하는 것이 不適當하다. 이것도 이 分類體系의 短點이라기보다는 四部分類法의 短點이라고 指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長澤氏가 附錄의 叢書部에 마련한 史類는, 江蘇省立國學圖書館이 史部 끝에 마련한 史總類와 같은 性格의 것으로서, 筆者는 史部의 首位로 옮기는 것을 贊成한다. 그

118)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五十 史部六 別史類.

119) 長澤規矩也. 前揭書, pp. 28~29.

理由는 이미 위의 經部 1)에서 言及한바와 같다.

6) 끝으로 史部 各類門의 排列順序에 있어서도 一定한 基準을 設定하고 그에 따라 再檢討가 加해져야 한다고 느껴진다.

다. 子部에 있어서 1) 諸子인 道家中에 宗教로서의 道教가 包含된 것을 分離시켜 老莊學派 中心의 道家類를 儒家類 다음에 두고, 宗教로서의 道教를 佛教類다음에 둔 것은 適切한 措處라고 본다.

2) 推步를 天文, 術數의 易學을 術學으로 改稱하고, 時令을 農家類로 옮긴 것도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適切한 조처라고 생각한다.

3) 藝術아래의 金石의 屬은 너무나도 편협하게 다루었다. 金石學이라면 그 範圍가 넓어서 儒·佛·道의 石刻類와 이에서 摹拓한 拓本. 鍾 鼎 彝 璽印등 金石玉木類의 器具및 遺物에 새겨진 文字, 甲骨卜辭와 같은 圖像의 訓釋 그리고 目錄등을 그 硏究의 對象으로 삼을 수 있으며, 벌써 宋代 以後 專門的인 學問으로 成立되었다.[120] 그러므로 獨立된 類門으로 設定하여야 하며, 그 位置는 위의 四分法의 批評에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古考美術과 關聯시킨 見地에서는 子部, 歷史補助學의 見地에서는 史部에 各各 列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歷史補助學으로서 더욱 重視하는 傾向이 있으므로, 後者를 擇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121]

4) 漢書藝文志에 傳하는 「諸子十家 其可觀者 九家而已」云云中의 墨·名·縱橫의 三家를 所傳의 資料가 적다하여,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와 같이, 雜家類의 雜學의 屬에 넣어 主要諸家에서 分離시킨 것은 再考의 餘地가 있다고 느껴진다. 漢書藝文志에 傳하는 雜家의 概念과 전혀 달라서 混沌의 우려가 있으니, 차라리 墨·名·縱橫家類의 類門을 設定하여 法家類 다음에 獨立시켜 주고 그 아래서 이를 3屬으로 細分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한다. 그리고 小說家도 본시 稗官에서 나와 街談巷語를 記載하는 일을 爲主로 하는 學派이다. 따라서 그 內容이 雜家類의 雜說과 近似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性格이 다르니, 四庫全書總目과 같이 一類門으로 獨立시켜 주는 것이 좋으리라 여겨진다. 內容이 近似하기로는 小說家類의 雜事와 史部의 雜史類가 더 할런지 모른다. 四庫全書總目의 著錄의 體例를 보면 朝政 및 軍國大事를 記述한 것은 雜史에 넣고, 里巷閭談과 詞章細故는 小說家類의 雜事에 넣으라고 하였으나, 그 限界가 모호한 것이 적지 않다.[122] 이와같이 近似性問題는 비단 雜家類와의 關係뿐만이 아님

120) 鄭樵 撰의 通志에서는 藝文略以外로 金石略을 마련하였던 것이니, 벌써 그 當時 이에 관한 著作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21) 金石學의 分類方法을 史的으로 考察하면, 隋書經籍志 舊唐書經籍志 新唐書藝文志에서는 經部 小學類에, 宋史 藝文志와 文獻通考 經籍考에서는 史部目錄類에, 明代의 陳第 撰인 世善堂書目과 清代의 錢謙益 撰인 絳雲樓書目에서는 集部에, 역시 清代의 孫星衍 撰인 祠堂書目과 繆荃孫 撰인 藝風藏書記에서는 一部類로 獨立시켜 史部와 同位置에, 前揭한 江蘇省立國學圖書館書目에서는 史部에 各各 分類하였다.

122) 上揭書, 卷一百四十一 子部 五十一 小說家類 雜事之屬 後敍에
「案紀錄雜事之書 小說與雜史 最易相淆 諸家著錄 亦往往牽混 今以述朝政軍國者入雜史 其參以里巷閒談詞章細故者 則均隸此門 世說新語 古俱著錄於小說 其明例矣」

에도 불구하고 이에 拘碍되거나, 또 小說家類의 名稱이 現代小說과 混同되기 쉽다 하여 雜家類에 억지로 統合시킨 것은 不當하지 않을까 하는 私見이다. 그 보다는 차라리 小說家類를 살리고, 細分하기 까다로운 경우는 그 아래의 屬을 統合하는 것이 좋으리라 여겨진다. 그렇지 않으면 또하나의 方法으로서는, 雜家類中 雜纂의 一部와 雜編은 叢書로 돌리고, 雜考 雜說 雜品 雜纂의 大部分은 隨錄類의 獨立된 類門을 마련하고[123] 그 아래에 수록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5) 西學類를 附入한 것은 본시 一家見의 學說을 爲主하였던 子部가 마치 後代에 印出되는 新書의 淵藪와 같은 印想을 주게 되므로 탐탁치 않으나,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넘길 수 밖에 없다.

6) 우리나라의 實情을 反映시키기 위해서는, 그 外에도 譯學類를 新設하여야 하고, 또 子叢類를 子部의 首位에 두어야 함은 이미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다.

라. 集部에 있어서 1) 戱曲小說類를 附入시킨 것은 適切한 處理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 總集類에 있어서 屬의 細分은 一定한 基準이 缺如되어 있어 分類의 混雜을 모면키 어렵다. 그 屬의 細分을 보면 楚辭와 같은 文學形式區分과 文選 家集 倡和 制藝와 같은 編輯形式區分이 適用되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斷代 通代와 같은 時代區分과 郡邑과 같은 地理區分이 混用되고 있다. 分類의 細分은 어떤 하나의 特性을 基準으로 始終一貫性있게 展開시켜야만 體系있는 分類作業을 遂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別集類에 있어서와 같이 時代區分으로 一貫性을 期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의 여러 區分中 어느 하나로 一次的인 區分을 하고, 必要하다면 다른 또 하나의 區分을 適用시켜 二次的인 細分을 하는 것이 分類法制定에 있어서 原則인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이 屬의 細分은 마땅히 再檢討가 加해져야 한다. 3) 集部에 있어서 集總類는 總集類의 屬 細分 如何에 따라 必要한 경우와 必要치 않은 경우가 있다. 萬一 總集類가 詩文總集으로 限定된다면 集總類를 首位에 마련할 必要가 있고, 江蘇省立國學圖書館과 같이 總集類가 文學形式에 따라 賦編 詩編 文編 詞編 曲編으로 細分된다면 總編의 一屬만을 그 첫머리에 增設하는 程度로 充分하다.

마. 附, 叢部에 있어서 1) 各部에 該當하는 叢書만은 그 部의 首位에 分類하게 되므로 不必要하다. 首位에 오도록 하는 까닭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同一한 主題와 關聯된 主題의 資料를 上位概念에 該當되는 것으로부터 下位概念에 該當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漸進的으로 配架하여, 比較的 가까운 位置에서 이들 資料를 손쉽게 얻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2) 따라서, 四部의 末尾에 둔 叢書部도 當然히 四部의 첫머리에 另立하고, 四部를 包括하는 叢書 全集을 分類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있듯이, 雜史와 雜事의 限界는 區分되어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그 分類가 매우 까다롭다.

123) 朝鮮圖書解題. 京城, 朝鮮通信社, 昭和7(1932) 子部 隨錄類 參照.

第五節 獨自的 展開法

前節에서 四分法의 改修論이 明代부터 싹터 오던 中 四庫全書總目의 分類法에 대한 批判이 加해진 以後에 漸高되었고, 西學의 輸入과 더불어 本格化되었음을 言及하였거니와, 이와 때를 같이하여 金科玉條로 삼아왔던 四部分類法을 打破하고 全的으로 새로운 分類法의 制定을 主張하는 改革派도 登場하였다. 이 當時의 改革論者는 傳統的인 四部의 範疇를 果敢하게 벗어나 類門의 數에 拘碍받지 말고 自由自在로 이를 展開하여 新·舊書를 併合分類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四部分類法에 대한 打破論의 胎動은 明代보다도 훨씬 以前인 南宋代로 소급된다. 다만 南宋代에는 東洋古書의 自由自在로운 分類를 위한 가냘픈 呱聲에 지나지 않았고, 西學의 導入 以後는 新·舊書의 併合分類를 위한 多數의 외침이었던, 말하자면 그 性格에 差異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四部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獨自的으로 展開한 分類法에 대하여는 南宋代로부터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이다.

Ⅰ. 中國의 十二分法 및 其他의 古用書 展開法

經類第一

易

古易 石經 章句 傳 注 集注 義疏 論說 類例 譜 考正 數 圖 音 讖緯 擬易

書

古文經 石經 章句 傳 注 集注 義疏 問難 義訓 小學 逸篇 圖 音 讀書 讖緯 逸書

詩

石經 故訓 傳 注 義疏 問辨 統說 譜 名物 圖 音 緯學

春秋

經 五家傳注 三傳義疏 傳論 序 條例 圖 文辭 地理 世譜 卦繇 音 讖緯

國語

注解 章句 非駁 音

孝經

古文 注解 義疏 音 廣義 讖緯

論語

古論語 正經 注解 章句 義疏 論難 辨正 名氏 音釋 讖緯 續語

爾雅

注解 圖 音 義 廣雅 雜爾雅 釋言 釋名 方言

經解

經解 謚法

禮類第二

周官

傳注 義疏 論難 義類 音 圖

儀禮

石經 注 疏 音

喪服

傳注 集注 義疏 記要 問難 儀注 譜 圖 五服圖儀

禮記

大戴 小戴 義疏 書鈔 評論 名數 音義 中庸 讖緯

月令

古月令 續月令 時令 歲時

會禮

論鈔 問難 三禮 禮圖

儀注

禮儀 吉禮 賓禮 軍禮 嘉禮 封禪 汾陰 諸祀儀注 陵廟制 家禮祭儀 東宮儀注 后儀 王國州縣儀注 朝會儀 耕籍儀 車服 國璽 書儀

樂類第三

樂書 歌辭 題解 曲簿 聲調 鐘磬 管絃 舞 鼓吹 琴 讖緯

小學類第四

小學 文字 音韻 音釋 古文 法書 蕃書 神書

史類第五

正史

史記 漢 後漢 三國 晋 宋 齊 梁 陳 後魏 北齊 後周 隋 唐 通史

編年

古魏史 兩漢 魏 吳 晋 宋 齊 梁 陳 後魏 北齊 隋 唐 五代 運暦 紀錄

覇史

上 下

雜史

古雜史 兩漢 魏 晋 南北朝 隋 唐 五代 宋

起居注

起居注 實錄 會要

故事

職官

上 下

刑法

律 令 格 式 敕 總類 古制 專條 貢學 斷獄 法守

傳記

耆舊 高隱 孝友 忠烈 名士 交遊 列傳 家傳 烈女 科第 名號 冥異 祥異

地理

地理 都城宮苑 郡邑 圖經 方物 川瀆 名山洞府 朝聘 行役 蠻夷

譜系

帝系 皇族 總譜 韻譜 郡譜 家譜

食貨

貨寶 器用 豢養 種藝 茶 酒

目錄

總目 家藏總目 文章目 經史目

諸子類第六

儒術

道家

老子 莊子 諸子 陰符經 黃庭經 參同契 目錄 傳 記 論 書 經 科儀 符籙 吐納 胎息 內視 道引 辟穀 內丹 外丹 金石藥 服餌 房中 修養

釋家

傳記 塔寺 論議 銓述 章鈔 儀律 目錄 音義 頌贊 語錄

法家

名家

墨家

縱橫家

雜家

農家

小說

兵家

兵書 軍律 營陣 兵陰陽 邊策

天文類第七

天文

天象 天文總占 竺國天文 五星占 雜星占 日月占 風雲氣候占 寶氣

曆數

正歷 歷術 七曜歷 雜星歷 刻漏

算術

算術 竺國算法

五行類第八

易占 軌革 筮古 龜卜 射覆 占夢 雜占 風角 鳥情 逆刺 遁甲 太一 九宮 六壬 式經 陰陽 元辰 三命 行年 相法 相笏 相印 相字 堪輿 易圖 婚嫁 產乳 登壇

宅經 葬書

藝術類第九

藝術 射 騎 畵錄 畵圖 投壺 奕碁 博塞 象經 樗蒱 彈碁 打馬 雙陸 打毬 彩選 葉子格 雜戲格

醫方類第十

脈經 明堂鍼灸 本草 本草音 本草圖 本草用藥 採藥 炮炙 方書 單方 胡方 寒食散 病源 五藏 傷寒 脚氣 嶺南方 雜病 瘡腫 眼藥 口齒 婦人 小兒 食經 香薰 粉澤

類書類第十一

上 下

文類第十二

楚辭 歷代別集(以朝代細分) 總集 詩總集 賦 贊頌 箴銘 碑碣 制誥 表章 啓事 四六 軍書 案判 刀筆 俳諧 奏議 論 策 書 文史 詩評

이 展開法을 南宋初에 鄭樵가 편찬한 것으로서, 類門을 12類로 設定한 다음 이를 155의 小類로 區分하고 다시 그 아래서 284目으로 細分하고 있는바, 그 規模가 當時로서는 처음 보는 것에 該當된다.[124] 隋書經籍志 以來 主用해 왔던 傳統的인 四部分類法을 打破하고, 또 이미 以前에 있었던 七分法의 體裁에 의해서도 拘碍를 받음이 없이, 이토록 大膽하게 새로운 分類法을 創案하였음은 정녕 놀라운 業績이 아닐 수없다.

隋書經籍志에 比하면 經類에 國語와 經解의 小類, 史類에 食貨의 小類, 藝術類 및 類書類등이 新設되고, 史部의 儀注가 禮類의 小類로 옮겨졌으며, 儒道釋의 3家가 앞에 並列되어 있음이 特異하다.

이 分類法의 特徵으로서는, 1) 七分法과 四分法을 參酌하면서도 經部를 4類, 子部를 6類로 區分해서 各各 獨立된 類門으로 만들고, 史部는 史類, 集部는 文類로 고치어 도합 12類門으로 設定함으로써, 從來의 因襲的인 分類觀을 果敢하게 打破하였다는 點, 2) 分類法을 155의 小類와 284의 分目으로 細密하게 展開한 것이 初有였다는 點, 3) 四部分類法이 內容보다도 主로 體裁 또는 名分爲主로 組織되었음에 反하여, 이 分類法은 主로 內容爲主로 自由스럽게 展開되었다는 點, 4) 分類法이 細分되어 있기 때문에 「一類之書 當集在一起 不可有所間也」[125]云云과 같이 同類의 圖書가 한곳에 모일 수 있다는 點, 5) 分類法이 詳細하여 食貨 國語등의 새로운 類門이 登場하였다는 點 등을 들 수 있다.[126]

鄭樵의 이러한 分類思想은 明·淸代에서도 繼承되었으며, 그 結果 各種의 獨自的인 古書用 展開法이 생겨 났다. 이를테면 十二分法으로서는 淸代의 孫星衍 撰인 「孫氏祠

124) 鄭樵. 通志. 上海, 世界書局, 民國25. 藝文略.

125) 上揭書, 校讎略.

126) 蔣元卿은 前揭書 pp. 72~73에서 이 分類法의 功獻으로서, 1)「分類貴有條理」 2)「分類宜細密」 3)「分類圖書應以內容爲主」 4) 「同類之書必歸入一類」 5)「分類時要細看內容」을 들어 分類의 理論이 精深함을 好評하고 있다.

堂書目」에 適用되었던 分類法이 또한 손꼽히고, 明代의 陸深 撰인 「江東藏書目錄」은 十四分法, 孫樓 撰의 「博雅堂藏書目錄」과 孫能傳 等奉論撰의 「內閣書目」은 十八分法, 茅坤 의 「白華樓藏書目錄」은 九學十部分法으로 各各 整理되었다. 特히 淸代에 있어서 錢曾 撰의 「述古堂藏書目錄」 같은 것은 無慮 78類로 區分되어 있고, 이러한 例를 본딴 王聞遠 撰의 「孝慈堂書目」은 85目으로 바로 區分까지 하였다.

民國時代의 東洋古書用 展開分類法으로서는 裘開明 編의 「漢和圖書分類法」이 으뜸으로 꼽힌다. 이것은 美國議會圖書館의 展開分類法(LC)의 편찬體裁를 본따서 東洋學을 展開시킨 것으로서, 現代分類法으로서의 要件을 完全히 갖춘 展開分類法이다. 다시 말하면 組織的인 體系는 西歐의 展開分類法에서 導入하고, 內容은 中國 從來의 여러 分類法을 參考하여 엮은 것이며, 現在 美國의 哈佛燕京學社圖書館 所藏인 漢和韓의 古書 整理에 適用되고 있다.[127]

Ⅱ. 韓國의 古書用 展開法

韓國의 古書를 整理한 書目과 藏書目錄에 適用된 獨自的인 展開法에 대하여는 第二章 第一節 古書分類法의 概觀에서 대충 紹介하였거니와, 그 中 代表的인 것을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朝鮮書誌의 九分法

敎誨部(enseignement)
　敎育類 簡牘類 入門類
言語部(étude des langues)
　漢語類 淸語類 蒙古類 倭語類 梵語類
儒敎部(confucianisme)
　經書類 聖蹟類 儒家類
文墨部(littérature)
　詩歌類 文集類 傳說類 雜書類
儀範部(moeurs et coutumes)
　禮儀類 治理類
史書部(histoire et géographie)
　東史類 東雜蹟類 中史類 地理類
技藝部(science et arts)
　算法類 天文類 術數類 兵家類 醫家類 農蠶類 樂譜類 藝術類
敎門部(religions)
　道敎類 佛敎類 天主敎類 耶蘇敎類
交通部(relations internationales)

127) 裘開明. 漢和圖書分類法. 哈佛燕京學社圖書館, 1946.

條約類 貿易類 新報類

이것은 佛蘭西人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舊韓末때 佛蘭西公使館의 書記로서 우리나라에 와 있었을 때 蒐集한 資料를 비롯하여, 다른 佛蘭西人의 蒐集本과 日本 大英博物館등에서 調査한 韓國古典을 整理한 Bibliographie Coréenne(朝鮮書誌)에 適用되었던 分類法이며, 도합 9部 36類로 展開되어 있다.[128]

分類法의 內容을 四部分類法과 비겨보면, 1) 敎誨部는 한글과 漢文의 訓蒙用 各種資料 및 尺(簡)牘으로서 兒童用 入門書와 尺牘이기 때문에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小學類와 集部에 該當되고, 2) 言語部는 漢文의 字書 韻書 및 東洋諸語의 學習書로서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經部의 小學類 및 子部의 譯學類에 該當된다. 3) 儒敎部는 經書와 儒書의 漢文 및 國譯本으로서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經部와 子部의 儒家類, 4) 文墨部는 詩文의 別集 總集 小說 및 隨聞雜錄으로서 集部와 子部의 小說家類 雜家類, 5) 儀範部는 儀典과 政法關係書로서 史部의 政書(法)類 詔令奏議類 및 職官類, 6) 史書部는 韓國 中國의 歷史地理書로서 史部의 純粹한 史類와 地理類, 7) 技藝部는 術數와 兵家關係書를 除外하면 科學과 藝術에 該當되는 古書로서 子部의 術數類 兵家類 天文算法類 醫家類 農家類 및藝術類, 8) 敎門部는 宗敎關係書로서 子部의 道家類 釋家類 및 其他宗敎類, 9) 交通部는 外交關係書 및 新聞으로서 그中 前者는 史部 政書(法)類에 各各 該當된다.

分類法에 있어서 어떤 論理的인 體系를 찾아 볼 수 없고 또 不適當하다고 느껴지는 곳도 적지 않으나, 그러나 西歐人의 立場에서 從來의 傳統的인 分類法에 拘碍되지 않고 엮은 開拓作인 것이 그 特徵이다.

나. 鮮册名題의 十分法

史記篇

　中朝類 國史類 野乘類

記注篇

　詔令類 御製類 奏議類 承宣類 經筵類 翰苑類 東宮類

儀注篇

　通禮類 祭祀類 國恤類 陵墓類 冠婚類 册封類 燕射類 朝聘類 樂類 輿服類

政敎篇

　通制類 選擧類 職官類 貢賦類 刑獄類 衛戌類 外任類

地理篇

　通志類 京畿類 湖西類 嶺南類 湖南類 關東類 海西類 關西類 關北類 外域類

傳記篇

　譜牒類 人物類一(宗室) 人物類二(麗朝～鮮初) 人物類三(太宗～燕山君朝) 人物類四(中宗～明宗朝) 人物類五(宣祖～光海君朝) 人物類六(仁祖～顯宗朝) 人物類七(肅宗朝) 人物類八(景宗～英宗朝) 人物類九(正宗 以後) 集傳類

128)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tome 1～3. Paris, Ernest Leroux, 1894～96 & Supplément. Paris, 1901.

附，中朝人物類

儒門篇

古典類 宋學類 敎化類 儒家類上 儒家類下

道釋篇

道錄類 佛典類 釋家類

方術篇

曆算類 陰陽類 醫藥類 農藝類

文藝篇

文字類 事文類 方言類 詞章類 俚文類 藝玩類 文人類上 文人類下

이것은 日本人 前間恭作이 京城駐剳朝鮮公使館 通譯官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1904·5年頃부터 1942年까지 近 40年間에 걸쳐 蒐集한 이른바 在山樓藏本(現在 東洋文庫藏本)을 비롯하여, 奎章閣 西庫舊藏 楠文院舊藏 宮內府舊藏 四史庫舊藏 統監府舊藏과 日本의 足利學校藏本 尊經閣本 駿河文庫舊藏[129] 紅葉山文庫舊藏[130] 養安院舊藏[131] 白山黑水文庫舊藏[132] 淺見倫太郞舊藏[133] 및 其他 諸文庫藏本[134]을 널리 調査하여 整理한 「鮮册名題」[135]에 適用되었던 分類法이다. 韓國의 古書를 위한 獨自的인 展開分類法中 가장 詳細한 것이 되며, 도합 10篇 69類로 展開되어 있다.

分類法의 內容을 四部分類法과 비겨 보면, 1) 史記篇은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史部의 純粹한 史書類에 該當하는 것에, 編纂體裁에 關係없이 中國과 韓國의 地理區分을 適用시켰고, 野乘類는 野人이 지은 史書로서, 역시 편찬體裁에 關係없이 四部分類法의 編年類 紀事本末類 雜史類에 該當되는 것을 一括 수록하였다. 그러나 分類의 限界가 一定하지 않으며, 野人이 지은 것이 國史類에도 들어 있는 등 混雜을 免치 못하고 있다.

2) 記注篇은 참으로 複雜하다. 詔令 奏議의 2類는 史部의 詔令奏議類에 바로 該當되나, 御製類는 여러곳으로 흩어지게 된다. 이를테면 列聖御製는 集部의 總集類, 仁廟御製는 集部의 別集類, 列聖御筆은 子部의 藝術類로 歸入되는 것이다. 承宣 以下

129) 德川家康의 死後 세아들에게 分與되었다. 그 中 義直의 尾張家 또는 尾州家本이 現蓬左文庫本이고, 賴宣의 紀井 또는 紀州本은 紀伊藩文庫本으로 存續하다가 明治때에 일부가 흩어져서 여러 圖書館으로 들어갔고, 一部는 南葵文庫로 넘어갔다. 賴房의 水戶家本은 第2次大戰때 彰考館文庫의 戰禍로 燒失되었다.

130) 楓山文庫라고도 일컬었으며, 現內閣文庫의 前身이 된다.

131) 豊臣秀吉의 侍醫이며 參謀구실을 한 曲直瀨正琳에게 준 數10筒의 韓國本이 養安院藏書로 내려오다가 그 후 흩어져서 現在 各圖書館에 分藏되어 있다.

132) 明治末年 南滿鐵道會社調査部가 수집한 것으로 東京帝國大學으로 옮겼다가 大正年間의 地震으로 湮沒되었다.

133) 三井文庫로 移管되었다가 그 後 California 大學으로 팔려 現藏되고 있다.

134) 其他의 諸文庫藏本으로서 求古樓 懷山樓 東雅堂 靑歸書屋 內務省博物館舊藏등을 들수 있다.

135) 古鮮册譜는 書名을 日本語의 五十音順으로 標出排列하여 만든 書目이며, 이 鮮册名題는 이를 分類順으로 엮은 書目으로서, 前者와는 姉妹篇格의 關係에 있다.

東宮의 諸類도 또한 單純치 않다. 이를테면 承宣類의 承政院日記는 史部의 編年類, 經筵類의 經筵故事는 史部의 記錄類, 翰苑類의 日省錄은 史部의 編年類, 奎章閣志 및 弘文館志는 史部의 職官類(職官類가 없는 경우는 政法類), 東宮類의 春坊故事는 史部의 記錄類에 該當된다.

3) 儀注篇은 史部 政書類의 典禮에 該當되며, 그 名稱은 隋書經籍志에서 비롯하였다. 여기에 들어 있는 樂類는 禮樂이기 때문에 典禮에 類入되어도 무방하다.

4) 政敎篇은 史部의 職官類와 政書(法)類에 該當된다.

5) 地理篇은 史部의 地理類에 該當된다.

6) 傳記篇은 史部의 傳記類에 該當되나, 여기에는 行狀 年譜 世譜 族譜 以外에 文集을 비롯한 諸著作이 함께 分類되어 있어 煩雜하기 짝이 없다. 一貫性있는 分類가 자못 아쉽다. 그中 文集은 當然히 文藝篇에 分類되어야 하며,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集部에 該當되는 것이다.

7) 儒門篇은 經部의 經典類와 子部의 儒家類를 合친 것이 特徵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古典類에 基本經典이 아닌 荀子 管子등이 混入되어 있고, 儒家類에는 文集과 年譜등이 混入되어 分類가 混雜한 것이 缺點이다.

8) 道釋篇은 子部의 道家類 釋家類에 該當된다. 道籙類에는 道家와 宗教로서의 道教에 관한 古典이 並入되어 있고, 釋家類에는 佛家文集이 아울러 並入되어 있다.

9) 方術篇은 子部의 天文算類 術數類 醫家類 農家類와 史部의 時令類에 該當되며, 그 名稱은 方技와 術數에서 한字씩 따서 만든 것이다.

10) 文藝篇은 集部에 該當되는 以外에도, 文字類는 經部의 小學類, 事文類는 子部의 類書類, 方言類는 子部의 譯學類, 藝玩類는 子部의 藝術類에 各各 該當되는 것이 合쳐졌다.

이 分類法의 體系를 要約하면, 史記 以下 傳記의 6篇은 史部, 儒門 以下 方技의 3篇은 經部와 子部, 그리고 文藝의 1篇에는 經部 子部 集部가 混合되어 있는 獨自的인 것임을 알 수 있으나, 그러나 한편 위에서도 間間히 指摘한바와 같이, 分類에 있어서 確固한 基準이 서 있지 않고 너무나도 主觀的으로 處理했기 때문에 分類의 亂脈相을 들어내 주고 있음이 一大缺點이다.

Ⅲ. 西學導入以後의 新古書用 各種展開法

新·古書의 併合分類를 위한 展開法은 西學의 輸入과 더불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 開拓期의 것은 中國의 徐樹蘭이 紹興에 設置한 公開圖書館의 「二分展開法」이 될 것이다. 그 內容[136]은

學 部

易學 書學 詩學 禮學 春秋學 四書學 孝經學 爾雅學 郡經總義學 性理學 生理學

136) 清光緖30年(1904) 刊의 「古越藏書樓」의 藏書目 參照.

物理學 天文算學 黃老哲學 釋迦哲學 墨翟哲學 附入耶蘇及五洲諸教 中外各派哲學 名學 法學 縱橫學 攷證學 小學 文學

政 部

正史兼補表·補志·攷證 編年史 紀事本末 古史 別史 雜史 載記 傳記 詔令奏議 譜錄 金石 掌故 典禮 樂律 輿地 外史 外交 教育 軍政 法律 農業 工業 美術 稗史

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展開가 不充分하며 理論的인 體系가 全혀 缺되어 있다.

學部에 있어서는 東西洋의 哲學 宗敎 自然科學 語文學이 混成되어 아무런 體系없이 羅列되고 있다. 細部的으로 指摘하면 爾雅學과 小學이 分離되어 있고, 耶蘇敎 및 五洲諸宗敎가 墨翟哲學에 附入되어 있다. 政部에 있어서는 歷史學을 비롯한 社會科學 技術科學등이 混合羅列되어 있으며, 細部에 있어서는 東洋의 歷史와 外國史, 樂律과 美術이 分離되어 있고, 稗史가 끝에 孤立되어 있는 것도 異常하다.

한편 民國8年(1919) 陳乃乾이 편찬한 「南洋中學藏書目錄」에 適用된 十三分法(彙刻을 合하면 十四分法)과 같은 것은 東洋學의 新舊刊資料를 爲主로한 점이 特異하다.

周秦漢古籍

歷史 : 尙書 春秋 雜史

禮制

易

諸子 : 儒家 兵家 法家 墨家 道家 雜家 合刻

詩文 : 詩 文

古籍總義

古籍合刻

歷 史

官修史

私家撰述 : 編年 紀事本末 正史 雜史

傳記譜牒 : 列傳 別傳 氏族譜牒

論述 : 史評 史鈔

政 典

總志

禮樂

職官仕進

兵制屯防

刑法

鹽法

農政水利

地方志乘

區域 : 總志 省志 府州縣分志 私家記述 古代志乘 市鎭

山川：總志 分志

古蹟

居處：書院 祠廟

小 學

說文 字書 音韻 訓詁 彙刻

金石書畫書目

金石：目錄 圖譜 論辨

書畫：目錄 圖譜 論辨

書目

雜錄

記 述

讀書論學：郡籍分考 雜考 論述

修身治家

遊宦旅行：各家撰述 彙輯 外域

名物

掌故

雜記

天文算法

中法 西法 中西合參

醫藥術數

醫經

本草

術數：道家 五行占卜

佛 學

經藏(大乘)：華嚴 方等 般若 法華 涅槃

經藏(小乘)

論藏(大乘)：宗經論 釋經論 諸論釋

論藏(小乘)

雜藏(西土撰述)

雜藏(中土撰述)：淨土宗 台宗 禪宗 賢首宗 慈恩宗 律宗 纂集 傳記 護教 融通

類書

詩文

各家著述：詩 文 詩文合刻 數家合刻

選本：歷代詩選 各郡邑詩選 歷代文選 各郡邑文選 駢文時文 尺牘 詩文合選

評論：詩論 論文

詞曲小說

詞類：詞譜 詞集 詞選

曲類：曲譜 雜劇 曲選

彙刻

一人著述 數家著述

이 分類法은 위에서 든 二分法에 比하여 詳細히 展開되어 있기는 하나, 全的으로 東洋學에 관한 中國의 新舊刊資料와 若干의 西土資料를 對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東西洋學의 新·古書를 함께 分類하기 어려운點이 그 缺點이다.

그 結果 新·古書의 倂行分類制를 擇하는 圖書館이 생기게 되었다. 即 古書는 四部分類法, 新書는 別途로 만든 展開法을 使用하는 折衷式 處理法이 案出되었다. 新·古書倂行分類制에 따르는 新書用의 分類法으로서는, 孫毓修 所著의 「圖書館」에 揭載된 것이 最初의 것이 되며, 廿二分法으로 展開되어 있다. 이것은 歐美의 分類法을 크게 參考하여 만든 것이나, 內容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批判이 加해져야 한다.[137]

無錫圖書館과 安徽圖書館에 있어서, 古書는 四部分類法에 叢書를 合하여 5部로 改修하고, 新書는 六分法을 別途로 制定하여 倂用하였으나, 그 新書를 위한 六分法의 內容은 各各 달랐다. 前者는 政部 事部 學部 文部 報章部 金石書畵部로 大別하여 다시 區分하였고, 後者는 文科部 哲學部 政科部 理科部 雜部 外國文部로 大別하여 다시 區分하였다. 그 外에도 浙江公立圖書館 河南圖書館 廣西圖書館 江蘇省立第二圖書館 廣東圖書館 雲南圖書館등이 新·古書分類의 倂行制[138]를 採擇하였으나, 新·古書의 出版量이 나날이 增加됨에 따라, 그 處理와 利用이 不便하여 別로 發展을 보지 못하였다.

第六節 十 進 法

듀이十進法이 東洋에 輸入된 것은 淸末이며, 宣統元年(1909)에 孫毓修가 이를 東方雜誌에 紹介한 것이 그 最初가 된다.[139] 以後 中國에서는 中國圖書를 이 分類法에 의하여 整理하고자 東洋學關係部分의 展開에 着手하였다. 그것은 듀이十進法이 우리나라에 輸入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經驗하였듯이, 開拓初期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傾向인것 같이 여겨진다.

中國에 있어서 最初로 이 듀이十進法을 增補한 이는 査修이며, 그는 民國14年(1925) 北平淸華大學圖書館에서 「杜威書目十類法補編」을 刊行하였다. 査修는 그 後도 繼續的으로 研究하여 이를 改訂하였으며, 또한 그와 때를 같이하여 桂質柏도 飜譯에 着手해서 民國14年(1925)에 齊魯大學圖書館에서 「杜威書目十類法」을 刊行하였다. 桂質柏은

137) 分類法은 蔣元卿 著의 前揭書 pp. 160~170을 參照할 것.

138) 分類法은 上揭書 pp. 172~176을 參照할 것.

139) 上揭書, p. 197.

經部의 各項을 181.1 中國哲學·儒家에, 中國歷史를 951.1에, 中國地理를 915.1에, 子部를 181에, 集部를 895.1에, 叢書를 895.18에, 各各 分類하도록 함으로써 듀이十進法의 原形을 그대로 지키는 데 留意하였다. 그 外에도 錢亞新의 「補充杜威制之革命文庫分類法」[140], 陳普炎의 「增修杜威氏十進分類一部份之商榷」[141]등이 發表되었다.

이것들은 비록 그 展開細目에 있어서 多少差異는 있을지언정, 어느 것이나 듀이十進法으로 中國圖書까지 아울러 分類하고자 그 未備를 補充했던 初期의 譯編作인 點에서, 共通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程度의 補充으로서는 워낙 項目이 不足해서, 東洋學에 관한 新刊書마저도 제대로 分類할 수 없었으니, 결국 活用의 對象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한편 西書는 듀이十進法, 中國圖書는 傳統的인 分類法을 適用시켜, 併行制의 分類를 하고 있는 圖書館에 있어서도 그 隘路는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出版量이 急템포로 늘어가는 中國의 新·舊學關係 新刊書를 傳統的인 在來의 分類法으로서는 도저히 處理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듀이十進法을 展開하여 東洋學關係書를 分類하자니 워낙 項目이 不足하고 學問의 內容이 異質的이어서 困難하며, 在來의 分類法을 增補해서 使用하자니 이것 역시 分類組織이 根本的으로 달라서 新刊書를 제대로 分類할 수 없는 實情이었다. 그 結果 新·古書의 統合 分類를 위한 새로운 分類法의 制定을 不可避하게 하였고, 나아가서는 利用者의 便利를 圖謀하기 위해 中外圖書의 統一分類用 單一分類法의 創案까지 促進케 했던 것이다. 새로운 分類法이 적어도 新·古書를 統合分類할 수 있는 以上의 것이라야 된다는 것은 新·古書의 限界劃定이 어려운데서도 起因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新·古書의 限界는 出版年代를 基準으로 할 수도 없고 圖書의 裝訂을 基準으로 할 수도 없으며 또 圖書內容을 基準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必然的으로 單一分類法을 適用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142]

Ⅰ. 中國의 新古書用 單一十進法

中國에 있어서 新·古書의 統合分類를 위한 새로운 十進法의 硏究는 沈祖榮과 胡慶生에 의해 시초되었다. 그들은 듀이十進法을 모방한 分類法을 만들어 民國6年(1917)에 武昌의 文華公書林에서 刊行하였다. 그 類門은 經部·類書, 哲學·宗敎, 社會·敎育, 政治·經濟, 醫學, 科學, 工藝, 美術, 文學·言語學, 歷史의 10類였다. 그 後 이어 杜定友가 民國14年(1925)에 「世界圖書分類法」, 劉國鈞이 民國18年(1929)에 「中國圖書分類法」, 陳子彝가 同年에 「圖書分類法」, 施廷鏞이 民國20年(1931)에 「清華大學圖書館中文圖書分類法」, 何日章·袁湧進이 民國23年(1934)에 「中國圖書十進分類法」, 皮高品이 역시 같은해에 「中國十進分類法」, 桂質柏이 民國24年(1935)에 「分類大全」등을 各各 편찬하였고, 團體로서는 東南大學孟芳圖書館이 民國13年(1924)에 그리

140) 文華圖書館學季刊, 1卷4期.
141) 上揭書, 3卷4期.
142) 蔣元卿. 前揭書, pp. 187~188.

고 安徽省立圖書館이 民國18年(1929)에 各各「中文圖書十進分類法」을 制定하였다. 그 中 代表的인 것은 杜定友의「世界圖書分類法」과 劉國鈞의「中國圖書分類法」이 되며, 이 兩者는 다음에 言及할「中外圖書統一分類法」과 더불어 現在 널리 利用되고 있다.

杜定友의「世界圖書分類法」[143]은 民國24年(1935)에 改訂版을 내놓았다. 이 分類法은 그 書名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듯이, 본래 中外圖書를 統一分類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나, 그러나 中國의 古書를 다루기에는 內容이 不充分하다는 評이 뒤딸고 있다. 그 主綱表는 아래와 같다.

000　總　類
010　　圖書館學
020　　中國經籍
030　　百科辭典
040　　學術論叢
050　　期　刊
060　　會　社
070　　新聞學
080　　叢　書
090　　統計年鑑
100　哲理科學
110　　各國哲學
120　　中國哲學
130　　形而上學
140　　哲　論
150　　心理學
160　　論理學
170　　倫理學
180　　神秘學
190　　宗　教
200　教育科學
210　　教育行政
220　　管理訓育
230　　教科教材
240　　教授法
250　　教　員
260　　學校教育
270　　社會教育
280　　高等教育
290　　特殊教育
300　社會科學
310　　社會思想
320　　政治學
330　　行政學
340　　法律學
350　　軍事學
360　　經濟學
370　　理財學
380　　勞　工
390　　社會學
400　藝　術
410　　建　築
420　　中國書畫
430　　繪　畫
440　　雕　刻
450　　裝飾手工
460　　印　刷
470　　攝　影
480　　音　樂
490　　遊　藝
500　自然科學
510　　數　學
520　　天文學
530　　物理學
540　　化　學
550　　地質學
560　　博物學
570　　生物學

143) 杜定友. 世界圖書分類法. 上海, 圖書館協會, 民國14(1925)

580 植物學
590 動物學
600 應用科學
610 醫 學
620 工 程
630 農 業
640 化學工業
650 交 通
660 商 業
670 工 業
680 實 業
690 家 政
700 語文學
710 比較語文學
720 中 文
730 英 文
740 法 文
750 德 文
760 日 文
770 俄 文
780 其 他
790
800 文 學
810 總 集
820 詩 歌
830 詞 曲
840 戲 劇
850 文 集
860 小 說
870 演辭函牘
880 兒童文學
890 民間文學
900 史地學
908 傳記學
909 考古學
910 世界史地
920 中國史地
930 英國史地
940 法國史地
950 德國史地
960 日本史地
970 俄國史地
980 美國史地
990 其他各國史地

劉國鈞의 「中國圖書分類法」[144]은 그 뒤 台灣大學圖書館學科 賴永祥 敎授에 의한 2次의 改訂增補를 거쳐, 民國57年(1968)에 現代圖書館學叢刊 第1種으로 出刊되었다. 現在 이 分類法은 新·古書의 統合分類를 위한 代表的인 道具로서 認定받고 主用되고 있으며, 그 主綱表는 아래와 같다.

總 類
000 特 藏
010 目錄學
020 圖書館學
030 國 學
040 類書：百科全書
050 普通雜誌
060 普通會社出版物
070 普通論叢
080 普通叢書
090 群 經
哲學類
100 總 論
110 思 想
120 中國哲學
130 東方哲學

144) 劉國鈞. 中國圖書分類法. 南京, 金陵大學圖書館, 民國18(1929) 初版.
賴永祥 編訂. 上揭書. 臺北, 國立臺灣大學大學院圖書館學系, 民國57(1968) 新訂2版.

140　西洋哲學
150　論理學
160　形而上學：玄學
170　心理學
180　美　學
190　倫理學

宗敎類

200　總　論
210　比較宗敎學
220　佛　敎
230　道　敎
240　基督敎
250　回　敎
260　猶太敎
270　群小宗敎
280　神　話
290　術數：迷信

自然科學類

300　總　論
310　數　學
320　天　文
330　物　理
340　化　學
350　地　質
360　生物：博物
370　植　物
380　動　物
390　人類學

應用科學類

400　總　論
410　醫　藥
420　家　事
430　農　業
440　工　程
450　鑛　冶
460　應用化學：化學工藝
470　製　造
480　商業：各種營業
490　商學：經營學

社會科學

500　總　論
510　統　計
520　敎　育
530　禮　俗
540　社　會
550　經　濟
560　財　政
570　政　治
580　法　律
590　軍　事

史地類(1)

600　總　論
610　中國通史
620　中國斷代史
630　中國文化史
640　中國外交史
650　中國史料
660　中國地理
670　中國方志
680　中國類志
690　中國遊記

史地類(2)

700
710　世界史地
720　海　洋
730　東洋：亞洲
740　西洋：歐洲
750　美　州
760　非　州
770　澳洲及其他各國
780　傳　記
790　古物：考古

語文類		美術類	
800	語言	900	總論
810	文學	910	音樂
820	中國文學	920	建築
830	總集	930	雕塑
840	別集	940	書畵
850	特種文藝	950	攝影
860	東洋文學	960	圖案：裝飾
870	西洋文學	970	技藝
880	西方諸小國文學	980	戲劇
890	新聞學	990	遊藝：娛樂：休閒

위 分類法의 組織을 四庫全書總目의 四分法과 比較하여 보면,

1) 經部는 090 群經에 그대로 모으고 있다. 다만 小學類에 있어서 群經의 爾雅만을 이 群經아래에 남겨두고, 訓詁書(群經 以外의 爾雅는 이곳에 包含되어 있음) 字書 音韻등의 小學全般은 802 中國語言文字 아래에 分類하도록 되어 있다.

2) 史部에 있어서 正史 編年 紀事本末 別史 雜史 史鈔 載記 史評의 諸類등 純粹한 歷史에 屬하는 것은 610 中國通史와 620 中國斷代史아래에, 傳記類는 780 傳記아래에, 地理類는 660～690과 그中 外紀의 屬은 710 世界史地아래에 各各 分類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詔令奏議類는 650 史料아래에, 職官類는 573.4의 政治學의 職官아래에, 政書類中 通制의 屬은 573.1 政治學의 通制와 630 文化史아래에 各各 들어 있고, 그外의 屬들은 各主題로 分散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典禮의 屬은 530 禮俗아래에, 法令의 屬은 582.1 歷代律令則例아래에 各各 分類하도록 되어 있다. 目錄類는 各種主題의 책에 대한 리스트이므로 總類의 012～018에 該當되고, 金石文關係書는 四庫全書總目의 分類에서 흩어진 것을 790 古物 考古아래에 一括集中시키고 있다. 時令類는 農業의 432 農藝아래서 氣候와 並入시키고 있고, 風俗과 關聯된 歲時記는 538.59 農曆時節에도 分類하도록 마련하였으며, 曆法에 있어서 季節과 關聯된 時令은 327.1 季節·時令에도 分類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고 있다.

3) 子部에 있어서 儒家類 法家類 그리고 雜家類 雜學의 屬에 들어 있는 墨家 名家 縱橫家는 120 中國哲學아래에 分類하도록 되어 있고, 農家 醫家 天文算法 藝術의 諸類는 各各 主題分野로 分散되어 있다. 이를테면 農家類는 430 農業아래에, 醫家類는 413 中國醫藥과 414 中國醫方·本草아래에, 天文算法은 320 天文學과 311 古算經아래에, 藝術類는 900 美術아래에 該當된다. 術數類는 290 術數·迷信아래에, 譜錄類中 器用의 屬은 790 古物·考古아래에; 食譜의 屬은 427 飮食아래에; 草木鳥獸虫魚의 屬은 370 植物學과 380 動物學아래에, 雜家類中 雜考 以下 雜纂까지의 諸屬은 070 普通論叢아래에; 雜編의 屬은 080 普通叢書아래에, 類書類는 040 類書·百科全書에, 小說家類는 857 小說아래에, 釋家類는 220 佛敎에, 道家類中 老子 以下 文子까지의 哲學的인 面은 120 中國哲學과 宗敎的인 面은 230 道敎에 各各 分類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4) 集部는 820 中國文學아래에서 展開시키고 있다.

分類法의 體系에 있어서 叢書가 030 國學叢書와 080 普通叢書로 分離되어 있고, 目錄學아래에 圖書學 書誌學 板本學을 展開시키고 있음이 어색한가 하면, 또 史誌를 2部門으로 設定함으로써 助記性 問題가 單純치 않은 것등을 비롯하여 全般에 걸쳐 批判의 對象이 되는 點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古書의 分類라는 點에서 보면 오히려 四部分類法보다도 詳細하게 마련되어 있으므로, 新·古書를 充分히 處理할 수 있는 分類大全이라 好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에 添言할 것은 이 改訂增補2版에는 年前에 보내 준 韓國十進分類法을 土台로 韓國關係分野가 詳細하게 展開되어 있는 點이다. 外國의 分類法으로서 이토록 韓國關係分野가 자세히 區分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賴教授의 그 勞苦에 대하여 새삼 謝意를 表示한다.

Ⅱ. 中外圖書用 單一十進法

分類는 본래 言語와 文字에 拘碍됨이 없이 同一한 主題와 關聯된 主題를 한곳에 모아주는 作業이기 때문에, 新舊刊의 中書와 西書를 單一分類法에 의하여 整理하는 것이 利用者에게 바람직하다는 理論이 듀이十進法의 導入 以後 또한 擡頭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趨勢는 마침내 中外書의 統合分類法을 考案케 하였다. 이 着想은 본시 杜定友에 의해 시초되었으며,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民國14年(1925)에 出刊된 「世界圖書分類法」이 바로 그것이다.[145] 그러나 그 內容이 古書를 分類하기에는 未洽하다는 評이 있어서, 그 後 王雲五는 「中外圖書分類法」을 考案하여 民國17年(1928)에 刊行하였다.

이 中外圖書分類法의 特徵은 듀이十進法의 原形을 그대로 살리면서 同一한 主題의 記號 또는 關聯된 主題의 記號앞에 짧막한 一定한 符號를 使用하여 中國圖書를 손쉽게 挿入시킴으로써, 中外圖書를 統合分類하고 藏書의 利用 및 管理에 便利하도록 한데 있는 것이다. 그 符號는 「+」「廾」「土」의 3種이며 그 用法은,

1) 「+」의 符號는 듀이十進法과 꼭같은 分類記號 앞에 붙이어 새로운 記號를 만들고 原記號와 並用하는 데 適用한다. 例컨대, 듀이十進法의 323.1 「民族運動」의 앞에 「+」의 符號를 붙이어, +323.1의 새로운 記號를 만들고 特有한 「中國民族主義」를 代表케 하며, 323.1은 本來대로 「民族運動」으로 利用한다.

2) 「廾」의 符號는 10位까지 같은 記號 앞에 붙이며, 以下 整數 1에서 9까지 繼續해서 使用한다. 例컨대, 듀이十進法의 110 「形而上學」 앞에 「廾」를 붙이어 廾110 「中國哲學」으로 하고, 以下는 다시 細分하여 廾111 「易經」 廾112 「儒家」 廾113 「道家」 廾114 「墨家」 廾115 「名家」 廾116 「雜家」 廾117 「近古哲學家」 廾118 「近代哲學家」 등과 같이 한다.

3) 「土」의 符號는 꼭같은 整數의 記號앞에 붙이며, 以下는 小數로 다시 細分하여 使用한다. 例컨대, 듀이十進法의 327 「外交」 앞에 「土」를 붙이어 土327 「中國外交」로

145) 그 外에도 陳天鴻이 民國15年(1926) 上海 民主中學出版에서 「中外一貫實用圖書分類法」을 刊行하였다.

하고, 以下는 다시 細分하여 ±327.1「中美外交」±37.2「中日外交」±327.3「中英外交」±327.4「中獨·中奧外交」±327.5「中佛外交」 ±327.6「中葡外交」±327.7「中俄外交」±327.8「中國對歐美·其他各國外交」±327.9「中國對亞洲其他各國外交」와 같이 한다.[146]

表로서 例를 들면,

000	總 類	100	哲 學
010	書目 目錄學	卄110	中國哲學
020	圖書館學	卄111	易 經
030	百科全書 類書	卄112	儒 家
040	各科論文叢輯 叢書	卄113	道 家
±041.1	中國群經合刻	卄114	墨 家
±041.2	中國群經總義	卄115	名 家
±041.3	諸子合刻	卄116	雜 家
±041.4	中國諸家合刻叢書	卄117	近古哲學家 宋至明末
±041.5	中國一人自著叢書	卄118	近代哲學家 淸至民國
±041.9	中國學術史	110	形而上學
050	普通雜誌 定期刊	120	其他形而上學問題
060	普通學會刊物	130	心身人類學
069	博物院	140	哲學派別
070	新聞學 月報	150	心理學
080	特別藏書	160	論理學
090	精本 或 抄本	170	倫理學理論的及 應用的
091	稿 本	180	古代哲學家
093	舊版書	190	近世哲學家
098	禁 書		

와 같으며, 以下 200 宗敎 300 社會科學 400 語文學 500 自然科學 600 應用技術 700 美術 800 文學 900 史地에까지 適用시키고 있다.

이 分類法은 中外圖書를 統一的으로 分類하기 위하여 考案한 理想的인 整理用 道具이나, 한편 符號를 붙이기가 까다롭고 또 學問의 性質이 다른 東洋의 古書를 듀이十進法의 關聯된 主題에 接近시키는 일이, 자칫하면 分類者의 主觀에 따라 處理될 憂慮가 있는 點이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中國에 있어서는 西學의 本格的인 導入과 더불어 新·古書만의 併合的인 分類만으로서는 어떤 主題에 관하여 言語와 文字에 拘碍됨이 없이 모두 보고자 願하는 利用者에게 적지 않은 不便을 줄뿐더러, 二元的인 分類制度를 採擇하게 되니 整理에 있어서도 時間的 또는 經濟的으로 저으기 不利하다는 것을 깨닫고, 中外圖書의 統一分類를 위해 「中外圖書統一分類法」까지 考案하여 使用中에 있는 實情

146) 王雲五 編. 中外圖書統一分類法. 上海, 商務印書館, 民國22(1933)

이다. 그것은 蔣元卿이 發表한 中國의 最近 各圖書館圖書分類之鳥瞰에 의하더라도,

1) 四部分類法을 改正增補하여 新·古書를 함께 分類하는 圖書館이 겨우 5個館에 不過하며,

2) 四部分類法으로 古書를 分類하고, 十進分類法으로 新書를 分類하는 倂行制를 採擇하고 있는 圖書館이 9個館이며,

3) 單一의 十進分類法으로 新·古書를 함께 分類하는 圖書館이 25個館이다. 그리고

4) 單一의 十進分類法으로 中外圖書를 統一的으로 分類하는 圖書館이 32個館으로 되어 있는바, 單一十進分類法에 의하여 中外圖書까지를 統一的으로 分類하는 傾向이 急增되고 있는 점에 注目을 끌게한다.[147]

Ⅲ. 韓國의 古書用 十進法

가. 古書部分類目錄의 十進法

古書用의 十進法은 新·古書의 倂行分類制를 採擇하고 있는 圖書館에서 古書의 整理만을 위해 만든 것이며, 그 專用分類法이 適用된 最初의 것은 國立中央圖書館이 1956年에 刊行한 古書部分類目錄[148]이 될 것이다. 여기에 適用되었던 分類法은 第2表(主綱表)까지 展開된 略式十進法이며, 본디 日帝時代에 만드러진 것이었으나 分類體系의 一元化를 위하여 光復後도 그대로 使用해 온 것이다.

0　哲學·經學
00　哲學·經學總記
01　經書總義
02　五經
03　周易
04　毛詩(詩經)
05　尙書(書經)
06　禮記
07　春秋
08　孝經
09　四書
1　諸子·術數
10　諸子
11　老子·莊子
12　荀子·列子
13　墨子·韓非子
14　淮南子·管子
15
16　儒　家
17　朝鮮儒家
18
19　術數
2　宗教·教育·社會
20　宗教總記
21　佛教
22　道教
23　其他宗教
24　滿洲·蒙古·西伯利亞
25　教育
26　科擧·釋典
27　書院
28　社會
29　冠婚·葬祭·儀式
3　政治·法律·經濟

147) 蔣元卿. 前揭書, pp. 259~264.

148) 國立圖書館, 古書部分類目錄 4278年(1956) 8月現在 首卷. 서울, 4289年(1956) 油印.

30 政治・法律總記
31 政書
32 官職
33 法典
34 裁判
35 經濟・統計總記
36 貨幣
37 交通
38 財政
39 滿洲・蒙古・西伯利亞
4 語學・文學
40 語學總記
41 字書・韻書・小學
42 文學總記
43 總集
朝鮮人總集
中國人總集
44 文集・尺牘
朝鮮人文集・尺牘
中國人文集・尺牘
45 詩集・詩話
朝鮮人詩集・詩話
中國人詩集・詩話
46 別集
朝鮮人別集
中國人別集
48 詞曲・小說
49 滿洲・蒙古・西伯利亞
5 歷史・傳記
50 歷史總記
51 年表・史料・古文書
52 考古・金石文・拓本
53 上・中世史
54 近世史
55 最近世史
56 雜史
57 傳記
58 系譜類
世譜類・號譜類
59 時令
6 地理・理學
60 地理・風俗總記
61 地圖
62 邑誌・名蹟誌
63 紀行・山川誌
64 滿洲・蒙古・西伯利亞
65 理學總記
66 天文・曆法・算法
68 博物・本草・醫家・鍼灸
69 滿洲・蒙古・西伯利亞
7 土木・工學・軍事
70 土木・水利
71 建築
72 船車
73
74 鑛山
75
76 兵家
77 武器・武藝
78 戰史
79 滿洲・蒙古・西伯利亞
8 農家・藝術
80 農家總記
81 藝術
82 書畫・法帖
83 古器
84
85 音樂
86
87 演劇

88	遊戲・娛樂	93	隨筆・雜纂
89	滿洲・蒙古・西伯利亞	94	
9	叢書・雜書	95	書目・書誌
90	全書・叢書	96	
91	事彙・類書	97	
92	全集	99	滿洲・蒙古・西伯利亞

이 分類法은 同圖書館의 東書用 分類法인 1類 哲學・宗教, 2類 教育・社會, 3類 法律・政治, 4類 經濟・統計, 5類 語學・文學, 6類 歷史・地理, 7類 理學・醫學, 8類 工學・軍事, 9類 產業・藝術, 10類 全書・雜纂을 土台로 하였으나, 第2表인 綱까지로 分類記號를 配當하여야 하는 制限과 主題別 所藏資料의 多寡로 말미암아 그 類門設定이 不合理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初期의 것으로서 參考에 지나지 않는다.

나. 漢籍十進分類表(案)

古書用 十進法으로서 分類의 體系가 갖추어진 것은 成均館大學校中央圖書館의 「漢籍十進分類表(案)」이다.[149] 이 分類法(案)은 同圖書館漢籍分類表制定委員會가 1961年에 作成한 것으로 現在 試用中에 있으며, 細目에 있어서 多少의 修正이 加해지고 있다.

그 主綱表의 內容을 아래와 같다.

000	總類	190	叢刊 合刻 全集
010	讀書法	200	哲學 宗教
020	書志學 文獻學	210	哲學
030	書志 書目 圖譜	220	儒家 儒家
040	便覽 諸表	230	道家 道教 老莊思想 黃老術
050	論著(典故・隨錄・稗說・雜說)	240	其他諸家
060	稿本及稀貴圖書	250	術數
070	定期逐次刊行物	260	宗教
080	事彙 類編	270	佛教
090	全集 叢書	280	其他宗教
100	經學	290	各種祀典 類似宗教
110	經書	300	歷史
120	概論(通論)	310	考古學
130	史傳(通史・通志・總錄・總傳)	320	民族學 民族志
140	書目 諸表 圖譜	330	韓國歷史
150	論著	340	中國歷史 東洋史
160	教學・蒙求・訓範・修養	350	日本歷史
170	校勘・考證	360	印度歷史
180	彙刻 類編	370	其他諸國歷史

149) 成均館大學校中央圖書館 編. 漢籍十進分類表(案). 서울, 1961.

380	系譜 傳記	690	娛樂
390	地 誌	700	社會 經濟
400	語 學	710	社會
410	訓詁	720	民族
420	字書	730	敎育
430	韻書	740	經濟
440	字典 辭書	750	財政
450	語彙論	760	產業
460	文法	770	家政
470	方言 俗語	780	交通
480	辯術 話法	790	遞信
490	對譯(譯學)	800	政法 軍事
500		810	政法 法典 律例
510	文學(漢文學)	820	詔令
520	韓國漢文學	830	奏議
530	中國文學(漢文學)	840	貢擧 銓敍
540	日本漢文學	850	儀注 典禮
550	印度漢文學	860	刑政
560	漢文學與他文學一切關係	870	地方行政
570		880	外交交聘
580		890	國防 軍事
590		900	博物學(自然科學)
600	藝 術	910	算學
610	書藝	920	物理化學
620	繪畫	930	天文學
630	彫刻	940	地文學
640	印刷	950	鑛物學
650	建築工藝	960	動物學
660	工藝美術	970	植物學
670	音樂	980	醫藥學
680	演劇 雜戲	990	衛生學

이 分類法의 體系化에 있어서 分類項目의 選定 및 區分排列은 朴奉石 編인 「朝鮮十進分類表」와 裵開明 編인 「漢和圖書分類法」등을 主로 많이 參酌하였고, 助記性에 대하여는 「듀이十進法」을 參考하여 成案하였기 때문에,[150] 韓國 및 中國의 古典的인 項目의 選定과 形式區分 地理區分등의 助記性 活用에 特히 腐心하였음을 그 本表에 의해 確認할 수 있다. 現代的인 分類法의 條件을 具備한 最初의 古書專用의 分類法인 點

150) 上揭書, pp. 3~8.

이 그 特徵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內容을 살펴 보고 느낀바, 몇가지 私見을 開陳하면 다음과 같다.

1) 書誌學에 있어서 板本學을 뜻하는 形態의 鑑別法이 漏落되어 있고, 書誌學史와 圖書館史를 並入한 것이 탐탁치 않다.

2) 經學에 있어서 樂類를 禮類에 附入하고 있으면서도 그 細目에 分類記號가 漏落되어 있다. 이곳에 附入시킨 以上 樂緯를 考慮해서라도 마땅히 細目에 分類記號가 配當되어야 한다. 春秋類의 總記가 三傳을 對象으로 하지 않고 左氏傳만을 對象으로 한 것은 옳지않다. 이 總記는 어디까지나 三傳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左氏傳은 細目의 첫머리에 오도록 分類記號를 配當하고, 아울러 穀梁傳다음에 胡氏傳도 마련해 준다면 그 系統資料의 分類를 위해서 보람직할 것이다.[151] 爾雅가 다른 訓詁書에서 分離되어 있음이 不合理하다. 勿論 여기의 爾雅는 十三經注疏本에 編入된 것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짐작되나, 그러나 그 爾雅는 叢刊 合刻으로서 處理되므로 이곳에 굳이 項目을 設定할 必要가 없다. 單行本은 어디까지나 訓詁書아래에 마련된 爾雅에 分類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므로 訓詁書 字書 韻書가 함께 經學아래에 마련되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語學아래에 마련되어 있는 以上 그곳에 集中되도록 處理하는 것이 妥當한 것이다.

3) 哲學에 있어서 道家에 道敎를 合친 것이 不合理하다. 解說에 의하면 宗敎下에는 그 자리만 둔 것이고, 實際는 哲學아래에 分類한다고 하였다.[152] 老莊思想으로서의 道家는 哲學아래에 分類하고, 宗敎로서의 道敎는 어디까지나 宗敎아래에 分類하여야 한다.

4) 宗敎에 있어서 佛敎의 佛典 區分에 錯誤가 發見된다. 이를테면 圓覺經을 華嚴部에 넣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經集部에 該當되는 것이다. 그리고 韓國佛敎 固有의 典籍과 撰述을 分類할 適當한 곳이 發見되지 않는다. 또 其他 宗敎아래의 儒敎와 各種祀典中의 孔敎에 관한 祀典과의 限界가 애매하다. 생각컨대, 前者의 項目은 必要가 없으며, 後者의 項目만 있으면 足할 것이다.

5) 地方史에 있어서 中國은 現地名과 舊地名을 並記하면서 우리나라는 現地名만을 列擧하고 있다. 古書分類의 見地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地名에 있어서도 적어도 道와 主要地名에 대하여는 舊地名이 並記되어야 할 것이다. 古文書를 비롯한 史料的인 價値가 있는 記錄類를 分類할 適當한 곳이 發見되지 않는다.

6) 語學에 있어서 譯學에 관한 韓淸 및 韓蒙對譯資料가 적지 않고 또 그 價値性으로 보아 韓中 및 韓日對譯의 다음에 이를 明示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政法아래에 있는 詔令 奏議는 史料로서 歷史아래에 넣는 것이 좋을것 같다. 이것은 朝鮮十進分類表가 政法아래서 韓國法制로서 奏議 詔令을 벌리고 있는 것을 參酌한듯 하나,[153] 그러나 四部分類法이나 다른 十進法에 있어서도 主로 歷史아래에 마련

151) 上揭書, p. 45.

152) 上揭書, p. 24의 200 哲學·宗敎 (1) 解說 參照.

153) 朴奉石 編. 朝鮮十進分類表. 서울, 國立圖書館, 4280(1947) p. 64.

되고 있다. 또 實際問題에 있어서도 例컨대 上割 啓辭인 芹曝集, 啓狀인 辰巳錄, 閔文忠公奏議등은 政法보다는 歷史性이 더 强한 것이다.

Ⅳ. 韓國의 新古書用 十進法

가. 朝鮮十進分類表

우리나라에 있어서 만든 新·古書倂用의 十進法으로서 最初의 것은 「朝鮮十進分類表」이다. 이 分類法은 國立圖書館에 奉職하고 있었던 朴奉石副館長이 편찬하여 1947年에 刊行한 것으로 6·25動亂直前까지 主用되었으며, 現在도 國立中央圖書館에서 使用되고 있다. 總類, 哲學·宗教, 歷史·地誌, 語學·文學, 美術·演藝, 社會·教育, 政治·經濟, 理學·醫學, 工學·工業, 産業·交通의 10類를 土臺로 第3表까지 展開하고 있으며,[154] 開拓的인 新·古書倂用의 十進法으로서 크게 구실하였다.

나. 韓國十進分類法——四分法 및 中國圖書分類法과의 比較——

朝鮮十進分類表에 이어 刊行된 新·古書倂用의 十進法이 바로 現在 主用되고 있는 「韓國十進分類法」(以下 KDC 로 略稱함)이 된다. 이 分類法은 學術發展의 時代的인 潮流에 발맞추기 위하여 韓國圖書館協會分類委員會가 處女作으로 1964年에 初版을 낸 以後 1966年에 修正版 그리고 1968年에 修正再刷版을 거듭하면서 그 內容을 가다듬고 있는 途上에 있으며.[155] 來年度에는 크게 깁고 보태서 修正版을 내놀 豫定이다.

이 分類法의 利用 및 古書를 除外한 東書의 分類를 위한 解說書가 이미 出刊되었으므로,[156] 여기서는 古書分類만을 中心으로 言及코자 한다. 그 主綱의 第2表를 紹介하면,

000	總 類	130	哲學體系
010	圖書學 書誌學	140	經 學
020	圖書館學	150	아시아哲學·思想
030	百科事典	160	西洋哲學
040	一般論文集	170	論理學
050	一般定期刊行物·年鑑	180	心理學
060	一般學會·團體·博物館	190	倫理學
070	新聞 雜誌	200	宗 教
080	一般全集·叢書	210	比較宗教學
090	鄕土資料	220	佛 教
100	哲 學	230	基督教·猶太教
110	形而上學	240	道 教
120		250	天道教·檀君教

154) 第一表는 小圖書館用, 第二表는 中圖書館用, 第三表는 大圖書館用으로 마련한것임.
155)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十進分類法. 서울, 1968.
156) 李丙洙. 韓國十進分類法解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260 神 道
270 婆羅門教 印度教
280 回教 조로아스타教
290 其他諸宗教
300 社會科學
310 統計學
320 經濟學
330 社會學 社會問題
340 政治學
350 行政學
360 法 學
370 教育學
380 風俗 民俗學
390 國防 軍事學
400 純粹科學
410 數 學
420 物理學
430 化 學
440 天文學
450 地 學
460 鑛物學
470 生物科學
480 植物學
490 動物學
500 技術科學
510 醫 學
520 農業 農學
530 工業一般 土木工學
540 建築工學
550 機械工學
560 電氣工學
570 化學工學
580 製造業
590 家事 家政學
600 藝 術
610 建築術
620 彫 刻
630 工藝 裝飾美術
640 書 藝
650 繪畵 圖畵 版畵
660 寫眞術 印刷術
670 音樂
680 演劇 映畵 大衆演藝
690 娛樂 運動
700 語 學
710 韓國語
720 中國語
730 日本語
740 英語 앵글로색슨語
750 獨逸語 其他게르만語
760 佛蘭西語 프로방스語
770 스페인語 포루투칼語
780 이탈리아語 루마니아語
790 其他諸語
800 文 學
810 韓國文學
820 中國文學
830 日本文學
840 英文學 앵글로색슨文學
850 獨逸文學 其他게르만文學
860 佛蘭西文學 프로방스文學
870 스페인文學 포루투칼文學
880 이탈리아文學 루마니아文學
890 其他諸文學
900 歷 史
910 아시아
920 유 럽
930 아프리카
040 北아메리카
950 南아메리카
960 오세아니아
970 兩極地方

980 地 理 　　　　990 傳 記

와 같으며, 이를 土臺로 展開한 本表를 四部分類法 및 中國圖書分類法(以下 CSC로 略稱함)과 比較하여 그 聯關性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KDC의 組織을 잘 모르는 古書整理擔當司書에게 그 利用을 위한 入門이 되는 것이다.

KDC		四部分類法	CSC	
140	經 學	經 部	090	經學通論 〔第二法〕
.1	經學理論		.8	群經合刻
.19	經學史		.81	三經 四經
.3	辭典 事典		.82	五經
	[A] 諸經音義 包含.		.83	六經
.4	論文集 講演集		.84	七經
	[A] 單行本格의 經學考異 論攷 批評 雜錄등.		.85	八經
			.86	九經
.8	全集 叢書 講座 叢刻 [A] 總義		.88	十三經
	群經正文 및 注疏, 諸經總義의 合刻 合刊 및 校勘記 圖說등의 總集 選集	[A] 諸經(五經·群經)總義類	.9	經學史
	諸經音義→140.3			
.9	[A] 石經		098	[A] 群經總義
	叢刻 叢考 讖緯總錄 各時代石經考등.		.1	彙刻
			.2	彙佚
			.3	專著
			.4	圖說
			.5	音義
			.6	文字校勘
			.8	石經
			.9	讖緯總錄
141	[B] 易 類	[B] 易 類	091	[B] 易(周易)
	易占筮→188.7;陰陽五行→188.6			
.1	古易		.4	占筮
	三墳 連山 歸藏 三易總義등.			或入術數
.2	周易(易經)		.8	古易
	註疏論說 篇章研究등.		.81	三墳

141.9	易緯		091.82	連山
	河圖 洛書 各種讖등.		.83	歸藏
			.84	三易總義
			.9	易緯
142	C 書 類	C 書 類	092	C 書(尙書)
	中國古代史→912.02		.8	分篇
.2	尙書(書經)		.81	禹貢
	禹貢 洪範 虞書 堯典 舜典		.82	洪範
	湯誓 湯誥 大誥 및 註疏論說		.83	虞書 堯典 舜典
	篇章硏究등.		.85	湯誓
			.86	湯誥
.9	書緯		.88	大誥
			.89	其他
			.9	書緯
143	D 詩 類	D 詩 類	093	D 詩
	文學的인 面에 있어서의 詩經		.1	毛詩
	硏究→821.2		.2	三家詩
.1	三家詩		.3	齊詩
	魯詩(魯詩故, 魯詩遺說考,		.4	魯詩
	詩說등)		.5	韓詩
	齊詩(齊詩傳, 齊詩翼氏學,		.9	詩緯
	齊詩遺說考등)			
	韓詩(韓詩章句, 韓詩故,			
	韓詩翼要등)			
.5	毛詩(詩經)			
	註疏論說, 篇章硏究등.			
.9	詩緯			
144	E 禮 類	E 禮 類	094	E 禮
	禮儀作法→385; 冠婚喪祭→	周禮	.1	周禮
	384; 社會禮儀→194.1	儀禮	.2	儀禮
.081	通禮	禮記	.23	喪服
	五禮通考, 讀禮通考등.	三禮通義	.3	禮記
.082	三禮總義	通禮	.4	大戴禮記
	三禮考註, 三禮通釋등.	雜禮書	.46	夏小正

144.1	周禮		094.6	三禮總義
.2	儀禮		.7	通禮
	饗禮，冠禮，昏禮，喪禮，喪服，冕服등.		.9	禮緯
.3	禮記			
	小戴禮는 이곳에 分類한다.			
.4	大戴禮			
	夏小正의 篇章研究 包含.			
.8	雜禮		532.9	雜 禮
	圖書館에 따라 384.9 雜禮俗 또는 380 아래의 該當主題에 分類할 수 있다.		533	邦 禮
			534	家 禮
.9	禮緯			
145	F 樂 類	F 樂 類	099.8	F 樂 類
	中國古代音樂→679.9			
.9	樂緯			
146	G 春秋類	G 春秋類	095	G 春 秋
	春秋時代史→912.025		.1	左傳
.08	春秋三傳總義・異文・四傳		.2	公羊傳
.1	左氏傳		.3	穀梁傳
.2	公羊傳		.4	三傳總義
.3	穀梁傳		.5	三傳異文
.8	胡氏傳			
.9	春秋緯		.9	春秋緯
147	H 孝 經	H 孝經類	096	H 孝 經
	孝道，孝行→192.7			
.9	孝經緯		.9	孝經緯
148	I 四 書	I 四書類	097	I 四 書
	東洋倫理學→190.191		.1	論語(魯論)
.08	四書總義		.19	論語讖
.1	大學		.2	孟子(鄒傳)
	學庸의 分類 包含.		.29	孟子外書
.2	中庸		.3	大學
.3	論語(魯論)		.4	中庸
	論孟의 分類 包含.		.5	四書總義
.39	論語讖		.6	論孟

148.4 孟子(鄒傳)

.49 孟子外書

711.4 漢字(韓國)

L

.41 韓國漢字音

東國正韻등.

.44 漢字制限 常用漢字 略字

M

.47 漢字教習書

千字文 訓蒙字會 童蒙先習.

K

713.2 漢韓字典

L

721 中國語音韻 및 文字

.1 音韻論 音聲論

聲, 韻, 四聲 및 反切등.

.11 古音

周漢代의 音韻

.12 今音

魏晋唐宋間音韻.

切韻, 廣韻, 韻略, 集韻, 切韻指掌圖, 韻補, 韻鏡, 詩韻등.

.17 現代音

元代以後音韻.

五音集韻, 中原音韻, 古今韻會擧要, 洪武正韻, 清代音韻, 民國音韻등.

.19 注音字 및 符號 讀音

K

.2 文字 漢字

.21 文字起源 文字發明 以前

結繩 書契 圖繪등.

.22 說文解字

大徐本 小徐本 包含.

〔721.22 訓詁→721.3〕

.23 註釋本

元以後 現代人의 說文註釋本 例：說文解字段注

.24 六書(造字方法)

097.7 學庸

小學類 099 小 學

J

訓詁 .1 爾雅

K

字書 802 中國語言文字總論

L

韻書 .1 訓詁

M

訓蒙書 .108 訓詁叢書

.11 爾雅

參見群經(第二法) 099.1

.112 注疏

.115 圖說

.119 其他

.13 小爾雅

.14 釋名(逸雅)

.15 廣雅(博雅)

.16 其他群雅

.17 群書音義

.19 其他

K

.2 字書

.21 說文解字

.211 大徐本

.212 小徐本

.22 注釋

.221 元明人注

.222 清乾隆以前人注

.223 段玉裁注

.224 清乾隆間其他各注

.225 清道光以後

.226 現代

.23 六書

.24 聲韻

.25 專著

象形, 象事(指事), 形聲(象聲), 會意(象意), 轉注, 假借등.

721.25 字形

〔721.25 俗字, 常用字→721.29～.294〕

.251 古文

甲骨文, 金文(鐘鼎文), 科斗文(蝌蚪文)등.

甲骨文 金文의 金石學的研究→912.0024

.252 篆書

大篆(籒書)

小篆(秦篆)

.254 隷書

秦隷(左書)

漢隷(八分書)

.256 楷書(眞書, 正書, 今隷)

.257 行書

.258 草書

篆草

隷草

章草

今草

.26 其他專著

.27 部首 및 啓蒙

.28 字林, 玉篇, 類篇, 字彙

大廣益會玉篇, 急就篇, 類篇, 龍龕手鑑, 字鑑, 字彙, 正字通등.

康熙字典→723.2

〔721.28 로마飜字→721.298〕

.29 略字, 俗字, 逸字, 新字

.294 常用漢字

.298 羅馬飜字

802.251 引經

.252 古語

.257 古籒

.258 重文

.26 新附及逸字

.27 部首及啓蒙

.28 字林 玉篇 類篇等

.29 形體

.291 古文; 奇書

.293 印瓦等文

.294 篆書

.295 隷書

.296 行書

.297 楷書(今隷)

.299 簡筆字

K

.3 字典

.31 康熙字典

.35 成語

.37 新語 外來語

.38 俗語

.39 辭典

L

.4 音韻

.41 古韻

.412 聲類

.414 韻集

.42 宋韻書

.421 廣韻

.422 韻略

.423 集韻

.424 切韻指掌圖

.426 韻補

.427 韻鏡

.43 金元明韻書

.44 清代韻書

.45 民國韻書

J
721.3 訓詁

〔721.3 注音符號→721.19〕

.308 訓詁叢書

五雅全書등.

群經音義書→140.3;一切經音

義書→220.3

.31 爾雅

十三經注疏本爾雅→140.8

.32 注疏本

.33 圖說

.35 小爾雅

.36 釋名(逸雅)

.37 廣雅(博雅)

.38 其他群雅

723 辭典

K
.2 字典

康熙字典以後의 字典 分類.

727 讀本 解釋 會話

M
.1 蒙求書

千字文 童蒙訓 三字經등.

한글로 訓釋 懸吐된 千字文

童蒙先習등→711.47

.2 教科書

小・中學校用教材

大學校用讀本 및 古文選集은

文學에 分類.

728 古語 方言

J
.1 古方言

揚雄의 方言以下를 이에 分類.

例:魏濬의 方言據, 陳興効의

方言類聚등.

.2 現代方言

必要에 따라 地理區分한다.

802.46 音韻及語言

.47 注音字 拼音字

.48 注音符號

.49 讀音

.5 方言

J
.51 古方言

.52 現代方言

.58 國語

.589 國語運動

.59 國語羅馬字

.8 讀本

M
.81 蒙求書

위의 對比表에 있어서, 四部分類法보다 KDC 가 細分되고 또 KDC 보다는 CSC 가

詳細히 展開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骨子는 大同少異하다. 表에 적힌 關聯符號를 찾아 分類의 參考로 利用하여 주기 바라며, 다만 몇가지 留意할 事項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1) 群經의 正文 및 그 註疏와 諸經總義의 合刻 또는 合刊本 即 CSC의 090.8과 098에 該當되는 것을 KDC에 있어서는 140.8아래에 分類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諸經總義가 分刻 또는 單行本格으로 刊行된 경우, 音義書 이를테면 「群經音辨」「十三經音略」「十三經字音釋略」등은 140.3에, 石經 이를테면 「石經考」「石經彙函」「漢石經考」등은 140.9에, 卷帙이 아주 적은 「經學考異」「經典稽疑」및 그 論攷따위는 KDC의 分類方針에 따라 140.4에 各各 分類하도록 하였다. 한편 萬一 圖書館에 따라 必要하다면 群經의 正文 및 그 註疏本과 諸經總義를 140.8아래서 081 個人全集 選集 082 二人以上의 全集 叢書 選集의 形式區分의 助記性을 살리면서 다시 細分할 수 있음은 勿論이다.

2) 四部分類法의 禮類 三禮通義와 通禮의 2屬은 KDC의 144 禮類總記아래에 細分하여 新設했다. 雜禮書는 본시 私家儀註로서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史部 政書類 典禮의 屬에서 分離시켜 禮類에 附入시키고 있다.[157] 한편 天津圖書館藏書目錄에 있어서는 史部 政書類 典禮의 屬에 並入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158] 그러나 國家의 典禮와 私家의 儀註는 그 性格이 다르므로, KDC에 있어서는 四庫全書總目과 같이 禮類 끝에 新設하였다. 또 하나의 分類方法으로서는, CSC에서 볼 수 있듯이,[159] KDC에 있어서도 380 風俗 民俗學아래의 該當主題 또는 雜禮俗에 處理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이를테면 鄕禮는 383.2 鄕村制를 鄕村禮俗으로 고치어 이곳에 類入시킬 수도 있고, 家禮는 382 家庭生活의 禮俗에 並入시킬 수도 있으며, 其他의 禮俗은 384.9 雜禮俗을 新設하였으니 그곳에 分類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雜禮書의 分類는 圖書館에 따라 兩者中 어느 하나를 擇一할 수 있다.

3) 春秋三傳總義 春秋三傳異文總集과 四書總義도, 위의 諸經總義 通禮 三禮總義의 경우와 같이, 春秋類와 四書類의 總記아래에 各各 새로이 細分해서 分類記號를 配當하였다.

4) 樂類는 圖書館에 따라 中國古代音樂에 分類해도 좋고 여기에 分類해도 좋다. 그러나 中國古代音樂에 分類하는 경우 樂緯만은 이곳에 分類하여야 할 것이다.

5) 四部分類法의 小學은 오늘날 經學習得을 위한 入門書라기 보다는, 漢字 또는 漢學習得을 위한 入門資料로서 더욱 重要한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KDC에 있어서는 語學아래에 모으데 最少限度로 改訂하고 細分展開하였다. CSC에 있어서는 小學中 爾雅만을 經學아래에 또 重出하고 있으나, 이것은 群經合刻 即 十三經註疏本內에 들어있는 것을 뜻하므로, KDC에 있어서는 140.8 아래에 位置하게 되는바 군이 마

157)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二十二 經部二十二 禮類四 雜禮書.
158) 天津圖書館書目. 天津, 民國2(1913) 史部 政書類 古今典禮之屬.
159) 賴永祥 編訂. 前揭書, p. 209.

련할 必要가 없다. 單行本은 어디까지나 語學의 訓詁아래에 分類하고, 群經合刻內에 들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語學의 訓詁아래로 分類副出을 해주어야 한다. 字書에 있어서 說文 以下 옛 字林 玉篇 類篇 字彙등은 中國文字・漢字의 721.2 아래에 分類하고, 康熙字典 以後 新編된 玉篇 字典등은 그 利用度를 참작하여 723.2에 分類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現代의 字典 中, 韓國語로 解釋된 것은 713.2 漢韓字典, 日本語로 解釋된것은 733.2 漢和字典에 各各 分類한다. 韻書에 있어서도 中國의 音韻에 관한 것을 721 아래에 마련하였고, 韓國의 漢字音은 711.41에, 日本의 漢字音은 731.41에 各各 分類하도록 新設하였다. 訓蒙書도, 韻書 字典의 경우와 같이, 同一書라 하더라도 訓釋되고 懸吐 또는 訓點된 言語와 文字에 따라 分類를 달리하도록 마련하였다. 그것은 漢字를 共用하는 中國 韓國 日本의 경우, 解釋과 訓釋등을 한 言語와 文字에 따라 利用의 對象이 確實하게 區分되기 때문이다.

6) CSC의 091.4 占筮는 劉歆의 七略에서부터 數術略에 列入[160]되어 있으므로, KDC에 있어서는 188.7 占術에 모았다. 勿論 蓍龜 雜占이 本來 易學의 重要한 部分이었으나, 뒤에 陰陽五行과 合流되어 術數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限界를 劃然하게 가름할 수 없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는 劉歆의 分類法을 따르고 있으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KDC	四部分類法	CSC
911 韓國史	史 部	732 韓國史地
韓國通史 文化史등.	A 正史類	.1 通史
A B C D 正史類 編年類 紀事本末類 別	B 編年類	.2 斷代史
F 史類 史鈔類는 各各 該當時代	C 紀事本末	.21～.274 時代區分
에 分類함.	類	仿中國斷代史之例,
.001 韓國史觀	D 別史類	A B C 各代得按正史 編年 紀
.002 補助學	E 雜史類	E H F 事本末 雜史 表志 史鈔
H .0022 年代學(紀年・史表類)	F 史鈔類	G 史評 通俗史話等複分之.
	載記類	
V .0024 金石學	G 史評類	V 790 古物 考古
碑文 金石誌	H 史表類	791 古物彙考
金石學一般→902.4		792 甲骨
V .0025 考古學		793 金

160) 班固. 前揭書, 藝文志 數術略 蓍龜 및 雜占.

	遺物(石,瓦,土,塑陶,金屬,竹,纖維등) 遺跡등의 考古學的인 硏究.			794	石
				795	書畵 法帖
				796	磚 瓦 陶 及 雜器
	考古學 一般→902.5			797	中國古物志
911.0026	V 錢貨學(古錢學)			798	各國古物志
	錢貨學 一般→902.6			899	系統考古學
.0028	歷史地理				
.003	國史辭典 事典				
.004	論文集 講演集 G 史評				
.005	定期刊行物				
.006	學會 團體 會議				
.007	硏究 및 指導				
.008	全集 叢書 講座				
.009	史料				
	時代別 地域別 및 主題別로 分類할 수 있는 것은 各各 該當되는 곳에 分類함.				
.0091	I 詔令奏議	I 詔令奏議類			
	詔書 綸音 傳敎 敎旨 奏疏 疏箚 封事 啓文등.				
[911.0091	古文書類→911.0098]				
.0092	J 記錄類	J 記錄類			
	다른 곳에 分類할 수 없는	職官類			
	各種 史的記錄類.	K 官制			
.0093	典故類	L 官箴		530	禮俗
	E 故事와 N 典儀	政書類			N 該當主題
.0094	E 野乘類	M 通制			
	野史 史譚 史的 漫筆등.	N 典禮			
	三國遺事→911.03	O 邦計			
.0096	制度類	P 軍政			
	M 文物制度一般.	Q 法令			

文獻備考 四千年文獻通考등.
古代行政制度(一般)→350.21;
韓國古代官制考→351.11

911.0098 J 古文書類
通文 稟目 手標 立案 完文등
古文書學→902.9

.0099 P 特殊史
時代別 또는 地域別로 區分 할 수 없는 綜合的인 것(異災史一般등) 特殊主題로 分類하는 것 보다도 歷史아래 모으는 것이 더 좋다고 認定되는 것 (例：戰史爭등)

911.01～.07 時代區分 R 外交

911.1～.99 地方史 S 考工

912 中國史

中國通史 文化史 A 紀傳體通史 B 編年體通史 C 紀事本末通史 D 別史通史 F 史鈔通史등.
A 正史類 B 編年類 C 紀事本末類 D 別史類 載記類 F 史鈔類등의 斷代史는 各各 該當時代에 分類함.
史鈔 는 그 內容에 따라 通史 斷代史 時代區分 또는 地理區分함.

.001 中國史觀
.002 補助學
.0022 年代學(紀年·H 史表類)
.0024 V 金石學
碑文 金石誌 圖像
.0025 考古學

610 中國通史
.1 A 紀傳
.11 史記
.12 世本
.13 函史
.2 B 編年
.21 竹書紀年
.23 資治通鑑
.24 通鑑綱目
.25 續資治通鑑綱目
.26 歷代通鑑纂要
.27 繼資治通鑑
.28 通鑑輯覽
.29 其他 時令類→子部 農家類 時令
.3 C 本末
.4 E 雜史 專史

遺物(石, 瓦, 土, 塑陶, 金屬,
竹, 纖維등) 遺跡등의 考古
學的인 硏究.

V
912.0026 錢貨學(古錢學)
.0028 歷史地理
.003 中國史辭典 事典

G
.004 論文集 講演集 史評
.005 定期刊行物
.006 學會 團體 會議
.007 硏究 및 指導
.008 全集 叢書 講座
.009 史料

時代別 地域別및 主題別로
分類할 수 있는 것은 各各
該當되는 곳에 分類함.

I
.0091 詔令奏議類

詔書 綸音 傳敎 敎旨 奏疏
疏箚 封事 啓文등.

J
.0092 記錄類

다른 곳에 分類할 수 없는
各種 史的記錄類.

.0093 典故類

E N
故事와 典儀

E
.0094 野乘類

野史 史譚 史的漫筆 雜史등.

.0096 制度類

M
文物制度一般.

通典 通志 文獻通考 九通
十通등.

J
.0098 古文書類

H
610.5 表志
.6 史稿

F
.7 史鈔

G
.8 史評
.81 評論
.83 考訂

.9 敎科書 通俗史話

611 中國史硏究之理論及方法
612 中國史地綱要
613 中國史學敎育
614 中國史辭典
615 期刊
616 中國史學有關會社 機關
團體
617 中國史雜論
618 中國史學叢書
619 中國史硏究及現狀
621～628 中國斷代史

依時代表細分後, 每代得
依中國斷代史複分表細分.
中國斷代史複分表如次.

A
01 紀傳

B
02 編年

C
03 本末

E
04 雜史 專史 野史

H
05 表志
06 史稿

F
07 史鈔

G
08 史評

通文 禀目 手標 立案 完文등

古文書學→902.9

P
912.0099 特殊史

時代別 또는 地域別로 區分할 수 없는 綜合的인 것.

또 特殊主題로 分類하는 것보다도 歷史아래 모으는 것이 더 좋다고 認定되는 것.

912.01～.07 時代區分

912.1～.8 地理區分

913 日本史

09 通俗史話

629 中國方隅史

.1～.7 依現行省區分

.8 不限於現行省區者

630 文化史

M
.1 通典 通志 通考

.11 通典

.12 續通典

.13 通志

.14 續通志

.15 文獻通考

.16 續文獻通考

.17 歷代文獻通考合編

.18 九通合刻

.19 十通合刻

.9 中西交通史

631～638 斷代文化史

637 清代文化史

M
.1 清三通

.11 清通典

.13 清通志

.15 清文獻通考

.17 清續文獻通考

639 中國民族史

J
650 史料

651 詔令 ⎫ I
652 奏議 ⎭

B
654 實錄

J
655 檔案

731 日本史地

T
980 地 理

.1 理論

.11 方法論

T
地理類

總志

都會郡縣

T
732.7 韓國地方志

1～99 地理區分

T
660 中國地理總志

980.19 地理學史

.2 類誌

特殊한 地域의 類誌는 그 地域에 分類함.

例：中國旅行記 981.2027

[980.2 名勝案內 旅行→ 980.22; 980.27]

.22 史蹟 古蹟 名勝 景觀

地理區分을 할수 없는 綜合著作. 都城 包含.

.23 山 山岳

.24 河川 湖水

[980.24 世界旅行 案內記→980.27]

.27 旅行記 踏査記 紀行集

世界旅行規定 航海 空中 陸路 旅行등 包含.

地理區分 海洋區分할 수 없는 綜合著作만 分類.

.29 探險記 發見記

漂流記 包含. 特定地域의 漂流는 그 地域에 分類함.

.3 地理辭典 事典

.4 論文集 講論集 隨筆

.5 定期刊行物

.6 學會 團體 機關 會議

.7 硏究 및 指導

.8 全集 叢書 講座

981 아시아地理

910과 같이 地理區分하고, 必要에 따라 980.1~.8과 같이 細分함. 例：中國紀行 981.2027

982 유럽地理

983~987 아프리카~兩極地理

988 海洋

989 地圖 및 地圖册(帖)

河渠

邊防

山川

古蹟

遊記

外紀

.3 敎科書

661~668 各代地理總志

669 歷史地理

670 方志總論

671~676 各省方志

677 台灣志

680 類志

681 都城 疆城

682 水

683 山

684 名勝古蹟

685 人文地理 人民 政治 風土

690 中國遊記

910～979와 같이 地理區分함.

U

990 傳 記

世界叢傳 文學 藝術 其他主題에 關聯되지 않은 日記 逸話集 言行錄 年譜 行狀 人物評論 追悼錄 尺牘 肖像등包含.

.9 特殊傳記

991 아시아

910과 같이 地理區分함.

992～997 유럽～兩極

998 主題別傳記

100～999와 같이 區分함.

999 系譜 族譜

999.1～.7 地理區分

.8 氏族 貴族 王族

999.8～.99는 910～979와 같이 地理區分함.

.81 姓氏 氏族

.82 家傳 家史

.83 墓誌

忌辰錄 包含.

.85 其他系譜的인 諸資料

.86 貴族 華族

文武官 包含.

.87 王家 王族

.88 帝王 王妃

.9 紋章 家紋

.99 國旗 徽章

U

傳記類

聖賢

名人

總錄

別錄

雜錄

V

金石類

目錄

古物

彙考文字圖像

U

780 傳記總論

.1 作傳法

781 世界名人合傳

782 中國人傳記

.1～.7 總傳

.8 分傳

.9 年譜

783～787 各國傳記

788 各科名人合傳

789 譜系

W

014～019 書目・目錄～藏書目錄

[014個人書目→014.11～.79 國別個人書目]

W

目錄類

W

012—018 總目錄～收藏目錄

193.2 吏道
350.3 公務員制度] L

573.4 中國職官・人事制度

K

.41 官制

L

.42 官箴官規

329.09 財政史 ⎤ 320.9 經濟史 ⎦ O 910～979와 같이 地理區分함.	565 各國財政史 ⎤ 552 各國經濟史 ⎦ O 依國分
K 350.21 古代官制(行政學에 新設) .219 歷代制度 ⎤ 91△.0096 文物制度類 ⎦ M	573.1 通制(政治學) .11～.18 歷代制度 周官 西漢會要 三國會要 唐會要 五代會要 明會要 清會要 630 文化史 M
349.1～.79 各國外交 900 아래의 時代史 361.3 國際條約 R 910～979와 같이 地理 區分함.	732.4 韓國外交史 ⎤ 640 中國外交史 ⎦ R
Q 360.9 古代法令·法制史 910～979와 같이 地理區分함.	Q 582.1 歷代律令則例
391.09 軍事行政史 900 아래의 時代史 91△.0099 特殊史(一般的인것) P	591.21 歷代行政(軍政) 591.8～.9 各國軍政 600～700 아래의 時代史 P
509 技術史 ⎤ 500 아래의 該當主題 ⎦ S	409 技術史 ⎤ 400 아래의 該當主題 ⎦ S

위의 對比表에 있어서 몇가지 留意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純粹한 史書를 편찬의 體裁로 羅列하였기 때문에 같은 內容의 것이 分離된다고 이미 指摘하였거니와, KDC에 있어서는 그 體裁를 無視하고 時代 또는 地域別로 같은 內容의 史書를 한곳에 모으도록 마련하였다. CSC에 있어서는 우선 通史와 斷代史로 區分한 다음, 通史는 바로 그 體裁에 의하여 細分하고 있으며, 斷代史는 다시 時代區分을 한다음 必要에 따라 그 體裁에 의한 複分을 하도록 마련하였음이 特徵이다. 雜史類는 讀史者에게 參考거리가 되는 野史와 故事따위를 들 수 있으며, KDC에 있어서는 野乘類와 典故類中의 故事에 分類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이것이 어떤 時代 또는 地域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時代와 地域에 分類할 수 있음은 勿論이다. CSC의 專史는 特殊한 內容을 專題한 史書이기 때문에, KDC에 있어서는 特殊史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어떤 時代 또는 地域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곳에 分類할 수 있다. 四部分類法의 史鈔類와 CSC의 史稿를 KDC에 있어서는 마련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鈔錄 또는 收錄되어진 內容에 따라 通史 時代時 地域史 혹은 어떤 主題中 어느 하나에 分類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前者는 高麗史를 鈔錄한 것이라면 911.04에, 後者는 그것이 清史稿라면

912.06에 各各 分類한다. 要컨대, KDC에 있어서는 名分論에 사로잡힌 體裁爲主를 止揚하고, 原則的으로 時代 또는 地域別로 같은 內容의 史書를 한곳에 모으도록 하였음이 그 特徵임을 銘心하여 주기 바란다.

四部分類法의 載記類는 王統의 正閏論에 立脚하여 命題한 것으로 그 內容도 時代史 地域史 또는 어떤 主題中 어느 하나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KDC에 있어서는 이를 無視하였다. 四庫全書總目에 적힌 것으로 例를 들어 보면「十六國春秋」는 912.035에,「南唐書」는 912.039에,「安南志略」은 914.16에,「高麗史」는 911.04에,「朝鮮史略」은 911에 各各 分類하면 되는 것이다.[161] 史評은 KDC에 있어서 91△.004 論文集·史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劉知機의「史通」이라든가, 胡賓의「讀史管見」따위는 912.004에 分類하면 되는 것이다. 長澤氏의 四分改修法案에 表示된 史表類[162]는 KDC에있어서 91△.0022 年代學 (紀年·史表類)에 並入하도록 하였다. 이를테면「東史年表」는 911.0022에 分類하면 된다.

2) 史料로서의 詔令奏議類는 KDC에 있어서 91△.0091에 分類하도록 修正하였고, 그 位置에 있었던 古文書類를 91△. 0098로 옮기었다. 分類記號가 길어지는 것을 念慮하여 細分하지 않았음이 遺憾이다. CSC에 있어서의 檔案은 우리나라의 古文書類를 뜻함을 아울러 添言한다. 史料로서 價値가 있는 各種의 記錄資料로서 다른 곳에 分類할수 없는 경우를 考慮하여, KDC에 있어서는 91△.0092 記錄類를 別設하였다. 따라서 이에는 史料로서 다른 곳에 該當될 수 없는 것, 말하자면 個人과 團體가 自體의 後日을 위하여 備忘하고 證據用으로 記錄해 둔 諸雜資料가 分類된다.

職官類中 官制의 屬은 본시 KDC에 그 項目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現代의 行政組織과 그 名稱 및 性格이 달라서 함께 分類할 수 없어 350.21에 古代官制와 350.219에 歷代制度를 新設하였으니, 必要하다면 古代官制 아래서 六曹 및 其他官衙를 細分하여 利用할 수 있다. 따라서 351~357 各國行政府의 註記中「政府組織은350.23~·279와 같이 細分할 수 있다」를「政府組織은 350.21~.279와 같이 細分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例를 들면 韓國政府古代官制는 351.11이 되고, 中國政府古代官制는 351.21이 되는 것이다.[163] 官箴의 屬은 KDC에 있어서 國家 및 政治倫理의 193.2 吏道아래에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主題와 接近시키고자 하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350.3 公務員制度아래에 넣도록 指示되어 있다. CSC에 있어서는 職官과 官箴이 573.4 人事制度에 並入되어 있다.

政書類中 通制의 屬은 文物制度一般과, 六曹 全般의 制度를 여러 門目으로 나누어 全代 또는 一代에 걸쳐 總括한 것의 2種으로 大別할 수 있다. KDC에 있어서 前者는 91△.0096 文物制度類아래에 分類하고, 後者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350.219 歷代制度를 新設하였으니, 그곳에 分類하면 된다. CSC에 있어서는 前者를 630 文化史아래

161)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六十六 史部二十二 載記類.
162) 長澤規矩也. 前揭書, p. 29.
163) 韓國圖書館協會 編 前揭書, p. 129.

에 마련하였음이 特異하다. 典禮의 屬은 春官 所掌의 帝制와 朝章關係이며,[164] KDC에 있어서는 91△.0093 典故類中 典儀에 分類하도록 마련하였다. CSC에 있어서는 禮經과 더불어 社會의 禮俗아래에 位置하고 있음이 特異하다. 邦計의 屬은 度支 所管業務關係資料에 該當되는 것으로, KDC에 있어서는 329.09 財政史아래서 地理區分하는것이 原則이나, 圖書館에 따라서는 그보다도 食貨志와 더불어 320.9 經濟史아래서 地理區分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軍政의 屬은 用兵이 아니라 養兵에 關한 資料에 該當되며,[165] KDC에 있어서는 391.09 軍事行政史아래서 地理區分하는 方法을 우선 생각할 수 있으나, 한편 圖書館에 따라서는 時代史에 넣는 것이 더 좋을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高麗兵馬制度의 硏究에 있어서, 이를 軍事行政史에 넣지 않고 高麗史에 分類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軍政의 一般을 다룬 것으로서 時代 또는 地域別에 該當되지 않는 경우, 圖書館에 따라서는 이를 專題의 特殊資料로 規定하고 91△.0099 特殊史에 分類할 수도 있음은 勿論이다. 法令의 屬은 KDC에 뚜렷한 項目이 없다. 따라서 360.9 古代法制·法制史를 古代法令·法制史로 고치어 그 아래서 地理區分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CSC는 582.1 歷代律令則例를 마련하고 있다. 外交의 屬은 主題別로 機械的인 處理를 하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KDC의 349.1~.79 各國外交 그리고 條約集은 361.3 國際條約 아래서 地理區分할 수 있으나, 그 中 各國外交關係資料에 대하여 歷史에 分類하고자 하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900 아래서 國別 時代別로 가려내여 分類하면 된다. CSC에 있어서는 外交史를 歷史아래서 하나의 主綱 인 640에 配當하고 있다. 考工의 屬에는 工作 또는 營造에 관한 資料가 該當되며, 技術科學의 分野에 屬한다. 이 系統의 資料는 많지 않으나 技術科學의 여러 分野에 걸쳐 傳存되고 있는 것이 있다. KDC에 있어서는 史的인 資料로 보고 509 技術史아래서 地理區分하거나 또는 500 技術科學아래의 該當主題에 分類하면 된다. CSC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3) 地理類에 있어서 類志一般은 980.2~.29에 分類하고 特定한 地域에 該當되는 것은 그 地域에 分類하되, 우선 910~979와 같이 區分한 다음 必要에 따라 980.1~.8과 같이 細分하면 된다. 이를테면 中國遊記는 981.2027, 아시아旅行記는 981.027이 된다.

4) 過去의 金石類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考古學에 包括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區分한다면 金石學은 各種의 遺物에 새겨진 文字에 관하여 硏究하는 學問이 爲主이며, 여기에 이를테면 「甲骨卜辭」「殷虛文字外編」등과 같은 圖像및 繪畫文字 등도 包含된다. 考古學은 各種의 遺物과 遺跡을 널리 調査·分析·評價하여 古代人類의 文化生活을 科學的으로 硏究하는 學問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過去의 金石類는 이 基準에 따르면 KDC의 91△.0024 金石學, 91△.0025 考古學, 91△.0026 錢貨學과 藝術의 各主題로 分散된다. CSC에 있어서는 이를 包括的으로 790~799 古物 考古에 分類하도

164)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八十二 史部三十八 政書類二 典禮之屬後敍.
165) 上掲書, 卷八十二 史部三十八 政書類二 軍政之屬後敍.

록 마련하였음이 特徵이다.[166]

5) 目錄類에는 在來의 目錄學[167]을 비롯하여 各種 主題分野의 書目과 藏書目錄이 包括된다. KDC에 있어서는 014 個人書目을 014.11~.79 國別個人書目으로 고치어, 014에 在來의 目錄學을 分類하고, 그 以下 019까지는 各種의 書目과 藏書目錄을 分類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書目中 特定主題의 것, 이를테면 儒敎經典書目같은 것은 主題別書目아래서 000~999와 같이 全主題 또는 全分類區分하여 016.14의 分類記號를 配當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40.16과 같이 處理하여 主題와 密接하게 位置하도록 할수도 있다.

KDC		四部分類法	CSC		
151	A 韓國哲學 思想	子 部	132	A 韓國哲學	
.3	三國時代	A 儒家類	.3	中古	
.4	高麗時代		.4	高麗時代	
.5	李朝時代 圖書館에 따라 區分하지 않고 者著名의 가나다順으로 單一排列할 수 있음.		.5	李朝時代	
.51	初期儒家 및 思想		.51	初期儒家思想	
.52	朱子學派(性理學)		.52	朱子學派(性理學)	
.53	退溪派(東人派, 嶺南學派)		.53	退溪派	
.54	栗谷派(西人派, 畿湖學派)		.54	栗谷派	
.55	折衷派		.55	折衷派	
.56	其他儒學派 및 思想 禮學派등		.56	禮學派	
.57	陽明學派		.57	陽明學派	
.58	實學派		.58	實學派	
			.6	日本統治時期	
.7	現代哲學者 및 思想		.7	現代	
152	中國哲學 思想		120	中國哲學	
.2	先秦時代	A	121	先秦哲學	A
.21	儒家 儒敎		.2	儒家	
.212	孔子(孔丘, 仲尼)			※細分省略	

166) KDC에 있어서도 金石學을 없애고 考古學에서 다루되, 過去의 金石學中 藝術分野에 該當되는 것을 除外한 分野만이 包括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單純하고 合理的일것이다.

167) CSC에 있어서 目錄學은 書目 또는 目錄에 관한 分野 以外에도 板本學등이 包括되고 있는 바, 말하자면 書誌學으로서의 概念을 內包하고 있음이 特異하다. 그러나 KDC에 있어서는 書目 또는 目錄에 관한 分野로 限定됨을 밝혀 둔다.

152.213	孔門弟子			
.214	曾子(曾參)			
.215	子思(孔伋)			
.216	孟子(孟軻)			
.217	荀子(荀況)			
.22	B 道家 老莊思想	B 道家類	121.3	B 道家
	道敎→240			道敎入 230
.222	老子(李耳, 老聃)			※細分省略
.223	關尹子(尹喜)			
.224	列子(列禦寇)			
.225	楊子(楊朱)			
.226	莊子(莊周)			
.227	文子			
.229	其他			
.23	C 墨家	C 墨家類	.4	C 墨家
	墨子(墨翟) 晏子(晏嬰)	(雜家類		※細分省略
	告子 別墨등.	雜學之屬)		
.24	D 名家	D 名家類	.5	D 名家
	鄧析子 尹文子 惠子	(雜家類		※細分省略
	(惠施) 公孫龍子등.	雜學之屬)		
.25	E 法家	E 法家類	.6	E 法家
	管子(管仲) 商子(商鞅)			※細分省略
	申子(申不害) 愼子(愼到)			
	韓非子 李斯등.			
.26	F 縱橫家	F 縱橫家類	.7	陰陽家 F 縱橫家
	蘇秦 張儀등.	(雜家類		
		雜學之屬)		
.269	K 陰陽家			
	騶衍등.			
[.27	兵家→399.12]			
[.279	農家→520 아래에]			
.28	T 雜家		.8	T 雜家
	鬻子(鬻熊) 尸子(尸佼)			※細分省略
	計倪子 子華子 於陵子			

	鶡冠子 呂子(呂不韋)				
	鬼谷子등.				
152.29	T 其他			.9	T 其他
.3	古代下	A		122	漢代哲學 (A)
.32	漢時代				
.33	魏晋南北朝時代			123	魏晋六朝哲學
.37	隋唐五代			124	唐代哲學
.4	宋元時代(中世 上) 圖書館에 따라 區分하지 않고 著者名의 가나다順으로單一排列할 수 있음. ※學派省略			125	宋元哲學
.5	明時代 圖書館에 따라 區分하지 않고 著者名의 가나다順으로單一排列할 수 있음. ※學派省略			126	明代哲學
.6	清時代 圖書館에 따라 區分하지 않고 著者名의 가나다順으로單一排列할 수 있음. ※學派名省略			127	清代哲學
.7	現代哲學者 및 思想			128	現代哲學
153	日本哲學 思想			131	日本哲學
399	G 古代兵法 910～979와 같이 地理區分함. 例：中國古代兵法→399.12		G 兵家類	592	兵法 作戰
				.09	G 古代兵法
520	H 農業 農學 ※該當主題에 分類함. 例：野菜博錄 525.4		H 農家類 農書 H′ 時令	430	H 農業 ※該當主題에 分類함 例：蠶書 438.3
521.4	農業氣象學			432	農藝
521.49	H′ 時令 時節의 風俗과 關聯된 歲時			.1	H′ 氣候 及 時令

→386.5
曆法에 있어서 季節과 關聯
된 時令→448.04

519	I 漢方醫學	I 醫家類	413	I 中國醫學
.1	漢醫基礎學		.1	醫經
.2	漢醫治療學		.2	診斷; 四診
	診脈包含		.3	內科
.3～.6	各科漢醫學		.4	外科
	513～516과 같이 細分.		.5	眼 耳 鼻 齒 喉등科
	例：漢醫小兒科 519.69		.6	婦科
.7	漢醫衛生學		.7	小兒科
.8	漢醫藥學		.8	雜病
	本草 漢方包含		.9	特別治療
.9	鍼灸學		414	I 中國醫方; 本草
440	J 天文學	天文算法類	320	J 天文學
.9	天文學史	J 天文(推步)	322.11	古儀器
.902	古代天文學	J′ 算書	.2	觀象臺
.903	中世天文學			依國分
.904	近世天文學		.8	日月食及掩食變化等 測定
442.1	天文臺 觀象監		323	天象
442.59	古儀器		327	歲時; 曆法
.99	日月等 交食推步		.1	季節; 時令
443	記述天文學		.3	曆法
448	歲時 曆法 測時法		.33	回曆(純太陰曆)
.04	歲時 時令		.34	農曆(太陰太陽曆)
	農業과 關聯된 時令→521.49		.39	萬年曆
	風俗과 關聯된 歲時時令→386.5		.4	曆書
.3	曆法		.42	中國曆書
.33	太陰曆(回曆)		.5	記時法
	七政算法 包含		.51	測定法
.34	太陰太陽曆(舊農曆)		.52	儀器
.35	太陽曆		.53	時間制度及標準
.39	萬歲曆		.54	天文時 平時
.7	測時法		.6	計日法; 計月法

測定法包含

448.73　時間標準

.74　測時用器機

.75　天文時 平時

[448.75 時間標準→448.73]

.76　計日法 計月法

.77　計年法

.78　置閏法

[448.78 測時用器械→448.74]

.79　干支

449　各國曆

910～979와 같이 地理區分.

※其他關聯된 主題

327.7　計年法

.8　置閏法

.9　干支

※其他關聯된 主題

J′

419　其他算法

.2　古代算法

J′

311　古算經

.8　日・韓等國古算法

.9　混合數學

K

188　術　數 168)

.01　術學(數學)

易類→141

.1　命相書

.2　命書

.3　相書

.31　面相(觀相)

.32　手相

.36　骨相

.39　名相(姓名判斷)

.4　擇日 看日

.5　宅相 墓相(風水)

地相 方位 圖讖思想등

.6　陰陽五行

遁甲

.7　占卜

易占 龜卜 錢卜 鳥卜 六壬

太乙 九宮 奇門 籤卜 籤詩

K

術數類

術學(數學)

占候

相宅相墓

占卜

命書相書

陰陽五行

雜技術

K

290　術數 迷信

.1　數學(術學)

291　陰陽五行

292　占卜

293　命相

294　堪輿(風水)

295　巫祝 巫醫 符咒 女巫

168)「相法 運命判斷」을「術數」로 고치고, 以下의 細區分에 대하여는 全的으로 改變하였다.

藥籤 問神 雜占(測字 占夢등)

188.8 占候

占星 占日月 風角 望氣등

.9 巫術 符咒 其他

巫祝 巫醫 巫女등

N
620 彫刻

622 彫塑材料 및 技法

623 木彫

624 石彫

625 金銅彫

626 粘土彫塑 塑造

627 其他材料

628 篆刻 印章

.8 印譜

.9 錢貨學

歷史補助學으로서의

錢貨學→902.6

629 諸像

630 工藝 裝飾美術

L
640 書藝

.01 書畫理論

.08 書畫全集

.09 書畫史

641 漢字의 書體

642 漢字의 書法

643 한글書法

647 落款 手結

648 書譜 書帖 法帖

649 文房具

L
650 繪畫

652 繪畫의 材料 및 方法

653 時代別 및 國別繪畫

54 主題別繪畫

藝術類

L 書畫

M 音樂

N 篆刻

O 雜技

N
930 彫塑

931 篆刻 刻印

932 彫塑方法

933 木彫

934 石彫

935 金銅彫

936 象牙彫 角彫 骨彫

937 版畫

938 陶磁

939 塑像

L
940 書畫

941 書畫目

942 書法

943 法帖

944 中國畫

945 畫册

946 東洋畫

659 版畫		M 910 音樂
M 679 國樂		916.7 東方撥弦樂器
M .9 東洋音樂		O 970 技藝
O 690 娛樂 運動 ※其他關聯主題		O 990 遊藝 娛樂 休閒 ※其他關聯主題
91△.0025 考古學의 各種遺物또는 600 藝術아래의 各種 鑑賞器物 } P	譜錄類 P 器用 Q 食譜	790 古物 900 美術類아래의 各種 鑑賞器物 } P
Q 594 飮食物	R 草木	Q 427 飮食
.5 食譜 料理法	S 鳥獸虫魚	.1 食譜
.51 韓國食譜 料理法		.11 中菜食譜
.52 中國食譜 料理法		.12 西菜食譜
.53 日本食譜 料理法		.13 東洋各國食譜
.54 西洋食譜 料理法		.16 美點製法
.55 材料別食譜 料理法 594.2～.39와 같이 細分.		.18 季節食譜
.56 季節別食譜 料理法		
R 480 植物學아래의 各種主題 例：松譜 486.6; 蘭譜 488.9		R 370 植物學아래의 各種主題
S 490 動物學아래의 各種主題 例：昆蟲譜 495.2; 鳥譜 498		S 380 動物學아래의 各種主題
U 040 一般論文集 講演集 論叢	雜家類	U 070 普通論叢
東洋學의 雜考 雜說 雜品	CDFT 雜學	071 雜考
雜纂 包含.		072 雜說
漢字는 中·韓·日의 共用語이므로 編著者의 國語下에 分類함.	雜考 } U 雜說 } U 雜品 } U	073 雜講 074 雜品 075 雜纂
041 韓國語	V { 雜纂 } U	078 中國現代論集
042 中國語	V { 雜編	079 各國普通論叢
043 日本語		
044 英語		

049 其他諸國語

V

080 一般全集 叢書

081 個人 一般全集

.1～.99 言語에 의한 一般個人全集

710～799와 같이 區分함.
但 漢字는 中·韓·日의 共用語이므로 編著者의 國語下에 分類함. 例：與猶堂全書 081.1; 曾文正公全集 081.2

082 二人以上 一般叢書

.1～.99 言語에 의한 二人以上의 一般叢書

710～799와 같이 區分함.
但漢字는 中·韓·日의 共用語이므로 編著者의 國語下에 分類함. 例：古典叢書 082.1; 百川學海, 說郛, 漢魏叢書, 唐宋叢書, 四庫全書, 昭代叢書, 小石山房叢書, 玉函山房輯佚書, 萬有文庫 082.2

V

080 普通叢書

081 前代叢書

082 近代叢書

083 現代叢書

084 輯逸叢書

085 外國叢書

086 郡邑叢書

087 飜譯叢書·西學叢書

088 族姓叢書

089 自著叢書

W

727.6 外國人을 위한 中國語教科書

737.6 外國人을 위한 日本語教科書

791.2 퉁구스語

滿州語 女眞語등

791.3 蒙古語

791.7 西藏語

792.52 梵語

792.53 팔리語

W

W 譯學類

803.2 朝鮮語文

803.1 日本語文

802.91 滿洲語文

802.92 蒙古語文

802.93 西藏語文

803.3 梵文

803.39 巴利語

W

X

030 百科事典 類書

漢字로 쓰여진 類書는 編著者의 國語下에 分類함. 例：大東韻府群玉 031

X 類書類

X

040 類書 百科全書

041 分類類書

042 摘錦類書

043 韻目類書

031 韓國語百科事典 類書
032 中國語百科事典 類書
033 日本語百科事典 類書
034 英語百科事典 類書
039 其他諸國語百科事典 類書

044 歲時類書
045 檢字類書
046 雜錄
047 兒童百科全書
049 各國百科全書

Y
813 韓國小說
漢文稗官小說 奇談隨錄 包含.
.4 高麗時代小說
.5 李朝時代小說
.7 野談 古談
.8 童話

Y
823 中國小說
小說家類의 雜事 異聞 瑣語 包含.
.2 古代小說
.4 中世小說
.5 明時代
.6 清時代
.7 民國時代

Y
小說家類
雜事
異聞
瑣語

Y
862.57 韓國小說
857 中國小說
.1 筆記：雜事 } Y
.2 筆記：異聞 } Y
.3 筆記：瑣語 } Y
.4 章回評話

Z
220 佛教
.3 辭典 事典
法數 名義集 音義등 包含.
例：大明三藏法數 法門名
義集 一切經音義등.
.4 論文集 講演集
諸師의 雜撰述書 包含.
.8 全集, 叢書 講座
.9 佛教史
.92 傳記
221 教理哲學
222 諸佛 菩薩 佛弟子
223 經典(佛典 大藏經)
經 律 論 三藏
224 法語 信仰錄 信仰生活
225 布教 傳道 教育 教化活動

Z
佛教類

Z
220 佛教
221 經典
222 論疏
223 規律
224 儀注
225 佈教及信仰生活
226 宗派
227 寺院
228 教化流行史
229 傳記

226	寺院			
227	法會 儀式 行事(儀軌)			
228	宗派			
229	喇嘛教			
240	[a] 道 教	[a] 道教類	230	[a] 道教(神仙)
.9	道教史		231	道藏
.92	傳記		233	規律
241	教義 神仙思想		234	儀注
242	教祖 開祖		235	修鍊
243	道藏		236	宗派
244	信仰錄 信仰生活		237	教會及組織
245	布教 傳道 教育 教化活動		238	教化流行史
246	寺院(道觀)		239	傳記
247	行事 法術 修鍊 神仙術 房中術 包含.			
248	教派			
230	[b] 基督教	[b] 基督教類	240	[b] 基督教
250	[c] 天道教	[c] 天道教類	276.2	[c] 天道教
259	[d] 檀君教(大倧教)	[d] 檀君教類		
280	[e] 回教(이스람教)	[e] 回教類	250	[e] 回教
289	[f] 조로아스타教(祆教)	[f] 祆教類	275	[f] 祆教(拜火教)

위의 對比表에 있어서 留意할 事項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1) KDC에 있어서는 四庫全書總目에 들어 있는 儒家類, 兵家類, 法家類, 農家類, 雜家類 雜學之屬의 墨家類, 名家類, 縱橫家類 및 道籙을 哲學的인 面과 宗教的인 面으로 본 경우 前者에 該當하는 道家類를 비롯하여, 漢書藝文志 所傳의 本來의 雜家類와 術數中에 包含되어 있는 陰陽家등을 追加해서 150 東洋哲學·思想아래에 함께 모았다. 그러나 그 中 兵家와 農家는 그 內容이 哲學的인 것이 되지 못하고 古代兵法과 農桑野菜등의 農事關係가 爲主임에, 여기서 削除하고 前者는 399.2 古代兵法, 後者는 520 農業아래의 該當主題에 分類하도록 조처하였다. 그리고 農業에는 史部로부터 時令이 옮겨 졌다. 即 農業氣象學다음에 521.49 時令의 項目을 마련하여 四時季節에 따르는 農家行事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季節에 따르는 農家의 閭閻風俗도 다루어졌기 때문에 風俗아래에 386.5 年中行事·歲時를 마련하였고, 또한 曆法에 있어서도 密接한 關聯이 있으므로 그곳에도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책의 內容에 따라 또는 國

書館의 特殊性에 따라 分類를 任意로 擇할 수 있다. 陰陽家도 KDC에 分類項目만 마련되어 있을 뿐, 實際는 188 術數아래에 分類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四部分類法의 醫家類는 KDC의 519 漢方醫學에 該當되며, 天文算法類는 KDC의 440 天文學아래의 各種主題와 419.2 古代算法에 各各 該當된다. 그 中 KDC의 天文學에 대하여는 이 系統의 古書分類를 위하여 CSC를 參考하고 多少 修正을 하였다. 188의 術數도 CSC를 參考하여 名稱을 바꾸는 한편 그 位置도 대폭 移動시키고 새로운 分類項目을 追加시켰다. 이 術數는 본시 易學의 支流로서 五行과 結付시켜 相生 相剋을 制度化하고 萬物의 造化의 根源을 推究하여 人間事의 利害得失을 推知했던 것이나, 그 뒤 人事의 福禍 貴賤 吉凶의 가름만을 追求하는 妖妄과 堪輿[169]가 地相의 吉凶을 豫言하는 方向으로 흘러, 오늘날에 있어서는 迷信의 秘學이라고까지 貶視하고 있다. 그러므로 KDC에 있어서는 이를 心靈과 結付된 迷信의 秘學으로 보고 心理學 끝에 附入시키고 있다. 한편 CSC에 있어서는 宗敎的인 迷信과 結付된 秘學으로 보았음인지 宗敎끝에 附入시키고 있음이 그 두드러진 差異點이다. 그러나 古人은 七略에서 볼 수 있듯이 陰陽五行을 用兵에까지 適用[170]시켰던 것이니, 宗敎的인 領域을 벗어난 것만은 事實이 아닐까?

3) 四庫全書總目의 藝術類에 있어서 琴譜는 音樂의 一部이며, 그 外에도 우리나라의 國樂에서 볼 수 있듯이 東洋의 固有한 樂器에 의한 樂書가 있음에, 이를 音樂으로 고치었다. 그러나 KDC에 있어서는 國樂밖에 없기 때문에, 그 끝에 679.9 東洋音樂을 新設하여 中國과 日本의 固有한 樂書도 分類할 수 있도록 하였다. CSC에 있어서는 東方搬弦樂器가 別設되어 있다.

書畵는 法帖이 爲主이다. KDC에 있어서는 640 書藝, 650 繪畵 그리고 書畵를 同時에 다룬 資料를 위해 書藝의 첫머리에 640.01~.09를 新設하여, 書畵理論부터 書畵史까지를 分類할 수 있도록 하였다. 篆刻은 620 彫刻, 雜技는 690 娛樂·運動아래의 該當主題에 各各 分類된다. CSC는 書畵를 함께 다루었고 技藝를 別設한 것이 다르나 內容에 있어서는 大同少異하다.

4) 譜錄類는 一物을 系統的으로 다룬 것이며, 그 中 器用은 KDC에 있어서 91△.0025 考古學의 各種遺物과 600 藝術아래의 各種鑑賞器物등에 該當되며, 食譜는 594 飮食物아래에 該當된다. 그러나 KDC에는 食譜의 項目이 없어서 594.5 料理法에 並入시켜 놓았다. 草木은 植物學아래의 各種主題 이를테면 「松譜」는 486.6 松栢類, 「蘭譜」는 488.9 細子目에 各各 該當된다. 鳥獸虫魚는 動物學아래의 各種主題 이를테면 「蝶蛾譜」는 495.9 鱗翅目, 「鷄譜」는 498.4 搔撥類에 各各 該當된다.

5) 雜家類에 있어서 雜學은 이미 위에서 言及하였거니와, 그 外에도 KDC의 152.28 雜家가 이에 該當된다. 雜考 雜說 雜品 및 雜纂中 거의 大部分은 어느 類門에도 屬할

169) 班固. 前揭書, 數術略 五行에 「堪輿金匱 十四卷. 師古曰 許愼云 堪 天道 輿 地道也」라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그後의 諸疏에서는 風水家를 堪輿라 일컫게 되었다.

170) 上揭書, 藝文志. 兵書略 兵陰陽.

수 없는 雜筆 衆說 또는 一般論叢의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171] KDC에 있어서는 040 一般論文集·講演集·論叢아래서 言語別로 區分하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雜考에 該當되는 洪邁 撰의 「容齋隨筆」, 雜說에 該當되는 沈括 撰의 「夢溪筆談」, 雜品에 該當되는 周密 撰의 「雲煙過眼錄」 및 雜纂에 該當되는 魏徵 撰의 「群書治要」 등은 042 中國語一般論叢에 分類되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人이 漢字로 쓴 著作에 대하여는 漢字가 中國 韓國 日本의 共用文字인 點에서, 編著者의 나라말 即 여기서는 韓國語의 一般論叢에 分類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람에 의한 漢詩와 漢文小說을 넓은 意味에 있어서 國文學의 範疇에 屬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CSC에 있어서는 民國以前의 學問을 漢學과 西學으로 나누어, 前者를 四庫全書總目의 體裁 即 敍述形式으로 細分하고, 民國以後의 것은 漢·西學關係를 함께 하나의 目에 集中시키고 있으며, 各國의 것도 하나의 目에 群集시키고 있음이 特異하다. 다시 말하면 敍述形式 時代區分 및 地理區分을 同時에 適用시켜 細分한 分類組織이 된다. 이 分類組織은 民國以前의 漢學을 詳細하게 展開시킨 點이 長點이나, 한편 同一한 主題의 漢學과 西學이 民國以前과 以後로 分離되고, 또한 中國 以外의 各國의 一般論叢이 하나의 細目에 全部 모이게 되는 바, 一定한 整理基準이 缺如되어 複雜한 것이 그 短點이 된다.

雜纂의 一部 이를테면 廣百川學海 說郛등과, 諸書를 合刻 合刊한 雜編은, 역시 어떤 一類門에도 屬할 수 없는 一種의 叢書임에,[172] KDC에 있어서는 080 一般全集·叢書아래서 個人 또는 二人以上의 編輯形式으로 區分하고, 必要에 따라 다시 言語區分하도록 하였다. 例컨대, 「曾文正公全集」은 081.2, 「說郛」는 082.2와 같이 分類하게 된다. 韓國人이 漢字로 著述한 것을 편집한 一般叢書 이를테면 「古典叢書」 같은 것은,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韓國語에 分類한다. CSC에 있어서는 一般叢書를 多數人 個人自著 外國 및 飜譯·西學으로 나누고, 多數人의 것을 時代區分 地理區分하는 以外에도 輯逸과 族姓으로 細分하고 있어, 分類가 混雜한 것이 短點이다. 中國以外의 各外國叢書와 飜譯叢書·西學叢書間의 分類限界도 또한 複雜하다.

6) 譯學類는 中國의 四部分類法에 없으며, 우리나라의 資料를 위해서 마련된 類門이다. KDC에 있어서는 韓外對譯語中 배우고자 하는 外國語에 分類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는다. 이를테면 「華音啓蒙」은 727.6, 「捷解新語」는 737.6, 「八歲兒」는 791.2, 「蒙語老乞大」는 791.3에 各各 分類한다. 그러나 이들 韓外對譯本이 外國語習得보다도 우리나라의 古語習得에 더욱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原則을 無視하고 718.02 韓國古語에 分類할 수도 있다.

7) 類書는 東洋全般에 걸친 一種의 百科全書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百科事典과 그 性格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KDC에 있어서는 030 百科事典아래서 言語區分하였다. 이 경우 韓國人이 漢字로 쓴 類書 이를테면 李圭景 編의 「五洲衍文長箋散稿」는, 漢字

171)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一百十七 子部二十七 雜家類敍.
172) 上揭書, 卷一百二十三 子部三十三 雜家類七 雜編之屬後敍.

가 中國 韓國 日本의 共用語이기 때문에, 韓國語下에 分類한다. 이 原則은 위의 一般論叢에서 言及한 바와 같다. CSC에 있어서 東洋學類書는 編輯形式으로 區分하고 있음이 特異하다.

8) 小說家類의 筆記인 雜事 異聞 瑣語[173)]와 우리나라의 稗官小說 奇談隨錄등은 嚴格한 意味에 있어서 오늘날의 小說과는 그 性格이 다르다. 그러나 十進法에 있어서는 그 分類處가 마땅치 않고, 한편으로는 章回小說 以外로 있었던 東洋 古代小說의 一種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KDC에 있어서는 813 韓國小說, 823 中國語小說아래서 各各 時代區分하도록 마련하였다. 이것은 CSC에 있어서도 同一하며, 다만 時代區分 대신 敍述形式에 의하여 區分하고 있는 點이 다를뿐이다.

9) 宗敎에 있어서는 佛敎 道敎 以外에도, 東洋의 古書에서 볼 수 있는 基督敎 天道敎 檀君敎(大倧敎) 回敎 祆敎등을 追加하였으며, KDC에 있어서는 200 宗敎아래서 一括하였다. CSC 또한 同一하다.

KDC		四部分類法	CSC	
810	韓國文學	集 部	862	韓國文學
.1	理論	A 楚辭類	.3	C 總集
	各文學形式論은 該當形式에	B 別集類	.4	B 別集
	分類함. 例：詩論 811.01;	C 總集類	.45	李朝
	小說論 813.01	D 詩文評類	.5	特種文學
.8	全集·叢書·講座	E 詞曲類	.51	詩
.81	個人全集	詞集	.511	鄉歌
.819	B 漢文別集	詞選	.512	E 歌辭
	漢詩別集→811.9	詞話	.513	時調
.82	二人以上의 全集·叢書	詞譜	.514	民謠
.829	C 漢文總集·選集	詞韻	.516	現代詩
	漢詩總集·選集→811.9	南北曲	.55	F 戲曲
.88	特殊分野의 全集·叢書	F 戲曲(劇	.57	G 小說
	兒童文學 婦女文學 海洋文學	本)類	.58	民間文學
	戰爭文學 推理文學등	G 小說類	.59	兒童文學
.9	文學史 文學評論		.6	雜著
	文學批評史 包含.		.7	D 漢詩文

173) 上揭書, 卷一百四十 子部五十 小說家類敍.

各文學形式의 評論은 該當形式에 分類함. 例：漢詩評 811.909

810.901～.907 時代區分

.9088 特殊分野의 批評

.909 漢文學史 漢文學評論 [D]

.91～.99 地方文學史 評論

811 詩

.1 鄕歌

.2 歌辭 [E]

.24 高麗歌謠

.25 李朝歌謠

.29 內房歌辭

.3 時調

.35 李朝

.36 現代時調

.4 民謠・俗歌

樂譜附民謠→673.4

.6 現代詩

.8 童謠

.9 漢詩 [BCD]

科詩 包含

812 戱曲 [F]

.5 李朝時代戱曲

.6 現代戱曲

.8 兒童劇

813 小說 [G]

.4 高麗時代小說

.5 李朝時代小說

.6 現代小說

.7 野談 古談

.8 童話

814 隨筆・散文

815 演說 雄辯

862.8 地方文藝

.9 文學史

816 日記 尺牘(簡牘) 紀行
817 諷刺
818 其他
820 中國文學
.1 理論
各文學形式論은 該當形式에 分類함. 例：詩論 821.01；小說論 823.01
.8 全集 叢書 講座
B
.81 個人別集
C
.82 二人以上의 全集・總集
.88 特殊分野의 全集・總集
兒童文學 婦女文學 海洋文學 戰爭文學 推理文學등
D
.9 文學史・文學評論
文學批評史 包含
.902 古代
.904 中世
.905 明時代
.906 清時代
.907 民國時代
.9088 特殊分野의 批評
.91〜.98 地方文學史 評論
BCD
821 詩
.2 古代
A
詩經研究 楚辭 賦등.
.4 中世
古詩 唐詩 宋詩 元詩등.
.5 明時代
.6 清時代
.7 民國時代
白話詩 包含

820 中國文學總編
.8 叢書
.9 中國文學史
.901〜.908 依時代複分
.91〜.97 文學形式別複分
D
821 詩論
822 賦及其他韻文論
823 詞論 詞話
824 戲曲論
825 散文論
826 函牘及雜著評論
827 小說論
828 語體文論：新文學論
829 文學批評史
C
830 總集
831 詩總集
A
832 辭賦及韻文總集
E
833 詞總集
F
834 戲曲總集
835 散文總集
.9 駢文總集
836 國文課本
837 語體文總集
838 婦女作品總集
839 各地藝文總集
B
840 別集
時代區分
850 特種文學
(851) 詩

821.9	E 詞曲 詞集 詞選 詞話 詞譜 詞韻 曲譜 曲韻 散曲 曲話등. 必要에 따라 時代區分함. 例：花間集 821.94.	(852) 853	詞 曲 } E
822	F 戲曲 時代區分	854	F 劇本
		856	函牘及雜著
823	G 小說 小說家類의 筆記인 雜事 異聞 瑣語 章回評話등 包含.	857	G 小說
		.1	筆記：雜事
.2	古代小說	.2	筆記：異聞
.4	中世小說	.3	筆記：瑣語
.5	明時代	.4	章回評話等
.6	清時代	.5	彈詞(盲詞)
.7	民國時代	.6	短篇(現代新體)
		.7	長篇(現代新體)
824	隨筆 散文 騈文 包含	858	民間文學
		859	兒童文學
825	演說 雄辯		
826	日記 尺牘(函牘) 紀行		
827	諷刺		
828	其他		
830	日本文學	861	日本文學

위의 對比表에서 볼 수 있듯이, 四部分類法의 集部는 모두 KDC의 文學類에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3部에 比하여 分類가 가장 쉽다. 그러나 이에 우선 留意할 것은, 위에서 이미 言及하였지만, 漢字는 中國 韓國 日本의 共用文字이니 이들 3國人에 의하여 쓰여진 漢文學書는 그 나라의 文學아래서 該當文學形式을 찾아 分類한다는 點이다. 그러나 韓國人이 본시 中國人에 의해서 쓰여진 著作을 批解하고 飜譯한 것에 대하여는 응당 中國文學아래에 分類하여야 하는 點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分類原則을 事前에 强調하면서 對比한 結果 느껴지는 몇가지 留意事項을 特記하면 다음과 같다.

1) 集部의 分類體系를 KDC에 있어서는 世界共通의 文學形式에 따라 離合하여 새로이 體系化시켰다. 集部의 楚辭類, 別集과 總集의 2類中에 들어 있는 純粹한 詩集, 詩文評類中에 있는 純粹한 詩關係書, 그리고 韻文의 하나로서 詩餘이요 樂府의 體인 詞曲類를 KDC에서는 821 中國詩아래에 함께 모았다. 811 韓國詩에 있어서는 漢文詩만을 一括하여 811.9에 集中시켰고, 楚辭는 中國古代의 詩이며 韓國에 있어서는 그

러한 形式의 詩가 없으므로 除外시켰다. 詞曲은 韻文의 名稱이며 詞와 曲을 말하는 것으로서, 古詩가 變하여 近體詩가 되고 그 近體詩가 變하여 詞가 되고 다시 그 詞가 變하여 曲이 된 것이며,[174] 그 책도 數量이 적지 않음에 從來 821 中國詩아래 混入되었던 것을 가려내어 한 項目으로 그 끝에 附設하였다. 그러나 韓國詩에 있어서는 詞曲의 名稱을 쓰지 않고 歌辭의 名稱을 쓰고 있으며, 그 自體가 例컨대 「龍飛御天歌」「國朝樂章」「江南樂府」「松江歌辭」및 「內房歌辭」등과 같이, 우리의 特有한 노래로 有名함에 811.2에 한 項目으로 配當하였다. 우리나라의 固有한 詩歌로서는 그 外에도 鄕歌 時調 民謠등이 있으며, 이것들을 모두 811 詩아래에 一括시켰다.

詩文評은 詩評 詩話와 詩·文合評 또는 文章評이 包含되고 있기 때문에, 그 中 純粹한 詩關係書 例컨대 우리나라의 「小華詩評」「東人詩話」와 같은 것은 韓國漢詩인 811.9에 分類하되 809 文學評論의 09를 따서 811.909와 같이 할 수 있고, 中國의「詩品」「中山詩話」같은 것은 中國詩인 821아래에 分類하되 역시 09를 끝에 붙일 수 있다. 詩·文合評 또는 文章評으로서 韓國人에 의한 것은 810.909 漢文學評論, 中國人에 의한 것 이를테면 「文章緣起」「楚範」같은 것은 820.9 中國文學評論에 各各 分類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中國人에 의한 散文에 대하여 評한 것이 있다면 文學形式에 따라 824.09에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KDC에 있어서 韓國漢文學과 中國文學의 個人別集과 二人以上의 總集에는 文 또는 詩·文合集만을 分類하고, 純粹한 詩만의 別集과 總集은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詩에 分類한다. 그리고 文만으로 된 別集 總集 中 그것이 散文 이라면 例컨대 「古文觀止」같은 것은 824 中國散文에 分類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漢文學의 個人別集을 810.819, 二人以上의 總集을 810.829와 같이 끝에 9를 附加시킨 것은 各各 新刊書와 區別시키기 위하여 취한 조처에 지나지 않음을 附言해 둔다.

CSC의 分類體系는 敍述形式인 理論 또는 評論, 編輯形式인 總集과 別集, 그리고 特種文藝로 1次的인 區分을 하고, 그 아래서 文學形式區分 또는 時代區分을 하고 있음이 KDC에 比해 特異한 點이다. 그렇기 때문에 文學形式의 觀點에서 보면 同一한 形式의 것이 分散되는 缺點이 있게 된다. 詩를 例로 들어 보면, 詩史는 總論의 820.91에, 詩論 또는 詩評論은 各論의 821에, 詩總集은 總集의 831에 各各 들어있고, 詩別集은 840 別集아래서 時代區分되어 있으니,[175] 詩에 관하여 폭넓게 檢索하고자 하는 경우는, 時間을 浪費케 하고 또한 不便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在來의 傳統的인 分類法의 體系를 最大限으로 살리려고 한 點은 長點이라 하겠다.

2) 四部分類法의 集部에 없는 戱曲과 小說을 KDC와 CSC에 있어서는 韓國文學과

---

174) 上揭書, 卷一百九十八 集部 五十一 詞曲類敍.

175) 特種文藝아래도 851에 詩가 들어 있는데, 新訂初版에는「此爲欲將詩詞獨設一類者而設」이라 註가 있고, 新訂2版에는「詩史入 820.91爲宜」라 적혀 있다. 詩史를 除外하고, 詩論 또는 詩評論 詩總·別集을 이곳에 함께 모으고자 하는 圖書館을 위하여 마련된 一類이다. 이것은 同一한 文學形式이 分散되어 利用者에게 不便을 주기 때문에 取해진 別案이라고 볼 수 있다.

中國文學아래에 各各 마련하였다. 그 中 中國小說에는 前述한 小說家類의 筆記인 雜事 異聞 瑣語가 編入되어 있음이 四分法에 比해 特異한 點이다.

V. 十進法의 批評

十進法을 四部分類法과 비겨 그 長短點을 들어 評價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長點으로서는 1) 四部分類法이 名分에 치우치거나 體裁에 의한 形式爲主인데 反하여, 十進法은 主題爲主로 組織되어 있다. 2) 學問의 全分野를 網羅하고 있어 大圖書館에 있어서는 新·古書, 中·小圖書館에 있어서는 新·古·外書까지 單一分類法으로 處理할 수 있다. 3) 展開性과 助記性이 豊富하여 現代分類法으로서의 基本條件을 具備하고 있다. 4) 分類法에 쓰여진 用語의 槪念이 整然하며 누구나가 곧 理解할 수 있다. 5) 相關索引이 붙어 있어 表의 使用이 便利하다. 그 中에서도 特히 1)과 2)에 의하여, 言語와 文字에 拘碍됨이 없이 同一한 主題와 關聯된 主題를 한곳에서 손쉽게 檢索할 수 있도록 組織해서, 利用者 爲主로 運用하고 奉仕하는 點이 一大長點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諸問題가 批判의 對象이 되고 있다.

1) 東洋學이 體系的으로 展開되어 있지 않고 支離繁瑣되어 있다.[176]

十進法은 異質的인 西歐學問을 土臺로 組織하고 이에 東洋學을 枝葉的으로 끌어 들였기 때문에 東洋學에 관한 主題가 거의 分類表 全般에 걸쳐 흩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東洋學으로서의 體系化가 完全히 喪失되었다. 四部分類法은 東洋學을 네 範疇로 大別하고 그 아래서 傳統的인 方法으로 벌리었다. 그 中 經學은 東洋의 學術 思想 政治 敎育 道德등 모든 分野의 源泉임에, 그 首位에 두고 文化傳統을 標榜하는 總類로 삼아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哲學의 一分野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十進法에서는 綱의 位置에 두고 있으니, 傳統的인 思考方式에 立脚하여 보면 탐탁치 않은 것이다. 史部 以下 集部는 現代學問의 觀點에서 가름하여 이곳 저곳으로 分散 編入시키고 있다. 그 中 子部의 分散이 가장 甚하다. 이것이 東洋學의 體系的인 組織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十進法의 短點에 該當되는 첫째 問題가 된다.

2) 東洋學에 관한 主題의 適應이 不適當한 곳이 있다.

十進法은 主로 西歐의 分類體系를 摹襲하여 만들고 이에 四部分類法을 끌어 들였기 때문에, 비록 類似한 項目에 東洋學에 관한 主題를 適應시켰다 할지라도, 兩者의 어딘가에 本質的인 差異가 있어서 不適當한 경우가 흔히 있다.[177] 그 一例로서 小說家類의 雜事 異聞 瑣語를 들 수 있다. 十進法에 있어서는 이를 不得已 小說에 넣을 수 밖에 없는 것도 首肯되나, 嚴格히 따져 보면 削足適履의 格에 지나지 않는다. 小說家의 筆記는 本來 稗官이 王政에 參考가 되는 街談巷語를 博採旁蒐한 것으로 道聽塗說과 같

---

176) 昌彼得. 改革中國圖書分類芻議. **書目季刊**, 第二卷 第二期 (臺北, 學生書局) 民國56 (1967)

177) 上揭書, 參照.

다하여 雜事 異聞 瑣語의 屬에 넣은 것이며,[178] 그 뜻과 敍述의 形式은 오늘날의 小說과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이것을 現代의 新體小說과 함께 並置한다는 것은 꼭 들어맞는 分類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十進法의 短點에 該當되는 두번째의 問題가 된다.

3) 東洋學에 관한 主題가 漏落되어 있거나 그 展開가 不充分한 곳이 있다.

韓國十進分類法과 四部分類法의 對比表에서 볼 수 있듯이, 東洋學에 관한 主題가 漏落되어 있고 또 그 區分이 不充分한 곳이 적지 않다. 例컨대 史部의 時令類, 子部 譜錄類 食譜의 屬은 본시 아예 漏落되어 있고, 經部 小學類 訓詁 字書 韻書의 3屬, 史部 職官類 政書類 및 金石類, 子部 天文算法類 推步의 屬과 術數類등을 비롯한 各類에 該當되는 項目의 展開가 대체로 粗略하다. 勿論 分類記號가 길어지는 것을 避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主要한 項目만은 꼭 표시되어야하며, 보다 細分的인 項目에 대하여는 註에 의해서 補充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最少限度로 깁고 보태고 고쳤지만, 어쨌든 旣刊된 韓國十進法에서 當하고 있는 短點의 세번째 問題가 된다. 이러한 點으로 볼 때 곧 改訂版이 出刊되어야 할 것이다.

4) 10區分의 制限으로 東洋學에 관한 主題가 細目에 位置하고 있어, 分類記號가 너무나도 길어지는 폐단이 있다.

東西洋學의 온갖 知識이 10區分이란 人爲的인 制限에 束縛되어 四部分類法의 類에 該當되는 主題가 韓國十進分法에 있어서는 細目에 配當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特히 歷史가 그러하다. 따라서 이를 展開시킨다면 分類記號가 너무나도 길어져서, 利用에 있어서는 勿論이요 管理에 있어서도 不便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것이 또한 韓國十進分法이 當하고 있는 短點中 네번째의 問題가 된다.

5) 十進法은 그 組織이 複雜하며 반드시 專門職敎育을 받아야 한다.

四部分類法을 利用하는 경우는 舊學에 造詣가 있는 사람이라면 專門職敎育을 받지 않아도 그런대로 分類業務를 擔當할 수 있다. 그러나 十進法으로 新·古書를 單一分類한다면 그 業務를 능히 處理해 나갈 수 없으니, 不得已 專門職敎育을 받아야 된다는 不平이 四部分類法 固守派에 의하여 提起되고 있다. 그러나 利用爲主의 現代圖書館에 있어서는 有機的으로 計劃된 圖書館運營의 基本政策下에서 諸資料가 組織되고 奉仕活動이 展開되어야 하기 때문에, 專門職敎育의 履修가 必須的인 要件이 되는 것만은 事實이지만, 어쨌든 四部分類法의 固守派 立場에서 보면 十進法의 使用으로 말미암아 惹起되는 短點의 다섯번째의 問題가 된다.

第七節 古書分類政策과 分類法의 趨勢

위에서 古書分類法의 各種에 대하여 史的인 順序로 考察하고, 그 特異點을 다른 分

178) 班固. 前揭書, 藝文志 諸子略 小說家後敍.

類法 그 中에서도 四庫全書總目에 適用되었던 分類法과 對比하여 言及하였으며, 아울러 主要分類法에 대하여서는 長短點을 들어 評價하여 보았다. 그 中 七分法은 四分法의 主用으로 말미암아 그 자취를 감춘지 이미 오래되었고, 四分法의 테두리를 完全히 벗어나서 獨自的으로 展開시킨 分類法도 現在 哈佛燕京學舍圖書館에서 使用되고 있는 裘開明 編의 漢和圖書分類法을 除外하고는 別로 利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現在 國內外에서 古書分類에 適用되고 있는 分類法으로서는 主로 四部 또는 그 改修分類法과 十進分類法임을 알았다. 그러나 現在 使用되고 있는 이 두 種의 分類法에 있어서도 第二章 第三節 Ⅳ 四分法의 批評과 第六節 Ⅴ 十進法의 批評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各各 長短點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므로 古書의 分類政策面에서 마땅히 愼重한 檢討가 있어야 함을 切感케 한다.

古書의 分類政策은 圖書館의 所藏內容과 性格, 다시 말하여 古書爲主의 所藏인가 혹은 新·古書의 並藏인가, 그 所藏이 保存爲主인가, 혹은 利用爲主인가, 또 그 性格이 東洋學의 專門圖書館인가 혹은 一般圖書館인가의 如何에 따라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古書의 保存을 爲主로 하는 個人 또는 團體의 文庫와 圖書館 그리고 東洋學만의 專門圖書館에 있어서는 응당 古書爲主의 分類政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澗松文庫 各種書院文庫 藏書閣 奎藏閣 日本의 尊經閣 宮內廳書陵部 內閣文庫 蓬左文庫 東洋文庫 靜嘉堂文庫등에 있어서는, 所藏本이 主로 지난날에 蒐集된 典型的인 古書로 限定되어 있고 圖書館의 主된 機能이 利用者爲主라기 보다는 文化財의 保存에 더욱 置重하고 있거나 또는 그 對象이 東洋學 專攻者로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高度의 知識과 技術을 必要로 하며 또 東洋學에 관한 主題가 여러곳으로 分散되어 있는 十進法을 適用시켜 整理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 傳統的인 襲用으로 東洋學의 專攻者들이 흔히 알고 있는 四部分類法을 適用시켜 古書爲主로 簡便하게 處理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한가지 留意할 것은 適用되는 四部分類法에 대한 適切한 補完問題이다. 이미 위에서 살펴 본 此種의 諸分類法을 參考로 하여, 所藏本의 性格과 그 多寡에 따라 類·屬의 次序와 詳略을 알맞게 定하고, 아울러 韓國의 特異한 事情을 反映시켜 그 增删을 適切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利用爲主로 運用하는 現代圖書館 그 中에서도 特히 學術 및 主題別 專門圖書館에 있어서는 적어도 單一分類法에 의한 新·古書의 一元化 分類政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이 圖書를 分類하는 窮極의 目的이 圖書館資料의 利用을 便利하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어떤 利用者이든 間에, 보고자 하는 主題의 圖書를 찾으려 接架할때나 또는 現在 우리나라에서 主用되고 있는 分類目錄을 檢索할 때도, 대개 그 主題와 類似한 圖書가 또 있는지의 與否에 興味를 갖고 찾는 것이 普通이다. 이 때 同一한 主題와 關聯된 主題의 新·古書가 한곳에서 檢索될 수 있다면 얼마나 便利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古書라면 덮어 놓고 新書와는 달리 別個의 分類法을 適用시켜 配架도 따로 하고 目錄組織도 따로 하려는 傾向이 짙은 것같다. 勿論 圖書

配架에 있어서, 一般圖書도 그 中 大型인것 또는 特殊裝訂인 것을 別途로 配架하고 있듯이, 古書에 있어서도 東裝인 것은 別途로 配架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分類까지 新·古書를 各各 다르게 하여야 할 理由는 없는 것이다. 分類法이 서로 다르면 分類目錄까지도 따로 組織하여야 하고, 또 同一한 書名 同一한 主題이면서도 古書와 新書의 分類記號가 서로 달라서, 利用者가 圖書를 利用하는데 적지 않은 混雜과 不便을 느끼게 된다. 더우기 古書의 所藏量이 그다지 많지 않은 圖書館으로서, 新書를 分類할 수 있는 分類法이라면 그런대로 古書도 分類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구태어 또 하나의 分類體系를 가지려는 것은 삼가야 할 問題가 아닐 수 없다. 萬一 이와 같이 얼마 안되는 古書에 대하여, 四部分類法이나 혹은 獨自的인 分類法과 같은 別個의 分類法을 適用시키는 底意가 보다 더 簡便한 整理方法을 採擇하자는데 있다면, 그것은 큰 矛盾이다. 왜냐하면 分類가 利用者의 資料利用에 대한 便宜를 目的으로 한 것이 아니라, 整理業務의 便宜만을 爲主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問題를 解決하려면 新·古書를 어디까지나 單一分類法에 의하여 分類하는 方法을 擇하여야 하는 것이다.

圖書館學의 尖端을 걷고 있는 美國에 있어서, 議會圖書館은 古書를 四部分類法으로 整理하고 있고,179) 또 哈佛燕京學舍圖書館같은 곳에서도 西書分類法과는 別途로 漢和圖書分類法을 別途로 만들어 쓰고 있지 않으냐180) 하고 反問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美國에 있어서의 一般圖書館用 分類法이, 東洋에서 使用되고 있는 우리들의 그것과는 그 組織이 根本的으로 다르기 때문에, 不得已한 事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네들이 使用하고 있는 分類法은 西歐中心으로 되어 東洋部分이 매우 粗略하다. 그렇다고해서 이를 뜯어 고친다면 分類法의 組織에 있어서 많은 變動이 있게 되니, 極히 限定된 資料의 利用者를 위하여 大多數圖書館의 尨大한 資料整理에 支障을주게 한다. 뿐만아니라 再分類의 폐단까지 끼치게 하는 難題가 있는 데서 起因한 것으로 여겨진다. 東洋에 있어서 韓國과 日本은 自古로 巨大한 漢土文化의 影響을 받아 온 關係로 漢文學이 우리의 日常學問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密援한 關係에 있지만, 歐美各國은 그렇지 않고 다만 極少數의 限定된 硏究者들이 利用하는 程度가 고작이고 보면, 우리의 處地와는 아예 判異하다는 것을 새삼 깨다를 수 있다.

利用爲主로 運用하는 現代圖書館이 單一分類法에 의하여 新·古書를 一元的으로 分類하여야 하는 政策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理由로서는, 第一章 第二節 從來의 古書整理에 대한 檢討에서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新·古書의 限界를 劃分하기 어려운 點에도 있다. 新·古書를 裝訂別 漢字別로 나누어 整理하거나 折衷的인 方法으로 整理할 때의 隘路와 不合理性을 생각하면, 굳이 新·古書로 나누어 두개의 分類法을

179) U.S. Library of Congress. A descriptive catalog of rare Chinese books in the Library of Congress, comp. by Wang Chung-min. Washington, 1957. v. 1—2.

180) Harvard-Yenching Institute Library. A classified catalogue of Korean books in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Library at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1962.

適用시킬 必要가 없다는 것을 깨다를 수 있을 것이다.

要컨대 Herdman이 言及하였듯이, 圖書가 大型이든 小型이든 興味가 있든 無味乾燥하든 어느 때에 著述되었든 또 어떠한 言語로 쓰여졌든 間에, 同一한 主題라면 한곳에 오도록 分類하는 原則[181]을 新·古書分類政策에도 適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만 配架에 있어서 典型的인 東裝의 古書를 많이 所藏하고 있는 圖書館은, Mann이 말하고 있듯이 「圖書의 物理的인 形態에 따라서 必要한 調整」[182]을 特殊裝訂인 東裝本에 適用시켜, 一般洋裝本에서 分離配架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豫算의 뒷받침이 許諾되거나 또는 古書의 所藏이 比較的 적은 圖書館에 있어서는 册匣이나 바인더를 利用하여 混架하는 方法을 擇하도록 勸告하고 싶다. 그 代表的인 例로서 古書의 藏書量이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 보다도 훨씬 많은 中國의 臺灣大學圖書館과 日本의 東京大學圖書館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整理政策은 또한 圖書館管理의 立場에서도 利點이 많다. 同一한 主題가 함께 配架되었을 경우, 그 貸出業務는 勿論이요 分類目錄을 組織할 때도 連鎖索引을 비롯한 同義語索引[183] 나아가서는 典據카아드의 作成에 있어서까지도, 二重으로 精力을 浪費시킬 必要가 없으니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184]

이와 같이 新·古書를 一元的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東洋學과 現代學問의 兩者에 걸쳐 處理할 수 있는 內容을 갖춘 分類法의 完備가 先行되어야 한다. 現在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KDC 밖에 없으며, 第二章 第六節 Ⅳ. 韓國의 新·古書用 十進法에서 四部分類法과 比較하여 그 聯關性을 說明하였듯이, 그런대로 古書整理에 適用될 수 있다. 그러나 그 批評에서 言及하였듯이, 아직도 東洋學에 관한 主題가 漏落되어 있거나 그 展開가 不充分하고 또 그 適應이 不適當한 곳이 있어 未洽하니. 繼續的으로 檢討하고 硏究하여 完備를 期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古書의 所藏量이 比較的 많은 圖書館에 있어서도 新·古書用 單一分類法이 使用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셋째 : 中·小圖書館에 있어서는 KDC에 의하여 新·古·外書를 統一的으로 分類하는 政策을 勸告하고 싶다. 中·小圖書館은 別로 古書가 없다해도 過言이 아니나, 그러나 한편 近來 古書의 影印 또는 活印에 의한 刊行이 잦아지고 앞으로는 더욱 活氣를 띠어 實質的인 古書가 漸次的으로 所藏될 것이며, 또 古典에 관한 飜譯書 硏究書도 더욱 增加될 것만은 事實이다. 따라서 現在 듀이十進分類法(DDC)을 使用하고 있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歲月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들 韓國學 및 東洋學 關係資料의 分類가 困難하고, 또 흔히는 客觀的인 內容의 資料를 主觀的인 位置에 억지로 집어

181) Margaret M. Herdman, Classification: an introductory manual. 2nd ed. Chicago, 1947. p. 3.

182) Margaret Mann,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2nd ed. Chicago, 1943. p. 33.

183) Harry Dewey. The classified catalog, ed. by Robert Burgess. Seoul, Yonsei University, 1960. pp. 19~46.

184) 拙稿. 古書의 "分類問題(下)," **도협월보**, vol.2. No. 4(1961), pp. 26~29.

넣는 폐단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도 單一分類法으로서는 KDC를 擇하는 것이 便利할 것이다.

끝으로 大圖書館을 위한 新·古·外書의 統一的인 分類政策과 關聯된 分類法의 趨勢에 대하여 言及코자 한다.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KDC에는 고치기 어려운 一大短點이 뒤따르고 있다. 그것은 東·西洋學의 온갖 知識이 十進이란 制限內에서 無理하게 展開된데서 起因하는 不可避한 缺陷인 것이다. 지금도 벌써 綱目과 細目에서 上下關係의 概念이 흐려졌고 區分의 均衡을 잃은 곳이 있다. 또 分類記號가 길어진 것도 있으며 特히 東洋學關係의 主題가 그러하다. 이러한 缺點은 學問의 發展과 더불어 分類法이 成長하면 成長할수록 正比例하여 더욱 커지는데 苦憫이 있는 것이다. 史料로서의 記錄類는 現在 91△.0092로 記號가 매겨져 있다. 이것은 韓國에서 適用되고 있는 四部分類法으로 말하면, 類에 該當되는 上位概念의 名稱이 되며 그 屬에 該當되는 內容을 展開시킨다면 8單位까지 미치게 되니, 복잡하기 그지 없다. 이를 最少限으로 縮少시키기 위하여, 이를테면 韓國을 表示하는 911를 가령 「한」 또는 「K」로 代置해서 記錄類를 한.0092 또는 K.0092와 같이 簡略化할 수 있으나, 이것도 將次 屬에 該當되는 것 以上으로 展開시킨다면 또 길어지는 難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將來의 問題點까지를 考慮한다면, 大圖書館에 있어서의 新·古·外書의 統一的인 處理를 위한 分類法은, 10進이라는 制限을 벗어나서 客觀的인 學問의 體系를 좇는 展開式 分類體系로 組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構想은 西歐의 것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벌써 南宋때 鄭樵의 十二分法에서 연유되었다. 이 十二分法은 그 當時 主用되었던 四部의 傳統的인 範疇를 벗어나서 果敢하게 發展시킨 展開分類法의 嚆矢라 볼 수 있다. 그 後 明代에서는 孫樓가 博雅堂藏書目錄에서 十八分法을 案出하였고, 清代에서는 錢曾이 述古堂藏書目錄에서 무려 78類, 다시 王聞遠은 孝慈堂書目에서 바로 85目으로 區分하였다. 다만 科學的인 體系化가 Cutter(1837~1903)의 展開分類法(expansive classification)으로 말미암아 世界에 알려졌고, 美國議會圖書館分類法(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에 의하여 發展하였을 뿐이다.

우리에게도 客觀的인 內容의 圖書를 主觀的인 限定記號로 區分하는 分類方法을 止揚하고, 東·西洋學의 過去와 現在는 勿論 未來에까지 걸쳐 體系的이고 發展性있게 展開시킬 수 있는 包括的인 分類法을 마련할 때가 到來한 것 같이 여겨진다. 그 때가 바로 大圖書館도 單一分類法에 의하여 新·舊·外書의 分類를 名實相符하게 統一시킬 수 있는 時期가 될 것이라고 내다 보는 것이다.

第八節 古書分類의 準則

Ⅰ. 一般準則

이 準則은 新書의 一般規定中에서 古書에 適用되는 것만을 들어 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빠진 規定은 「韓國十進分類法解說」[185]의 一般規定을 위시하여 Sayers[186]와 Merrill[187]의 分類原則과 規定 그리고 其他의 關聯된 分類規則[188]을 參考하여 주기 바란다.

가. 最大限의 利用을 위한 分類

圖書는 新·古書를 莫論하고 最大限으로 利用되는 곳에 分類하여야 한다. 그 最大限의 利用을 위한 分類란 圖書內容을 爲主로 하면서도, 圖書館의 種類와 利用者의 性格이 考慮되어 自館의 利用者라면 누구나가 다같이 손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妥當性 있게 處理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Merrill이 言及하고 있듯이, 圖書館과 利用者의 一時的인 要求와 過渡的인 興味에 迎合하는 分類態度는 止揚하여야 한다.

나. 分類의 基本標準

圖書分類의 基本標準은 根據하고 있는 分類法의 組織原則에 따라 一貫性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即 먼저 主題爲主인가 形式爲主인가를 確認하고 그 組織原則에 따라 始終一貫性이 있게 分類한다.

KDC는 그 책에 다루어진 主題에 따라 分類함을 基本標準으로 삼는다. 다만 圖書學·書誌學(010) 圖書館學(020) 新聞學의 理論 編輯管理를 除外한, 總類(030~060, 071~080)와 文學(800)만은 그 形式에 따라 먼저 分類함을 基本標準으로 삼는다.

四部分類法은 主題와 形式이 混成되어 있다. 經部는 主題爲主이나, 史部와 子部는 兩者가 混成되어 있고, 集部는 形式爲主이다.

다. 分類의 補助標準

圖書의 分類는 必要에 따라 形式 地理 時代 및 國語의 各區分을 補助的인 標準으로 삼는다. 이를테면 KDC에 있어서 「大明三藏法數」는 220.3(佛敎에 있어서의 一般形

---

185) 李丙洙. 韓國十進分類法解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186) W.C. Berwick Sayers, An introduction to library classification: theoretical, historical and practical. 9th ed. London, Grafton, 1954.

W.C. Berwick Sayers. A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and bibliographers 3rd ed. London, Grafton, 1955.

187) W.S. Merrill. Code for classifiers. 2nd ed. Chicago, A.L.A., 1939.

188) 王省吾. 圖書分類法導論.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社, 民國53(1964) 第八章 圖書分類的規則.

仙田正雄. 圖書分類規則. 東京, 蘭書房, 1953.

式區分), 「大東輿地圖」는 989.11(地圖에 있어서의 地理區分), 「高麗史」는 911.04(韓國史에 있어서의 時代區分), 「大東韻府群玉」은 031(類書[189]의 國語區分)과 같이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別集類를 韓國 中國 日本과 같이 地理區分하고, 必要에 따라 다시 時代區分하여 韓國別集을 三國時代 高麗時代 李朝時代 現代로 細分하는 것 따위를 들수 있다.

라. 著者의 意圖와 目的

圖書의 分類는 著者의 意圖와 目的에 따라야 한다. 圖書의 分類는 같은 主題라 할지라도 著者의 意圖 또는 目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例컨대, 陳壽 撰의 「三國志」와 羅貫中 撰의 「三國誌演義」는 그 內容이 中國 三國時代의 史實을 根據 또는 背景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著者의 著述意圖가 같지 않다. 前者는 歷史編纂에 있고, 後者는 小說的인 描寫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KDC에 있어서 前者는 中國歷史의 912.033 三國時代에 分類하고, 後者는 中國小說의 823.5 明時代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前者는 史部 正史類에, 後者는 集部 小說類(四分改修法에 追加된 類)에 各各 分類한다.

마. 書名爲主의 分類 止揚

圖書의 分類는 書名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圖書의 主題 또는 形式에 의하여야 한다. 圖書의 主題에 의하여야 하는 例로서 宋代의 王湜 撰인 「易學」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그 書名만을 보고 KDC에 있어서 141.2 또는 141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그 主題 即 內容에 따라 188.01 術學(數學)에 分類하여야 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도 經部 易類에 分類하지 않고, 子部 術數類의 數學(術學)에 分類하여야 한다. 또 宋代의 朱熹 撰인 「小學集註」와 李朝의 朴在馨 編인 「海東小學」을 들 수 있다. 이것도 書名만을 보고 分類하는 것은 탐탁치 않은 處理이다. KDC에 있어서 「小學集註」는 152.416, 「海東小學」은 151.5에 各各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儒家類에 分類하는 것이 原則이다. 經部 小學類에 分類하고 있음을 간혹 볼 수 있는데, 그보다는 子部 儒家類에 넣는 것이 合理的이다.

圖書의 形式에 의하여야 하는 例로서는 元代의 蔣子正 撰인 「山房隨筆」을 들 수 있다. 書名만을 보고 文學의 隨筆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그 著作의 敍述形式에 의하여 KDC에 있어서는 中國文學의 823.4 中世小說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小說家類의 雜事의 屬에 分類하여야 한다.

바. 2 以上 主題 또는 形式[190]의 合綴·合刻書

1) 한 책안에 둘 혹은 세 主題 또는 形式의 獨立著作이 들어 있는 合綴 또는 合刻

---

189) 漢字로 쓰여진 類書는 漢字가 中國 韓國 日本의 共用文字이므로 그 編·著者의 나라말에 따라 區分한다. 例: 李瀷 撰의 「星湖僿說」 031; 陰時夫 撰의 「韻府群玉」 032 이며, 이 原則은 040 一般論叢과 080 一般叢書에도 適用된다.

190) 形式은 위에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KDC의 總類와 文學에도 該當되지만, 여기서는 主로 四部分類法에서 適用되는 各種의 形式을 말한다.

書는 一連의 張數表示의 有無에 關係없이 原則的으로 첫 主題 또는 形式에 의하여 分類한다.

主題에 대한 例로서는 「金剛三昧經論」과 「華嚴一乘法界圖」의 合綴書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첫 主題인 「金剛三昧經論」에 分類하는 것이 原則이다. 即 KDC에 있어서는 223.81 釋經論部의 法華經論에 主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佛敎類 釋經論部의 屬에 主分類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華嚴宗派의 文庫에 있어서는 自己圖書館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一般原則을 좇지 않고 「華嚴一乘法界圖」에 主分類할 수도 있다. 分類에 있어서 이러한 例外的인 處理도 있음을 알아 두기 바란다. 그리고 이 경우 어느 쪽이든 한 쪽에 主分類하였다면 다른 쪽은 分類目錄에 있어서 分類副出을 하여 준다.

形式에 대한 例로서는 「竹書紀年」과 「春秋左氏傳事類始末」의 影印合刊書를 들 수 있다. 「竹書紀年」은 晋의 武帝때 汲郡人이 魏의 襄王墓에서 파냈던 것으로 夏以來 魏의 安釐王까지의 編年類史書이고, 「春秋左氏傳事類始末」은 宋의 章沖 撰인 紀事本末類史書이다. KDC에 있어서는 編纂體裁의 形式에 의한 區分이 아니고 主題아래서 時代區分하여야 하기 때문에, 前者를 912.02 中國古代史에 主分類하는 것이 原則이나,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그 編纂體裁의 形式에 의하여 이를 史部 編年類에 主分類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리고 後者에 대하여는 KDC에 있어서 912.025 中國春秋時代史,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史部 紀事本末類에 各各 分類副出한다.

그러나 둘 혹은 세 主題 또는 形式의 獨立著作이 들어 있는 合刻(刊)書로서, 綜合書名이 붙어 있거나 또는 綜合書名이 없다하더라도 包括的인 主題 또는 形式에 分類하는 것이 좋을 경우는, 그 上位主題에 分類한다. 主題에 대한 例로서는 「小乘律」「大乘律」「雜律」의 合刻本을 들 수 있다. 이 세개의 獨立된 釋律을 包括한 上位主題가 바로 律藏이니, KDC에 있어서는 223.7 律部에 分類한다. 形式에 대한 例로서는 「趙氏三世遺稿」를 들 수 있다. 이것은 趙應祿의 「竹溪稿」 그의 아들인 邦直의 「修竹稿」 그리고 그의 孫子인 光享의 「樂叟稿」를 合集하고 붙인 綜合書名이다. 이 合集을 文學形式으로 볼 때 「竹溪稿」는 詩이고, 「修竹稿」는 詩와 尺牘(書簡)이요, 「樂叟稿」는 詩와 文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는 主된 文學形式인 漢詩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詩尺牘 및 文을 包括한 合集에 分類하되, 그것도 下位의 編輯形式인 別集에 넣는 것이 아니라 上位의 編輯形式인 總集에 分類하는 것이다. 即 KDC에 있어서는 810.829 漢文總集·選集,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集部 總集類에 各各 分類한다.

2) 한 책안에 네개 以上의 獨立된 主題가 들어 있는 合刻 또는 合刊書도 그 上位의 主題에 分類한다. 이 경우도 古書는 대개 綜合書名이 붙어 있다. 그 例로서 「四書」를 들 수 있다. 이것은 「大學」「中庸」「論語」「孟子」를 合刊하고 붙인 綜合書名이다. 이 경우 첫 主題인 大學에 主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包括的인 上位의 主題인 四書에 分類하는 것이다. 따라서 KDC에 있어서는 148이 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經部 四書類에 該當된다.

사. 原著作에서 拔萃한 別本

原著作에서 拔萃한 別本의 分類는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1) 한 著作에서 여러 細分된 主題를 選定하여 拔萃한 것은 原著作에 分類한다. 例컨대, 「史記英選」은 「史記」에서 拔萃한 것이니, KDC 에 있어서는 912.02 中國古代史,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史部 正史類(또는 史鈔類가 있는 경우는 史部 史鈔類)에 各各 分類한다.

2) 한 著作에서 特定한 意圖를 갖고 特定主題만을 單獨的으로 拔萃한 것은 그 特定主題에 分類하는 것이 좋다. 例컨대 「栗谷集」은 본시 KDC 에 있어서 810.819 漢文別集에 分類되는 것이나, 그 中에서 「聖學輯要」만을 單獨的으로 拔萃하여 單行本으로 만들었다면 151.54 朱子學栗谷派에 分類하는 것이 좋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集部 別集類에 넣지 않고 子部 儒家類에 分類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경우는 分類目錄에서 連鎖索引으로 同一한 主題를 서로 連結시켜 주어야 한다.

3) 한 著作에서 둘 또는 셋의 特定主題를 選定하여 拔萃한 것은 2以上 主題 또는 形式의 合綴·合刻書의 1)에 準據하여 處理한다. 그러나 그 書名이 原書名을 內包하고 있는 경우는 위의 1)과 같이 處理한다.

4) 여러 著作에서 特定主題의 記事만을 拔萃하여 수록하였다면 그 特定主題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여러 文獻에서 天文의 「古儀器」 關係記事만을 拔萃하였다면 KDC 에 있어서는 442.59 古儀器,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天文算法類 推步의 屬에 各各 分類한다.

아. 主題의 比較 贊反 對立

1) 두 主題의 理論 見解 政策등을 對比하여 그 中 하나의 說을 贊成 또는 擁護하고, 다른 說을 反駁 또는 非難한 이른바 對立關係에 있는 著作은 著者가 贊成 또는 擁護하는 理論 見解 政策등에 分類하는 것이 原則이다. 이를테면 「佛氏雜辨」은 麗末鮮初의 排佛論者로 有名한 儒臣 鄭道傳이 佛敎를 輪回說 因果說 心性說 地獄說등 10餘篇으로 나누어 儒學의 理論과 對比하여 辨證法으로 辨破하고 儒敎를 擁護한 것이다. 따라서 이 著作은 KDC 에 있어서 佛敎의 221.97 辨證論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韓國哲學·思想(儒學)아래의 151.4 高麗時代에 分類하는 것이 原則이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도 子部 佛敎類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儒家類에 分類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圖書館의 特殊性에 따라서 例外的인 處理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佛敎專門圖書館에서는 排佛論도 護佛論과 함께 分類하는 것이 利用者에게 도움이 되므로 例外的인 處理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同一主題에 관한 贊否 兩論을 함께 모은 著作은 그 單一主題에 分類한다. 그 例로서 「四端七情分理氣往復書」를 들 수 있다. 이것은 李滉과 奇大升 間에 辨論되었던 四端七情에 관한 尺牘集으로서 同一主題의 贊反兩論을 具有한 著作이 된다. KDC 에 있어서는 韓國哲學·思想의 151.52 朱子學派(性理學)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

서는 子部 儒家類에 分類한다. 李滉 成渾 李珥 間에 辨論되었던 「四七續篇」도 이와 같이 分類하면 된다.

자. 主題의 原因結果 起源派生 影響關係

어떤 主題가 다른 主題에서 1) 原因되었거나 2) 起源되어진 것 또 3) 影響을 받은 것은 그 原因 起源 및 影響을 미친 主題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그 結果된 곳 派生된 곳 및 影響을 받은 곳에 各各 分類한다. 그 例로서 1) 原因結果는 「李朝興儒與衰佛策」을 들 수 있다. 李朝가 興儒策을 國是로 삼은데서 原因하여 高麗朝까지 極盛하였던 佛敎가 衰殘되는 結果가 되었으니, KDC에 있어서는 220.911 韓國佛敎史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佛敎類에 分類하는 것이 原則이다. 2) 起源과 派生關係는 魏伯陽 撰의 「周易參同契」와 喩有功 撰의 「周易懸鏡」을 들 수 있다. 兩者가 다같이 周易의 爻象을 假借한데서 起源하여, 前者는 神丹의 뜻을 論하는데로 派生되었고, 後者는 吉凶을 推及하는 占驗學으로 派生되었다. 따라서 前者는 KDC에 있어서 道家아래의 243.65 參同契,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道敎類에 各各 分類한다. 後者는 KDC에 있어서 188.01 術學(數學),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術數類의 數學(術學)에 各各 分類한다. 3) 影響關係는 「西洋文物之傳來與實學思想」을 들 수 있다. 西洋의 새로운 文物의 傳來가 實學思想의 發展에 크게 影響을 끼쳤으니, KDC에 있어서는 그 影響을 받은 實學派 151.58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儒家類 實學의 屬에 分類한다.

차. 方法으로 適用되어진 主題

어떤 主題가 特定主題를 硏究하는 方法으로 適用되어진 것은 그 方法이 適用되어진 特定主題아래에 分類한다. 例컨대 算數가 曆法을 위한 天文測時法에 適用되어진 「曆算全書」는 古代算法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天文의 曆法아래에 分類한다. KDC에 있어서는 天文曆法의 448.7 測時法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天文算法類 推步의 屬에 分類한다.

카. 史實을 素材로 導入한 主題

어떤 主題가 歷史的 事實을 素材로 導入한 主題는 歷史的인 事實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素材로서 導入한 主題아래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春秋를 들 수 있다. 春秋는 魯나라의 隱公으로부터 哀公에 이르는 240年間의 編年史이다. 그러나 그 本來의 目的은 史書로서 利用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史實을 素材로 하여 孔子의 儒敎的인 敎訓을 널리 펴고자 하는데 있으며, 特히 公羊傳과 穀梁傳이 그러하다. 따라서 春秋의 正經은 勿論이요 그 傳註本인 左氏傳 公羊傳 穀梁傳은, KDC에 있어서 912.024 春秋戰國時代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146 春秋類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도 史部 編年類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五經의 하나로서 經部 春秋類에 分類하여야 한다.

타. 飜譯 註釋 按說 批評의 諸書

特定한 原著作을 飜譯 註釋 按說 批評한 것은 모두 原著作이 分類되는 곳에 넣는다. 이를테면 1) 飜譯인 경우 「中庸諺解」는 KDC에 있어서 148.2 中庸,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經部 四書類 中庸의 屬에 各各 分類한다. 2) 註釋인 경우 元曉의 註疏인 「大方廣佛華嚴經疏」는 KDC에 있어서 223.55 華嚴部,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佛敎類 華嚴部의 屬에 各各 分類한다. 3) 按說인 경우 權近의 「禮記淺見錄」은 禮記의 經典中 文義에 疑心이 있는 것에 대하여 自家의 見解를 論한 것이니, KDC에 있어서는 144.3 禮記,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經部 禮類 禮記의 屬에 各各 分類한다. 4) 批評인 경우 李植의 「杜詩批解」는 杜甫의 詩를 批評解說한 것이니, 역시 原著作과 함께 놓기 위하여 KDC에 있어서는 821.4 中國中世詩,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集部 詩文評類에 各各 分類한다.

이와같이 外國人의 原著作에 대하여 韓國人이 附加的으로 勞作을 加한 것을 從來는 原著作에서 分離시켜 韓國의 該當主題, 이를테면 禮記淺見錄인 경우 KDC에 있어서 144.3 禮記에 分類하지 않고 韓國哲學·思想(儒敎)의 151.4 高麗時代에 分類하였으나, 이것은 民族의 主體性을 살리기 위한 方便에 지나지 않으며 分類의 原則은 아니다.

파. 單一主題가 表上에 둘 또는 그 以上에 該當되는 것

1) 圖書 自體의 主題는 하나이지만 分類表上에는 두곳에 마련되어 있어 그中 擇一策을 취하도록 한 것이 있다. 이를테면 四部分類法의 史部 職官類 官箴의 屬은 KDC에 있어서 國家 및 政治倫理의 193.2 吏道아래에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主題와 接近시키고자 하는 圖書館을 위해서는 350.3 公務員制度아래에 넣도록 指示하였다. 또 專科書目은 016 主題別書目아래서 000～999와 같이 全主題區分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圖書館에 따라서는 專科書目을 各主題下에 分類할 수 있도록 또한 指示하였다. 이러한 方法은 主題別傳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998 主題別傳記下에 모든 傳記書를 一括集中시키려는 圖書館은 000～999와 같이 主題別로 區分하여 配架할 수 있고, 各主題下에서 該當主題書와 함께 配架하려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該當主題下에서 099 傳記의 形式區分을 適用시켜 分類할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언제나 自己圖書館의 分類政策에 따라 그 中 하나를 擇一하여 始終一貫性있게 分類하는 일이 가장 重要하다.

2) 圖書 自體의 主題는 하나이지만 著者의 觀點 如何에 따라서 두곳 또는 그 以上으로 分類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 例로서 時令類를 들 수 있다. KDC에 있어서는 農業氣象學 다음에 521.49 時令의 分類項目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이 時令은 氣候와 關聯시켜 農家日用의 閭閻風俗을 다룬 歲時記이기 때문에, 著者의 觀點이 農家風俗에 重點을 둔 경우는 風俗아래에도 分類할 수 있도록 386.5 年中行事에 歲時를 並立시켜 마련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曆法에 있어서도 季節과 關聯되어 時令이 必要한 바, 萬一 著者가 主로 이 면에 重點을 두고 著述하였다면 그 著者의 觀點에 따라 이곳에 分類할 수 있도록 天文學아래에도 448.04 歲時·時令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므로 이 경우 分類者는 著者의 觀點 如何에 따라 三者中 어느 하

나를 擇하여 分類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注意할 것은 分類目錄을 組織할 때, 1)의 경우는 採擇되지 않은 곳에서 擇一된 곳으로 分類參照를 만들어 주고, 2)의 경우는 分類相互參照를 만들어 서로 連關을 맺어 주는 일이다.

하. 分類表에 없는 主題

分類表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主題의 圖書가 나오면 各種의 四部分類法을 비롯한 其他 古書分類法을 參酌하여 어떤 보다 큰 項目아래에 包括될 수 있는가를 먼저 檢討하여 본다. 萬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가장 가까운 主題에 넣거나 또는 새로이 項目을 設定한다. 項目을 새로이 設定하는 경우는 索引에도 아울러 이를 追記하여야 한다.

Ⅱ. 特殊準則 및 解說

가. 總 類

1. 書誌學

校讐 또는 校勘

同一書의 諸本을 널리 蒐集하여 原文의 異同을 對校하고 古典原文의 正確과 完全을 期하는 校讐 또는 校勘에 관한 分類는 다음과 같다.

1) 古典의 原文 그 自體를 校讐(勘)한 것은 그 校讐(勘) 되어진 古典이 屬하는 主題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宋의 吳縝 撰인 「新唐書糾謬」는 新唐書와 함께, KDC 에 있어서는 中國史의 912.038 唐時代,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史部 正史類에 各各 分類한다. 宋의 吳仁傑 撰인 「兩漢刊誤補遺」는 漢書 後漢書와 같은 곳에 있도록, KDC 에 있어서는 中國史의 912.032 漢時代,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史部 正史類에 各各 分類한다. 宋의 方崧卿 撰인 「韓集擧正」은 韓愈의 韓文과 함께 있도록, KDC 에 있어서는 中國文學의 820.81 別集,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集部 別集類에 各各 分類한다. 또 阮元 撰인 「十三經注疏校勘記」에 대하여, KDC 에 있어서는 群經의 注疏本과 함께 位置하도록 經學의 140.8 全集 叢書,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經部 諸經(五經·群經) 總義類 또는 總經類에 各各 分類한다.

2) 校讐(勘)의 方法을 쓴 책은 書誌學에 分類한다. 東洋에 있어서 書誌學은 校讐(勘)學이 그 淵源이 되며 西歐에서 말하는 原文書誌學에 該當된다. 간혹 사람에 따라서는 校讐學을 廣義로 解釋하여 原文字句의 校訂에 그치지 않고, 學術의 淵源 學派의 流別 및 書目에 관한 事項등 目錄學에 가까운 硏究를 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原則的으로는 原文의 正確과 完全을 期하기 위한 手段으로 原文의 異同을 調査해서 校訂하는 일이 爲主이다.[191] 이렇듯 이 學問은 校勘이 爲主인 東洋書誌學의 一分科學이며, 이를테면 鄭樵의 「校讐略」, 章學誠의 「校讐通義」, 孫德謙의 「劉向校讐學纂

---

191) 拙藁. 書誌學의 體系, **國會圖書館報**, 第5卷 第1號(1968) pp. 5～15.

微」, 杜定友의 「校讐新義」, 蔣伯潛의 「校讐目錄學纂要」, 胡樸安·胡道靜 共撰의 「校讐學」, 蔣元卿의 「校讎學史」등이 바로 이에 該當된다. 그러나 KDC에는 그 項目이 없기 때문에, 012.1을 校讐·校勘으로 고치었으니,[192] 이를 여기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도 역시 그 項目이 없으니 史部 目錄類와 並列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目錄類를 書誌類로 고치고 그 아래에 校讐(勘) 書目 版本의 3屬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校讐(勘)方法을 包括한 考證學的인 方法으로 原文의 眞僞를 밝혀 준것, 이를테면 姚際恒의 「古今僞書考」 梁啓超의 「古書眞僞及年代」등은 KDC에 있어서 校讐·校勘의 다음에 012.19 考證을 新設하였으니, 여기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書誌類 校讐(勘)의 屬에 分類한다. 그러나 그 考證이 單一著作 또는 單一主題인 경우는 그 著作 또는 主題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康有爲의 「僞經考」는 KDC에 있어서 140.4 經學考異,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經部 諸經(五經·群經)總義 또는 總經類에 各各 分類한다.

版　本

책의 物理的인 鑑別을 위하여 形態的인 面을 實證的인 方法으로 分析·調査해서 記述한 版本學[193]은 KDC에 있어서 012.3으로 고쳤으니, 그곳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그 項目이 없으므로 校讐·校勘의 경우와 같이 史部 目錄類와 並列시키거나 또는 目錄類를 書誌類로 고치고 그 아래에 1屬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版本學의 例로서는 葉德輝의 「書林淸話」, 孫毓修의 「中國雕板源流考」, 屈萬里·昌彼得 共著의 「圖書板本學要略」, 錢基博의 「版本通義」, 羅錦堂의 「歷代圖書板本志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版本學에는 鑑別法을 위한 個別的인 活字 字體 版式 版種 行款 紙張 墨色 諱字 印記 刻工 其他의 硏究를 包括시킬 수 있다. KDC에 있어서는 이를 위하여 版本學아래에 012.301을 마련하였다.

여러 版本의 書影集은 KDC에 있어서 版本學아래의 012.308,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은 類 또는 屬에 各各 分類한다.

書目·目錄

古今에 걸처 各種의 圖書를 記述하고 혹은 解題하여 體系化시킨 書目과 그에 관한 硏究를 目錄學이라 일컫고 있다.[194] 이것은 西歐에서 말하는 體系 또는 主題書誌學에 該當되며, KDC에 있어서 그 分類는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모두 目錄類 또는 書誌類 目錄의 屬에 分類되므로, 以下의 個別的인 說明은 省略한다.

1) 書目 그 自體에 관하여 硏究한 目錄學은 014 書目·目錄에 分類할 수 있도록 修正하고, 014 個人書目을 014.11~.79 國別個人書目으로 變更하였다. 이를테면 劉紀澤

192) 012.1 寫本을 012.2로, 012.2 刊(版)本을 012.3으로 고치고, 012.1에 校讐·校勘을 追加하였다.

193) 拙藁. 書誌學의 體系, p. 14.

194) 上揭書, p. 13.

의 「目錄學概論」, 姚名達의 「目錄學」과 「中國目錄學史」, 許世瑛의 「中國目錄學史」, 余嘉錫의 「目錄學發微」등을 이에 分類한다. 그러나 그中 主題別 目錄學은 圖書館에 따라 016 主題別書目아래에 分類할 수도 있다. 例컨대 鄭鶴聲의 「中國史部目錄學」은 016.912와 같이 處理할 수도 있다.

2) 個人書目

個人著者의 著述目錄은 014.11.～.79에서 地理區分한다. 이를테면 「丁若鏞著述目錄」「李睟光著作目錄」은 014.11, 「阮元著述目錄」「姚振宗著作目錄」은 014.12와 같이 分類한다.

그러나 個人著述目錄이라 할지라도 어떤 特定主題分野에 局限되는 것은 主題別書目에 分類한다. 例컨대 「杜甫詩批注目錄」은 016.821과 같이 分類한다.

3) 國別書目

한 나라에서 刊行된 圖書로서, 特定主題에 局限되지 않는 一般的인 것은 모두 015 國別書目아래서 地理區分한다. 古書에 있어서 册板目錄도 이에 包含된다. 이를테면 「羅麗藝文志」「攷事撮要册板目錄」「海東文獻總錄」「鏤板考」「古册板所在攷」 모리스 쿠랑의 「朝鮮書誌」「古鮮册譜」「國書音彙」등은 015.11과 같이 分類하고, 「漢書藝文志」「隋書經籍志」「舊唐書經籍志」「新唐書藝文志」「宋史藝文志」「明史藝文志」「國史經籍志」「歷代經籍考」「中國歷代書目總錄」 各種의 史志補撰 및 이와 같은 性格의 것은 015.12와 같이 分類한다.

한 나라의 地方에서 刊行된 圖書 또는 鏤刻된 册板의 目錄으로서, 特定主題에 限定되지 않은 一般的인 것도 이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嶺南册板記」「完營册板目錄」「五車書錄」「嶠南册錄」등은 015.11과 같이 分類하고, 中國의 「溫州經籍考」「江陰藝文志」「平湖經籍志」등을 015.12와 같이 分類한다.

한 나라 또는 그 나라의 한 地方에 관한 著作의 書目은 그 內容이 一般的인 것이라 할지라도 015아래에 分類하지 않고 016 主題別書目아래에 分類한다. 이것은 한 나라 또는 그 나라의 한 地方에 관하여 硏究하는 것이 하나의 主題로 成立되며, 거기에는 그 나라 以外의 다른 나라에서 編刊된 文獻도 包括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韓國에 관한 書目이라면 우리나라의 硏究를 위한 韓國關係文獻目錄이며, 「明治年間朝鮮關係文獻抄錄」「朝鮮關係資料目錄」등이 바로 이에 該當된다. 이것들은 主題別書目아래서 016.911과 같이 分類한다. 古書에 있어서는 別로 該當되는 것이 없으니 이 程度로 略記한다.

한 나라 또는 그 나라의 한 地方에서 刊行된 圖書 또는 鏤刻된 册板의 目錄中 그것이 特定主題에 관한 것이라면 015의 國別書目아래에 分類하지 않고, 016의 主題別書目아래에 分類하거나 혹은 該當主題와 함께 分類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義天이 刊行한 續藏에 대한 「新編諸宗敎藏總錄」은 015.11과 같이 分類하지 않고, 016.22 혹은 220.16과 같이 分類한다.

4) 主題別書目

特殊主題 分野의 書目은 016 主題別書目아래서 全主題 또는 全分類區分하거나 혹은 該當主題와 함께 分類한다. 兩者 中 擇一은 圖書館에 따라 任意로 定할 수 있다. 中國의 專科目錄 또는 學科目錄은 이에 分類한다. 例를 들면

經典目錄 ——→016.14 또는 140.16
食貨書目 ——→016.32 또는 320.016
地理書目(一般)——→016.98 또는 980.16
傳記書目(一般)——→016.99 또는 990.16
哲學書書(一般)——→016.1 또는 101.6
藝術書目(一般)——→016.6 또는 601.6
佛敎書目(一般)——→016.22 또는 220.16

과 같이 分類한다.

5) 特殊書目

古書에 있어서 特殊한 刊·寫本書目을 이에 分類한다.

稀覯本 또는 善本 中 古寫本에 대한 書目은 017.12 古寫本에 分類하고, 必要에 따라 地理區分한다. 이를테면 「高麗寫經目錄」은 017.1211, 「中國稿本書目」은 017.1212, 「日本古寫經目錄」은 017.1213에 各各 分類한다.

稀覯本 또는 善本中 古刊本에 대한 書目은 017.13에 分類하고, 必要에 따라 地理區分한다. 이를테면 「高麗本目錄」「李朝前期國譯本書目」등은 017.1311, 「宋本書目」「元本書目」은 017.1312, 「春日版本書目」은 017.1313과 같이 分類한다.

名著書目 選定書目은 KDC에 있어서 017.15와 017.16에 各各 分類하도록 追加한다.

無著者 또는 匿名書目은 017.5에 分類한다.

徵刻書目, 輯佚書目 및 僞書書目은 KDC에 있어서 017.3, 017.4 및 017.6에 各各 分類하도록 追加한다.

古書에 있어서 禁書總目, 全毁 또는 抽毁書目 및 違碍書目은 모두 017.7에 分類한다. 禁書總目은 風俗과 人心에 害를 끼치는 圖書를 淸乾隆 때 高宗의 命으로 發行과 販賣를 禁止시킨 書目이며, 全毁 또는 抽毁書目은 誤謬와 偏駁이 甚한 圖書에 대한 書目[195]이다. 違碍書目은 朝旨에 違背되는 圖書를 淸 乾隆 때 역시 高宗의 勅命으로 一切 없애기 위하여 書目을 만들어 各省의 督撫에 査繳(교)시켰던 것에 該當된다.

6) 藏書目錄

古書에 있어서 公共機關 및 私家의 藏書目錄과 書院藏書目錄은 모두 019 藏書目錄에 分類한다. 우리나라의 公共機關의 藏書目錄으로서는 「奎章總目」「帝室圖書目錄」「奎章閣圖書目錄」「國立圖書館古書部分類目錄」등을 들 수 있고, 私家藏書目錄으로서는 「澗松文庫漢籍目錄」「一山文庫目錄」등을 들 수 있으며, 書院藏書目錄으로서는 「李朝書院文庫目錄」을 들 수 있다. 中國의 公共機關藏書目錄으로서는 「七略別錄」「崇文

195) 孫耀卿. 淸代禁書 知見錄. 參照.

總目」「文淵閣書目」「內閣藏書目錄」「四庫全書總目」「天祿琳琅書目」을 비롯한 現代의 各種圖書館藏書目錄을 들 수 있다. 私家藏書目錄으로서는 「郡齋讀書志」「遂初堂書目」「直齋書錄解題」「百川書志」「萬卷堂書目」「紅雨樓書目」「澹生堂藏書目」「菉竹堂書目」「名山藏書目」「汲古閣毛氏藏書目」「絳雲樓書目」「文瑞樓藏書目錄」「書目答問」「愛日精廬藏書志」「天一閣書目」「皕宋樓藏書志」「八千卷樓書目」「鐵琴銅劍樓藏書目錄」등 참으로 그 數가 많으며 모두 이에 分類한다.

藏書目錄의 種類와 數가 많은 경우는, 이를 分類目錄 著者目錄 書名目錄 또는 著者·書名目錄등으로 區分하고, 다시 必要에 따라 韓國 中國 日本등으로 細分할 수 있으며, 혹은 圖書館에 따라서는 바로 地理區分할 수도 있다.

7) 其 他

古本販賣目錄은 018.8 古本商目錄, 古書展示目錄은 018.9 展示圖書目錄에 各各 分類한다.

8) 題跋集 序跋集

古書硏究의 入門資料로서 重要視하고 있는 題跋集 序跋集은 KDC에 있어서 014.08에 分類하도록 新設한다. 이를테면 張元濟의 「涉園序跋集錄」潘景鄭의 「著硯樓書跋」葉景葵의 「卷盦書跋」王士禎의 「重輯漁洋書跋」등을 여기에 分類한다.

2. 類 書

類書는 四部 全般에 걸친 知識을 수록하고 있어 본시 四部內에서는 「無類可歸」[196]의 것에 該當된다. 말하자면 東洋學 全般에 관한 知識을 網羅한 百科事典格의 全書가 된다. 東洋學의 類書는 魏代의 皇覽簿에서 비롯한 以來 숱하게 편찬되어 그 數가 매우 많다.

1) 우리나라의 漢字類書中 重要한 것으로서는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 李睟光의 「芝峯類說」, 李瀷의 「星湖僿說」, 魚叔權의 「攷事撮要」, 徐命膺의 「攷事新書」,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金時敏의 「東圃彙言」, 金揩의 「新補彙言」, 金堉의 「類苑叢寶」, 閔魯行의 「咫聞別集」, 金世均의 「琬琰通考」등이 있다. KDC에 있어서는 漢字가 中國 韓國 日本의 共用文字이므로, 그 編者의 나라말에 따라 處理하여 韓國語의 類書는 031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類書類 韓國의 屬에 分類한다.

2) 中國의 類書中 重要한 것으로서는 虞世南의 「北堂書鈔」, 歐陽詢등 奉勅 撰의 「藝文類聚」, 徐堅등 撰의 「初學記」, 白居易 撰 孔傳 續撰의 「白孔六帖」, 李昉등 奉勅 撰의 「太平御覽」, 王欽若등 奉勅撰의 「册府元龜」, 高丞의 「事物紀原」, 王應麟의 「玉海」, 祝穆의 「事文類聚」, 陰時夫의 「韻府群玉」, 章潢의 「圖書編」, 王圻의 「三才圖

196)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一百三十五 子部 四十五 類書類敍에도

「類事之書 兼收四部 而非經非史非子非集 四部之內 乃無類可歸 皇覽始於魏文 晋荀勗中經部分隷何門 今無所考 隋志載入子部 當有所受之 歷代相承」

云云하고 있듯이, 類書는 四部를 包括하고 있으므로 그 中 어느 類에도 歸入할 수 없는 內容의 것이다. 따라서 KDC에 있어서는 總類에 分類하는 것이 妥當한 處理이다.

會」, 明永樂元年奉勅撰의 「永樂大典」, 淸康熙 49年奉勅撰의 「淵鑑類函」, 張玉書등奉勅撰의 「佩文韻府」, 蔣廷錫등奉勅撰의 「古今圖書集成」등이 있다. KDC에 있어서는 032,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隋書經籍志의 例에 따라 子部아래의 類書類 中國의 屬에 分類한다.[197)]

3. 一般論叢 (雜考 雜說 雜品 雜纂)

東洋의 傳統的인 雜考 雜說 雜品 및 雜纂中의 거의 大部分은 主로 어느 部門에 屬할 수 없는 雜筆 衆說이 많기 때문에, 一般論叢으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雜考는 그 說이 經史子集을 包括하여 어느 1類에 限定될 수 없는 內容의 것이며, 이것은 본시 議官의 雜家에서 연유된 彙編이다.[198)]

이를테면 洪邁의 「容齋隨筆」·魏了翁의 「古今考」·王應麟의 「困學紀聞」·方以智의 「通雅」·顧炎武의 「日知錄」·沈自南의 「藝林彙考」·何焯의 「義門讀書記」·徐文靖의 「管城碩記」등을 들 수 있다.

雜說은 그 淵源이 漢의 王充 撰인 論衡에서 비롯하여, 혹은 自己의 意見을 開陳하고 俗謁을 訂正하였으며, 혹은 近聞한 것을 記述하고 古義를 綜合한 것으로, 後世人들이 筆記하여 遺傳한 說들이다. 대체로 隨意錄載한 것으로, 卷帙의 多寡에 制限을 받지 않고 또 編次의 先後도 나누지 않고 있으며, 떠오르는 바에 따라 成編한 것이다.[199)] 이를테면 宋祁의 「筆記」·沈括의 「夢溪筆談」·張邦基의 「墨莊漫錄」·張世南의 「遊宦紀聞」·謝采伯의 「密齋筆記」·周密의 「齊東野語」등을 들 수 있다.

雜品은 衆品 곧 여러가지 事物을 雜多하게 說明한[200)] 것으로서, 이를테면 周密의 「雲煙過眼錄」·曹昭의 「格古要論」·文震亨의 「長物志」·劉體仁의 「七頌堂識小錄」등이 이에 該當된다.

雜纂은 여러 說을 採摭하여 成編했기 때문에 그 說의 淵源이 一定치 않은 것[201)]으

197) 上引한바와 같이 類書는 「無類可歸」의 內容을 수록한 것이나, 隋書經籍志 卷三十四 經籍志 三 子部 雜家類에 처음으로 類入된 以後, 그 方法이 歷代에 걸쳐 相承되어 固定化되고 말았다. 그러나 明의 胡應麟이 그 筆叢에서 提議하였듯이, 四部 以外로 另立시키는 것이 分類의 理論上으로는 오히려 妥當한 處理라고 생각된다.

198)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一百十九 子部 二十九 雜家類 雜考之屬後敍에 수록된
「其說大抵兼論經史子集 不可限以一類 是眞出於議官之雜家也(班固謂雜家者流 出於議官) 今彙而編之 命曰雜考」
云云의 記事를 參考하여 分類의 指針으로 삼기 바란다.

199) 上揭書, 卷一百二十二 子部 三十二 雜家類 雜說之屬 後敍에 수록된
「案雜說之源 出於論衡 其說或抒己意 或訂俗謁 或述近聞 或綜古義 後人沿波 筆記作焉 大抵隨意錄載 不限卷帙之多寡 不分次第之先後 興之所至 即可成編 故自宋以來 作者至夥 今總彙之爲一類」
云云의 記事를 參考하여, 위의 雜考와의 限界를 가름해주기 바란다.

200) 上揭書, 卷一百二十三 子部 三十三 雜家類 雜品之屬 後敍에 수록된
「今於其專明一事一物者 皆別爲譜錄 其雜陳衆品者 自洞天淸錄以下 並類聚於此門 蓋旣爲古所未有之書 不得不立古所未有之例矣」
云云을 參考한 것이다.

201) 上揭書, 卷一百二十三 子部 三十三 雜家類 雜纂之屬 後敍에서

로서, 그 中의 大部分은 一般論叢의 性格을 띠고 있다. 이를테면 馬總의「意林」·高似孫의「文苑英華鈔」·薛夢李의 「敎育類纂」·黃叔琳의 「硯北雜錄」·魏裔介의「多識集」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모든 隨錄衆說類는 KDC에 있어서 040 一般論叢아래서 國語區分하여 042와 같이 分類한다. 그러나 韓國人이 漢字로 쓴 隨錄衆說類, 이를테면 張維의「谿谷漫筆」·金萬里의「西浦漫筆」·南溟學의 「五龍齋錄」·鄭東愈의 「晝永編」등은, 漢字가 中國 韓國 日本의 共用文字인 點에서 그 編著者의 나라말인 韓國語區分을 하여 041과 같이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어느것이나 子部 雜家類 또는 隨錄類에 分類하되, 前者를 擇하는 경우는 雜考 雜說 雜品 雜纂의 屬으로 細分할 수 있다. 各屬의 限界는 위의 說明을 參考하여 錯誤없이 分類하기 바란다.

4. 一般叢書·全集(雜纂의 一部, 雜編)

1) 古書에 있어서 叢書란 綜合書名下에 몇 사람의 著作을 一定한 計劃에 따라 成編한 것으로서, 대체로 特定한 編者 또는 刊行者가 있고 全卷이 同一한 裝訂으로 되어 있다. 叢書는 어느 類 또는 部에 屬할 수 없는 包括的인 主題의 것을 集大成한 一般叢書와, 內容上으로 相互密接한 聯關性이 있는 것을 體系的으로 集成한 主題叢書로 區分된다. 그 中 前者가 여기에 該當되며 그 主要한 것으로서는, 衆說을 成編한 雜纂의 一部에 該當하는 「廣百川學海」·「說郛」·「古今說海」등과, 數人의 著作 또는 諸家의 雜記를 裒集하여 浩瀚하게 成編한 雜編[202]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奎章閣叢書」·「朝鮮古典刊行會叢刊」·「古典叢書」·「鎔齋叢書」·「朝鮮群書大系」·「古典國譯叢書」 그리고 中國의「漢魏叢書」·「津逮秘書」·「唐宋叢書」·「昭代叢書」·「知不足齋叢書」·「雅雨堂叢書」·「經訓堂叢書」·「抱經堂叢書」·「粤雅堂叢書」·「小石山房叢書」·「琳琅秘室叢書」·「咫進齋叢書」·「玉函山房輯佚書」·「佚存叢書」·「漢學堂叢書」·「四庫全書」·「四部叢刊」·「四部備要」 등을 들 수 있다. 特히 中國의 叢書는 그 種類가 매우 많다.

그 外에도 一個人이 自編 또는 自著한 것으로서 各主題分野를 包括한 一般全集이 함께 分類된다.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서는, 우리나라의 「與猶堂全集」「靑莊館全書」「栗谷全書」「李忠武公全書」와, 中國의「曾文正公全集」「章氏叢書」「榕村全集」「漁洋山人集」등을 들 수 있다.

이 一般全集과 叢書의 分類에 있어서 KDC는 080 一般全集·叢書아래서 個人 또는 二人以上의 編輯形式으로 區分하고, 必要에 따라 다시 言語區分한다. 이를테면 위의 例에서 韓國人이 漢字로 著述한 個人의 一般全集인 「與猶堂全集」「靑莊館全書」는 漢字가 中國 韓國 日本의 共用文字이기 때문에 그 著者의 나라말인 韓國語로 區分하여

「皆採摭衆說以成編者 以其源不一 故悉列之雜家」

云云을 參考한 것이다.

202) 上揭書, 卷一百二十三 子部 三十三 雜家類 雜編之屬 後敍에서

「案古無以數人之書合爲一編 而別題以叢名者……左圭百川學海出 如彙裒諸家雜記 至明而卷帙益繁 明史藝文志 無類可歸 附之類書 究非其宜 當入之雜家」

云云을 參考한 것이다.

081.1과 같이 하고, 中國人이 著述한 「榕村全集」「曾文正公全集」과 같은 個人의 一般全集은 中國語로 區分하여 081.2와 같이 分類한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日本人이 漢字로 著述한 것도 日本語로 區分하여 081.3과 같이 分類함은 勿論이다. 二人以上의 一般叢書에있어서도 이를테면 韓國人이 漢字로 著述한 것을 편집한 「奎章閣叢書」「古典叢書」등은 082.1, 中國人이 著述한 것을 편집한 「漢魏叢書」「唐宋叢書」「四庫全書」등은 082.2, 日本人의 그것은 0.82.3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그 分類組織에 따라 一定치 않다. 그 代表的인 것을 들어보면, 四庫全書總目에 適用되었던 分類法에서는 子部 雜家類 雜纂의 一部와 雜編의 屬에, 天津圖書館과 江蘇省立國學圖書館의 分類法에서는 部末에 附設된 叢(書)部에, 우리나라의 奎章閣의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末尾에 附設된 叢書類에 各各 分類되어 있다. 그 中 個人의 一般全集은 集部 別集類에 分類되어 있는 것도 있다.

2) 古書의 一般全集·叢書의 所藏量이 많은 圖書館은 KDC 또는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國語區分 또는 國別로 나눈 다음, 必要에 따라 다시 時代區分할 수도 있다. KDC로 一例를 들면 082.2 中國語一般叢書를 082.24 宋·元代一般叢書 082.25 明代一般叢書 082.26 淸代一般叢書 082.27 現代一般叢書와 같이 細分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3) 內容上으로 相互密接한 聯關性이 있는 것을 體系的으로 集成한 主題全集·叢書는 그 該當主題의 全集·叢書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皇淸經解」는 KDC에 있어서 經學의 140.8 全集·叢書에,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經部 諸經(五經·群經)總義類에 分類한다. 韓國의 「列聖御製」는 KDC에 있어서 韓國文學의 810.829 漢文總集,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集部 總集類 韓國의 屬에 各各 分類한다.

4) 一般 또는 主題의 全集·叢書를 莫論하고 缺册이 많아 全集·叢書로 維持가 困難한 것으로서 單行本格의 獨立된 書名을 갖고 있거나(個人全集인 경우) 또는 獨立된 書名과 著者名이 있는 것(二人以上의 一般叢書인 경우)에 대하여는 各各 該當主題에 分類하여 分散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與猶堂全書」中 獨立書名을 갖고 있는 「周易四箋」「牧民心書」「欽欽新書」「我邦疆域考」만을 갖고 있다면, 이를 個人의 一般全集에 分類하지 않고 該當主題에 各各 分散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通志堂經解」인 경우도 熊良輔 撰의 「周易本義集成」 胡士行 撰의 「尙書詳解」 程端學 撰의 「春秋或問」 孫奭 撰의 「孟子音義」만을 收書하였다면, 主題叢書로서 經學아래에 分類하지 않고 該當主題에 各各 分散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 哲學·宗教

1. 經 學

經學叢書

群經의 正文 및 十三經注疏의 合刻本과 「皇淸經解」「皇朝五經彙解」「九經古義」를 비롯한 經義叢鈔등의 諸經總義集은 經學의 叢書로서 分類한다. KDC에 있어서는 經學의 140.8 全集·叢書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經部 諸經(五經·群經)總

義類 또는 總經類에 各各 分類한다.

그러나 諸經總義가 分刻 또는 單行本格으로 刊行된 경우, KDC에 있어서는 그 中 石經에 관한 것 이를테면 「石經考」「石經彙函」「漢石經考」「唐石經考」등은 140.9에, 音義書 이를테면「群經音辨」「十三經音略」「十三經字音釋略」등은 140.3에, 卷帙이 아주 적은「經學考異」「經典稽疑」및 그 論攷따위는 140.4에 各各 分類한다.

易 類

1) 周易은 玄秘의 뜻과 儒道의 學이 兼備되어 있는 東洋 으뜸의 哲學이다. 그러나 그 後 玄秘의 뜻이 陰陽五行說과 合流되었고, 또 爻象이 道家에 의하여 假借되어, 易學의 分類가 매우 까다롭게 되었다. 따라서 易學이라 하더라도 儒道의 學을 爲主한 것과 그 注疏論說 및 篇章硏究書만을 KDC에 있어서는 141 易類에,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經部 易類에 各各 分類한다.

易學의 支派로서 陰陽五行說과 結付되어 相生 相剋을 制度化하고 造化의 根源을 窮究하며,[203] 蓍龜 占候의 手段과 結付되어 吉凶을 推及하고 人事의 得失을 徵驗한 內容의 것은, KDC에 있어서 188 術數아래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術數類에 分類한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 의거 例를들면 張行成의「易通變」王湜의「易學」張理의「易象圖說」黃道周의「三易洞璣」焦延壽의「易林」京房의「京氏易傳」李鼎의「易範同宗錄」韓邦奇의「易占經緯」喩有功의「周易懸鏡」盧翰의「籥易」喬中和의「大易通變」程汝文의「易數總斷」程良玉의「易昌」東方朔의「易衍」등이 모두 術數에 類入되어 있다.

道家에서 周易의 爻象을 假借하여 作丹의 뜻을 論한 것,[204] 이를테면 魏伯陽의「周易參同契」및 그에 대한 注釋書인 陳顯微의「周易參同契解」兪琬의「周易參同契發揮」陳致虛의「周易參同契分章註」蔣一彪의「古文參同契集解」陳兆成의「參同契註」袁仁林의「古文周易參同契註」劉吳龍의「古參同契註」등은, KDC에 있어서 141 易類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道敎의 243.65 參同契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道敎類에 分類한다.

2) 古書의 所藏이 많은 圖書館은 KDC에 있어서 141.1 古易, 141.2 周易, 141.9 易緯로 細分한다. 古易은 三墳 連山 歸藏등이 이에 該當되며, 易緯는 周易에 근거하여 未來의 일 또는 福禍吉凶의 豫言에 대한 記錄을 綴拾한 秘經이요 圖讖의 類로서, 이른바 周易外傳에 該當되는 것이다.[205] 이 易緯에는「河圖」「洛書」「周易乾鑿度」「易緯坤靈圖」「易河圖數」「易九厄讖」「易中孚傳」「易通統圖」등이 分類된다.

그러나 詳細히 展開할 必要가 없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141 易類에 一括的으로 分類한다.

分類의 詳略問題는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203) 上揭書, 卷一百八 子部 十八 術數類敍

204) 上揭書, 卷一百四十六 子部 五十六 道家類「周易參同契道眞義」의 解題 參照.

295) 上揭書, 卷六 經部 六 易類附錄 後敍.

書 類

1) 書經은 虞 夏 商 周의 政事를 記錄한 것이라 하여 古代史에 該當된다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다.[206] 그러나 本來의 目的이 歷代의 聖王 賢主들의 事蹟 및 理想的인 政事를 들어 儒家의 政治에 龜鑑이 되는 聖典으로 삼으려는데 있으니, 그와같이 單純하게 史書로 處理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그 本旨에 따라 主要한 儒教經典의 하나로서 分類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KDC에 있어서는 中國古代史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經學의 142 書類에 分類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도 經部 書類에 分類한다.

2) 이 經은 본시 「書」라 하였고, 漢以後는 「尙書」, 宋以後는 「書經」이라 일컬었으며, 「書傳」은 그 傳義를 뜻하는 것이니, 이러한 書名이 붙여진 책은 모두 여기에 分類한다. 그리고 이 經의 注疏論說 篇章硏究書 및 書緯도 아울러 여기에 分類한다. 書緯에는 「尙書璇璣鈐」「尙書緯刑德攷」「洪範緯尙書中候」「尙書考靈曜」「尙書帝命驗」「中候儀明」등이 分類된다.

KDC에 있어서는 細分되어 있으나, 古書의 所藏量이 적은 圖書館은 142 書類에 一括하여 分類한다.

詩 類

1) 詩經은 周가 建國하여 春秋時代로 들어간 얼마 後까지 數百年間에 걸쳐 朝廷과 地方에서 불려져 왔던 風 雅 頌등 311編을 모은 中國 最古의 詩歌集이며, 儒家經典의 하나이다. 이와같이 詩類가 中國詩學의 元祖인 點에서 文學의 詩에 分類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다.[207] 그러나 經典의 群에서 書類 春秋類 및 禮類를 分離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詩類도 본시의 目的이 儒教經典으로 삼기 위하여 刪定한 것이기 때문에, 單獨的으로 分離시킬 수 없음은 勿論이다. 따라서 KDC에 있어서는 經學의 143 詩類에,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經部 詩類에 各各 分類한다. 그리고 다만 文學的인 面에 있어서의 詩經硏究만을 文學의 詩 即 KDC의 821.2 中國古代詩와 四部分類法의 集部 詩文評類에 分類하면 된다. 이 경우 分類目錄에서 連鎖索引을 作成하여 同一主題를 서로 連結시켜 주어야 한다.

2) 이 詩類는 趙나라 毛亨이 傳하여 後漢以後에 盛行되었던 毛詩와, 이에 앞서 漢代에 經學이 盛行되었을 때 傳하였다는 三家의 詩, 即 魯나라의 申培公이 武帝때 傳하였

---

206) 陳乃乾이 民國8年(1919)에 편찬한 「南洋中學藏書目」이 그 最初의 것이 되며, 그 分類體例에 대하여 湯濟滄은 敍에서

「書目之編制 亦頗費斟酌 四庫之名 最不妥者爲經 尙書記言 春秋記事 皆史也. 毛詩爲有韻之文 三禮亦史之一類」

라 云云하였고, 또

王雲五의 中外圖書統一分類法.(上海, 商務印書館, 民國17) 緖論에서도 經部의 書는 본시 一部類의 古典이나 詩는 文學, 春秋는 歷史, 三禮等書는 社會科學, 論語·孟子는 哲學에 屬한다고 볼 수 있으니, 嚴格하게 그 性質에 따라 分類하면 一類에 歸入할 수 없다고 하였다. 要컨대 書經과 春秋는 歷史, 詩經은 文學, 三禮는 社會科學에 넣었다.

207) 上揭註 參照할 것. 詩類를 文學아래의 詩에 分類한다 하더라도 「詩含神霧」「詩推度

다는 魯詩, 燕나라의 韓嬰이 傳하였다는 韓詩, 그리고 齊나라의 轅固生이 傳하였다는 齊詩를 일컫는 것이다. 그 中 三家詩는 일찌기 朝廷에 의해서 公認되더니 後漢以後 毛詩가 盛行됨에 따라 衰殘되어 現在는 古文獻에 겨우 斷章零句 또는 韓詩外傳이 傳해지고 있을 뿐이나, 그에 관한 硏究書가 있으니 詩類를 細分하고자 하는 圖書館은 兩者를 다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詩含神霧」「詩推度災」「詩汎歷樞」「詩緯汜歷樞」등의 詩緯도 이에 包含되어야 한다. 그러나 古書의 所藏量이 적은 圖書館에 있어서는 이를 一括하여 143 詩類에 分類하고, 四部 分類法에 있어서는 經部 詩類에 分類하면 된다.

禮 類

1) 禮類는 古代의 禮制를 적은 것이므로 社會科學에 分類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는 이도 있다.[208] 그러나 楊子가 일찌기 喝破하였듯이, 五經은 衆說을 保持하고 있기 때문에 書 詩 春秋와 같이 禮類도 經典에서 分離시킬 수 없음은 勿論이다. 이 禮類는 周禮 儀禮 禮記의 三禮가 主體이며, 그 外에 雜禮와 禮緯가 附隨되어 있다. 周禮는 본시 周官이라 하였으며, 周나라의 王政國家의 行政組織을 規定한 三禮中의 하나이다. 儀禮는 선비와 諸侯가 지켜야 할 日常의 禮를 다룬 三禮中의 하나이다. 禮記는 儀禮의 經文에 대하여 理論과 實際를 說明한 것이다. 이것은 漢나라 때 戴德이 그 當時의 禮에관한 古記錄을 土臺로 편찬한 大戴禮 85篇에서, 그의 아우인 戴聖이 49篇을 精選하고 多少 改修하여 만든 小戴禮를 指稱하는 것이다. 이 三禮는 後漢 때 鄭玄에 의하여 一貫된 注釋이 加해진 以後 그 位置가 確立되었으니, 언제나 함께 分類하여야 한다. KDC에 있어서는 經學의 144 禮類아래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經部 禮類아래에 分類한다.

2) 通禮는 三禮를 兼한 以外에도 歷代의 禮制를 包括하고 있으며,[209] 三禮總義는 三禮에 대한 總括的인 傳義인바, 綜合著作이기 때문에 KDC에 있어서는 禮類 總記아래의 144.081 通禮와 144.082 三禮總義에 分類하도록 新設하였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禮類의 通禮와 三禮總義의 屬에 各各 分類한다.

3) 雜禮는 家禮 鄕禮등의 私家儀注[210]로서,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史部 政書類 典禮의 屬에 類入된 歷代 朝廷 所制의 國典關係 典禮[211]와 分離시켜, 經部 禮類에 附入시키고 있다. 한편 天津圖書館藏書目錄에서는 史部 政書類 典禮의 屬에 並入시

災」등의 詩緯는 그곳에 함께 分類할 수 없으니, 결국은 難關에 逢着하게 된다.

208) 上揭註 參照할 것. 禮類도 社會科學아래에 分類할 수 있다 하더라도, 「月令」(禮記篇名)「檀弓」「儒行」「集傳」等書는 그곳에 함께 分類할 수 없으니, 역시 마땅치 않다.

209)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二十二 經部二十二 禮類 通禮之屬 後敍.

210) 上揭書, 卷二十二 經部二十二 禮類四雜禮之屬 後敍에

「案公私儀注 隋志皆附之禮類 今以朝廷制作 事關國典者 隸史部政書類中 其私家儀注 無可附麗 謹彙爲雜禮書一門 附禮類之末」

이라 있고, 그 主된 書目擧例로서는 「家禮」·「泰泉鄕禮」·「朱子禮纂」등을 들 수 있다.

211) 上引註 및 同書 卷八十二 史部三十八 政書類二 典禮之屬 後敍의 「今以春官所掌 帝制朝章悉在焉」 參照.

키고 있다. 그러나 國家의 典禮와 私家의 儀注는 그 性格이 다르기 때문에, KDC에 있어서는 四庫全書總目의 경우와 같이 禮類에 分類하도록 그 末尾에 新設하였다. 또 하나의 方法으로서는 380 風俗·民俗學아래의 該當主題 또는 雜禮俗에 分類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鄕禮는 383.2 鄕村禮俗, 家禮는 382 家庭生活의 禮俗, 冠婚喪祭의 禮俗은 384, 其他의 禮俗은 384.9 雜禮俗등을 마련하였으니, 各各 該當主題에 分類할 수 있다. 要컨대 雜禮書의 分類는 圖書館에 따라 兩者 擇一할 수 있다.

4) 禮經에 있어서의 冠 婚 喪 祭 饗 聘 覲 卿의 諸禮는 儀禮에 分類하나, 一國의 典禮인 吉 凶 賓 軍 嘉 雜(諡法등)에 관한 諸典儀는 KDC의 경우, 歷史의 史料로서 91△.0093 典故類 아래에 分類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四部分類法이 史部 政書類 典禮의 屬에 分類하는 方式을 導入한 것이다. 그러나 社會의 冠 婚 喪 祭 및 其他 關聯된 禮俗은 KDC에 있어서 384의 冠婚喪祭 禮俗 아래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經部 禮類 雜禮의 屬에 分類할 수 밖에 없다.

5) 禮緯에는 「禮含文嘉」「禮稽命徵」「禮斗威儀」등을 分類한다.

春秋類

1) 春秋는 魯나라 隱公1年(722 BC)부터 哀公14年(481 BC)까지의 編年古史이다. 이와같이 春秋는 魯史記인 바, 응당 史類에 分類되어야 한다고 主張하는 이도 있다.[212] 그러나 그 本來의 目的은 史書로서의 利用보다도 儒家의 政治·倫理의 敎範으로 삼으려는데 있으며, 獨特한 春秋의 筆法을 適用시켜 倫常秩序를 宣揚하고 亂臣賊子를 두렵게 하려는 孔子의 敎訓的인 意圖가 始終一貫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이미 漢代에 經의 하나로 編入되어 聖學의 敎科書로 利用되어 왔으니, 歷史에 分類하는 것보다는 經學의 146 春秋類에 分類하는 것이 妥當하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도 經部 春秋類에 分類함은 勿論이다.

2) 春秋의 傳釋書로서는 左氏傳 公羊傳 및 穀梁傳의 三傳이 있다. 左氏傳은 孔子의 弟子 左丘明, 公羊傳은 齊나라의 公羊高, 그리고 穀梁傳은 魯나라의 穀梁赤이 各各 傳釋한 것이다. 이 三傳 사이에는 字句의 差異도 있고 또 그 特徵에 있어서도 多少의 差異가 있으나, 그러나 三者가 다같이 春秋의 正經을 土台로 傳釋한 것만은 事實이다. 그 外에도 胡氏傳이 손꼽힌다. 따라서 KDC에 있어서는 春秋 正經아래의 146.1～146.8에 各傳을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도 經部 春秋類아래의 4屬에 分類한다.

3) 春秋三傳總義와 春秋三傳異文總集은 左氏傳 公羊傳 및 穀梁傳을 包括한 것이고 春秋四傳은 이에 胡氏傳이 더 加해진 것이다. 따라서 KDC에 있어서는 春秋類總記아래의 146.08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經部 春秋總義에 分類한다.

4) 春秋緯에는 「春秋漢含」「春秋合誠圖」「春秋保乾圖」「春秋佐助期」「春秋握誠圖」

212) 註206 參照할 것. 勿論 春秋도 中國의 歷史아래에 分類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春秋繁露」「春秋保乾圖」「春秋尊王發微」等書는 그곳에 함께 分類할 수 없으니, 역시 마땅치 않다.

「春秋濕潭巴」「春秋說題辭」「春秋命歷序」「春秋繁露」「春秋尊王發微」등을 分類한다.

樂 類

1) 樂經이 일찌기 六經에 編入되었음은 漢書藝文志에 의하여 알 수 있다.[213] 그러나 그 以後의 五經 十二經 十三經에는 모두 빠져 있으니,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後 樂篇이 散佚된데서 起因하는 것이다.[214] 近來의 各種書目에 收錄된 經部의 樂類를 보면 모두 後代人의 著作뿐이며, 따라서 嚴格히 말한다면 오늘날의 樂類는 樂緯를 除外하고 經典內에 列入될 수 없고, 古代中國音樂에 分類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KDC에 있어서는 이를 위하여 679.9에 東洋音樂을 新設하였다. 그러나 圖書館에 따라서는 이곳에 分類할 수도 있으므로, 兩者擇一策을 취하면 된다. 이것은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樂緯에는 「樂緯動聲儀」「雅樂發微」등을 分類한다. 이것은 비록 後代人의 著作이라 할지라도 藝術의 古代中國音樂에 分類하는 것이 不合理하기 때문에, 不得已 經學의 145.9 樂緯에 分類할 수 밖에 없으며,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孝 經

1) 孝經의 正經과 그 注疏論說은 經學아래의 147,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經部 孝經類에 各各 分類하고, 個人의 孝行錄은 990 傳記와 四部分類法의 史部 傳記類아래에 分類한다. 그러나 孝道에 관하여 쓴 책은 KDC에 있어서 192.7에 分類한다.

2) 孝經緯에는 「孝經援神契」「孝經中契」「孝經古秘」「孝經鉤命訣」「孝經內事」「孝經威嬉拒」등을 分類한다.

四 書

1) 大學 中庸 論語 孟子의 正經合刻과 그 總義는 經學아래의 148.08에 分類하고, 各經은 148 四書아래서 細分한다.[215]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前者는 經部 四書類 四書總義의 屬, 後者는 經部 四書類아래의 各種의 屬에 各各 分類한다.

2) 學庸은 分類原則에 따라 大學에, 論孟은 論語에 各各 分類하며,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도 그와같은 原則에 따라 分類한다.

2. 諸子總·選集

周秦以來의 諸子總·選集은 KDC에 있어서 152 中國哲學·思想아래서 082의 形式區分을 適用시켜 分類한다. 이를테면 逢行珪 編輯인「子彙二十四經」鴻文書局 編輯인「二十五子彙函二十五種」上海涵芬樓 影印인「子函十一種」등은 152.082에 分類하며,

---

213) 班固. 前揭書, 六藝略 樂六家.

214)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三十八 經部三十八 樂類 敍에

「沈約稱樂經亡於秦 考諸古籍 惟禮記經解 有樂教之文 伏生尚書文傳 引辟雝舟張四語 亦謂之樂 然他書均不云有樂經 大抵樂之綱目具於禮 其歌詞具於詩 其鏗鏘鼓舞 則傳在伶官 漢初制氏所記 蓋其遺譜 非別有一經」

이라 있듯이, 樂經이 일찌기 亡佚된 것만은 事實이다.

215) 黃虞稷. 千項堂書目, 經部 禮類에는 「大學」과 「中庸」이 分類되어 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四書아래에 類入시키는 方法이 固定化되어 있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總類에 分類한다.

3. 儒 書

儒家는 본시 司徒의 官에서 나와 人君을 도웁고 陰陽을 지켜 敎化를 밝게 하는 이를 말한다. 항상 文이 六經에 通하고 뜻을 仁義에 두며, 堯舜을 祖師로 삼아 遵修하고 文·武王을 밝은 法으로 삼으며, 仲尼를 宗師로 받드는 東洋哲學의 主流學派이다.[216) 이 學派는 漢唐의 經學派를 위시하여 朱子學(性理學)派 陽明學派 考證學派 우리나라의 實學派등 各種學派로 細分된다. 이러한 諸學派의 著述 및 研究書에 대한 分類準則은 아래와 같다.

1) 漢唐時代는 經學派뿐이므로, 그 學派의 個個儒家의 著述 및 研究書中 獨自的인 說을 갖고 있는 것은 그 著者가 屬하고 있는 時代아래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KDC에 있어서 陸賈의 「新語」 賈誼의 「新書」 劉安의 「淮南子」 桓寬의 「鹽鐵論」 劉向의 「新序」와 「說苑」 揚雄의 「法言集註」 馬融의 「忠經」 王充의 「論衡」 王符의 「潛夫論」 荀悅의 「申鑒」 徐幹의 「中論」등은 中國哲學·思想아래의 152.32 漢時代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儒家類 中國의 屬에 分類한다.

2) 宋元以後는 여러 學派가 派生되고 있으므로, 著者가 어느 時代의 어떤 學派에 屬하는가를 알아낸 다음, 그 所屬學派에 分類한다. KDC에 있어서 이를테면 濂溪의 「太極圖說」 張載의 「張横渠集」 程灝·程頤의 「二程全書」 朱熹의 「近思錄」과 「小學集註」 眞德秀의 「心經」등은 宋元時代의 152.41 周張程朱學派(宋學)아래에 分類한다. 또 王守仁의 「傳習錄」은 明時代의 152.57 陽明學派에 分類하고, 李光地의 「榕村語錄」은 淸時代의 152.68 理學派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儒家類 中國의 屬에 分類한다.

3) 우리나라 儒家의 著述 또는 研究書로서 獨自的인 說을 갖고 있는 것은, 韓國哲學·思想아래서 어느 時代 또는 어떤 學派에 屬하는가를 알아낸 다음, 그 該當時代 또는 所屬學派에 分類한다. KDC에 있어서 이를테면 鄭道傳의 「三峰心氣理篇」은 韓國哲學·思想아래의 151.4 高麗時代에 分類하고, 李滉의 「聖學十圖」는 李朝時代 朱子學派(性理學)아래의 151.53 退溪派(東人派·嶺南學派) 그리고 李珥의 「聖學輯要」는 李朝時代 朱子學派아래의 151.54 栗谷派(西人派·畿湖學派)에 各各 分類하며, 金堉의 「種德新編」은 李朝時代아래의 151.58 實學派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儒家類 韓國의 屬에 分類한다.

4) 위의 2)와 3)과 같이 學派까지의 分類가 어렵거나 번거러운 경우는 該當時代까지 分類하고, 그 아래서 著者의 가나다順으로 單一排列할 수 있다. 儒學專門圖書館을 除外하고 이 方法으로 分類하는 것을 勸奬한다.

5) 經書와 다른 儒家의 著述 또는 研究書를 飜譯하였거나, 注釋·按說·批評을 加한 것으로, 自己의 獨特한 說이 없는 것은 原著述 또는 研究書와 함께 있도록 分類함을 原則으로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詩經諺解」는 143 詩經아래에 分類하고,

216) 班固. 前揭書, 諸子略 儒五十三家 後敍.

李滉의 「心經釋疑」와 丁若鏞의 「心經密驗」은 152.418에 分類된 眞德秀의 心經과 함께 있도록 分類한다.

그러나 獨特한 說의 有無에 關係없이, 徹底하게 譯者 編者 또는 撰者가 屬하고 있는 나라의 時代아래 分類하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반드시 分類副出 또는 分類의 相互參照를 만들어 原著作과의 聯關을 맺어 준다.

6) 朱子學的인 觀點에서 쓴 小儀用敎科書인 「小學」과, 字書로서의 「小學類」와는 確實하게 區分하여 分類하는 것이 좋다. 前者는 舊本題에 의하면 宋의 朱熹 撰으로 되어 있다.[217] 그러나 한편 朱熹가 直接 편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門人 劉子澄이 朱子의 指授에 따라 찬술한 것이라고도 傳해진다.[218] 著者性問題가 어떠하던 간에 朱熹時代에 性理學的인 觀點에서 小儀用 敎材로 편찬한것만은 틀림이 없으니, KDC에 있어서는 152.416 朱熹時代의 宋學에 分類한다. 後者는 訓詁 字書 韻書 및 訓蒙用 漢字敎習書를 뜻하며, KDC에 있어서는 語學아래에 分類한다. 이 경우 前者를 訓蒙用 漢字敎習書로 볼 수 없는 바도 아니나, 그보다는 性理學派의 說로서 處理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前者는 子部 儒家類 中國의 屬에, 後者는 經部 小學類에 各各 分類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小學諺解」「小學抄略」등은 152.416에 分類하지만, 한편 朴在馨이 편찬한 「海東小學」은 高麗 以來의 名儒 碩輔 遺逸 義士 淑媛등의 嘉言 善行을 여러 책에서 捃摭하여 朱子小學의 篇目을 본따서 類集한 것이니, 韓國의 151.52 朱子學派에 分類하여야 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儒家類 韓國의 屬에 分類한다.

4. 法家書

法家書는 古代人이 法理를 私議한 것,[219] 이를테면 「管子」「商子」「申子」「愼子」「韓非子」 등을 말하며, KDC에 있어서는 152.25 法家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法家類에 分類한다.

그러나 歷代의 官制法令書는 여기에 分類하지 않고, KDC에 있어서는 360.9 古代法·法制史아래서 地理區分한다. 이를테면 「經國大典」은 360.911, 「大明律直解」는 360.912와 같이 分類한다. 四部分類에 있어서는 史部 政書(法)類 法令의 屬에 分類한다. (法令書 參照)

5. 墨家·名家·縱橫家·雜家의 諸書

1) 墨翟이 始創한 兼愛說을 中心思想으로 한 諸書, 이를테면 「墨子」「晏子」「告子」는 KDC에 있어서 152.23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墨家類(四庫全書

217)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九十二 子部 二 儒家類 「小學集註 六卷」 解題.
218)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 昭和41(1966). 卷四 p. 52.
219)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八十二 史部 三十八 政書類 法令之屬 後敍에
「案法令與法家 其事相近 而實不同 法家者私議其理 法令者官著爲令者也」라 있듯이, 法家書와 歷代의 官制法令書는 그 限界를 明白히 하여야 한다.

總目에서는 子部 雜家類 雜學의 屬)에 分類한다.

2) 禮官에서 나와 名分爲主를 主張한 古代名家의 諸書, 이를테면 「鄧析子」「尹文子」「惠子」「公孫龍子」는 KDC에 있어서 152.24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名家類(四庫全書總目에서는 子部 雜家類 雜學의 屬)에 分類한다.

3) 行人의 官에서 나온 戰國時代의 合縱連衡學派에 관한 諸書는 鬼谷子를 始祖로 하고 그 弟子 蘇秦이 合縱策 그리고 同門인 張儀가 連衡策을 提唱한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 諸書를 KDC에 있어서는 152.26에,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縱橫家類(四庫全書總目에는 子部 雜家類 雜學의 屬)에 各各 分類한다.

4) 議官에서 나와 儒·墨을 兼하고 名·法家의 說을 合한 雜家의 諸書는 KDC에 있어서 152.28에,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雜家類에 分類한다.

6. 術數書

術數는 方術이라고도하며 易의 支派로서 東洋의 獨特한 秘學이라 말할 수 있다. 이 術數書를 大別하면 術學(數學) 命相 風水道讖 陰陽五行 占卜 占候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1) 術學(數學)은 萬物이 生하면 반드시 象이 있고 그 象이 生하면 반드시 數가 있으니, 이를 乘하고 除해서 推闡하여 天地造化의 근원을 힘써 硏究하는 것[220]을 말한다. KDC에 있어서는 188.01에 分類하도록 마련하였다. 이를테면 揚雄의「太元經」·邵子의「皇極經世書」·張行成의「易通變」·王湜의「易學」·鮑雲龍의 「天原發微」·張理의「易象圖說內外篇」·黃道周의「三易洞璣」·張行成의 「翼元」·熊宗立의 「洪範九疇數解」·韓邦奇의「洪範圖解」등을 들 수 있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術數類 數學의 屬에 分類한다.

2) 命相이란 運命을 判斷하는 命書와 面相 手相 骨相 및 名相(姓名判斷)등의 相書를 말한다. 이 系統의 책은 舊本題에 鬼谷子 撰으로 傳해지고 있는「李虛中命書」·舊本題에 晋 郭璞 撰으로 傳해지고 있는「玉照定眞經」·舊本題에 宋 岳珂 補注로 傳해지고 있는 「三命指迷賦」·撰者未詳의「三命通會」의 命書와, 舊本題에 後周 王朴 撰으로 傳해지고 있는「太淸神鑑」·金 張行簡 撰의「人倫大統賦」등을 들 수 있다. KDC에 있어서는 188.1～.39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術數類 命書相書의 屬에 分類한다. 그리고 擇日 宜日 忌日의 選擇法과 避凶 趨吉의 方法등을 쓴 池日賓의「天機大要」·李純之의「選擇要略」·南秉吉의 「選擇紀要」등은 KDC에 있어서 188.4 擇日·看日에 分類한다.

3) 風水道讖은 地相 宅相 墓相등을 風水地理의 道讖思想에 근거하여 그 吉凶을 가름하는 것을 말하며, 主로 地官이 專擔하는바의 秘學에 該當된다. 이 系統의 책으로서는 옛부터 傳해 오는「宅經」·「葬書」·「地理玉函纂要」·葉泰 撰의「山法全書」등이 있으

220) 上揭書, 卷一百八 子部十八 術數類 敍에
「物生有象 象生有數 乘除推闡 務究造化之源者 是爲數學」
이라 있다.

며, KDC에 있어서는 188.5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術數類 相宅相墓의 屬에 分類한다.

4) 陰陽五行은 金木水火土 五行의 相生說과 相剋說로 人事의 得失을 豫言하는 것이 爲主이다. 이 系統의 책으로서는 著者未詳의「七元六甲天書」·「太己成書」·「五行類事占徵驗」·明 錢春 撰의「五行類應」·明 程道生 撰의「遁甲演義」·正祖命編의「協吉通義」·「土亭秘訣」등을 들 수 있다. KDC에서는 188.6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術數類 陰陽五行의 屬에 分類한다.

5) 占卜은 行動한 일에 疑心이 있을 때, 卜筮등으로 앞으로 할 對策을 決定짓거나,「占事知來」곧 萬事의 善惡과 吉凶에 대한 徵候를 占으로써 判斷해 내는 것[221]을 말한다. 이 系統의 책으로서는 漢 東方朔 撰으로 傳해지고 있는 撰者 未確實의「靈棋經」, 淸 胡煦 撰의「卜法詳考」, 우리나라의「詳註六壬斷經秘訣」등을 들 수 있다. 그 外에도 錢卜 鳥卜 測字 占夢등의 雜占을 包含한다. KDC에서는 188.7에, 四部分類法에서 子部 術數類 占卜의 屬에 各各 分類한다.

6) 占候는 天文을 土臺로 災祥을 測驗하여 禍福을 判斷하는 것을 말한다. 이 系統의 책으로서는「靈台秘苑」을 비롯하여「唐開元占經」·「通占大象曆星經」·「天文秘略」「象緯全書」·「星占」·「天文書」·「海上占候」·「天文諸占」·黃鼎 撰의「天文大成管窺輯要」등을 들수 있다. KDC에서는 188.8에,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術數類 占候의 屬에 各各 分類한다.

7. 道家·道敎書

1) 先秦時代의 道家思想을 쓴 책은 宗敎인 道敎에 分類하지 않고 中國哲學·思想으로서 152.22 道家·老莊思想아래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老子의「道德經」은 152.222, 列子의「冲虛眞經」은 152.224, 莊子의「南華眞經」은 155.226, 文子의「通玄眞經」은 152.229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道家類에 該當한다.

2) 道敎의 道藏은 宗敎의 243아래의 該當位置에 分類한다. 이를테면「眞誥」·「雲笈七籤」은 243.6 太玄에,「參同契闡幽」는 243.65 參同契에,「无上秘要」는 243.7 太平에,「感應圖說」은 243.8 太淸에,「枕中經」은 243.9 正一에 各各 分類한다. 그러나 道藏의 內容을 細分할 必要가 없는 圖書館에서는 243 道藏에 分類하고, 그 아래서 著作의 가나다順으로 單一排列할 수 있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道敎類에 分類한다.

3) 漢書藝文志의 方技略에 屬하였던 房中術과 神仙術에 관한 책은 漢醫學에 分類하지 않고 道敎의 247 法術 또는 修鍊에 分類한다.[222] 그러나 神仙思想에 관한 敎義的인 硏究는 241 道敎敎義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道敎類에 分類한다.

---

221) 이를 蓍龜라고도하며, 書에서는「女則有大疑 謀及卜筮」라 하였고, 이에 對한 顔師古의 註를 보면「周書洪範之辭也 言所爲之事有疑 則以卜筮決之也 龜曰卜 蓍曰筮」라 하였다.

222)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一百四十六 子部五十六 道家類 敍에

「如神仙傳 道敎靈驗記是也……房中一家 近於神仙者 亦入之」

云云하고 있다.

8. **佛 書**

1) 佛敎는 釋迦牟尼를 敎祖로 삼고 그가 說敎한 敎法을 宗旨로 하는 宗敎로서, 佛法 僧으로 成立되어 있다. 佛敎의 內容은 經 律 論의 三藏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大藏經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 大藏經은 南方系와 北方系의 二種으로 大別된다. 南方系는 南傳大藏經으로서 KDC의 223.1에, 北方系는 「宋磧砂藏版大藏經」·「西藏大藏經」·「高麗大藏經」·「頻伽精舍版大藏經」·「大正新修大藏經」등으로서 KDC의 223.4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佛敎類에 分類하며, 以下 分類가 同一하므로 그 表示를 省略한다.

이 大藏經은 또한 小乘經典과 大乘經典으로 나눌 수 있다. 前者는 KDC의 223.51 阿含部와 223.52 本緣部에 分類하고, 後者는 223.53～.59 般若部～ 秘密部에 各各 分類한다. 大乘經典中 中國의 傳統的인 分類方法에 의한 方等部는 KDC의 223.56 寶積部와 223.57 大集部에 各各 해당된다.

律部에 있어서 小乘律은 KDC의 223.71～.77 四分律～正量律에, 大乘律은 梵網經등으로서 223.78에 各各 分類한다.

經에 대하여 後世人이 論한 것은 223.8 論部아래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遺敎經論」은 223.81 釋經論部에, 「中論」은 223.85 中觀部에, 「起信論」은 223.87 論集部에 各各 分類한다.

經 律 論 三藏의 疏는 各各 該當되는 經·律·論部의 個個經典과 함께 있도록 分類한다. 이를테면 「華嚴經疏」는 223.55에, 「金剛經疏」는 223.53에 各各 分類하여 正經과 같은 位置에 있도록 한다.

2) 佛敎의 各宗派에 관한 책은 228 宗派아래에 分類하고, 必要에 따라 宗敎共通區分을 適用시켜 細分할 수 있다. 그 宗敎共通區分은 아래와 같다.

1 宗敎·敎義 2 宗祖·開宗者 3 宗典·祖典 4 法語·語錄 5 布敎·傳道
6 寺院·組織·行政 7 法會·儀式·行事 8 各派

例를 들면 「臨濟宗」·「曹洞宗」·「爲仰宗」·「雲門宗」·「曹溪宗」·「黃檗宗」은 228.78 禪宗宗派로서 細分하고, 「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는 228.74 禪宗法語로서 細分한다.

韓國佛敎의 類似宗派에 관한 책은 228.9 其他宗派아래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白相奎의 「覺海日輪」을 228.93 大覺敎에 分類하는 것과 같다.

3) 佛敎文獻에서 比較的 많이 볼 수 있는 諸般文·要集·雲水壇·水陸齋儀·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禮懺文·茶毗文등은 法式에 관한 儀式節次를 다룬 것이니, 227 法令·儀式·行事아래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諸般文」·「要集」은 227.1, 「雲水壇」·「水陸齋儀」·「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는 227.51, 「禮懺文」은 227.53, 「茶毗文」은 227.54에 各各 分類한다.

4) 法數 名義集 音義등은 220.3 佛敎辭典·事典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大明三藏法數」·「法門名義集」·「一切經音義」등이 이에 該當된다.

5) 佛敎의 圖像學은 227.6 佛像에 分類하고, 藝術的인 佛像畵는 654.22, 佛像彫刻

은 629.2에 各各 分類한다.

6) 釋迦佛의 生涯는 222.2, 各宗派 祖宗의 生涯는 228.△2에 各各 分類하고, 高僧傳은 220.99 또는 998.22 中 擇一하여 分類한다. 이를테면 「釋迦如來行蹟頌」은 222.2 釋迦佛 및 그 生涯에,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는 220.99 또는 998.22 佛敎의 傳記中 어느 하나를 擇一하여 分類한다.

7) 佛書分類에 있어서 特히 强調할 것은, 書名에 의해서 處理할 것이 아니라, 內容爲主로 하여야 한다는 點이다. 이를테면 「金剛三昧經」은書名만을 보고 223.53 般若部 金剛經에 分類하는 過誤를 犯하기 쉽다. 經의 內容을 充分히 檢討해서 223.54 法華部에 分類하여야 한다. 「六祖法寶壇經」도 書名에 經이 들어 있다해서 經部에 分類하는 過誤를 犯하기 쉽다. 이것은 禪宗의 宗祖 六祖大師惠能의 語錄이니, 228.74 禪宗語錄에 分類한다. 「華嚴海印三昧論」도 書名에 論이 붙어 있다해서, 223.8 釋經論部 또는 223.55 華嚴部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華嚴宗義로서 228.41에 分類한다.

다. 社會科學

1. 職官

職官은 過去의 官制와 官箴을 말한다.[223)]

1) 官制關係書는 KDC에 있어서 350.21 古代官制에 分類하도록 新設하였다. 따라서 韓國의 「朝鮮官職考」·「東國職官考」·「經世遺表」·「度支志」·「春官志」·「秋官志」라면, 351~357 各國行政府에서 910~979와 같이 地理區分하고, 다시 350.21~.279와 같이 細分하게 되니, 351.11이 된다. 中國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欽定歷代職官表」·「古今官制沿革圖」·「明官制」·「明文武諸司衙門官制」·「禮部志藁」·「吏部職掌」·「太僕寺志」 등을 351.21에 分類한다. 그리고 古書가 많은 圖書館은, 必要에 따라 그 아래서 吏·戶·禮·兵·刑·工의 各曹와 其他官衙로 細分할 수 있다. 그러나 其他官衙中 獨立官衙로서 特定主題下에 分類할 수 있는 것은, 그 主題下에 類入시킬 수 있음은 勿論이다. 이를테면 「奎章閣志」는 020.911, 「觀象監志」는 442.1 天文臺·觀象監에 分類할 수 있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史部 職官類 官制의 屬에 分類한다.

2) 官箴은 KDC에 있어서 國家 및 政治倫理의 193.2 吏道아래에 分類한다. 그러나 이 官箴을 主題와 密接하게 두고자 하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行政의 350.3 公務員制度아래에 分類하도록 아울러 指示하였다. 따라서 二者擇一의 分類를 하면 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臨官政要」·「牧民心書」·「牧民大方」·「居官大要」·「居官要覽」··「吏治精覽」, 中國의 「百官箴」·「百僚全鑑」·「牧民心鑑」·「牧津」등이 이에 分類된다.

2. 政法書

223) 上揭書, 卷七十九 史部三十五 職官類敍.

政法書[224]는 六曹를 中心으로한 政事關係書로서, 通制 典禮 邦計 軍政 法令 外交 考工의 分野가 이에 該當된다.

通　制

通制關係書는 文物制度一般과 歷代의 制度를 여러 門目으로 나누어 總括한 것의 2種으로 大別할 수 있다.

文物制度一般을 다룬 것으로서는 우리나라의 「東國文獻備考」·「增補文獻備考」·「四千年文獻通考」를 비롯하여, 中國의 「通典」·「續通典」·「通志」·「續通志」·「文獻通考」·「續文獻通考」·「歷代文獻通考」·「九通」·「十通」·「淸通典」·「淸通志」·「淸文獻通考」·「淸續文獻通考」등이 있다. 이것은 文物制度를 百科全書格으로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歷史 硏究 特히 文化史的인 硏究[225]와 密接한 關聯이 있다. 따라서 KDC에 있어서는 史料로서 91△.0096 文物制度類에 分類하도록 마련하였다. DDC를 使用하고 있는 圖書館에서는 東洋部分의 展開가 어려워서, 030 一般百科事典·類書아래서 分類하고 있음도 아울러 言及해 둔다.

歷代制度는 全代 또는 一代의 制度를 總括한 以外에 六職의 制度에 관한 法制章典이 곁드려 수록된 것도 있다.[226] 例를 들면 우리나라의 「磻溪隨錄」·「百憲總要」·「兩銓便攷」·「萬機要覽」·「經國大典」·「續大典」·「大典通編」·「大典會通」을 비롯하여, 中國의 「漢制考」·「七國考」·「唐會要」·「五代會要」·「東漢會要」·「明會典」·「欽定大淸會典」등을 들수 있다. KDC에 있어서는 이들 資料를 위하여 古代官制아래에 350.219 歷代制度를 新設하였으니 여기에 分類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위의 例中 「經國大典」·「續大典」·「大典通編」·「大典會通」을 從來 古代法典으로 다루어 왔다. (法令書 參照) 嚴格한 意味에서는 李朝一代의 六曹를 中心으로한 各種制度에 관한 法制章典이므로, 여기에 分類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圖書館에 따라 兩者擇一의 分類를 할 수 있음을 添言해 둔다. 四庫全書總目에 適用되었던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史部 政書(法)類 通制의 屬에 分類된다.

典禮書

典禮書는 春官이 主掌하는 帝制와 朝章關係의 것[227]으로 一國의 典禮에 該當되는 바, 社會의 禮俗에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經學의 禮類에 넣을 수도 없다. 따라서 KDC에 있어서는 四部分類法의 適用例에 따라 史料의 一部로 보고 91△.0093 典故類中 典儀에 分類하도록 마련하였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國朝五禮儀」·「國朝續五禮儀」·「國朝喪禮補編」·「國朝五儀通編」·「國葬都監儀軌」·「嘉禮都監儀軌」·「后妃·儲宮册禮都監儀軌」·「即皇位大禮都監儀軌」·「尊號都監儀軌」·「山陵都監儀軌」·「廟

224) 錢溥의 祕閣書目과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政書類」의 名稱을 使用하고 있다.

225) 賴永祥 編訂의 中國圖書分類法에 있어서는 文物制度一般을 다룬 것을 630 文化史아래에 分類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226)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八十一 史部 三十七 政書類 通制之屬 書目擧例 參照.

227) 上揭書, 卷八十二 史部 三十八 政書類典禮之屬 後敍. 이에 대하여는 註 210 및 211의 引用文을 參照할 것.

號諡號都監儀軌」·「宗廟儀軌」·「功臣都監儀軌」·「進宴廳儀軌」등을 비롯하여, 中國의 「政和五禮新儀」·「大唐開元禮」·「大金集禮」·「明集禮」·「明典禮志」·「王國典禮」·「祖陵紀略」·「太廟敕議」·「廟學典禮」·「歷代貢擧志」·「諡法通考」·「明臣諡考」·「改元考」·「學典」·「學科考略」등을 이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史部 政書(法)類 典禮의 屬에 分類한다.

邦計書

邦計書는 度支가 所掌하는 錢穀등의 財政關係書[228]이며, KDC에 있어서는 原則的으로 329.09 財政史아래서 地理區分한다. 그러나 內容을 보면 錢穀 財賦 漕運 鐵冶 鹽政 茶馬類 開荒 救荒活民등이 包含되어 있는바, 圖書館에 따라서는 食貨와 더불어 320.9 經濟史아래서 地理區分할 수도 있다. 經濟史的인 資料를 一括集中시켜주는 點에서는, 後者의 方法을 擇하는 것이 오히려 利用者에게 더 有利할런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分類方法도 圖書館에 따라 擇一할 수 있는 것에 該當된다. 이 邦計에 관한 資料의 例로서는 우리나라의 「惠政要覽」·「國穀總錄」·「穀總便攷」·「度支田賦考」·「箕田攷」·「貢稅要略」·「貢物定案」·「均役事實」·「賦役實總」·「戶口總數」·「金鑛略記」 등을 비롯하여, 中國의 「錢通」·「國賦紀略」·「邦計彙編」·「荒政叢書」·「鹽政志」·「鐵冶志」·「茶馬類考」·「海運新考」·「漕運通志」·「開荒十二政」·「救荒策會」등을 들 수 있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史部 政書(法)類 邦計의 屬에 分類한다.

軍政書

軍政書는 歷代의 養兵制度에 관한 것으로서, 「歷代兵制」·「馬政志」·「兵馬考」등이 이에 該當된다.[229] 이에 대한 KDC의 分類는 세가지 面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 軍關係의 圖書館에 있어서는 391.09 軍事行政史아래서 地理區分할 수 있다. 이를테면 「韓國馬政考」는 391.0911과 같이 分類한다. 둘째 : 一般圖書館에서는 時代史에 分類하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一般圖書館에 있어서 養兵制度의 史的考察은 主로 歷史硏究와 밀접한 聯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高麗兵馬制度硏究」는 韓國史의 911.04 高麗時代史에 分類하고, 「李朝馬政史」는 911.05에 分類한다. 셋째 : 軍政의 一般을 다룬 것으로서 時代 또는 地域別에 該當되지 않는 경우는 專題의 特殊資料로 보고 91△.0099 特殊史에 分類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圖書館의 特殊性에 따라 分類方法을 任意로 채택할 수 있는 것에 該當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史部 政書(法)類 軍政의 屬에 分類한다.

그러나 用兵에 관한것[230] 即 戰法關係의 資料는, KDC의 399 古代兵法 아래서 地理區分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兵家類에 各各 分類한다. (兵書 參照)

---

228) 上揭書, 卷八十二 史部 三十八 政書類 邦計之屬 後敍.

229) 上揭書, 卷八十二 史部 三十八 政書類 軍政之屬 後敍에

「案軍伍戰陳之事 多備於子部兵家中 此所錄者 皆養兵之制 非用兵之制也 故所取不過數家」라 있듯이, 軍政은 用兵의 制度가 아니라 歷代의 養兵의 制度만을 對象으로 한다. 用兵의 制度에 대하여는 古代兵法을 參考할 것.

230) 上揭註 參照.

法令書

法令書는 歷代官署의 律令 法典 및 詞訟・刑獄에 關한 資料를 말한다.[231] 律令은 「唐律」・「大明律」・「大清律」・「六部律典」・「舊韓國法令」・「法規類編」등을 들 수 있고, 法典은 위에서 言及한 「經國大典」・「續大典」・「大典通編」・「大典會通」 등을 들 수 있으며, 詞訟・刑獄은 「詞訟類聚」・「決訟類聚補」・「審理錄」・「御定欽恤典則」・「欽欽新書」・「增修無寃錄」・「檢案」등을 들 수 있다. 以上의 資料中, 法典이 350.219 歷代制度와 이곳에 擇一分類될 수 있는 것을 除外하고,(政法書 通制 歷代制度 參照) 모두 KDC의 360.9 古代法令・法制史아래서 地理區分하여 分類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御定欽恤典則」은 360.911, 中國의 「大明律直解」는 360.912가 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史部 政(法)書類 法令의 屬에 分類한다.

그러나 法의 理致를 私議한 法家의 書[232]는 中國哲學・思想의 152.25 法家,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法家類에 各各 分類한다.(法家書 參照)

外交書

이것은 事大交隣關係書[233]이다. 主題別로 機械的인 處理를 하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KDC의 349.1～.79 各國外交 그리고 條約集은 361.3 國際條約아래서 地理區分하여 分類한다. 이를테면 「宣和奉使高麗圖經」・「事大考例」・「增正交隣志」・「同文彙考」・金綺秀의 「日東記游」와 「修信使日記」・金弘集의 「修信使日記」・朴泳孝의 「使和記略」・「舊韓末外交文書」등은 349.11과 같이 分類하되, 必要하다면 2個國家의 外交인 경우 0을 附加하여 對象國을 다시 910～979와 같이 細分할 수 있다. 即 日本과의 外交手記인 金綺秀의 「修信使日記」는 349.11013과 같이 細分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各國約章合編」・統監府 編의 「韓國條約類纂」등은 361.311과 같이 分類하되, 2個國家로 限定되는 경우는 必要에 따라 그 對象國을 附加하여 細分할 수 있다.

그러나 條約集을 除外한 外交書를, 軍政의 兵馬制度 研究의 경우와 같이, 歷史에 分類하고자 하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900 아래서 國別 時代別로 가려 分類한다. 이를테면 「宣和奉使高麗圖經」은 911.04 高麗時代史에, 「日東記游」・「修信使日記」・「使和記略」은 911.059 高宗・純宗時代史에 分類하는 것을 들 수 있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史部 政書(法)類 外交의 屬에 分類한다.

選擧書

選擧書는 科擧關係資料를 말한다. KDC에 있어서 榜目類는 公務員試驗・科擧아래에 350.49 榜目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이를테면 「國朝文科榜目」・「增廣別試文科殿試榜目」・「己丑庭試文武科榜目」・「丁酉式司馬榜目」・「辛卯式年監試初場榜目」등을 이에 分類한다. 그러나 科題에 대하여는 KDC의 350.47 試驗問題集아래에 包含한다고 하

231) 上揭書, 卷八十二 史部 三十八 政書類 法令之屬 後敍.
232) 註219를 參考할 것.
233) 事大는 中國과의 外交를 뜻하고, 交隣은 中國以外의 이웃나라 곧 日本 琉球등과의 外交를 뜻한다.

였으나 이를 削除하고, 科詩文 策文의 合集 또는 選集은 韓國의 경우 810.829 漢文總集·選集에, 科詩는 811.9 漢詩에 分類한다. 다만 策文中 特定主題와 密接한 關聯이 있거나 史料로서의 比重이 크다면, 그 主題 또는 歷史아래에 分類한다. 그 例에 대해서는 文學功令類를 參考하기 바란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史部 政(法)書類 選擧의 屬에 分類한다.

3. 兵 書

兵書는 用兵에 관하여 論하는 것을 爲主로한 資料[234]로서, 古代兵家의 書와 後代의 著述인 兵法 또는 武術에 관한 것을 말한다.(軍政書 參照) 用兵에서는 奇妙하게 兵을 運用하고 戰略을 세워 攻守戰에서 必勝하는 戰法을 論하며, 이에는 權謀術 形勢 및 陰陽을 兼用하고 兵器의 操作과 訓練을 거듭하는 兵術까지 包含[235]된다. 이러한 用兵의 古代兵法으로서는 「六韜」·「孫子」·「吳子」·「司馬法」·「尉繚子」·「黃石公三略」·「素書」등이 있으며, 後代의 著述로서는 우리나라의 「兵將說」·「兵學通」·「兵學指南」·「陣法」·「陣說」·「制勝方略」·「演機新編」·「武藝圖譜通志」·「行軍須知」·「神器秘訣」·「臼砲裝放法」등을 비롯하여, 中國의 「武編」·「紀效新書」·「八陣合變圖說」·「武備新書」·「火器圖」·「兵機類纂」·「練閱火器陣紀」·「練兵實紀」등 그 數가 매우 많다. KDC에 있어서는 哲學아래의 152.27 兵家를 削除하고, 399 古代兵法 아래서 910～979와 같이 地理區分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武藝圖譜通志」는 399.11, 中國의 「八陣合變圖說」은 399.12와 같이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兵家類에 分類한다.

라. 純粹 및 技術科學

1. 天 文 學

天文學關係書는 天體運行의 推步와, 이를 土台로 天災地變의 징조를 推定하여 政事에 參考[236]가 되도록 엮은 것, 그리고 曆法 古儀器등으로 大別할 수 있다.

그中 天體一般에 關한 것, 이를테면 王應麟의 「六經天文編」·西洋人 陽瑪諾의 「天問略」·薛鳳祚의 「天學會通」·淸代의 「御定歷象考成」, 우리나라 崔天壁의 「天東象緯考」·李純之等編의 「諸家曆象集」·成周悳등 編의 「國朝曆象考」등은, KDC의 440.902～.904 古代·中世·近世天文學에 各各 分類한다.

交食推步에 關한 것 이를테면 世宗때 편찬된 「交食推步法」·「交食通軌」등은 442.99 日·月等交食推步에 分類하고, 推步에 使用되었던 測定儀器 이를테면 「儀器輯說」·「量度儀圖說」·「簡平儀說」등은 442.59 古儀器에 分類한다. 그러나 測時用器機 이를테면

---

234) 註229 參照.

235) 班固. 前揭書, 兵書略 및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九十九 子部九 兵家類 敍의
「其最古者 當以孫子·吳子·司馬法爲本 大抵生聚訓練之術 權謀運用之宜而已 今所採錄 惟以論兵爲主」
云云도 參照.

236) 班固. 前揭書, 數術略 天文·曆譜의 兩敍.

「漏籌通義」·「日晷儀」·「驗時儀」등은 448.74에 分類한다.

曆法은 그 種類가 많으며 448.3 曆法아래 分類한다. 이를테면「授時曆」·「大統曆」·「七政算篇」은 448.33 太陰曆에, 「時憲曆」및 七政百中曆과 時憲曆을 折衷하여 엮은 「時憲七政百中曆」은 448.34 太陰太陽曆(舊農曆)에, 太陽曆은 448.35에, 「千歲曆」·「萬歲曆」은 448.39에, 各各 分類한다. 그러나 曆法의 種類를 모르는 경우는 449 各國曆에서 地理區分하여도 좋다.

그 外에 個個의 天體에 관하여 記述한 것은 443 記述天文學아래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南秉吉 編의 「星鏡」을 443.4에 分類하는 것과 같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以上의 天文學關係書는 모두 子部 天文算法類 天文(推步)의 屬에 分類한다.

占星法은 KDC에 있어서 188.8 占候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術數類 占候의 屬에 分類한다.

2. 古代算法

古代의 各種 算書는 KDC에 있어서 419.2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天文算法類 算書의 屬에 分類한다. 古代 算書의 例로서는「孫子算經」·「揚輝算法」·「五經算術」·「數學九章」과, 우리나라의 李尙爀 撰인 「算術管見」·南相吉 撰인「算學正義」등을 들 수 있다.

3. 植動物譜錄

植動物譜錄은 四庫全書總目의 子部 譜錄類[237] 草木·鳥獸虫魚의 屬에 該當하는 것으로, 植物 動物中 特定의 一物을 專門的으로 調査·研究하여 系統的으로 엮은 著作을 말한다.[238] KDC에 있어서 이러한 種類의 著作은 480 植物學과 490 動物學아래의 該當된 主題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植物에 있어서「菊譜」는 489.99 도라지目에, 「蘭譜」는 488.9 細子目에, 「松譜」는 486.6 松栢類에, 「桑譜」는 489.37 쐐기풀目에, 「菌譜」는 484 藻菌類에 各各 分類한다. 動物에 있어서 「蟹譜」는 495.13 甲殼類에, 「魚譜」는 497 魚類에, 「蛇譜」는 497.94 蛇目에, 「鳥譜」는 498 鳥類에, 「虫譜」는 495.2 昆虫類에 各各 分類한다.

4. 食 譜 錄

食譜錄은 家庭의 日用飮食烹飪의 法을 쓴 것으로서 一品을 專門的으로 研究하여 體系있게 엮은 著作이다. KDC에 있어서 이러한 種類의 著作은 家事·家政學의 594 飮食物아래에 分類하도록 新設하였다. 이를테면 韓國의「疏食譜」·「酒譜」·「飮膳考」·

---

237) 尤袤의 遂初堂書目에 처음으로 譜錄一類가 생긴 以來 各種의 一物을 系統的으로 엮은 著作을 四部分類法이 이곳에 統攝하게 되었으나, KDC에 있어서는 各主題에 分散하면 된다.

238)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一百二十三 子部 三十三 雜家類 雜品之屬 後敍에

「今於其專明一事一物者 皆別爲譜錄 其雜陳衆品者 自洞天淸錄以下 竝類聚於此門 蓋旣爲古所未有之書 不得不古所未有之例矣」

云云과 같이, 衆品을 雜陳한 것은 雜品에 分類하고, 一事一物을 專門的으로 調査·研究하여 系統的으로 엮은 것만을 譜錄에 分類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饌史」·「居常飮饌錄」·「茶譜」·「糖譜」등은 594.51 韓國食譜·料理法에 分類하고, 中國의 것은 594.52 中國食譜·料理法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譜錄類 食譜의 屬에 分類한다.

5. 農 書

農書中 古代 農學派의 著述을 KDC에 있어서 152.279에 分類하도록 하였으나, 오늘날 傳해지는 것이 없고 後代에 著述된 것 뿐이므로, 520 農業아래에 分類하는 것이 妥當하다. 이를테면 明 徐光啓의 「農政全書」와 우리나라의 朴世堂 撰 徐有榘 增補인 「增補山林經濟」는 520.8 農業全書·叢書에 分類하고, 特定主題의 것은 各各 該當主題에 分類한다. 例컨대 明 鮑山의 「野菜博錄」은 525 園藝에, 徐有榘의 「種藷譜」는 524.45 薯類에, 李祐珪의 「蠶桑撮要」는 527.8 養蠶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農家類에 分類한다.

6. 時 令(歲時記)

時令을 農業氣象學아래의 521.49에 新設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氣候와 關聯된 農家日用의 閭閻風俗[239]도 아울러 다루었기 때문에 風俗아래에 分類하고자 하는 圖書館을 위해서 386.5에 年中行事·歲時를 마련하였고, 한편 曆法에 있어서도 密接한 關聯이 있음에 그곳에도 또한 448.04 歲時·時令을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分類者는 著者의 觀點 如何에 따라 위의 三者中 어느 하나에 分類할 수 있다. 時令類로서는 「歲時廣記」·「四時宜忌」·「月令輯要」·「四時氣候集解」등을 代表로 들 수 있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史部 時令類에 分類한다.

7. 漢醫學

1) 漢醫經 漢醫診斷 漢醫各科學 漢醫衛生學 漢醫藥學 鍼灸學등 東洋醫學은 KDC의 519 漢方醫學아래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許浚 撰인 「東醫寶鑑」은 519.08 漢方醫學全集·叢書에, 「黃帝素問」과 「靈樞經」은 519.1 漢醫基礎學에, 張機의 「傷寒論」과 李杲의 「脾胃論」은 519.3 漢醫內科學에, 汪機의 「外科理例」와 齊德之의 「外科精義」는 519.4 漢醫外科學에, 許浚의 「諺解胎産集要」와 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은 519.6 漢醫婦人科學에, 夏德의 「衛生十方」은 519.7 漢醫衛生學에, 李時珍의 「本草綱目」은 519.8 漢醫藥學에, 許任의 「鍼灸經驗方」은 519.9 鍼灸學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醫家類에 分類한다.

2) 家畜治療에 관한 책은 KDC에 있어서 528 獸醫學아래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造父의 「水牛經」과 喩仁·喩傑 共撰의 「療馬集」등 따위는 528.2 家畜治療學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醫家類 獸醫의 屬에 分類한다.

3) 漢書藝文志 所傳의 房中術 神仙術에 관한 책은 KDC에 있어서 247 道敎의 法術

---

239) 上揭書, 卷六十七 史部 二十三 時令類 敍에

「後世承流 遞有撰述 大抵農家日用閭閻風俗爲多 與禮經所載小異 然民事即王政也 淺識者岐視之耳 至於選詞章 隷故實誇多鬪靡寖失」

云云이라 있다.

또는 修鍊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도 子部 道敎類에 分類한다.

8. 考 工 書

考工關係書는 工作 또는 營造에 관한 資料이며, 技術科學의 分野에 層한다. KDC에 있어서는 技術史的인 資料로 보고 509 技術史아래서 地理區分하거나 또는 500 技術科學아래의 該當主題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營造法式」은 509.12 中國技術史에, 「元內府宮殿制作」과 「城郭築造」는 549.1 宮殿・廟社・城郭의 各種建物에, 「造甎圖說」은 543.3 벽돌・기와 製造에, 「造船紀」는 559.421 古代 및 中世의 造船術에, 「造橋梁紀」는 536 橋梁工學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史部 政書(法)類 考工의 層에 分類한다.

마. 藝　術

1. 書畵綜合著作

書畵論 書畵鑑賞 書畵帖 또는 圖錄 書畵題跋集 書畵史등 書畵와 繪畵의 綜合著作이 古典에는 적지 않으나, KDC에 이를 分類할 適合한 곳이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640.01~.09를 601~609와 같이 區分하여 쓸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張丑이 家傳의 書畵를 總集한 「淸河書畵表」 康熙帝 御定의 「佩文齋書畵譜」 郁逢慶 編의 「郁氏書畵題跋記」는 640.08 書畵全集・叢書에, 陳繼儒 撰의 「書畵史」 劉璋 撰의 「明書畵史」는 640.0912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藝術類 書畵의 屬에 分類한다.

2. 書　藝

1) 書藝의 各專題書는 KDC에 있어서 640 아래에 分類한다. 例컨대 肉筆法帖인 金麟厚 書의 「河西筆蹟」은 648.1에, 拓本인 徐榮輔 書의 「竹石奉敎書帖」은 648.6(金石學의 拓本도 參照)에, 秋史筆法을 模寫한 法帖은 648.3에, 「集字聖敎書」의 法帖은 648.7에, 各各 分類한다. 潘之淙 撰의 「書法離鉤」와 같이 六書를 論考한 것은 641에, 馮武 撰의 「書法正傳」이라든가 項穆 撰의 「書法雅言」과 같이 書法을 論한 것은 642에, 各各 分類한다. 그리고 書藝史는 640.9 아래서 地理區分한다. 이를테면 陶宗儀 撰의 「書史會要」는 640.912와 같이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모두 子部 藝術類 書畵의 屬에 分類한다.

2) 文房四友 또는 그 個個의 筆・墨・紙・硯의 硏究는 649 또는 그 아래에 分類한다. 例컨대 「文房四譜」는 649에, 米芾 撰의 「評紙帖」은 649.3에, 梁同書 撰의 「筆史」는 649.1에, 麻三衡 撰의 「墨志」는 649.2에, 曹溶 撰의 「硯錄」은 649.5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譜錄類 器用의 屬에 分類한다.

3. 繪　畵

繪畵의 各專題書는 KDC에 있어서 650 아래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尹程 畵의 個人「畵帖」은 650.81에, 宋徽宗때 內府所藏인 名人의 繪畵를 總集한 「宣和畵譜」는 650.82에 各各 分類한다. 그러나 그 繪畵集이 時代 및 國別로 되어 있는 경우는 653 아래서 時代 또는 地理區分하고, 特定主題로 限定되어 있는 경우는 654 아래에 分類한다. 이

를테면 「東洋中世書集」은 653.103, 「李朝書集」은 653.11, 「淸代書集」은 653.12와 같이 區分한다. 한편 李成의 「山水畵」는 654.4에, 仲仁의 「華光梅譜」와 李衎의 「竹譜畵」는 654.48에, 檀園의 「犬畵」는 654.49에 各各 分類한다.

繪畵史 一般은 650.9에 分類하고, 時代別 또는 國別繪畵史는 653 아래서 評論 畵派 및 畵集등과 함께 分類할 수 있다. 이를테면 沈與文이 唐의 王維로부터 元의 商琦에 이르기까지의 畵家에 관하여 쓴 「畵志」와 米芾 撰의 「畵史」는 653.12에, 「韓國繪畵史」는 653.11에 各各 分類한다.

繪畵의 眞僞를 鑑別하는 것을 爲主로한 著作 이를테면 淸代 兩江總督의 採進本인 「畵鑒」은 650.78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以上의 繪畵資料는 모두 子部 藝術類 書畵의 屬에 分類한다.

4. 篆 刻

印譜는 KDC에 있어서 628.8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吳世昌 編의 「槿域印藪」 顧從德 撰의 「印藪」 何通 撰의 「印史」등을 들 수 있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藝術類 篆刻의 屬에 分類한다.

5. 音 樂

1) 國樂은 KDC에 있어서 679아래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風謠」는 679.35에, 「南道歌謠」는 679.43에, 「廟樂」은 679.51에, 「琴譜」는 679.7에, 「鼓譜」는 679.896에 各各 分類한다.

2) 中國古樂은 KDC에 있어서 679.9에 東洋音樂을 新設하였다. 後代人의 著作인 樂經中 樂緯를 除外한 것[240]과 俗樂을 이곳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陳暘 撰의 「樂書」 朱載堉 撰의 「樂律全書」 韋煥 撰의 「雅樂考」 熊朋來 撰의 「瑟譜」 汪浩然 撰의 「琴瑟譜」 朱長文 撰의 「琴史」등을 들 수 있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以上의 諸著作은 經部 樂類 또는 子部 藝術類 音樂의 屬에 分類한다.

3) 詞曲 또는 歌詞集은 KDC에 있어서 文學의 詩아래 分類한다. 이를테면 藏書閣所藏의 「樂章歌詞」는 811.2에, 「內房歌辭」는 811.29에, 中國의 「樂章集」·「樂府雅詞」는 821.9 詞曲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集部 詞曲類에 分類한다.

6. 雜技藝

雜技藝에 관한 책은 KDC의 690 아래에 分類한다. 몇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將棋에 관한 책 이를테면 「仁智譜」·「博譜」·「元元棋經」·「棋訣」등은 691.3에 分類한다.

2) 바둑에 관한 책, 이를테면 「弈史」는 691.2에 分類한다.

3) 武藝에 관한 책, 이를테면 顧煜 撰의 「射書」와 程道先 撰의 「射義新書」는 698.4 弓術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藝術類 雜技術에 分類한다.

240) 註214를 參照할 것.

바. 語 學

1. 訓民正音

訓民正音의 各種版은 711.2 한글에 分類한다. 申舜民 撰의 「訓民正音圖解」도 이에 包含시킨다. 그러나 正音으로 飜譯 또는 註解한 것은 資料의 性格에 따라 主題 또는 外國語아래 分類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圖書館의 特殊性에 따라서는 韓國의 古語에 分類할 수도 있다.(譯學 및 國譯類 參照)

2. 對 譯 類

1) 다른 나라와의 交隣을 目的으로 通譯官을 養成하기 위해서 外國語를 韓國語로 대역한 책은, 배우고자하는 外國語아래 分類하는 것이 原則이다. 이를테면 中國語의 敎習을 위하여 대역한 「老乞大」·「老乞大新釋」·「朴通事新釋」·「老乞大諺解」·「朴通事諺解」·「華音啓蒙諺解」·「五倫全備諺解」·「直解小學」·「訓世評話」·「經書正音」·「國漢會話」 등은 727.6에, 蒙古語의 習得을 위하여 대역한 「蒙語老乞大」·「蒙語類解」·「捷解蒙語」 등은 791.3에, 淸語 即 滿洲語를 敎習하기 위하여 대역한 「同文類解」·「譯語類解」·「八歲兒」·「小兒論」·「三譯總解」·「淸語老乞大」 등은 791.2에, 日本語의 敎習을 위하여 대역한 「隣語大方」·「捷解新語」·「捷解新語文釋」·「倭語類解」등은 737.6에 各各 分類한다.

2) 譯學書에 있어서 數個國語로 對譯된 것은 그 나라 또는 그 圖書館에서 一般에게 보다도 적게 알려지고 있는 國語下에 分類하는 것이 原則이다.[241] 이를테면 韓漢淸語의 對譯인 「韓漢淸文鑑」은 그中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다도 적게 알려지고 있는 淸語 即 滿洲語에 分類하여야 한다. 그러나 韓·中·淸·蒙語의 對譯書인 「方言集釋」이라든가, 韓·倭·淸·蒙語의 對譯書인 「三學譯語」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다도 적게 알려지고 있는 外國語는 淸語와 蒙古語이다. 그 中에서 어느 하나를 擇하느냐의 問題에 있어서는 세가지 方法이 있음을 紹介한다. 첫째 : 淸語는 蒙古語와는 달리 死語로서 現代의 語學書에 의한 敎習이 不可能하고, 이것들이 傳存되고 있는 唯一의 敎習 및 研學資料가 되는바 그 資料의 稀罕性에 立脚한다면, 淸語에 分類하는 것이 좋다. 또한 前者는 우리나라와 보다 더 密接한 歷史的인 關聯性을 갖고 있는 나라의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研學熱이 높다는 點도 分類에 참작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둘째 : 現在의 活用語를 中心으로 分類한다면 蒙古語에 分類하는 것이 좋다. 셋째 : 數個國語의 對譯辭典등에 있어서 보다도 덜 알려지고 있는 國語를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는, 解釋되어 수록된 第一 마지막의 外國語 아래 또는 그 問題된 外國語를 710~799의 數辭順

---

241)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8th Abridged ed. New York, Forest Press, 1963. 423 Dictionaries and lexicography 아래의 註인 "class bilingual dictionaries with the language likely to be less known to users of the individual library" 參照.

에 따라 機械的인 分類를 하는 方法도 있다.[242] 要컨대 어느 方法을 擇하든 間에, 그 外의 外國語에 대하여는 分類目錄에 있어서 分類副出을 내주어야 한다.

3)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날 이 對譯資料는 극히 限定된 사람 以外에는 별로 利用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古語研究에 主用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것은 그 外國語를 音譯하고 對譯한 우리말 自體가 李朝中期를 前後한 古語이어서 理解하기 어려울뿐더러, 배우고자 하는 相對方의 말도 역시 古語이기 때문에, 그 中 滿洲語를 除外하고는 主로 現代의 譯書가 利用되고 있으며, 한편 國語學의 研究者에게는 古語의 變遷研究上 매우 소중한 資料가 되는데서 그러하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現實的인 與件을 참작하면, 分類原則을 떠나서 보다도 많은 利用者의 要求에 부합되도록 718.02 古語에 分類하는 方法도 있음을 附言해 둔다. 特히 國語學研究爲主의 圖書館에 있어서 그러하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1) 2) 3)이 모두 子部 譯學類에 分類된다.

3. 國 譯 類

1) 漢字로 쓰여진 古典을 國譯한 것을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諺解本이라 일컬었으며, 그 種類와 數量이 各主題分野에 걸쳐 매우 많다. 이러한 國譯書는 原書의 主題아래 分類함을 原則으로 한다. 이를테면 KDC에 있어서 「周易諺解」는 141 아래에, 「圓覺經諺解」는 223.58에, 「太上感應篇圖說諺解」는 243.8에, 「新刊增補三略直解諺解」는 399.12에, 「鄕藥集成方諺解」는 519.8에, 「農事直說」은 520 또는 520.911에, 「杜詩諺解」는 821.4에 各各 分類한다.

2) 韓國語의 研究를 위주로 하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韓國語의 史的變遷을 研究하고 古語를 習得하는데 소중한 資料가 되므로 主題에 分類하는 原則을 벗어나서 韓國의 古語에 分類할 수도 있다. 그리고 必要한다면 그 아래서 크게 全主題 또는 全分類區分을 할 수 있음도 물론이다. 이를테면 「孝經諺解」는 718.021(4), 「釋譜詳節」은 718.022(2), 「方藥合編諺解」는 718.025(1), 「杜詩諺解」는 718.028(2)와 같이 區分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도 各類屬의 主題에 分類하는 것이 原則이나, 2)와 같은 分類方法을 擇하는 경우는 子部 譯學類에 分類한다.

4. 小 學 類

小學類는 본시 訓詁 字書 韻書에서 淵源하였다. 그것은 兒童들이 漢文을 習得하는데 있어서 매우 重要한 基礎資料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 後 이 小學類에는 그 외에도 兒童用 漢字敎習書가 包含되었다. 그러므로 KDC에 있어서는 이러한 漢文習得用 基礎資料와 漢字敎習書를 語學아래 分類하도록 마련하였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經部 小學類에 分類하도록 되어 있다.[243] 그것은 小學이 본시 六藝의 하나로서 六書를 가르키고자 「史籒」·「蒼頡」·「急就」等과 揚雄 및 杜林의

---

242) 數個國語의 對譯辭典에 있어서, 一般에게 보다도 적게 알려지고 있는 國語의 判斷이 어려운 경우, 그 辭典이 出版된 나라가 아닌 國語下에 分類하는 方法도 있으나, 古書에 있어서는 該當되는 例를 別로 發見할 수 없다.

243)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四十 經部 四十小學類 敍에

「訓纂類」를 漢書藝文志의 六藝略에 列入[244]시킨데서 비롯했고, 爾雅가 十三經에 編入됨에 따라 더욱 그 位置가 굳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漢學習得을 위한 語學資料로서 重要視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小學類의 細部準則 및 解說은 아래와 같다.

1) 訓詁書에 있어서 訓은 語義에 따라 풀이하는것, 詁는 옛말(古言)을 現在 쓰여지고 있는 말(今言)로 풀이하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漢字의 字義풀이를 主로 한 一種의 옛 字典이다. 이러한 옛 字典을 KDC에 있어서는 721.3 中國語의 訓詁에 分類하도록 마련하였다. 이를테면 五雅全書는 721.308에, 爾雅는 721.31에, 小爾雅는 721.35에, 釋名(逸雅)은 721.36에, 廣雅(博雅)는 721.37에, 埤雅 駢雅 別雅 疊雅 選雅등은 721.38에 各各 分類한다. 그리고 訓詁書 中 揚雄撰의 「方言」·魏濬 撰의 「方言據」·陳與郊 撰의 「方言類聚」등은 728.1 中國古方言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모두 經部 小學類 訓詁의 屬에 分類한다.

그러나 十三經注疏本內에 들어 있는 爾雅는 經學叢書로서 140.8에 分類하고, 分類目錄에서 分類相互參照를 作成해 준다.

2) 字書는 字形과 造字에 관한 解說을 主로한 옛 字典의 하나이며, KDC에 있어서는 說文以下 옛 字林 玉篇 類篇 字彙를 中國文字·漢字의 721.2 아래에 分類하고, 康熙字典 以後 新編된 玉篇과 字典등은 그 利用度를 참작하여 723.2에 分類하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說文解字」는 721.22에, 그 注釋本인 「說文繫傳」·「說文繫傳考異」·「說文字原正譌」·「說文長箋」·「說文解字段注」 등은 721.23에, 「六書統」·「六書本義」·「六書索隱」·「六書精蘊」·「六書總要」·「六書故」·「六書分類」등은 721.24에, 「篆字彙」와 「篆文纂要」는 721.252에, 「漢隷字源」과 「隷辨」은 721.254에, 「急就章」·「重修玉篇」·「汗簡」·「字通」·「龍龕手鑑」·「字鑑」·「字彙」·「篇海類編」·「正字通」등은 721.28에, 「古俗字略」은 721.29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經部 小學類 字書의 屬에 分類한다.

3) 康熙字典 以後 近代에 新編된 玉篇과 字典등은 KDC에 있어서 7△3아래에 分類한다. 이들 玉篇과 字典은 漢字部首의 字劃順으로 文字를 벌린 다음, 個個文字에 대하여 字音 字義 字形을 綜合的으로 수록하고, 그 中에는 熟語까지 羅列해서 그 뜻을 풀이하고 있으며, 그 풀이한 文字가 韓國 中國 日本에 있어서 各各 다르다. 따라서 近代에 新編된 玉篇 字典등은 그것을 利用하고자 音을 달고 뜻을 풀이한 國語아래의

「古小學所敎不過六書之類 故漢志以弟子職(補註：應劭曰 管仲所作 在管子書) 附孝經 而史籒(補註：周宣王太史 作大篆十五篇 建武時 亡六篇矣 師古曰 籒 音冑)等十家 四十五篇 列爲小學 隋志增以金石刻文 唐志增以 書法書品 已非初旨 自朱子作小學以配大學 趙希弁讀書附志 遂以弟子職之類 併入小學 又以蒙求之類 相參並列 而小學益多岐矣 考訂源流惟漢志根據經義 要爲近古 今以論幼儀者 別入儒家 以論筆法者 別入雜藝 以蒙求之屬隷故事以便記誦者 別入類書 惟以爾雅以下編爲訓詁 說文以下編爲字書 廣韻以下編爲韻書 庶體例謹嚴 不失古義 其有兼擧兩家者 則各以所重爲主 悉條其得失 具於本篇」

이라 있듯이, 訓詁 字書 韻書를 經部에 分類하고 있다.

244) 班固, 前揭書, 六藝略 小學十家 및 後敍 參照.

字典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崔世珍 撰의 「韻會玉篇」·「全韻玉篇」·池錫永 撰의 「字典釋要」·光文會 編의 「新字典」을 비롯하여, 近刊된 「弘字玉篇」·「明文新玉篇」·「漢韓大字典」·張三植 編의 「大漢韓辭典」·東亞出版社 刊行의 「漢韓大辭典」등은 字音과 字義풀이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韓國語아래의 713.2 漢韓字典에 分類한다. 이와같이 「康熙字典」 「中華大字典」등은 中國語아래의 723.2 字典에, 小林司氣太 編의 「新修漢和大字典」은 日本語아래의 733.2 漢和字典에 各各 分類한다.

그러나 낱말이나 語句가 한 나라말의 字順으로 排列되어 있는 辭典은 그 나라의 國語辭典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큰사전」은 713, 「中國語新辭典」은 723, 「廣辭林」은 733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모두 經部 小學類 字書의 屬에 分類한다.

4) 韻書는 韻順으로 漢字를 벌리고 그 個個의 漢字아래서 音과 韻의 表示를 爲主로한 字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簡略한 字義를 겸한 것도 있다. KDC에 있어서 韻書의 分類는 漢字音이 어느 나라의 發音으로 表示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世宗때 刊行된 「東國正韻」은 明나라의 「洪武正韻」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漢字音을 바로 잡기 위해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711.41 韓國漢字音에 分類한다. 이것 역시 漢韓字典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쓰여지고 있는 漢字音을 배우고자 하는데 目的이 있기 때문에, 韓國漢字音에 分類하도록 한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漢字音과 中國의 漢字音을 並記한 것 이를테면 朴斗世 撰의 「三韻通考補遺」라든가 朴性源 撰의 「華東正音通釋韻考」같은 것은, 韓國漢字音에 主分類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람이 中國韻書를 譯訓하였거나 간추린 것은 中國의 漢字音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世宗때 刊行한 「洪武正韻譯訓」은 721.17 中國의 現代音에 分類한다.

中國韻書는 KDC에 있어서 古音 今音 現代音으로 三大區分되어 있다. 그 中 古音에는 周·漢代의 韻書, 今音에는 「切韻」「廣韻」「韻略」「集韻」「切韻指掌圖」「韻補」「韻鏡」「詩韻」등 魏·晋·唐·宋間의 韻書를 分類하고, 現代音에는 「五音集韻」「中原音韻」「古今韻會擧要」「洪武正韻」「音論」등 元代 以後 民國때까지의 韻書를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經部 小學類 韻書의 屬에 分類한다.

5) 特定主題의 音義書는 그 主題의 辭典·事典과 함께 分類한다. 例컨대 「群經音辨」은 140.3 經學辭典·事典에, 「一切經音義」는 220.3 佛敎辭典·事典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前者는 經部 小學類 訓詁의 屬에, 後者는 子部 佛敎類에 各各 分類한다.

6) 兒童用 漢字敎習書도, 韻書 字典의 경우와 같이, 訓釋하고 懸吐 또는 訓點한 國語에 따라 分類한다. 이를테면 「千字文」「類合」「訓蒙字會」「童蒙先習」등이 한글로 訓釋되고 懸吐되어 졌다면 711.47 韓國의 漢字敎習書에, 中國語로 되었다면 727.1 中國의 蒙求書에, 日本語로 되었다면 731.47 日本의 漢字敎習書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經部 小學類 蒙求의 屬에 分類한다.

사. 文 學

1. 漢文學

漢字는 中國 韓國 日本의 共用文字이므로, 이 三國人에 의하여 쓰여진 漢文學書는 그나라의 文學아래서 該當文學形式에 따라 分類한다. 이를테면 韓國人인 權五福撰의 「睡軒詩集」·魚得江 撰의 「灌圃詩集」·李增 撰의 「北厓詩稿」는 811.9 韓國의 漢詩에, 中國 宋代人인 趙公豫 撰의 「燕堂詩藁」·蘇軾 撰의 「東坡詩集」·范成大 撰의 「石湖詩集」은 821.4 中國中世詩에 各各 分類한다. 또 韓國人이 쓴 「奇談隨錄」·林悌著의 「花史」는 813.5 韓國李朝時代小說에, 中國人이 쓴 「世說新語」는 823.4 中國中世小說 그리고 「西遊記」·「水滸傳」·「金瓶梅」등은 823.5 中國明時代小說에 各各 分類한다.

그러나 中國人이 著述한 漢文學書에 대하여 韓國人이 번역 주해 비평한 것은 原著作과 함께 있도록 分類함을 原則으로 한다. 이를테면 杜甫의 杜工部詩를 韓國人이 번역한 「杜詩諺解」라든가 「杜詩批注」는 821.4 中國中世詩에 分類한다.

2. 漢文別集

1) 個人의 文集으로서 그 內容이 漢詩·文에 屬하는 것은 KDC에 있어서 韓國人인 경우 810.819, 中國人인 경우 820.81에 各各 分類한다. 이를테면 李齊賢의 「益齋先生文集」·奇大升의 「高峰集」·南公轍의 「金陵集」·金時習의 「梅月堂集」·徐居正의 「四佳文集」등은 810.819, 中國人인 陶潛의 「陶淵明集」·李白의 「李太白集」·白居易의 「白氏長慶集」·杜牧의 「樊川文集」·蘇軾의 「東坡集」·黃庭堅의 「山谷集」등은 820.81에 分類한다.

2) 漢詩만의 別集은 여기에 分類하지 않고 詩아래에 分類한다. 例에 대하여는 다음의 漢詩를 參照하기 바란다.

3) 個人의 文集 또는 著作의 一部主題를 分離시켜 單獨으로 刊行한 것으로서, 그 內容이 漢文學의 硏究보다도, 다른 어떤 特定主題의 硏究에 더욱 重要한 資料가 되는 경우는, 그 主題에 分類한다. 이 경우 文集에 分類副出 또는 分類相互參照를 내준다. 이를테면 柳成龍의 西厓集에서 끄집어내어 單獨으로 刊行한 芹曝集은 壬辰亂의 硏究에 重要한 資料가 되니 911.0553 壬辰·丁酉亂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모두 集部 別集類에 分類한다.

3. 漢文總·選集

1) 二人 以上의 漢文總集 또는 選集으로서 그 內容이 漢文學에 屬하는 것은 KDC에 있어서 韓國人의 것인 경우 810.829에, 中國人의 것인 경우 820.82에 各各 分類한다. 이를테면 韓國人의 것인 경우 徐居正等奉勅撰의 「東文選」·申用漑等奉勅撰의 「續東文選」·成三問等의 「六先生遺稿」·金時習등의 「生六臣合集」·正祖年間刊의 「文苑黼黻」·張志淵 編의 「大東文粹」·金龍普 編의 「聯芳世稿」·朴宗慶 編의 「潘南朴氏五世遺稿」·「列聖御製」·金鎭圭 編의 「儷文集成」등은 810,829에 分類한다. 中國人의

것인 경우 昭明太子 統 編의 「文選」·呂祖謙 編의 「宋文鑑」·魏齊賢·葉棻 共編의 「五百家播芳大全文粹」· 樓昉 編의 「崇古文訣」·茅坤 編의 「唐宋八大家文鈔」등은 820,82에 分類한다.

2) 漢詩만의 總集·選集은 여기에 分類하지 않고 詩아래에 分類한다. 例에 대하여는 다음의 漢詩를 參照하기 바란다.

四部分類法에서는 모두 集部 總集類에 分類한다.

4. 漢 詩

漢詩만의 別集 總·選集은 모두 詩아래에 分類한다. 從來의 四部分類法에서는 詩와 文을 가리지 않고 함께 別集類와 總集類에 並入시켰으나, KDC 에서는 文學形式區分을 좇아 詩아래에 一括的으로 分類하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漢詩別集에 있어서 楊士彥의 「蓬萊詩集」·曹文秀의 「雪汀詩集」·崔成大의 「杜機詩集」·李鳳煥의 「雨念齋詩稿」·金相岳의 「韋菴詩錄」·范慶大의 「儉巖山人詩集」·尹善大의 「知非軒詩稿」등은 810.819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811.9 漢詩에 分類한다. 中國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個人詩集을 821 中國詩아래서 時代區分한다. 漢詩 總·選集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賡載聯韻軸」·「大學恩杯詩集」·「皇華集」·「大東詩選」·「海東詩選」高時彥 編의 「昭代風謠」·千壽慶 編의 「風謠續選」·李奎報等撰의 「海東辭賦」·金堉 編의 「三大家詩集」등은 810.829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811.9 漢詩에 分類한다. 萬一 漢詩가 量的으로 많아 細分할 必要가 있다면, 漢詩아래서 別集 總集으로 나누거나, 또는時代區分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中國의 경우도, 이를테면 王安石 編의 「唐百家詩選」·方回 編의 「瀛奎律髓」·楊士宏 編의 「唐音」·吳之振 編의 「宋詩鈔」·顧嗣立 編의 「元詩選」등과 같은 詩選類는, 820.82에 分類하지 않고 821 中國詩아래서 時代區分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集部의 別集類와 總集類로 나누어 分類한다.

5. 楚 辭

屈原·陸賈 및 孫卿의 古代賦를 楚辭라 일컫고 있다. 賦는 「不歌而誦謂之賦 登高能賦 可以爲大夫 言感物造耑(端) 材知深美」[245] 云云과 같이 노래하지 않고 誦하는 것으로서 事物에 接하여 느껴진 感情을 그대로 표현한 韻文體이며, 後世人은 이를 騷 또는 離騷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 賦는 漢魏 以後 그 體가 變해져서 現傳하는 것은 古代의 것으로 限定되어 있고, 이에 대한 後世人의 注解와 補注등이 傳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를테면 漢의 王逸 撰인 「楚辭章句」·宋의 洪興祖 撰인 「楚辭補注」·宋의 朱熹 撰인 「楚辭集注」·清의 李光地 撰인 「離騷經注」·顧成天 撰인 「離騷解」등이 바로 그것이다. 楚辭는 中國의 古代에 行했던 一種의 漢詩體이므로 KDC 에 있어서는 821.2 中國古代詩에 分類하며, 韓國의 漢詩에는 該當되지 않는다.

四部分類法에서는 集部 楚辭類에 分類한다.

---

245) 上揭書, 詩賦略 後敍.

6. 詩 文 評

詩文評은 詩評과 詩·文 合評 또는 文章評으로 大別할 수 있다.

1) 詩評 또는 詩話와 같은 純粹한 詩關係의 評·話는, KDC 에 있어서 詩아래에 分類하되, 09를 分類記號 끝에 附加한다. 이를테면 우마나라의 徐居正 撰인「東人詩話」·郭璨 撰인「雲窓詩話」그리고 著者未詳의「小華詩評」은 811.9 韓國漢詩에 分類하되, 809 文學評論의 09를 따서 811.909와 같이 細分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中國 唐代의 司空圖 撰인「詩品」·宋의 蔡夢弼 撰인「杜部草堂詩話」·李朝의 李植 撰인「杜詩批解」·清의 楊倫 撰인「杜詩鏡銓」·宋의 魏慶之 撰인「詩人玉屑」·宋의 葉夢得 撰인「石林詩話」등도 모두 821.409와 같이 分類한다.

그러나 詞評 이를테면 中國 陳霆 撰의「渚山堂詞話」·毛奇齡 撰의「詞話」·王又華 撰의「古今詞論」·陸輔之 撰의「詞旨」등은 821,909에 分類한다.

2) 詩·文合評 또는 文章評은 漢文學評論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韓國人에 의한 것이 있다면 810,909 漢文學史·評論에 漢文學評論으로서 分類하고, 中國人에 의한 것 이를테면 梁의 任昉 撰인「文章緣起」·元의 陳繹曾 撰인「文說」·元의 王構 編인「修辭鑑衡」·明의 張之象 撰인「楚範」·明의 朱荃宰 撰인「文通」등은 820.9 中國文學史·評論에 分類한다.

3) 中國人이 散文에 대해서만 評한 것이 있다면 文學形式에 따라 824.09와 같이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以上은 모두 集部 詩文評類에 分類한다.

7. 詞 曲

古詩에서 變化된 近體가 다시 變하여 詞가 되고, 이것이 또 다시 變한 것이 曲이 된다. 따라서 그 淵源을 따져 보면 결국 樂府의 餘音[246]에 지나지 않으므로, KDC에 있어서는 詩아래에 分類하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있어서「翰林別曲」·「竹溪別曲」·「雙花店」은 811.24에,「龍飛御天歌」·「國朝樂章」·「慈宮樂章」·「松江歌辭」·「江南樂府」는 811.25에, 藏書閣 所藏의「樂章歌詞」·沈光世 編의「海東樂府」는 811.2에 各各 分類한다. 中國의 詞曲에는 總·選集을 비롯하여 그 種類와 數가 적지 않으므로, 詩 끝에 別途로 821.9를 新設하였다. 따라서 모든 詞曲類를 여기에 分類하고 必要에 따라 821.2~.7과 같이 時代區分할 수 있다. 이를테면 唐으로부터 康熙中年까지의 詞評인 沈雄 撰의「古今詞話」는 821.909, 唐宋의 詞集인 柳永 撰의「樂章集」·毛晋 編의「宋名家詞」는 821.94, 明代 吳子孝 撰의「玉霄仙明珠集」은 821.95, 清代 陸次雲 撰의「玉山詞」는 821.96과 같이 各各 區分한다. 그러나 圖書館에 따라서는 時代區分하지 않고 詞集 詞選 詞話 詞譜詞韻 南北曲등 別로 區分할 수도 있다.

---

246)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一百九十八 集部 五十一 詞曲類 敍에
「詞曲二體 在文章技藝之閒 厥品頗卑 作者弗貴 特才華之士 以綺語相高耳 然三百篇變而古詩 古詩變而近體 近體變而詞 詞變而曲 層累而降 莫知其然 究厥淵源 實亦樂府之餘音」
이라 있다.

四部分類法에서는 集部 詞曲類에 分類한다.

8. 小 說

東洋에 있어서 小說類는 위에서 言及한바 있듯이, 본시 稗官이 街談巷語를 道聽塗說하고 記錄한데서 淵源한다.[247] 그러나 唐宋 以後는 그 作者가 많아져서, 그 中에는 거짓말을 써서 그 眞髓를 잃게 했는가하면, 또한 妖妄됨이 많아서 듣는 이로 하여금 현혹케 하는 內容의 것도 적지 않았다.[248] 이를 조목지어 말하면 1) 雜事를 敍述한 것, 2) 異聞을 記錄한 것, 3) 瑣語를 綴輯한 것으로 大別할 수 있다. 그 中 雜事를 敍述한 것은 小說類와 雜史의 識別이 어려워서 混雜을 일으키고 있으나, 歷朝의 軍政을 事實대로 쓴 것은 雜史로 다루고, 巷間의 逸話와 故事를 情理에 사로잡혀서 隨錄한[249] 것은 小說類로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世說新語」를 비롯한 楊瑀 撰의 「山居新語」 何良俊 撰의 「何氏語林」등을 들 수 있다. 異聞을 記錄한 것은 怪異하고 神奇한 내용의 것으로서, 이를테면 薛用弱 撰의 「集異記」·谷神子 撰의 「博異記」·蘇鶚 撰의 「杜陽雜編」·李昉 監修의 「太平廣記」등을 들 수 있다. 瑣語는 陳禹謨 編의 「廣滑稽」·支立 撰의 「十處士傳」·撰者未詳의 「滑稽小傳」·陳日華 撰의 「談諧」·陸龜蒙 撰의 「笑海叢珠」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高麗 李齊賢의 「櫟翁稗說」·金道洙 撰의 「倡善感義錄」·「古今笑叢」·「奇談隨錄」·「廣寒樓記」 등을 들 수 있다.

以上의 小說類는 勿論 오늘날의 小說의 形式과는 크게 다르므로 文學의 小說에 分類하는 것이 어색하나, 그러나 東洋式 古代小說의 一種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韓國의 小說類는 金萬里 撰의 「九雲夢」·金春澤 撰의 「謝氏南征記」·「春香傳」·「沈淸傳」등과 함께 813 小說아래서 時代區分하고, 中國의 小說類는 四大奇書인 「三國誌」·「水滸傳」·「金瓶梅」·「西遊記」등과 함께 823 中國小說아래서 時代區分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子部 小說家類 雜事 異聞 瑣語의 屬 또는 集部 小說類에 分類한다.

9. 尺 (簡) 牘

1) 尺牘 또는 簡牘으로서 文學的인 價値가 있는 것은 KDC에 있어서 8△6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宋代 孫覿 撰의 「內簡尺牘編注」는 826.4와 같이 分類한다.

2) 尺牘이 特定主題와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는 것은 그 主題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李滉과 奇大升 間의 性理學 討論을 위한 「四端七情分理氣往復書」는 韓國朱子學派인

247) 班固. 前揭書, 諸子略 小說家 後敍에
「小說家者流 蓋出於稗官(如淳曰……王者欲知閭巷風俗 故立稗官 使稱說之 今世亦謂偶語爲稗……) 街談巷語 道聽塗說者之所造也」
云云하고 있다.

248)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一百四十 子部五十 小說家類 敍의
「唐宋而後 作者彌繁 中間誣謾失眞 妖妄熒聽者 固爲不少 然寓勸戒 廣見聞 資考證者 亦錯出其中」
云云함을 參照.

249) 上揭書, 卷一百四十子部 小說家類二 雜事之屬 後敍.

151.52에 分類하고, 肉筆에 의한 眞蹟 또는 模寫한 尺牘은 그것이 書藝로서의 比重이 크기 때문에, 藝術의 書藝아래서 648.1 肉筆法帖 또는 648.3 模寫法帖에 分類한다.

10. 功 令 類

1) 科詩文 策文 등의 合集 또는 選集은 漢文總集·選集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正祖의 命으로 編刊된 科擧應製詩文集인 「正始文程」이라든가, 純祖 때 科詩文을 分類抄錄한 「科題各體」를 비롯하여, 「關東賓興錄」 「關北賓興錄」 「豊沛賓興錄」등은, 810.829 韓國의 漢文學總集·選集에 分類한다.[250]

2) 科詩만을 모은 것은 漢詩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英祖 20年부터 高宗 12年까지의 科詩를 合集한 「泮庠科詩集」을 비롯한 各種의 科試詩抄는 811.9에 分類한다.

3) 策文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特定主題와 密接한 關聯이 있다면, 그 主題下에 分類할 수 있다. 이를테면 農地制度에 관한 利害를 講究하기 위하여 實施했던 策文이라면, 522.2 農地制度에 分類할 수 있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集部 功令類 또는 總集類에 分類한다.

아. 歷史·地理

1. 正史 編年史 紀事本末史

正史 編年史 紀事本末史는 過去의 歷史編纂에 있어서 基本이 되는 三體의 史書이다.

正史는 紀表志傳의 體裁와 順序로 편찬한 史書로서, 一名 紀傳體史書라고도 하며, 隋書經籍志에서 그 名稱이 비롯하였다.[251] 우리나라의 「三國史記」 「高麗史」를 위시하여, 中國의 「十七史」 「二十一史」 「二十四史」 「二十五史」 「二十六史」가 이에 該當한다.[252] 編年史는 年月日順으로 편찬한 史書[253]이며, 一名 古史라고도 일컫고 있다. 그것은 最

---

250) 科詩文 策文 등의 合集 또는 選集은 官吏採用을 위한 試驗問題集이기 때문에, 圖書館에 따라서는 KDC의 350.47에 分類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해 둔다.

251) 長孫無忌等. 隋書卷三十三 經籍志二十八 史部 正史類.

252) 韓非木. 四庫之門. 臺北, 臺灣中華書局, 民國46(1957) p. 10에

「包括紀傳體等二十四史 以及對於正史訓釋意義 或補拾遺闕 或辨正異同 或校勘字句 凡於正史有關的史學著述 都歸此類」

라 있듯이, 正史 以外에 「史記索隱」과 같이 正史를 訓釋音義한 것, 「補後漢書年表」와 같이 正史의 遺闕을 掇拾한 것, 「新唐書糾繆」와 같이 正史의 異同을 辨正한 것, 「兩漢刊誤補遺」와 같이 正史의 字句를 校正한 것등을 모두 이에 分類한다. 이에 대하여는 四庫全書總目提要 史部 正史類 敍를 參考할 것.

253) 上揭書, p. 10에

「編年類 凡編年體之史皆屬之. 其中包有歷代之編年 或一代之編年 或箋釋校補諸編年史者亦附於此 起居注亦列入此類」

라 있고, 四庫全書總目提要 史部 編年類 敍에

「隋志史部 有起居注一門 著錄四十四部 舊唐書載二十九部 併實錄爲四十一部 新唐書載二十九部 存於今者 穆天子傳六卷 溫大雅大唐創業起居注三卷而已 穆天子傳 雖編次年月 類小說傳記 不可以爲信史 實惟存溫大雅一書 不能自爲門目 稽其體例 亦屬編年 今併合爲一 猶舊唐書以實錄附起居注之意也」

初의 正史인 史記 以前에, 이미 編年體史書가 편찬된바 있어서 붙여진 別稱이다. 우리나라의 「東國通鑑」「東史會綱」「高麗史節要」「麗史提綱」「朝鮮王朝實錄」「國朝寶鑑」「大東紀年」을 비롯하여, 中國의 「竹書紀年」「資治通鑑」「通鑑綱目」「續資治通鑑綱目」「歷代通鑑纂要」「續資治通鑑」「通鑑輯覽」등이 이에 該當한다.

紀事本末史는 歷代의 重要事件別로 項目을 세워 그 顚末 即 自初至終을 자세히 記述한 體裁의 史書이다.[254] 이 史書는 宋의 袁樞가 司馬光의 「資治通鑑」을 土臺로 「通鑑紀事本末」을 편찬한데서 비롯하였으며, 우리나라의 李肯翊 撰인 「燃藜室記述」 徐文重의 「朝野記聞」등을 들 수 있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이 三體의 史書는, 編纂의 體裁에 따라 正史類 編年類 및 紀事本末類로 區分하여, 分類함을 原則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內容의 것이 서로 分離되는 폐단이 있다. 이를테면 高麗時代의 內容을 다룬 史書인 紀傳體正史의 「高麗史」와 編年體의 「高麗史節要」가 서로 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反하여, KDC는 다루어진 內容에 따라 時代區分 또는 地理區分하여 分類함을 原則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위 例의 紀傳體正史인 「高麗史」와 編年體史書인 「高麗史節要」가, 함께 911.04 高麗時代史에 모여지게 되는 長點이 있다. 또한 紀事本末體史書도 다루어진 內容에 따라 紀傳體正史 및 編年體史書와 함께 모여지게 된다. 이를테면 紀傳體의 「史記」및 編年體의 「資治通鑑」이 紀事本末體의 「通鑑紀事本末」과 中國通史로서 912에 함께 모이며, 編年體의 「朝鮮王朝實錄」·「國朝寶鑑」이 紀事本末體의 「燃藜室記述」과 같은 時代史로서 911.05 李朝時代에 함께 位置하게 된다.

2. 別 史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別史類에는 正史에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雜史類로 떨어뜨릴 수도 없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正史에서 歧出旁分된 것을 主로 分類한다. 이를테면 正史의 起草에 利用된 「東觀漢記」「東都事略」「大金國志」「契丹國志」라든가, 證明에 互取된 「逸周書」「路史」라든가, 異同을 檢校하는데 利用된 「古史」「續後漢書」등, 正史를 相輔할 수 있는 資料가 바로 이에 該當[255]된다.

라 있듯이, 編年類에는 歷代 또는 一代의 編年史 以外에 編纂體裁가 같은 起居注 實錄類도 分類할 수 있고, 또한 이것들에 대한 箋釋·校補등도 아울러 分類한다.

254)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四十九 史部 五 紀事本末類 敍에

「古之史策 編年而已 周以前無異軌也 司馬遷作史記 遂有紀傳一體 唐以前亦無異軌也 至宋袁樞 以通鑑舊文每事爲篇 各排比其次第 而詳敍其始終 命曰紀事本末 史遂又有此一體…… 遂於二體之外 別立一家 今亦以類區分 使自爲門目 凡一書備諸事之本末 與一書具一事之本末者 總彙於此 其不標紀事本末之名 而實爲紀事本末者 亦併著錄 若夫偶然記載 篇帙無多 則仍隷諸雜史. 傳記 不列於此焉」

이라 있듯이, 四部分類法의 紀事本末類에는 一書에 諸事件의 始末을 詳敍한 것 또는 한 事件의 原因 次第 및 結末을 敍述한 것을 비롯하여, 紀事本末名이 標記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러한 體裁의 것들이 分類되며, 偶然한 記載로서 그것이 비록 一事의 本末을 다룬 것이라 하더라도, 篇帙이 적으면 雜史 또는 傳記에 分類하도록 되어 있다.

255) 上揭書, 卷五十 史部六 別史類 敍의

「陳振孫書錄解題創立別史一門 以處上不至於正史 下不至於雜史者 義例獨善 今特從之 蓋編

KDC에 있어서 別史는 다루어진 內容에 따라 時代區分 또는 地理區分하여 分類한다. 例컨대, 「大金國志」는 912.047에, 「契丹國志」는 912.042에, 「續後漢書」는 912.032에, 「建康實錄」은 912.036에, 「古史」는 912.02에, 우리나라의 李斌承 編인 「朝鮮太祖高皇帝實記」는 911.051에 各各 分類한다.

3. 雜 史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雜史類에는, 廟堂과 軍國에 관한 內容의 紀事中, 一代의 全編이 아닌 一事始末이고 또 대체로 一時의 見聞을 私記한 遺文舊事로서, 故事와 史的考證에 있어서 또는 讀史者에게 參考가 되는 資料를 分類[256]한다. 例컨대 「貞觀政要」·「渚宮舊事」·「北狩見聞錄」·「孤臣泣血錄」·「使北日錄」·「維揚巡幸記」등을 들 수 있다.

KDC에 있어서는 野乘類에 分類한다. 그러나 이에는 野史 史譚 史的인 漫筆 見聞錄 및 雜錄등을 分類하되, 一事始末로서 特定한 時代 또는 地域에 떨어지는 것은 모두 그 該當時代 또는 地域에 分類하는 것이 四部分類法과 다른 點이다. 이를테면 「大東野乘」「筆苑雜記」「海東雜錄」「昭代粹言」「東平公私見聞錄」「東野記聞」은 911.0094 野乘類에 分類하고, 「懲毖錄」「亂後雜錄」은 911.0553 壬辰·丁酉倭亂에, 東學亂의 始發부터 全琫準의 逮捕에 이르기까지의 記錄인 「南征錄」은 911.059 高宗·純宗時代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分類하기 어렵고 淆亂한 것으로 鄭樵는 5類의 책을 들고 있지만,[257] 그 中에서도 雜史類, 雜家類의 雜說[258]과 小說家類의 雜事·異聞[259]을 가름하여 分類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KDC에 있어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要컨대 朝政 또는

年不列於正史 故凡屬編年 皆得類附 史記漢書以下 已列爲正史矣 其歧出旁分者 東觀漢記·東都事略·大金國志·契丹國志之類 則先資草創 逸周書·路史之類 則互取證明 古史·續後漢書之類 則檢校異同 其書皆足相輔 而其名則不可以並列 命曰別史」

云云 參照.

256) 上揭書, 卷五十一 史部七 雜史類 敍에

「雜史之目 肇於隋書 蓋載籍旣繁 難於條析 義取乎兼包衆體 宏括殊名……大抵取其事繫廟堂語關軍國 或但具一事之始末 非一代之全編 或但述一時之見聞 祇一家之私記 要期遺文舊事足以存掌故 資考證 備讀史者之參稽……」

云云하였다.

257) 鄭樵. 前揭書, 校讎略, 編次之訛論篇.

258) 雜說은 朝廷과 軍國大事에 관한 史的인 時事를 떠나 一定한 主題없이 「議論而兼敍述」하되, 대체로 떠오른바를 「隨意錄載」의 形式으로 卷帙의 多寡에 制限을 받지 않고 또 編次의 先後도 나누지 않고 成編한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張維 撰의 「谿谷漫筆」 金萬重 撰의 「西浦漫筆」 張邦基의 「墨莊漫錄」등을 들 수 있다. 이 雜說은 KDC에 있어서는 040 一般論叢아래에 非文學的인 隨錄으로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雜家類에 分類한다. 이에 대하여는 註199와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一百十七 子部二十七 雜家類 敍의 雜說을 參考해주기 바란다.

259) 小說家類의 雜事는 「里巷閭談」과 「詞章細故」 即 巷間의 逸話와 故事를 情理에 사로잡혀서 隨錄한 것으로 이를테면 「世說新語」등을 들 수 있고, 異聞은 「奇事異聞」을 摘錄한 것 即 怪異하고 神奇한 內容의 것으로서 이를테면 「奇談隨錄」「滑稽小傳」「笑海叢珠」「古今笑叢」등을 들 수 있다. 이 兩者는 史的인 參考價値가 全혀 없는 것이므로, KDC에 있어서는

軍國大事와 관련된 史料로서 參考거리가 되는 史譚 漫筆 見聞錄 雜錄등을 分類하되, 그 中 KDC에 있어서는 特定時代 또는 地域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各各 그 該當時代 또는 地域에 分類한다는 點을 留意해 주기 바란다.

4. 史 鈔

史鈔는 어떤 底本에서 「博取約存」하고 「循覽」[260]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鈔錄한 것이므로 KDC에 있어서는 그 底本이 分類되는 곳에 分類함을 原則으로 한다. 이를테면 「朝鮮王朝實錄」을 底本으로 하여 鈔錄하였다면 그 實錄이 分類되는 911.05에 넣고, 「元史」를 底本으로 鈔錄한 「元史節要」는 그 底本과 함께 912.048에 分類한다. 그러나 한 著作에서 特定한 意圖를 갖고 特定主題를 拔萃한 것, 여러 著作에서 特定主題의 記事를 拔萃한 것 등은, 第二章 第八節 古書分類의 準則 「原著作에서 拔萃한 別本」에 準據하여 處理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史部에 史鈔類가 있다면 그곳에 分類하고, 그 類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底本이 分類되는 곳에 넣는다.

5. 載 記

載記는 僞史 覇史라고도 일컫고 있으며, 王統의 正閏을 이은 나라를 一方的으로 割據하여 國號를 僭稱하거나, 王統의 正閏을 이은 나라의 紀年을 쓰지 않고 自國이 만든 紀年을 僭號한 나라의 歷史를 뜻한다.[261] 이것은 名分爲主의 分類이므로, KDC에 있어서는 이를 無視하고 그 內容에 따라 分類한다. 이를테면 「十六國春秋」는 912.035 五胡十六國時代에, 「越史」는 914.1 越南에, 「高麗史」는 911.04 高麗時代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類門의 設定이 必要치 않다.

6. 史 評

史評은 史體를 考辨하고 史實을 評論한 著作[262]으로서, 編纂의 形式에 의한 分類에 該當된다. KDC에 있어서는 그 形式이 같은 91△.004 論文集·史評에 分類한다. 例컨대 劉子元 撰의 「史通」·范光宙 撰의 「史評」·胡寅 撰의 「讀史管見」등을 들 수 있다.

8△3아래에 分類하고,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子部 小說家類아래에 各各 分類한다. 이에 대하여는 위의 文學 小說을 參考하여 주기 바란다.

260)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六十五 史部二十一 史鈔類 敍.

261) 上揭書, 卷六十六 史部二十二 載記類 敍에

「五馬南浮 中原雲擾 偏方割據 各設史官 其事蹟亦不容泯滅 故阮孝緖作七錄 僞史立焉 隋志改稱覇史 文獻通考則兼用二名 然年祀緜邈 文籍散佚 當時僭撰 久已無存 存於今者 大抵後人追記而已 曰覇曰僞 皆非其實也……今採錄吳越春秋以下 述偏方僭亂遺蹟者 準東觀漢記·晋書之例 總題曰載記 於義爲允 惟越史略一書 爲其國所自作 僭號紀年 眞爲僞史」

라 있듯이, 名分爲主로의 分類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分類思想이다. 우리나라의 高麗가 國初에는 自作의 紀年을 쓰고, 그 後는 遼 金 元의 紀年을 썼다고 해서 僞史에 分類하고 있음은 言語途斷이다.

262) 上揭書, 卷八十六 史部四十四 史評類 敍.

그러나 史評에 있어서 時代史 또는 地域史에 該當하는 것은 그 主題와 함께 分類한다. 이를테면 「唐史論斷」「唐書直筆」은 912.038 唐時代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史部 史評類에 分類한다.

7. 史 表

史表는 年表와 紀年類를 뜻하며, 역시 편찬의 形式에 의한 分類이다. KDC에 있어서는 91△.0022 年代學(紀年·史表類)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亞細亞三國歷代」는 910.022에, 「歷代紀年」·「欽定歷代紀事年表」·「歷代史表」는 912.0022에, 「紀年兒覽」·「東史年表」는 911.0022에, 各各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史部 史表類에 分類한다. 萬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史部 別史類에 分類한다.[263)]

8. 詔令·奏議

詔令과 奏議는 國政의 樞機이다.[264)] 따라서 重要한 史料가 되는 것이니, 文章이 잘 되었다고 해서 漢文別集 또는 總集에 分類하여서는 안된다.[265)] KDC에 있어서는 天子 또는 王의 命令인 誥詔 綸音 傳教 諭示 勅令 策命 璽書 教旨와, 臣下가 天子 또는 王에게 奏進하고 政事의 是非를 條議하여 올린 奏疏 疏箚 上疏 封事 彈章 狀啓 등을, 重要한 史料로 보고 911.0091 詔令奏議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諭中外大小臣庶綸音」·「教書抄」·「綸綍」·「時務萬言封事」·「東賢奏議」·「翠軒疏箚」등은 911.0091에, 「唐大詔令集」·「兩漢詔令」·「政府奏議」· 「左史諫草」·「歷代名臣奏議」·「諸臣奏議」등은 912.0091에 分類한다.

그러나 特定主題에 該當되는 것은 圖書館에 따라 그 主題에 分類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斥邪綸音」은 異教인 耶蘇教 禁止를 命하는 綸音이니, 236.911(韓國基督教迫害史)에 分類할 수도 있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史部 詔令·奏議類에 分類한다.

9. 古 文 書

古文書는 그것을 쓴 第1人者와 그것을 받는 第2人者가 있어야 하며, 또 第2人者에게 他動的인 作用을 하는 內容을 具備하여야 한다.[266)] 이와같이 三要素를 갖춘 公·私古文書는 모두 91△.0098에 分類하도록 修正하였다. 이를테면 韓國의 「手標」「完文」「通文」「稟目」「立案」등은 911.0098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는 이 項目이 없으므로, 史部에 새로이 類門을 設定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記錄類에 分類할 수 밖에 없다.

10. 記 錄 類

古文書의 內容이 他動的인 作用을 하는데 反하여, 記錄類는 自動的인 것에 限定된

263) 上揭書, 卷五十 史部六 別史類에 所收된 書目擧例 參照.
264) 上揭書, 卷五十五 史部十一 詔令奏議類 敍.
265) 黃虞稷. 千頃堂書, 集部 制誥·表奏類.
266) 吉村茂樹. 古文書學.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58. pp. 9~17.

다. 다시 말하여 쓰여진 內容이 他人에게 効力을 나타내는 作用을 하는 것이 아니라, 個人 또는 團體가 自體의 後日을 위하여 備忘하고 證據用으로 남겨둔 資料를 말한다.[267] 이러한 性質의 資料로서는 日記 謄錄 節目 따위를 들 수 있으며, KDC에 있어서는 91△.0092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會盟謄錄」·「諫議謄錄」·「向化人謄錄」·「宣廳日記」·「感戴廳日記」등은 911.0092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도 史部 記錄類에 分類한다.

11. 金 石 學

1) 金石學은 金石文을 硏究하는 學問이다. 東洋에 있어서 金石文은 石鼓文에서 비롯한 各種의 碑文과 石 甲骨 土 塑陶 金屬 竹類등으로 된 祭器 食器 및 其他의 各種器物에 새겨진 文字를 말하며. 여기에 「甲骨卜辭」「殷虛文字外編」등과 같은 圖像과 繪畫文字등이 包含된다. KDC에 있어서는 金石文의 纂錄集 考證 專門詳釋 圖錄 義例 및 그에 관한 其他의 硏究를 91△.0024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韓國의 「三韓金石錄」·「金石遺文」·「金石總覽」·「高麗廣開土王陵碑」·「徐花潭神道碑」·「海東金石苑」등은 911.0024에, 中國의 「殷虛文字類編」·「殷虛書契考釋」·「甲骨卜辭」·「金石萃編」·「求古精舍金石圖」·「行素草堂金石叢書」등은 912.0024에 各各 分類한다.

2) 碑文의 拓本中 書藝上으로 價値있는 것은 648.6 法帖의 拓本에 分類할 수 있고, 言語專門圖書館에 있어서 古代文字의 訓釋은 語學아래에 分類할 수도 있다. 例컨대 中國의 書契訓釋을 721.21에 分類할 수 있는 것과 같다.

金石文과 關聯된 歷史的인 敍述은 그 關聯된 主題 또는 時代史에 分類한다. 例컨대 廣開土王碑文으로 通해 본 高句麗의 版圖는 911.032에, 碑文을 通해 본 墓誌는 999.83에 各各 分類한다.

金石文目錄의 分類는 여기가 아니면, 016 主題別書目아래서 全主題 또는 全分類區分 하는, 兩者中 하나를 擇一할 수 있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史部 金石類에 分類한다.

12. 考 古 學

考古學은 人工이 加해진 物質的 資料 및 人類가 意識的 또는 無意識으로 關係를 맺은 動物이나 植物 其他一切의 物質을 通하여, 文獻이 전혀 없거나 不足한 時代의 歷史를 硏究하는 學問이다. 그 領域은 人類의 發生時期부터 歷史時代에 걸쳐 참으로 廣範하다. 石類 甲骨類 土類 塑陶類 金屬類 竹木類등 各種의 遺物에 새겨진 文字에 關한 專門的인 硏究는 金石學에 屬한다고 위에서 言及하였거니와, 여기서도 이것의 硏究는 勿論이요, 貝塚 古墳 洞穴등을 踏査 또는 發掘하여 考古學的으로 調査·分析하고 그 價値를 判斷해서 그것을 土台로 어느 特定한 時代의 文化를 復元시키는 것이 主된 目的이다.

東洋에 있어서 考古學은 金石學에서 시작되었으며, 現代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그것

---

267) 上揭書, pp. 14~17.

은 最近世에 접어들어서부터 싹텄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 考古學은 金石學을 包括할 수 있음은 勿論이다.

KDC에 있어서 91△.0025는 一國의 綜合的인 것 또는 個個의 遺物遺跡으로서 時代 또는 地域區分이 不確實한 것을 分類하고, 時代 또는 地域別로 確實하게 區分할 수 있는 것은 各各 그 該當되는 곳에 分類하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中國古物志」는 912.0025에, 「樂浪遺物遺跡」은 911.023에, 「嶺南地方貝塚考」는 911.8에 各各 分類한다. 그러나 圖書館에 따라서는 모두 91△.0025아래에 集中 分類할 수도 있다. 그리고 考古學入門書 또는 遺物遺跡의 調査方法을 다룬 것은 902.5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史部 金石學에 모두 分類할 수 밖에 없다.

13. 地 理

1) 地理書는 地域의 沿革 古蹟 山川 風俗 物産 人物 및 藝文을 아울러 수록한 것[268]으로서 그 分類는 다음의 方法中에서 適當한 것을 擇할 수 있다.

ㄱ) 過去와 現在의 地理書를 單一記號로 分類한다. 이 경우 KDC의 902.8 一般歷史地理와 902.89 一般歷史地圖, 各國의 9△.0028 歷史地理와 9△.00289 歷史地圖의 分類記號는 使用하지 않는다. 그 대신 一般歷史地理는 980 地理에, 一般歷史地圖는 989 地圖에 各各 分類하여 現代의 것과 같이 있게 한다. 그리고 各國의 歷史地理는 981～987 地域地理에, 各國의 歷史地圖는 989 아래서 910～979와 같이 地理區分하여 역시 現代의 것과 같이 있게 한다. 이를테면 石璋如 等著인 「中國歷史地理」(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社, 民國50) 「明一統志」「大淸一統志」는 現代의 中國地理와 함께 981.2에 分類하고, 우리나라의 「新增東國輿地勝覽」·「東國地理誌」·「大韓疆域考」도 981.1에 分類하여 現代地理와 같이 있게 한다.

ㄴ) 過去와 現在의 地理書를 따로 分類한다. 이 경우는 KDC의 記號組織에 따라, 新刊이든 舊刊이든 過去의 地理와 地圖라면, 이를 現代의 그것에서 分離시키는 方法이다. 即 一般歷史地理는 902,8에, 一般歷史地圖는 902.89 에 各各 分類하고, 各國의 歷史地理는 9△.0028에, 各國의 歷史地圖는 9△.00289에 各各 分類한다. 이를테면 新刊인 程光裕 徐聖謨 共編인 「中國歷史地圖集」과 舊刊인 「中國輿地圖」는 그 內容이 史的인 것이니, 모두 912.00289 歷史地圖에 分類하고, 現代의 中國地圖는 989.12에 分類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大東輿地圖」·「大東方輿全圖」는 911.00289 歷史地圖에 分類하고, 現代地圖는 989.11에 分類한다.

ㄷ) 道市郡邑面의 地方志는 地方史에 分類한다. 地方志는 地方地誌와 地方史가 함께 엮어진 것이 통례이다. 게다가도 古書의 地方志는 過去의 것에 限定되어 있어 史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過去의 地方志는 地方史에 分類하는 것이 보다도 合理的이다. 이를테면 「華城邑志」는 981.157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911.57에 分類하고, 「山東通志」는 981.213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912.13에 分類한다.

---

268)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六十八 史部二十四 地理類 敍.

ㄹ) 地方志를 地方地誌에 分類한다. 過去와 現在의 地方志가 함께 있도록 分類하는 方法이다. 이를테면 「安東邑志」는 911.82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981.182에 分類하고, 「浙江通志」는 912.23에 分類하는 것이 아니라 981.223에 分類한다.

2) 古蹟, 山·山岳, 河川·湖水·河渠, 旅行記(遊記), 探險記등의 類志一般은 980.2～.29에 分類하고, 特定한 地域에 該當되는 것은 그 地域에 分類하되, 우선 910～979와 같이 區分한 다음 必要에 따라 980.2～.29와 같이 細分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海東聖蹟誌」·「松都古蹟志」·「宮闕志」는 981.1022, 「金剛山志」·「雪嶽山志」는 981.1023, 「天池志」·「朝鮮水經」은 981.1024, 「關東十境遊記」는 981.1027과 같이 分類한다. 中國의 경우 「洛陽名園記」·「江城名蹟」은 981.2022, 「南嶽小錄」·「欽定盤山志」는 981.2023, 「西湖志纂」·「南湖紀略藁」·「水經注」·「河防通議」는 981.2024, 「名山遊記」·「廣州遊覽小志」는 981.2027과 같이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史部 地理類아래서 여러 分類法을 參考하고 類志의 屬을 適切히 마련하여 分類한다.

14. 傳 記

古書에 있어서 人物의 事蹟을 적은 傳記는 各種多樣하게 細分되고 있으나, 이를 간추려 보면 叢傳(錄) 別傳(錄) 雜錄 系譜의 4種으로 大別할 수 있다.

1) 叢傳은 여러사람들의 事蹟을 모은 傳記集[269]으로서 叢錄이라고도 하며, 대체로 名臣錄 名士錄 名儒錄 名將傳 高僧傳 高士傳 高逸錄 行實錄 三綱錄 忠烈錄 忠孝錄 忠義錄 孝友錄 忠節錄 聖賢錄 儒先錄 師友錄 鄕賢錄 享祀錄 人瑞錄 列傳 烈女傳 人物考등의 名稱이 많이 붙고 있다. 그러나 이 名稱에 의한 區分은 絕對的인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被傳者가 衆人이냐 個人이냐에 따라 區別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衆人은 몇사람부터 그 以上을 指稱하는지가 問題이다. 現在 分類 또는 目錄에 있어서 셋(3)까지는 그 中 하나를 擇하는 原則이 適用되고 있다. 이 原則에 따른다면 3人까지의 傳記는 別傳으로 處理하고 그 以上은 叢傳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從來의 古書整理에 있어서는 이 原則이 그대로 適用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본시 別傳이 1個人의 傳記를 뜻하며, 따라서 그 以上은 叢傳의 範疇에 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例컨대 「孔孟事蹟圖譜」, 高敬命과 高而順의 忠節을 記錄한 「正氣錄」, 吉昌擧父子의 孝行錄인 「吉氏孝錄」 그리고 南乙珍과 趙狷 兩人의 「南趙兩先生事蹟」은 別傳이 아니라 叢傳에 處理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古書에 있어서 이와같은 慣用의 例는 文集에 있어서도 適用되고 있다. 即 「二程文集」은 宋의 明道程子와 伊川程子의 合集이며, 集部의 叢集에 處理되고 있다. 따라서 各傳 對 叢傳의 限界는 圖書館에 따

---

269) 上揭書, 卷五十八 史部十四 傳記類 總錄之屬 後敍에서 總錄의 項目이 設定된 과정을 史的으로 考察하면,

「合衆人之事爲一書 亦傳類也 其源出史記之儒林·游俠·循吏·貨殖·刺客諸傳 其別自爲一書 則成於劉向之列女傳 册府元龜 有總錄之目 今取以名之」

라 있다.

라 2人以上 또는 3人以上의 兩者中 어느 하나를 擇一하여 統一的으로 適用시켜 주기 바란다.

KDC에 있어서 叢傳을 分類하는 곳은 아래와 같다.

ㄱ) 世界叢傳은 990

ㄴ) 地域 또는 國別叢傳은 991~997

ㄷ) 特殊分野의 叢傳은 990.91~.99

ㄹ) 主題別의 叢傳은 998아래서 全主題 또는 全分類區分하거나 또는 各主題아래에 分類한다.

古書에 있어서 叢傳의 分類는 主로 ㄴ)과 ㄹ)에 該當된다. 이를테면 「朝鮮人名辭典」·「國朝人物考」·「高麗人物考」·「嶺南人物考」는 991.1에, 「中國人名辭典」·「淸朝人物考」·「歷代名人考」는 991.2에 各各 分類한다. 主題別叢傳에 있어서 「海東高僧傳」은 998.22 또는 220.99에, 「明儒言行錄」은 998.152(5) 또는 152.(5)099에 各各 分類한다. 이 主題別의 叢傳은 圖書館에 따라 998아래의 分類 또는 各主題아래의 分類中 어느 하나를 任意로 擇一할 수 있으나, 그中 哲學者 宗敎家 藝術家 文學家 등은 人物과 主題가 密接한 關聯이 있으므로, 흔히 後者의 方法을 擇하고 있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叢傳은 史部 傳記類 叢傳의 屬에 分類하며, 必要에 따라 그 아래서 國別로 細分할 수 있다.

2) 別傳은 個人의 事蹟을 적은 傳記로서 各傳 또는 別錄이라고도 하며, 대체로 傳 行狀 誌狀 諡狀 年譜 實記 言行錄 追悼錄 遺事 事實 事蹟 本末 逸話등의 名稱이 붙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名稱에 의한 區分도 絶對的인 것이 아닌 것은 위의 總傳에서 말한바와 같다.

KDC에 있어서 別傳을 分類하는 곳은 아래와 같다.

ㄱ) 特殊分野의 別傳은 990.91~.99

ㄴ) 主題別의 別傳은 998아래서 全主題 또는 全分類區分하거나 또는 各主題아래서 分類한다.

別傳의 分類에 있어서 지켜야 할 準則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ㄱ) 規模가 적은 圖書館에 있어서는 모든 別傳을 99, 전 또는 B로 簡略히 매겨 分類할 수도 있다.

ㄴ) 主題別의 別傳은 圖書館에 따라 998아래서 全主題 또는 全分類區分하여 一括集中시켜도 좋고, 關聯된 主題아래에 分散시켜도 좋다. 이를테면 「寒岡言行錄」은 998.151(5)에 分類해도 좋고, 151.(5)099에 分類해도 좋다.

ㄷ) 主題別의 別傳中 哲學者 宗敎家 藝術家 文學家등과 같이 人物과 主題가 密接한 關聯을 갖고 있는 것은 主題아래에 分類하고, 그外의 것은 998 아래에 集中시키는 方法도 좋다. 이를테면 「孔氏實錄」은 152.212에 分類하고, 「金景瑞將軍遺事」는 998.39에 分類한다.

ㄹ) 한 皇帝 帝王에 대한 記錄인 帝紀 또는 世家(高麗史의 경우)로서 한 正史에서

拔萃한 것은 그 原書와 함께 分類하고 여러 文獻에서 調査하여 편찬한 것은 歷史의 治世아래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世宗大王聖治考」는 911.052에 分類하고, 「高麗歷代世家鈔」는 911.04에 分類하여 高麗史와 함께 있도록 한다.

ㅁ) 主題別 傳記를 嚴格하게 分類하는 圖書館에 있어서, 한 사람이 둘 또는 세 分野以上에 걸쳐 貢獻한 경우는, 그中 더욱 貢獻한 分野의 主題아래에 區分한다. 이를테면 「金秋史傳」의 경우, 李朝實學派의 考證學者 金石學者 書道家 및 畵家로서의 事蹟이 記述되어지고 있으나, 그中 書道家로서의 功獻이 가장 크며 또한 그것으로 世上에 널리 알려지고 있으므로, 998.64에 分類한다.

그러나 忠·孝를 兼하였거나, 三綱을 兼한 경우는 倫理道德의 主題를 適用시켜 區分한다. 이를테면 「李世翰忠孝錄」은 998.19와 같이 區分한다.

ㅂ) 한 個人의 生涯 또는 活動中 어떤 一面만을 다룬 傳記로서, 그 個人의 生涯 또는 活動을 包括할 수 있는 主題아래 分類하는 것이 좋을 경우는, 그 包括的인 主題를 適用시켜 區分한다. 이를테면 「金議政江都丁丑錄」을 들 수 있다. 이것은 金尙容議政이 仁祖 丙子胡亂때 江華島에서 忠烈을 다하여 廟社를 지키다가 殉職한 事蹟을 적은 것이다. 이 경우 單純히 忠義의 主題를 適用시켜 998.19와 같이 區分할 것이 아니라, 議政이 公職에서 活躍中 殉職한 事蹟으로 보고, 行政家의 主題를 適用시켜 998.35와 같이 區分하는 것이 좋다.

ㅅ) 烈女 또는 烈婦의 各傳은 990.94에 分類하지 않고, 孝子와 함께 倫理道德을 適用시켜 998.19와 같이 區分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 別傳은 史部 傳記類 別傳의 屬에 分類하며, 必要에 따라 그 아래서 國別로 細分한다.

3) 雜錄은 個人의 事蹟을 直接 적은 傳記書는 아니지만, 傳記와 密接한 關聯을 갖고 있는 一事의 始末을 敍述한 記錄이다. 그 叙事의 文이 一定치 않으며, 대체로 傳記的인 面과 關聯이 있는 日記 記事 記錄 尺牘등이 이에 該當[270]된다. 그 例로서 우리나라의 金載瓚 編의 「海石日錄」을 들 수 있다. 이것은 編者가 出仕의 初日부터 歿年까지 54年間의 日記이며, 그 안에는 疏 箚 筵說 批答 書啓등이 併錄되어 있으나, 主로는 編者의 傳記 硏究에 密接한 關聯이 있는 資料들이다. 또 明의 陸深 撰인 「淮封日記」와 淸의 高士奇 撰인 「扈從西巡日錄」등을 들 수 있다. 前者는 深이 淮府副使로서 册封되어 南巡하는 途中의 見聞 또는 體驗한 것을 記錄한 日錄이며, 後者는 士奇가 侍講으로서 聖祖仁皇帝의 山西巡幸을 隨行할 때 途中의 見聞 또는 體驗한 것을 적은 日記이다. 이 兩書는 一見 地理類에 屬하는 遊記와도 비슷하나, 그 보다는 兩人의 各傳을 硏究하는데 있어서 唯一의 資料가 되고 있다.

---

270) 上揭書, 卷五十八 史部十四 傳記類 雜錄之屬 後敍에,

「案傳記者 總名也 類而別之 則敍一人之始末者 爲傳之屬 敍一事之始末者 爲記之屬 以上所錄 皆敍事之文 其類不一 故曰雜焉」

이라 있듯이, 直接 一人의 事蹟에 대한 始末을 적은 것이 아니고, 一事의 始末을 記錄한 各種의 敍事文들이나, 그것이 各傳의 硏究에 密接한 關聯이 있어서, 이곳에 分類한 것이다.

KDC에 있어서 이러한 日記 記事 記錄 尺牘등으로서, 個人傳記의 研究에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은 別傳아래에 分類한다. 위 경우는 두드러진 主題의 背景이 없으니 官吏의 主題를 適用시켜 998.35와 같이 區分할 수 밖에 없다.

四部分類法에서는 史部 傳記類 雜錄의 屬에 分類한다.

4) 系譜는 한 氏族 또는 한 家門의 氏譜 家譜 譜牒 世譜 世系 派譜 系譜 族譜등이 이에 該當된다.

KDC에 있어서 系譜는 다음의 準則에 의하여 分類한다.

ㄱ) 各國人의 系譜는 999.1～.7에서 910～979와 같이 地理區分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密陽朴氏世譜」·「豊山洪氏族譜」·「驪興閔氏派譜」·「穎陽千氏族譜」는 999.11, 中國의 「吳興趙氏世譜」·「海陵周氏系譜」는 999.12와 같이 區分한다.

ㄴ) 王家의 系譜는 999.87에 分類하고, 帝王 및 王妃의 系譜는 999.88에 分類한다. 이를테면 「璿源世譜」, 「國朝譜牒」은 999.87에, 「列聖王妃世譜」는 999.88에 各各 分類한다.

ㄷ) 姓氏譜는 999.81에 分類한다. 「萬姓譜」·「姓氏考」등을 그 例로 들 수 있다.

ㄹ) 家乘 家史는 特定家門 累世의 墓碑 誌狀 事蹟 言行등을 蒐載한 것이며, 999.82에 分類한다. 例컨대 「東萊鄭氏家乘」·「安山金氏家乘」·「月城家史」등이 이에 該當한다.

ㅁ) 墓乘으로서의 墓誌와 墓譜는 999.83에 分類하고, 墓碣銘만은 91△.0024 金石學에 分類한다. 兩者가 合쳐져 있는 것은 墓乘이 되므로, 이곳에 分類한다. 例컨대 「弘陵誌」·「景陵誌」·「健陵誌」·「李台佐墓誌」는 999.83에, 「李文馨墓碣銘」 「洪受濟墓碣名」 「金柱臣神道碑文」등은 911.0024에 分類한다.

四部分類法에 있어서는 史部 傳記類 系譜의 屬에 分類한다.

參 考 文 獻

加藤宗厚. 圖書分類法要說. 東京, 理想社, 昭和 25(1950)

加藤宗厚. 圖書の分類. 東京, 理想社, 1960

金澤庄三郎. 朝鮮書籍目錄. 無刊記〔1911〕

江蘇省立國學圖書館 編. 江蘇省立國學圖書館圖書總目44卷 補編12卷, 王煥 擔當. 江蘇省, 民國24～25(1935～36)

桂質柏. 分類大全. 南京, 中央大學圖書館, 民國24(1935)

裘開明. 漢和圖書分類法. 哈佛燕京學社圖書館, 1946.

歐陽修. 新唐書, 藝文志. 臺北, 開明書店, 民國50(1961)影印.

國立圖書館 編. 古書部分類目錄, 4278年(1956) 8月現在 首卷. 서울, 1956.

國會圖書館司書局參考書誌課 編. 도서분류법의 비교와 분류의 실제. 서울, 1969.

屈萬里・昌彼得 共著. 圖書板本學要略.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民國44(1955)

宮內府奎章閣圖書課 編. 帝室圖書目錄. 京城, 隆熙3(1909)

祁承㸁. 澹生堂藏書目. **紹興先正遺書** 第3集本.

金 檀. 文瑞樓藏書目錄. **讀書齋叢書本.**

金 烋. 海東文獻總錄. 서울, 學文閣, 1969.

長澤規矩也. 書誌學序說. 東京, 吉川弘文館, 昭和35(1966)

長澤規矩也. 和漢古書分類法. 無刊記.

譚卓垣. 清代圖書館發達史, 西村捨也 譯. **圖書館硏究.** 第14卷(1941)

東京外國語學校韓國校友會 編. 韓籍目錄稿本. 京城, 1908.

東方文化學院京都硏究所 編. 漢籍目錄. 京都, 昭和13(1938)

東南大學孟芳圖書館 編. 圖書十進分類法. 民國13(1924)

杜定友. 三民主義中心圖書分類法. 廣州 國立中山大學圖書館, 民國37(1948)

杜定友. 世界圖書分類法. 增訂版. 上海, 圖書館協會, 民國23(1934)

馬端臨. 文獻通考, 經籍考. **四部集要 史部.** 臺北, 新興書局, 民國48(1959)

馬 衡. 中國書籍制度變遷之硏究. **圖書館學季刊**, 第1卷 第2期.

前間恭作. 鮮册名題. 手稿本.

繆荃孫. 藝風藏書記8卷 續記8卷. 江陰繆氏, 民國2(1913)

文華圖書館專科學校 編. 文華圖書館季刊.

朴奉石. 朝鮮十進分類表. 서울, 國立圖書館, 4280(1947)

班 固. 漢書藝文志. 香港,太平書局, 1963.

白 麟. 朝鮮圖書題解未收書目. 서울, 연세대학교도서관학과, 1962.

四庫全書總目提要, 紀昀等奉勅 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4(1965)

司馬遷. 史記. 臺北, 開明書店, 民國50(1961)影印.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編.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서울, 東亞文化硏究所, 1967
徐有榘. 鏤板考. 서울, 寶蓮閣, 1968.
徐樹蘭. 古越藏書樓書目20卷 首1卷. 光緖30(1904)
成均館大學校中央圖書館 編. 漢籍十進分類表. 서울, 1961.
仙田正雄. 圖書分類規則. 東京, 蘭書房, 1953.
蕭子顯. 南齊書. 臺北, 開明書店, 民國50(1961)影印.
蘇瑩輝. 從早期文字流傳的工具談到中國圖書的形式. **圖書館學報**, 第7期.
孫星衍. 孫氏祠堂書目 內編4卷 外編3卷. 金陵, 孫忠愍祠堂, 嘉慶15(1810)
孫從添. 藏書記要. 上海, 1957.
施廷鏞. 淸華大學圖書館中文圖書分類法. 北平, 淸華大學圖書館, 民國20(1931)
沈寶環. 三民主義化的圖書分類標準. 武昌, 文華公書林, 民國35(1946)
沈祖榮・胡慶生 共編. 仿杜威十類分類法. 武昌, 文華公書林, 民國6(1917)
沈 約. 宋書. 臺北, 開明書店, 民國50(1961)影印.
安徽省立圖書館 編. 安徽省立圖書館圖書分類法. 安徽省, 民國18(1929)
梁子涵. 中國歷代書目總錄.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民國42(1953)
歷代經籍考. 臺北, 新興書局, 民國48(1959)
葉德輝. 書林淸話. 臺北, 世界書局, 民國50(1961)
大阪府立圖書館 編. 漢籍目錄 四部之部. 大阪, 昭和41(1966)
王聞遠. 孝慈堂書目. **觀古堂書目叢刻本.**
王省吾. 圖書分類法導論.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社, 民國53(1964)
王堯臣 等編. 崇文總目, 錢東垣 輯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6(1967)
王雲五. 中外圖書統一分類法.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44(1955)
遼東圖書公司編輯部 編. 中國歷代藝文志. 臺北, 民國45(1956)
吉村茂樹. 古文書學.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58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46(1957)
姚振宗. 七略別錄. **快閣師石山房叢書本.**
尤 袤. 遂初堂書目. **說郛** 弓10所收本.
阮孝緖. 七錄. **廣弘明集** 卷3所收.
劉 昫. 舊唐書, 經籍志. 臺北, 開明書店, 民國50(1961)影印.
劉國均. 中國圖書分類法. 增訂版. 南京, 金陵大學圖書館, 民國25(1936)
劉國均. 中國圖書分類法, 賴永祥 編訂. 臺北, 中國圖書館學會・國立臺灣大學文學院 圖書館學系, 民國57(1968)
李文裿. 中國書籍裝訂之變遷. **圖書館學季刊**, 第3卷 第4期.
李丙洙. 韓國十進分類法解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李耀南. 中國書裝考 **圖書館學季刊**, 第4卷 第2期.

任鍾淳. 分類表比較硏究. 서울, 연세대학원도서관학과, 1962.
長孫無忌 等. 隋書, 經籍志. 臺北, 開明書店, 民國50(1961)影印.
張邦基. 墨莊漫錄. **筆記小說大觀** 正編 所收.
張廷玉 等修. 明史, 藝文志. 臺北, 開明書店, 民國50(1961)影印.
張之洞. 書目答問補正, 范希曾 補正. 臺北, 新興書局, 民國45(1956)
章學誠. 校讎通義. 上海, 世界書局, 民國24(1935)
蔣伯潛. 校讐目錄學纂要. 臺北, 正中書局, 民國46(1957)
蔣元卿. 校讐學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4(1965)
蔣元卿. 中國圖書分類之沿革. 臺北, 臺灣中華書局, 民國46(1957)
錢謙益. 絳雲樓書目, 陳景雲 註. 粤**雅堂叢書** 第9集本
錢 曾. 述古堂藏書4卷 述古堂宋版書目1卷. 粤**雅堂叢書** 第9集本.
程大昌. 演繁露. **說郛** 弓13 所收本.
鄭 樵. 通志略. 上海, 世界書局, 民國25(1936)
鄭鶴聲. 中國史部目錄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5(1966)
鄭鶴聲・鄭鶴春 共著. 中國文獻學概要.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4(1965)
晁公武. 郡齋讀書志. **四部叢刊** 3編 影宋刊本.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 編. 朝鮮圖書解題. 京城, 朝鮮通信社, 昭和7(1932)
朝鮮總督府學務課分室 編. 古圖書目錄補遺. 京城, 昭和9(1934)
朱睦㮮. 萬卷堂書目. **觀古堂書目叢刻本.**
陳國慶. 古籍版本淺說. 上海, 1957.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江蘇書局, 光緒9(1883)
陳子彝. 江蘇省立蘇州圖書館圖書分類法. 蘇州, 民國18(1929)
陳天鴻. 中外一貫實用圖書分類法. 上海, 民主中學出版, 民國15(1926)
昌彼得. 改革中國圖書分類芻議. **書目季刊**, 第2卷 第2期. 臺北, 學生書局, 民國56(1967)
千惠鳳.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 諸問題. 서울, 延世大學校大學院, 1962.
千惠鳳. 古書의 分類問題. **도협월보**, V. 2 No. 4.
千惠鳳. 古書의 裝訂・漢字別 整理에 對한 硏究. **國會圖書館報**, 第2卷 第11號.
天津圖書館 編. 天津圖書館書目22卷 集部附錄・叢書總目各1卷, 譚新嘉・韓梯雲 共擔. 民國2(1913)
脫脫 等修. 宋史, 藝文志. 臺北, 開明書店, 民國50(1961)影印.
皮高品. 中國十進分類法. 武昌, 文華圖書館專科學校, 民國23(1934)
何日章. 中國圖書十進分類法. 臺北, 民國45(1956)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十進分類法. 서울, 1968.
韓國民族美術硏究所 編. 澗松文庫漢籍目錄. 서울, 1968.
韓非木. 四庫之門. 臺北, 臺灣中華書局, 民國46(1957)
許世瑛. 中國目錄學史.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社, 民國53(1964)

胡樸安，胡道靜 共著．校讐學．上海，商務印書館，民國23(1934)
胡應麟．小室山房筆叢．臺北，世界書局，民國52(1963)
黃虞稷．千頃堂書目．**適園叢書本．**

Archer. H. Richard. Rare book collections;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suggestions for use by librarians and students. Chicago, A.L.A., 1965.

Bliss, H. E.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New York, Wilson, 1953.

Courant, Maurice. Bibliographie Corèenne, tome 1～3. Paris, Ernest Leroux, 1894～96 & Supplément. Paris, 1901.

Dewey, Harry. The classified catalog, ed. by Robert Burgess. Seoul, Yonsei University, 1960.

Dewey,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8th. & 16th ed. New York, Forest Press Inc., 1959～65.

Eaton, Thelma.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an introductory manual. 2nd ed. The Illini Union Bookstore, 1957.

Harvard-Yenching Institute Library. A classified catalogue of Korean books in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Library at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1962.

Herdman, Margaret M. Classification; an introductory manual. 2nd ed. Chicago, 1947.

Mann, Margaret.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2nd ed. Chicago, A.L.A., 1943.

Merrill, W. S. Code for classifiers. 2nd ed. Chicago, A.L.A., 1939.

Palmer, B. I. The fundamentals of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1.

Ranganathan, S. R. Colon classification. 6th ed.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1960.

Richardson, E. C. Classific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New York, Wilson, 1930.

Sayers, W. C. Berwick. A manual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and bibliographers. 3rd ed. London, Grafton, 1955.

Sayers, W. C. Berwick. An introduction to library classification; theoretical, historical and practical. 9th ed. London, Grafton, 1954.

Shera, Jesse H. The classified catalog, basic principles and practices, by Jesse H. Shera and Margaret E. Egan. Chicago, A.L.A., 1956.

U. S. Library of Congress. A descriptive catalog of rare Chinese books in the Library of Congress, comp. by Wang Chung-min. Washington, 1957

索　　引

㉯

㉯

㉮

著者略歷

東國大史學科卒業(文學士)
延世大大學院圖書館學科卒業(文學碩士)
유네스코研究計劃으로 中國・日本에서 書誌學研究
東國大圖書館司書課長
韓國圖書館協會理事・分類分委長・古文獻委員
延世大圖書館學校・梨花女大學部 및 大學院圖書館學科・
中央大圖書館學科 講師
成均館大圖書館學科 教授

著書・主要論文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 諸問題. 1962.
韓國目錄規則案. 1962(共編)
韓國十進分類法. 1664(共編)
"印經木活字"本에 대하여. 1965.
丁丑字攷. 1967(歷史學報)
庚午字攷. 1968(成大論文集)
足利學校의 韓國古典에 대하여. 1969(書誌學)
內閣文庫의 韓國古活字本에 대하여. 1970(書誌學)

限定版 1,000部 第 號 **값 1,250원**

古書分類目錄法(上)

印 刷 1970. 3. 25
發 行 1970. 3. 30

著 者 千 惠 鳳

發 行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

서울特別市中區小公洞 6
電 話 ㉒ 4864・5613

印刷 三省印刷株式會社

韓國圖書館學叢書目錄

1.	圖書 및 印刷史	朴 熙 永	近刊
2.	圖書館學概論	任 鍾 淳	既刊
3.	韓國圖書館史	白　　麟	既刊
4.	圖書選擇法	李 鳳 順	
5.	圖書館統計 및 評價	金 京 一	近刊
6.	公共圖書館	張 仁 植	近刊
7.	大學圖書館	安 永 柱	
8.	書誌學	千 惠 鳳	
9.	古文書整理法	白　　麟	
10.	學校圖書館	金 重 漢	既刊
11.	圖書館製本 및 修理	趙 載 厚	近刊
12.	參考業務	李 漢 龍	
13.	도큐멘테이션 概說	司公　哲	既刊
14.	古書分類目錄法（上, 下）	千 惠 鳳	既刊
15.	韓國十進分類法解說	李 丙 洙	既刊
16.	韓國目錄規則解說	張 一 世	既刊
17.	圖書館의 組織과 管理	李 喆 珪	既刊
18.	分類學	李 春 熙	近刊
19.	目錄學	李 載 喆	
20.	特殊圖書館	金 京 一	既刊
21.	圖書館과 社會	金 世 翊	近刊